2010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0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2,205건의 조정사건을 접수 · 처리했습니다. 이는 2009년의 1,573건에 비해 약 40.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조정사건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09년 언론중재법이 개정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지난 해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는 841건으로 181건이 접수된 2009년에 비해 4.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는 7개의 서울중재부 중 2개의 중재부를 포털사건 전담부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포털대상 조정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0년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9.1%에 이릅니다. 이러한 피해구제율의 상승세는 조정절차를 통해 언론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당사자 쌍방이 언론분쟁을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신청하는 중재사건의 경우, 2010년 한해 77건이 접수 ·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중재사건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던 2009년의 111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중재신청이 도입초기의 저조함에서 벗어나 점차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수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총 746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84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자살방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시정권고 기능은 우리나라의 언론보도가 보다 한 차원 더 성숙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활동내용을 담아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사건을 순서대로 실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2,205건의 조정사건과 77건의 중재사건 중 시사적 가치가 큰 103건의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수록된 사례는 가능하면 사건내역을 충실히 싣도록 했으며, 이용자들이 필요한 사례를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건유형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사건 목록을 별도로 실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외 284건의 시정권고 사례와 위원회의 처리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결과도 담았습니다.

이 책이 언론분쟁에 대한 조정 · 중재절차나 처리과정, 실효성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나아가 학계나 언론계, 법조계 등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1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2010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차 례

제1부 언론조정 ·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19

제2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65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1절 인쇄 · 통신매체 대상 조정 · 중재사례

1. 스트레이트 기사가 문제된 사례

가. 정치 · 행정 관련분야

사례 1 과천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건축이 정비계획에 의한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을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과천시 對 과천저널(주) (2010경기조정7 정정청구) 66

사례 2 정청래 전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던 신청인이 당시 정 의원의 경쟁후보 선거 사무장이었고, 제보가 허위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 對 한겨레신문(주) (2010서울조정170 · 171 정정 · 반론청구) 71

사례 3 석회석화물 동해항 유치를 위한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단체는 주민협의체 결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현대제철 석회석저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 對 (주)강원일보사 (2010강원조정1 반론청구) 74

사례 4 함안군청이 과오납 세금을 5년간 방치하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함안군 對 (주)더함안신문 (2010경남조정1 · 2 정정 · 손배청구) 77

사례 5 시의회 부의장인 신청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건설회사가 포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정 종 근 對 (주)경기도민일보 (2010경기조정30 · 31 정정 · 손배청구) 84

사례 6 신청인 회사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내지 않았고, 분양을 통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겨 흑자부도를 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주)펀스테이션 對 (주)경향신문사 (2010서울조정359 · 360 정정 · 손배청구) 91

사례 7 구례군이 예산을 낭비하고 불법, 편법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 담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구례군 對 (주)호남매일신문사 (2010광주조정9 정정청구) 95

사례 8 신청인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 · 경북지역 언론사들의 논조에 불만을 표하면서 'TKX들'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동 관 對 (주)경북일보 (2010대구조정1 정정청구) 99

사례 9 신청인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 인사들에 대해 '반대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정 정 길 對 한겨레신문(주) (2010서울조정512 정정청구) 102

사례 10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해경의 현장 접근에 제동을 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군본부 對 (주)동아일보사 (2010서울조정886 정정청구) 105

사례 11 충청도에 살았으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거라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국무총리실 對 (주)경향신문사 (2010서울조정934 정정청구) 109

사례 12 낙동강 구미보의 부실시공으로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對 (주)내일신문 (2010서울조정1101 정정청구) 113

사례 13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對 한겨레신문(주) (2010서울조정1128 정정청구) 116

사례 14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강 용 석 對 (주)중앙일보사 (2010서울조정1133 반론청구) 122

사례 15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사장을 고소한 소위 '신한사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 對 (주)내일신문 (2010서울조정1293 정정청구) ····· 126

사례 16 신청인 기관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영유아식에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對 (주)내일신문 (2010서울조정1497 정정청구) ····· 130

사례 17 연평도 사태 피난 아동들에 대한 인천시의 무상지원이 민간 기부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면서도 인천시장인 신청인이 마치 자신이 사준 것처럼 생색을 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송영길 對 (주)조선일보사 (2010서울조정1559 정정청구) ····· 134

나. 사건 · 사고 분야

사례 18 형사고소사건의 담당형사인 신청인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안 될 땐 쌍방과실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對 (주)중부일보 (2010경기조정1 반론청구) ····· 137

사례 19 신청인이 칸첸중가 등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은선 對 한겨레신문(주) (2010서울조정60 정정청구) ····· 140

사례 20 사회복지재단의 간부인 신청인이 구청으로부터 수탁관리, 운영해오던 자활센터를 통해 거액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 박○○,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對 부산일보(주)
(2010부산조정1 · 2 정정 · 손배청구) ····· 144

사례 21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경찰에 고발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 對 (주)전북일보사 (2010전북조정2 추후청구) ····· 148

사례 22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으로 어느 입시생이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했다고 보도했으나, 사건 당일 열차 운행은 조기 정상화되었으므로 학생의 지각과는 무관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對 (주)중앙일보사 (2010서울조정331 · 332 정정 · 손배청구) ····· 151

사례 23 신청인이 소속된 '우리법연구회'가 결성된 이후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문형배 對 (주)조선일보사 (2010서울조정408 정정청구) ····· 155

사례 24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손○○ 對 (주)대전일보사 (2010대전조정19 · 20 정정 · 손배청구) ····· 158

사례 25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 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송○○ 對 (주)뉴시스 (2010서울조정693 정정청구) ····· 161

사례 26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부당청구 조사대상을 전체 병원과 약국으로 확대한다면 환수금액이 지금보다 10배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대한의사협회 對 (주)한국경제신문 (2010서울조정805 정정청구) ····· 163

사례 27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對 (주)조선일보사 (2010서울조정1177 · 1178 정정 · 손배청구) ····· 167

사례 28 신청인이 과로사한 전 남편의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고 보험금만 수령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1. 안○○, 2. 박○○ 對 (주)경남도민일보 (2010경남조정62 · 63 정정 · 손배청구) ····· 171

사례 29 신청인이 과로사한 전 남편의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고 보험금만 수령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1. 안○○, 2. 박○○ 對 (주)경남도민일보 (2010경남중재1 손배청구) ····· 176

사례 30 신청인이 동생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對 (주)군산뉴스 (2010전북조정27 손배청구) ····· 179

다. 문화 · 종교 관련분야

사례 31 기사에서 '승려'라는 예삿말 대신 '스님'이라는 높임말을 써서 "경찰관들이 지관스님을 폭행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다.
김○○ 對 (주)연합뉴스 (2010서울조정181 정정청구) ····· 181

사례 32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관련해 정부가 10억을 지원하고 국립극장 측이 대관을 해준 것은 모두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對 (주)경향신문사 (2010서울조정321 반론청구) ····· 184

사례 33 신청인 연합회가 한국예총 대전연합회가 사용하던 '대전예총'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연합회는 '대예총'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1. 사단법인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2. 리 헌 석 對 (주)중도매일 (중도일보)
(2010대전조정11 · 12 정정 · 반론청구) ····· 187

사례 34 고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인 신청인 단체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對 한겨레 (2010서울조정1331 정정청구) ····· 190

라. 언론 관련분야

사례 35 경기방송에서 알력다툼이 불거져 상호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주)경기방송 對 (주)미디어오늘 (2010서울조정76 · 77 정정 · 손배청구) ····· 195

사례 36 KBS내에 수신료 납부 대상자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계약직 직원보다 이를 관리 · 감독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내근인력이 2배 가까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방송공사 對 (주)미디어오늘 (2010서울조정141 · 142 정정 · 손배청구) ····· 199

사례 37 신청인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경기방송 對 (주)경기도민일보 (2010경기조정8 · 9 정정 · 손배청구) ····· 203

사례 38 신청인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조정심리에서 중앙일보 측 대리인이 취재과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강 용 석 對 (주)중앙일보사 (2010서울조정1195 정정청구) ····· 209

사례 39 신청인 언론사가 보도한 한나라당 대표의 포탄 동영상이 연출된 영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와이티엔 對 (주)동아일보사 (2010서울조정1591 정정청구) ····· 212

2. 기자수첩 등 논평관련 기사가 문제된 사례

사례 40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가 노사정 합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주)조선일보사
(2010서울조정258 · 259 · 260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 216

사례 41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정수장학회 등 엄청난 금전적 유산을 물려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박 근 혜 對 (주)오마이뉴스 (2010서울조정490 정정청구) ····· 220

사례 42 태풍 '덴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 대다수의 직원들이 잠을 자느라 재난상황실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對 (주)내외엔이더블유에스 (내외일보)
(2010서울조정1286 · 1287 정정 · 손배청구) ····· 224

3. 탐사 · 심층 · 기획기사가 문제된 사례

사례 43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이즈피엠피'라는 컨벤션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정태근 의원 덕분에 업체가 급성장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1. 정 태 근, 2. 한 ○ ○ 對 (주)동아일보사 (신동아) (2010서울조정510 정정청구) ····· 228

사례 44 신청인이 2003년 재산공개 당시 소유임야를 누락시키는 등 부동산의 보유 및 매각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권 태 신 對 (주)동아일보사 (신동아) (2010서울조정894 반론청구) ····· 234

4. 광고가 문제된 사례

사례 45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실어 피해를 입었다.
최 ○ ○ 對 박 ○ ○ (목양신문) (2010서울조정1216 정정청구) ····· 240

제2절 방송매체 대상 조정 · 중재 사례

1. 뉴스프로그램이 문제된 사례

사례 46 신청인들이 무주군청으로 허가받은 관광농원 진입로를 불법적으로 막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1. 최○○, 2. 최□□, 3. 백○○ 對 한국방송공사 (전주KBS-1TV) (2010전북조정1 정정청구) ····· 243

사례 47 신청인 방송사로 인해 2006년 월드컵 중계권료가 2002년 대비 233% 인상됐다고 보도했으나, 133%가 맞다.
(주)에스비에스 對 한국방송공사 (KBS-1TV) (2010서울조정312 정정청구) ····· 248

사례 48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계약한 회사는 SBS인터내셔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주체가 서울방송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김 ○ ○ 對 한국방송공사 (KBS-1TV) (2010서울조정330 정정청구) ····· 251

사례 49 신청인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와 태아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부검결과 사인은 불치병인 양수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차○○ 對 한국방송공사 (제주KBS-1TV) (2010제주조정13 · 14 추후 · 손배청구) ····· 254

사례 50 신청인 단체 소속 대원이 고 한준호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을 벌인 곳이 침몰된 천안함의 함수 부근이 아닌 제3의 지점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UDT동지회 對 한국방송공사 (KBS-1TV) (2010서울조정841 반론청구) ····· 257

사례 51 이비인후과 의사를 비롯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3. 대한비과학회 對 한국방송공사 (2010서울조정842 · 843 정정 · 손배청구) ····· 260

사례 52 '대한민국 사진대전' 금품수수 사건 보도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개인전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양○○ 對 (주)문화방송 (MBC-TV) (2010서울조정899 · 900 정정 · 손배청구) ····· 265

사례 53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학교수 재직 시절 논문을 이중게재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박 선 영 對 한국방송공사 (KBS-1TV) (2010서울조정915 반론청구) ····· 268

사례 54 제주도 화산석의 일종인 '송이'라는 명칭을 신청인 업체가 상표 등록을 통해 독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당한 절차로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다.
주식회사 송이산업 對 한국방송공사 (KBS-1TV) (2010서울조정1037 · 1038 정정 · 손배청구) ···· 271

사례 55 4대강 공사로 인해 대체서식지로 이식된 단양쑥부쟁이가 대부분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토해양부 對 (주)문화방송 (MBC-TV) (2010서울조정1129 정정청구) ····· 274

사례 56 신청인이 운영하는 해상 주유소가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동양산업(주) 對 (주)에스비에스 (SBS-TV) (2010서울조정1215 정정청구) ····· 277

사례 57 대학생인 신청인이 교육감 선거에 무지한 것처럼 인터뷰를 왜곡 편집하여 피해를 입었다.
강○○ 對 한국교육방송공사 (EBS-TV) (2010서울조정1289 손배청구) ····· 280

사례 58 신청인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5 · 18실체규명위원회 對 한국방송공사 (광주KBS-1TV)
(2010서울조정1375 · 1376 정정 · 손배청구) ····· 284

사례 59 변호사인 신청인이 수임한 북한 주민 관련 상속 소송에 북한 고위부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배금자 對 (주)문화방송 (MBC-TV) (2010서울조정1411 정정청구) ····· 288

2. 시사 · 고발 프로그램이 문제된 사례

사례 60 신청인 업체의 줄기세포 화장품이 주름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식회사 알앤엘바이오 對 한국방송공사 (KBS-1TV) (2010서울조정1266 정정청구) ····· 292

사례 61 신청인들이 도굴된 고구려벽화를 매수하여 팔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2. 김○○ 對 (주)문화방송 (MBC-TV)
(2010서울조정1593 · 1594 · 1595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 299

3. 교양 · 정보 프로그램이 문제된 사례

사례 62 신청인 회사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튀김전용유에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지 않다.
(주)훌랄라 對 (주)문화방송 (MBC-TV) (2010서울조정468 · 469 정정 · 손배청구) ····· 302

4. 자막방송이 문제된 사례

사례 63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자막방송 하였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합법적 파업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對 한국방송공사 (KBS-2TV) (2010서울조정1093 정정청구) ····· 306

제3절 인터넷매체 대상 조정 · 중재 사례

1. 인터넷신문이 문제된 사례

가. 정치 · 행정 관련 분야

사례 64 한의대 졸업생들을 공중보건의에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對 (주)보건신문사 (인터넷 보건신문)
(2010서울조정149 · 150 정정 · 손배청구) ····· 308

사례 65 신청인이 옥외광고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 對 (주)일요서울신문사 (2010서울조정277 · 278 정정 · 손배청구) ····· 311

사례 66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도한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 때문에 경기도의 수입이 줄어 재정자립도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으나, 부동산 감세정책은 참여정부시절부터 시행된 것이다.
1. 경기도, 2. 김문수 對 (주)네오뉴스 (뷰스앤뉴스) (2010서울조정270 정정청구) ····· 315

사례 67 화순군이 하니움 체육관 사용 관련, 행사 하루 전에 사용 금지 통보를 하는 등 행사 주최측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화순군 對 (주)화순미래뉴스 (2010광주조정53 정정청구) ····· 319

사례 68 신청인이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리호남' 내각참사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 재 오 對 (주)오마이뉴스 (2010서울조정1513 · 1514 정정 · 손배청구) ····· 324

나. 경제 · 산업 · 비즈니스 관련분야

사례 69 신청인 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5년 묵은쌀로 고추장을 제조한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상(주) 對 (주)씨비에스 노컷뉴스 (데일리노컷뉴스)
(2010서울조정1173 · 1174 정정 · 손배청구) ····· 329

사례 70 신청인 회사의 유아용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물질의 유입경로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주)○○식품 對 (주)컨슈머타임스 (2010서울조정1583 · 1584 정정 · 손배청구) ····· 332

다. 사건 · 사고 관련분야

사례 71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중인 노조에 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의 제동으로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철도공사 對 (주)경향신문사 (경향닷컴) (2010서울조정3 · 4 정정 · 반론청구) ····· 336

사례 7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구청장 부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근로를 동원해 경작시키면서, 관련 사항을 작업 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고의 누락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對 (주)아이엠비씨 (iMBC) (2010서울조정47 정정청구) ····· 341

사례 73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과정에서 파생된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문제와 관련해 신청인이 설명회 등의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립의료원 對 (주)메디피플 (메디컬투데이) (2010서울조정87 정정청구) ····· 345

사례 74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두유를 마신 아이들이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주)○○식품 對 (주)씨엔미디어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0서울조정268 · 269 정정 · 손배청구) ····· 348

사례 75 신청인 비대위가 궐기대회를 열면서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종시원주민생계및재보상비상대책위원회 對 장○○ (세종뉴스) (2010대전조정2 정정청구) ···· 351

사례 76 신청인이 행시에 합격하고도 고시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억대가 넘는 연봉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건강과 학업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던 것이다.
이○○ 對 (주)매경닷컴 (2010서울조정392 · 393 정정 · 손배청구) ····· 354

사례 77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인 신청인이 정식 기자가 아니어서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맹주석 對 (주)프레시안 (2010서울조정1126 · 1127 정정 · 손배청구) ····· 358

사례 78 신청인 단체가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단체는 신청인 단체와 이름이 비슷한 타 단체이다.
(사)KYC (한국청년연합) 對 뉴데일리(주) (2010서울조정1408 · 1409 정정 · 손배청구) ····· 362

사례 79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가처분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일 뿐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주)아이이에이 對 박○○ (나눔뉴스) (2010서울조정1432 · 1433 정정 · 손배청구) ····· 366

라. 문화 · 언론 · 연예 관련분야

사례 80 신청인 방송사가 사회주의 성향이며, 참여정부 시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재)시민방송 對 신○○ (인터넷 독립신문) (2010서울조정157 정정청구) ····· 369

사례 81 95년 사망한 故 김성재가 약물복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육○○ 對 (주)서울신문엔티엔 (2010서울조정246 · 247 정정 · 손배청구) ····· 373

사례 82 신청인 협회가 대표적인 영화계 우파단체이며, 기획전을 신청인 협회 시사실에서

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한국영화감독협회 對 한겨레신문(주) (2010서울조정304 · 305 정정 · 손배청구) ····· 376

사례 83 신청인 회사가 발행한 <소설 덕혜용주>가 일본 소설 <덕혜희>를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다산북스 對 (주)오마이뉴스 (2010서울조정1418 · 1419 정정 · 반론청구) ····· 380

사례 84 문인협회 선관위 간사인 신청인이 협회 이사장으로 출마한 특정후보자를 등록일 하루 전날에 미리 접수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강○○ 對 최○○ (한국대표문학신문) (2010서울조정1599 · 1600 정정 · 손배청구) ····· 386

2. 외부기고 기사가 문제된 사례

사례 85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했으나, 해당민원은 적절하게 처리되었다.
진○○ 對 한겨레신문(주) (한겨레닷컴) (2010서울중재2 정정청구) ····· 389

3.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문제된 사례

사례 86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인터넷포털에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백○○ 對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네이트) (2010서울조정1421 손배청구) ····· 394

제2장 기타 인격권 침해사례

제1절 초상권 침해사례

가. 인쇄 · 통신매체 대상 사례

사례 87 하숙집 전단지를 쳐다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김○○ 對 국민일보(주) (2010서울조정172 손배청구) ····· 396

사례 88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최○○ 對 (주)뉴시스 (2010서울조정201 손배청구) ····· 399

사례 89 백화점에서 쇼핑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고○○ 對 (주)동아일보사 (2010서울조정1361 손배청구) ····· 402

사례 90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신○○ 對 (주)아시아투데이 (2010서울조정1532 손배청구) ····· 404

사례 91 휘발유값 폭등 관련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주○○ 對 (주)연합뉴스 (2010서울조정1590 손배청구) ····· 406

나. 방송매체 대상 사례

사례 92 대리주차 요원들이 고객 차량을 뒤진다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문화방송 (MBC-TV) (2010서울조정50 정정청구) ····· 408

사례 93 비공개를 전제로 대리주차 피해사례를 제보했으나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 등이 그대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주)문화방송 (MBC-TV) (2010서울조정54 손배청구) ····· 410

사례 94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창고와 소속 직원의 초상을 내보냈으나 적발된 바 없다.
1. 윤○○, 2. (주)아시아포럼 對 JIBS제주방송(주) (2010제주조정1 · 2 정정 · 손배청구) ····· 412

사례 95 최근 대게 불법 포획이 심각하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남○○ 對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TV) (2010대구조정2 손배청구) ····· 415

사례 96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신○○ 對 한국방송공사 (KBS-2TV) (2010서울조정466 손배청구) ····· 417

사례 97 베트남 보신관광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소○○ 對 한국방송공사 (KBS-1TV) (2010서울조정1410 손배청구) ····· 420

다. 인터넷매체 대상 사례

사례 98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천정배 의원을 막아섰다고 보도하면서 용역 경비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허○○ 對 (주)오마이뉴스 (2010서울조정1172 손배청구) ····· 423

사례 99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백○○ 對 (주)헤럴드미디어 (헤럴드경제닷컴) (2010서울조정1420 손배청구) ····· 426

제2절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사례 100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경과 신청인 소유의 차량 번호를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봉○○ 對 (주)씨유미디어 (Comedy TV) (2010서울조정69 손배청구) ····· 429

사례 101 탈북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양○○ 對 (주)조선일보사 (2010서울조정916 손배청구) ····· 432

사례 102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고○○ 對 (주)연합뉴스 (2010서울조정981 손배청구) ····· 435

사례 103 살해당한, 신청인 어머니의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이 유족의 동의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OBS경인TV(주) (2010경기중재1 손배청구) ····· 437

제3부 시정권고사례 ····· 445

제4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489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색인 ····· 691

제1부
언론조정 ·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2010년도 언론조정 ·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연황 주요내용

조정사건 전년 대비 40.0% 증가

2010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접수 · 처리한 조정사건은 역대 최고인 2,20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9년도에 비해 40.0%(632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증가폭 64.9%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2년 연속 600건 이상의 청구가 추가로 접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이 전체 청구의 3분의 2 차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사건 비율이 전체 사건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전년의 181건보다 약 4.6배 이상 증가한 841건을 기록했으며, 소위 언론사닷컴이 포함된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2009년의 233건보다 약 2.4배 이상 증가해 567건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신문이나 방송이 전체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었다.

피해구제율은 79.1%로 역대 최고

2010년도 피해구제율은 79.1%로 역대 최고이다. 피해구제율은 2007년도 64.8%의 피해구제율을 보이다 2008년도(72.9%)를 기점으로 70.0%대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73.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율이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는 것은 조정절차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 접수, 주요 접수방법으로 정착

인터넷 접수가 1,205건(54.6%)으로 나타나 전년도 50.0%를 넘어선 이래 2년 연속 전체 접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터넷접수는 우편이나 방문과 같은 다른 접수방법에 비해 편리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주요한 접수방법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네이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아

매체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두드러졌는데 네이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과 네이트가 각각 189건과 163건의 사건 수를 보여 그 다음을 이었다. 방송 중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KBS-1,2TV와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총 69건의 사건 수를 보여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3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피해구제율 가장 높아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은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이 높았고, 신문이나 방송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기반 매체가 인쇄매체나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비해 기사삭제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사건 최고 조정액 1,500만 원

손해배상사건 중 최고 조정액은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사건으로 1,500만 원이었다. 그 외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660만 원, 최저 100만 원, 평균 220만 원 정도였으며,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 원, 최저 15만 원, 평균 106만 원 정도였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1,5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533만 원으로, 음성권 침해는 15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재사건 77건 접수

2010년 중재사건은 77건으로, 전년의 111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중재사건은 2006년 도입이후 2008년까지는 10건 안팎의 저조한 사건 수를 기록하다 2009년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도 적지 않은 사건 수를 나타냈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4건으로 70.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조정성립되거나 피해구제될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즉 중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이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를 비교적 쉽게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정권고소위원회, 자살관련 보도 등 총 284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746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284건의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09년 253건에 비해 31건(12.3%) 증가한 것으로,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사건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줄었다.

2010년 언론조정·중재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제1장 조정사건 신청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2,205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이는 위원회 설립 이래 최다 건수로, 전년도에 비해 40%(632건) 증가한 결과이다.

위원회 사건 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1,000건 내외의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과 언론사닷컴, IPTV 등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2009년부터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1,087	1,043	954	1,573	2,205
전년대비 증감	204	-44	-89	619	632

2. 중재부별 현황

중재부별 현황으로는 1,62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경기중재부 120건(5.4%), 경남중재부 89건(4.0%), 광주중재부 77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경우 신문사와 방송사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한 포털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 및 인터넷신문사의 소재지도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중재부 \ 연도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서 울	607	63.6	1,173	74.6	1,627	73.8
부 산	24	2.5	15	1.0	59	2.7
대 구	30	3.1	35	2.2	31	1.4
광 주	46	4.8	72	4.6	77	3.5

연도 / 중재부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대 전	32	3.4	42	2.7	42	1.9
경 기	108	11.3	103	6.5	120	5.4
강 원	15	1.6	26	1.6	28	1.3
충 북	19	2.0	36	2.3	35	1.6
전 북	39	4.1	33	2.1	49	2.2
경 남	27	2.8	26	1.6	89	4.0
제 주	7	0.7	12	0.8	48	2.2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3. 청구권별 현황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2,205건의 청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211건(5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해배상청구 773건(35.1%), 반론보도청구 171건(7.8%), 추후보도청구 50건(2.3%) 순이었다.

전체 조정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3년간 평균 비율이 50.4%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는 작년에 비해 9.3%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차 순위의 높은 청구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와 더불어 위원회 전체 조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현황

연도 / 청구명	2008		2009		2010		합 계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정 정	481	50.4	691	43.9	1,211	54.9	2,383	50.4
반 론	127	13.3	142	9.0	171	7.8	440	9.3
추 후	22	2.3	41	2.6	50	2.3	113	2.4
손 배	324	34.0	699	44.4	773	35.1	1,796	38.0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4,732	100.0

4.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0년도에는 전체 조정사건 중 개인에 의한 청구가 1,284건(5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회사가 416건(18.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서 일반단체 293건(13.3%),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124건(5.6%), 국가기관이 66건(3.0%), 교육기관 20건(0.9%), 종교단체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회사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 언론사가 각각 329건

(14.9%)과 87건(3.9%)을 차지했다.

〈표 1-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연도 / 신청인 유형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개 인	523	54.8	847	53.8	1,284	58.2
국가기관	32	3.4	74	4.7	66	3.0
지자체 · 공공단체	52	5.5	64	4.1	124	5.6
일반단체	180	18.9	341	21.7	293	13.3
종교단체	11	1.2	4	0.3	2	0.1
회사	142	14.8	212	13.5	416	18.9
교육기관	14	1.5	31	2.0	20	0.9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5.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별 현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사건 비율이 63.8%로서 전체 조정사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7.5%나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인터넷 매체 중 포털을 포함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위원회 전체 조정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이나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언론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인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841건(38.1%), 인터넷신문 567건(25.7%), 신문 540건(24.5%), 방송 189건(8.6%), 뉴스통신 42건(1.9%), 잡지 24건(1.1%) 순이었다.

〈표 1-5〉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현황

연도 / 매체유형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신 문	554	58.1	632	40.2	540	24.5
방 송	189	19.8	459	29.2	189	8.6
잡 지	12	1.3	27	1.7	24	1.1
뉴스통신	33	3.5	38	2.4	42	1.9
인터넷신문	157	16.5	233	14.8	567	25.7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11.5	841	38.1
기 타	9	0.9	3	0.2	2	0.1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매체유형별 조정사건을 세분하여 보면 신문의 경우, 지방일간지 대상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간신문과 중앙일간지가 많았다. 방송의 경우는 지상파방송이 종합유선방송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참고로,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사건 수의 경우 신문과 방송, 잡지, 뉴스통신 등 소위 올드 미디어 대상 사건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1-6〉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 / 조정사건 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기타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TV	라디오						
2,205	159	197	184	169	6	14	24	42	567	841	2
100.0(%)	7.2	8.9	8.3	7.7	0.3	0.6	1.1	1.9	25.7	38.1	0.1

6. 침해유형별 현황

조정사건을 주된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1,995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90.5%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109건(4.9%), 신용훼손 20건(0.9%), 프라이버시권 20건(0.9%), 성명권 4건(0.2%), 음성권 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 중 두 번째를 차지한 초상권의 경우, 전체 침해 유형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초상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해마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현황

연도 / 침해 유형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명 예	899	94.2	1,457	92.6	1,995	90.5
신 용	6	0.6	6	0.4	20	0.9
초상권	29	3.0	56	3.6	109	4.9
음성권	10	1.0	5	0.3	3	0.1
성명권	4	0.4	1	0.1	4	0.2
프라이버시	3	0.3	18	1.1	20	0.9
기 타	3	0.3	30	1.9	54	2.4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 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 침해, 즉 초상권이나 음성권, 성명권, 프

라이버시 등 기타 인격권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사건 136건을 침해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82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42건,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초상 등을 이용한 경우가 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 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 분류	조정사건 건수	비율(%)
동의 없이 무단공표	82	60.3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42	30.9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	1.5
기 타	10	7.4
계	136	100.0

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

조정대상보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나 고발 등을 다룬 사회분야가 1,417건(64.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 · 연예 분야가 206건(9.3%), 정치 · 선거 분야가 179건(8.1%), 경제 · 산업 분야가 114건(5.2%), 보건 · 복지 분야가 67건(3.0%), 노조관련 분야가 52건(2.4%), 미디어관련 분야가 46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조정사건 수

조정대상기사 분야	조정사건 건수	비율(%)
정치 · 선거	179	8.1
국방 · 외교	8	0.4
경제 · 산업	114	5.2
사회(사건/사고/고발)	1,417	64.3
보건 · 복지	67	3.0
스포츠 · 연예	206	9.3
레저 · 생활	24	1.1
환 경	26	1.2
종 교	19	0.9
노 조	52	2.4
교 육	38	1.7
미디어	46	2.1
기 타	9	0.4
계	2,205	100.0

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

신문 · 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보도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스트레이트기사가 1,702건으로 8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외 사설이나 논단 · 칼럼, 비평 등 소위 의견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88건(4.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 신청인이 정정이나 반론 등을 청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진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16건을 차지했다.

〈표 1-10〉 조정대상 보도 유형별 현황

조정대상기사 유형	조정사건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1,702	86.2
사 설	27	1.4
논단 및 칼럼	46	2.3
인터뷰	22	1.1
외부필자 기고	22	1.1
비 평	15	0.8
탐사 · 심층 · 기획보도	112	5.7
사 진	16	0.8
기 타	13	0.7
계	1,975	100.0

※ 방송 및 방송관련 포털 제외

방송의 경우 장르별로는 뉴스관련 보도가 172건으로 74.8%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교양정보 관련 프로그램이 28건(12.2%),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21건(9.1%), 연예 ·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7건(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1〉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현황

방송 장르	조정사건 건수	비율(%)
뉴 스	172	74.8
시사고발	21	9.1
교양정보	28	12.2
연예 · 스포츠	7	3.0
기 타	2	0.9
계	230	100.0

10. 접수 유형별 현황

2010년 한해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접수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로 나타났다. 2010년 인터넷

접수 건수는 1,205건(54.6%)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은 우편이나 방문과 같은 다른 접수방법에 비해 편의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인터넷 접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접수는 2009년(904건, 57.5%)과 마찬가지로 전체 접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조정신청의 주요한 접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유형별 현황

연도 / 접수 유형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방 문	354	37.1	429	27.3	483	21.9
우 편	233	24.4	225	14.3	233	10.6
인터넷	358	37.6	904	57.5	1,205	54.6
구 술	9	0.9	15	0.9	284	12.9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제2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1. 연도별 처리결과

2010년 위원회가 접수 · 처리한 조정 사건은 2,205건으로 전년에 비해 40.1%가 증가, 최근 3년 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131건(51.3%), 조정성립 630건(28.6%), 조정불성립결정 157건(7.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49건(6.7%), 기각 137건(6.2%), 각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하의 경우 2009년 575건(36.6%)에서 2010년에는 1,131건(51.3%)으로 그 수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조정성립 등으로 처리됨에 따라 보도 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한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포털을 상대로 한 사건이 자연스럽게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정불성립결정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기각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전체 조정사건의 약 6.7%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중재부의 결정에 동의한 건이 이의신청한 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부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하여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현황

구분 / 연도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100.0(%)	42.1	3.7	1.8		13.1		2.2	0.4	36.7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100.0(%)	34.2	4.2	2.5		5.6		16.3	0.6	36.6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100.0(%)	28.6	4.9	1.8		7.1		6.2		51.3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사건에서 기각,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그리고 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가 된 경우를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피해구제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70%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73.9%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역

대 최고치인 79.1%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된 언론사들이 점차 조정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2-2〉 피해구제율 현황

조정사건 건수 [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205	138	2,067	1,637	79.2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조정건수 = 조정사건 수 - 기각 · 각하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건 중 동의건수 + 취하건 중 피해구제건수 + 불성립결정 후 피해구제건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피해구제건수

3.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정정청구는 79.1%, 반론청구는 71.4%, 추후청구는 91.7%, 손배청구는 80.0%로 각각 조사되었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조정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쟁점이 명확하고, 판결문 등에 의해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언론사가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 80.0%는 예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이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연도	청구명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정정	481	220	18	9		60	(1)	8	2	164	(104)	72.8
	반론	127	56	6	1		12		7		45	(29)	75.8
	추후	22	11				2		2		7	(3)	70.0
	손배	324	115	11	7		51	(2)	4	2	134	(101)	72.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정정	691	286	46	21		50		15	2	271	(180)	76.0
	반론	142	67	4	5		3		10	1	52	(36)	81.7
	추후	41	13				2			1	25	(24)	92.5
	손배	699	172	16	13		33		232	6	227	(121)	67.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구분 / 연도	청구명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0	정정	1,211	337	74	20	(1)	87	(4)	66	1	626	(489)	79.1
	반론	171	52	10	1		13		31		64	(38)	71.4
	추후	50	23	1	1		1		2		22	(20)	91.7
	손배	773	218	24	18	(1)	56	(1)	38		419	(344)	8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100%를 보인 종교단체(2건)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8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기관(77.3%)과 일반단체(74.7%), 회사(73.8%)의 순서로 높았다. 이에 반해 교육기관(60.0%)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69.1%)의 경우 60%대의 피해구제율을 보여 평균적인 피해구제율(79.2%)보다 상당히 낮았다. 국가기관의 피해구제율 역시 평균 피해구제율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정성립률은 종교단체(2건, 100%)를 제외하고는 교육기관(55.0%), 일반단체(36.9%), 국가기관(33.3%), 회사(28.6%), 지자체 및 공공단체(26.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이 높고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낮았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 연도	신청인 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개인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단체	국가기관	32	13	3	2		2				12	(9)	78.1
		지자체 공공단체	52	28	1			10		1		12	(5)	66.7
		일반단체	180	70	5	8		19		5		73	(47)	69.7
		종교단체	11	5								6	(5)	90.9
		회사	142	60	6	1		22		2	4	47	(29)	69.9
		교육기관	14	5				3				6		35.7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개인		847	243	15	22		42		240	10	275	(152)	68.7
	단체	국가기관	74	32	6	3		2		2		29	(16)	75.0
		지자체 공공단체	64	27	5	1		3				28	(19)	79.7
		일반단체	341	139	21	4		22		12		143	(99)	78.7
		종교단체	4	4										100.0
		회사	212	78	17	6		17		3		91	(70)	78.9

구분 / 연도	신청인 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교육기관		31	15	2	3		2				9	(5)	71.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개인		1,284	335	39	20	(2)	72	(4)	104	1	713	(605)	83.5
	단체	국가기관	66	22	11	1		5				27	(18)	77.3
		지자체 공공단체	124	33	8	2		17		1		63	(44)	69.1
		일반단체	293	108	30	7		37		28		83	(60)	74.7
		종교단체	2	2										100.0
		회사	416	119	21	10		20	(1)	4		242	(163)	73.8
		교육기관	20	11				6				3	(1)	6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이 9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 회사원, 군인 · 경찰, 문화예술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경우 90.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반면, 피해구제율이 낮은 순서를 살펴보면, 조정사건 수가 적은 시민활동가(6건)와 법조인(6건)을 제외할 경우, 공공기관장의 피해구제율이 40.0%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자 59.0%,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60.0%, 국회의원 65.5%로 타 신청인 직업유형에 비해 피해구제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 직업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29	16	1	2		3				7	(2)	65.5
법조인	6	2				1		2		1		50.0
공무원	71	28	1	1		6	(1)			35	(29)	83.1
군인/경찰	98	35	6	4	(2)	1		3		49	(44)	91.6
기초광역단체장/의원	45	22	1	3		9				10	(4)	60.0
정당정치인	33	13								20	(16)	87.9
의료인	129	14	5					2		108	(106)	98.4
문화예술인	78	10	2							66	(59)	91.0
종교인	20	12				3		1		4	(4)	84.2
회사원	84	48	1			3		21		11	(9)	92.1

구분 / 직업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언론인	33	9				2		20		2	(2)	84.6
교육자	91	33		3		10		8		37	(16)	59.0
개인사업가	146	38	13	2		14	(2)	18		61	(43)	75.0
연예인	2									2		
학 생	182			2				17		163	(160)	97.0
시민활동가	6	2				2				2		33.3
공공기관장	10	2								8	(2)	40.0
조합대표 협회장	31	12	4			5				10	(8)	77.4
기타	190	39	5	3		13	(1)	12	1	117	(101)	82.5
계	1,284	335	39	20	(2)	72	(4)	104	1	713	(605)	83.5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이 80.7%, 뉴스통신이 80.0%, 신문이 70.9%, 방송이 60.9%, 잡지가 5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기반 매체가 지면이나 시간상의 제약이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 연도	매체 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신 문	554	241	22	7		69	(3)	5		210	(145)	74.9
	방 송	189	77	2	5		35		9		61	(27)	58.9
	잡 지	12	5		1		2				4	(1)	50.0
	뉴스통신	33	15	1	2						15	(15)	93.9
	인터넷신문	157	62	8	2		17		5	4	59	(49)	80.4
	기 타	9	2	2			2		2		1		57.1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신 문	632	253	40	24		50		11	3	251	(150)	71.7
	방 송	459	89	5	7		20		230	3	105	(46)	61.9
	잡 지	27	18				2				7	(7)	92.6
	뉴스통신	38	12	2					4		20	(18)	94.1
	인터넷신문	233	118	3	5		14		6		87	(58)	78.9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47	16	3		2		6	4	103	(82)	84.8

구분 / 연도	매체 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기 타	3	1								2		33.3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신 문	540	261	15	14		64	(2)	25		161	(87)	70.9
	방 송	189	84	10	6		41		14	1	33	(12)	60.9
	잡 지	24	8	3			10	(1)			3		50.0
	뉴스통신	42	10						7		25	(18)	80.0
	인터넷신문	567	190	12	14		29	(2)	43		279	(219)	80.7
	인터넷뉴스서비스	841	77	69	6	(2)	13		48		628	(555)	88.7
	기 타	2									2		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프라이버시침해가 88.9%, 초상권 침해가 84.5%, 명예훼손이 79.0%로 각각 나타나 피해구제율이 80.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반면 성명권 침해의 경우 50.0%, 음성권 침해는 66.7%, 신용훼손의 경우는 68.4%로 나타나 평균 피해구제율(79.2%)에 비해 낮았다.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침해 유형의 피해구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침해여부가 명예훼손 등에 비해 분명하고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날로 제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 연도	침해 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명 예	899	375	35	16		122	(3)	18	4	329	(222)	72.4
	신 용	6	3								3	(1)	66.7
	초상권	29	11		1		3		1		13	(10)	75.0
	음성권	10	5								5	(4)	90.0
	성명권	4	4										100.0
	프라이버시	3	3										100.0
	기 타	3	1						2				100.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명 예	1,457	498	63	35		86		249	10	516	(318)	73.4
	신 용	6	4								2	(2)	100.0
	초상권	56	20	1	4		2				29	(25)	82.1

구분 / 연도	신청인 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음성권	5	4								1		80.0
	성명권	1	1										100.0
	프라이버시	18	5	1					6		6	(4)	83.3
	기 타	30	6	1					2		21	(12)	67.9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명 예	1,995	591	107	39	(2)	144	(5)	87	1	1,026	(801)	79.0
	신 용	20					2		1		17	(13)	68.4
	초상권	109	27	1			10		12		59	(54)	84.5
	음성권	3	1		1						1	(1)	66.7
	성명권	4									4	(2)	50.0
	프라이버시	20	3	1			1		11		4	(4)	88.9
	기 타	54	8						26		20	(16)	85.7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8. 매체별 조정사건 건수 및 처리결과

매체별로 사건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인 네이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종류의 매체인 다음과 네이트가 각각 189건과 163건의 사건수를 보였다.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각각 23건과 15건의 건수를 나타냈다. 방송 중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KBS-1,2TV와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총 69건의 건수를 보여 가장 많았고, 문화방송(MBC)의 경우 중앙이 25건, 지역이 26건의 건수를 보였다. 인터넷신문 중에는 디지털조선일보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컷뉴스가 22건, 한겨레닷컴이 17건, 오마이뉴스가 1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2-8〉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현황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종합일간지	경향신문	15	15							6					9
	국민일보	2	1		1					1					1
	내일신문	4	4							4					
	동아일보	5	3		2					1	2				2
	문화일보	9	7		2					2	1	2	3		1
	서울신문	7	7												7
	세계일보	6	6							5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종합일간지	조선일보	30	29					1		17	3	1	5		4
	중앙일보	11	10				1			3	2	1			5
	한겨레	23	23							10	3		3		7
	한국일보	12	11						1	8					4
	소 계	124	116		5		1	1	1	57	11	4	11		41
경제지	매일경제	5	5							1			2		2
	서울경제	1	1												1
	한국경제	9	9							1		4			4
	헤럴드경제	3	3							2					1
	머니투데이	6	6							2			2		2
	소 계	24	24							6		4	4		10
스포츠지	스포츠조선	2	2							2					
	소 계	2	2							2					
특수일간지	전자신문	2	2							1					1
	이투데이신문	2	2									2			
	소 계	4	4							1		2			1
무료일간지	데일리노컷뉴스	4	4							4					
	더데일리포커스	1			1										1
	소 계	5	4		1					4					1
지방종합일간지	서울 아시아일보	1	1												1
	서울 내외일보	4	4							2			2		
	서울 아시아투데이	1			1					1					
	서울 선경일보	1	1												1
	서울 현대일보	1	1												1
	서울 신아일보	3	3												3
	부산 국제신문	7	7							5					2
	부산 부산일보	4	4							2		1	1		
	부산 경상일보	2	2												2
	부산 울산신문	2	2												2
	대구·경북 경북매일	1	1												1
	대구·경북 경북일보	3	2						1	1		1			1
	대구·경북 매일신문	3	1						2	1			2		
	대구·경북 영남일보	2	2							2					
	대구·경북 일간대구경북	1	1							1					
	대구·경북 경도일보	3	3							3					
	광주·전남 광주매일	2	2									1			1
	광주·전남 광주일보	1	1												1
	광주·전남 무등일보	3	3							2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종합일간지	광주·전남	전광일보	5	5								2	3			
		전남매일	2	2							1					1
		전남일보	2	2									1			1
		호남매일	1	1							1					
		호남신문	1	1												1
		호남일보	1	1							1					
		광남일보	6	6							3	2				1
		남도일보	4	4							1					3
		일간호남일보	1	1												1
		호남중앙매일	1	1												1
	대전·충남	대전일보	2	2							2					
		중도일보	3	2					1		2			1		
		충청신문	2	2							2					
		중앙매일	2	2							2					
		대전투데이	1	1												1
		충청시대	1	1							1					
	인천·경기	경기도민일보	4	4							3					1
		경기신문	1	1							1					
		경기일보	3	3									2			1
		경도신문	2	2							2					
		경인일보	4	4							2	2				
		수도권일보	4	4							1		2			1
		시대일보	2	2												2
		우리일보	4	4							1					3
		인천일보	1	1												1
		중부일보	6	6							2					4
		전국매일	5	5							1		3			1
		수도일보	2	2							2					
		인천신문	1	1												1
		오늘신문	2	2							1					1
		인천경향	2	2							1					1
		경인종합일보	1	1							1					
	강원	강원도민일보	1	1									1			
		강원일보	2	2							2					
	충북	충북일보	1	1												1
		충청일보	2	1					1					1		1
		한빛일보	3	3							3					
		충청타임즈	7	7							5					2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종합일간지		충청투데이	1	1							1					
	전북	새전북신문	5	5							4					1
		전라일보	1	1							1					
		전북도민일보	1	1												1
		전북일보	5	5							1		2			2
		전북중앙신문	2	2							2					
		전주매일	2	2							2					
		전북매일	2	2												2
		전북연합신문	2	2												2
		전주일보	1							1	1					
		새만금신문	2	2												2
	경남	경남도민일보	9	9							2	2				5
		경남매일	4	4							4					
		경남신문	4	4							4					
		울산매일	1	1							1					
		경남연합일보	2	2							2					
		매일경남	4	4							3					1
		창원일보com	2	2							2					
	제주	제민일보	1	1									1			
		제주일보	2	2							2					
		한라일보	4	4							4					
	소 계		197	190		1			2	4	100	8	18	7		64
중앙방송	KBS-1,2TV		2	2							2					
	KBS-1TV		32	27	3	1	1				9	3	5	6	1	8
	KBS-2TV		10	9		1					5		3	2		
	MBC-TV		25	18		6			1		15	1	3	1		5
	SBS-TV		21	18			1			2	6	5	2	3		5
	EBS-R		1	1								1				
	소 계		91	75	3	8	2		1	2	37	10	13	12	1	18
지방방송	원주KBS-1TV		2	2									2			
	춘천KBS-1TV		1	1							1					
	대전KBS-1TV		2	2							2					
	대구KBS-1TV		5	5									5			
	울산KBS-1TV		2	2												2
	창원KBS-1TV		2	2							2					
	전주KBS-1TV		1	1							1					
	광주KBS-1TV		4	4								2	2			
	제주KBS-1TV		6	6							6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방송	부산MBC-TV	3	3									3			
	강릉MBC-TV	1				1				1					
	청주MBC-TV	5	5							5					
	대전MBC-TV	1						1					1		
	포항MBC-TV	1			1					1					
	마산MBC-TV	6	6							4	2				
	울산MBC-TV	2	2									2			
	진주MBC-TV	2	2								2				
	목포MBC-TV	1	1												1
	제주MBC-TV	2	2							2					
	대전MBC-R	2	2							2					
	광주BBS-R	2	2							1					1
	춘천MBC-R	1	1							1					
	소 계	54	51		1	1		1		29	6	14	1		4
지역민방	GTB-TV	2	2									2			
	KC-TV	2	2							2					
	KNN	5	5							3		2			
	TJB-TV	6	5					1		4			1		1
	TBC-TV	2	2									2			
	CJB-TV	5	5							2		2			1
	KBC-TV	2	2							1					1
	J-TV	1			1										1
	UBC-TV	2	2							1		1			
	JIBS-TV	2			2					2					
	OBS-TV	1							1						1
	소 계	30	25		3			1	1	15		9	1		5
케이블TV	YTN	8	6		2					1		2			5
	MBN	1	1												1
	TVN	2	2									2			
	Mnet	2	2							2					
	MBC Espn	1						1				1			
	소 계	14	11		2			1		3		5			6
뉴스통신	연합뉴스	25	21		1		1		2	5			5		15
	뉴시스	17	15		1				1	5			2		10
	소 계	42	36		2		1		3	10			7		25
시사주간지	주간동아	1	1									1			
	주간조선	2	2							2					
	한겨레21	1	1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시사주간지	시사N	2	2												2
	위클리경향	2	2												2
	소 계	8	8							2	1	1			4
시사주간신문	월요신문	2	2							2					
	일요서울	4	4							2					2
	일요신문	3	3							3					
	주간현대	4	4												4
	소 계	13	13							7					6
지역주간신문	의정부신문	1	1												1
	KOREAN	4	4									4			
	한국인	2	2									2			
	대가야신문	1	1												1
	고흥타임즈	4	4							1		2			1
	함평신문	2	2								2				
	화순미래뉴스	1	1												1
	함평중앙신문	2	2												2
	영암군민신문	2	2								1	1			
	광역신문	1	1							1					
	주간 남도신문	2	2									2			
	청양신문	1						1					1		
	서천신문	2	2												2
	금산신문	2	2							1					1
	홍성신문	1	1												1
	계룡일보	1	1							1					
	충청세종신문	2	2							2					
	하나로신문	2	2							2					
	뉴스리더	2	2							2					
	광명지역신문	2	2							2					
	과천문화신문	1	1									1			
	인천연수신문	2	2									2			
	반월신문	3	3							2		1			
	과천저널	2	2									1			1
	김포미래신문	3	3							1		2			
	우먼앤피플	1	1							1					
	주간경인열린신문	2	2							1					1
	안산신문	1	1							1					
	안성신문	2	2							2					
	인천공항영종뉴스	1	1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주간신문	인제신문	4	4									4			
	충청리뷰	2	2									2			
	완주신문	1	1							1					
	소통신문	3	3												3
	해피데이고창	2	2							2					
	진안신문	2	2									2			
	군산뉴스	1						1		1					
	군산미래신문	1						1		1					
	임실뉴스	1	1												1
	고성신문	1	1												1
	함안신문	9	9							4	3				2
	남해신문	2	2							2					
	더함안신문	6	6							6					
	창녕신문	2	2												2
	함안뉴스	2	2							2					
	경서신문	2	2							2					
	함안정통신문	4	4							3	1				
	고성미래신문	2	2							2					
	소 계	102	99					3		46	7	26	1		22
특수주간신문	수산신문	1	1							1					
	교수신문	1							1						1
	기독신문	1	1							1					
	미디어오늘	6	5						1	5	1				
	전국아파트신문	1	1								1				
	종합법률신문	2	2							2					
	도시개발신문	1	1							1					
	목양신문	2	2										1		1
	도시재생신문	2	2							2					
	한국축구신문	4	4							2		2			
	한국농정	1	1									1			
	기독교성결신문	3	3							3					
	이천타임즈	2	2									2			
	일요저널	2	2												2
	구로오늘신문	2	2							2					
	한기여총신문	2			2					2					
	진천군민신문	2	2							2					
	한국대학신문	1	1							1					
	오마이건설뉴스	4	4												4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주간신문	경남기독신문	1	1							1					
	법보신문	1							1				1		
	금산진악신문	1	1												1
	뉴코리아리포스트	3	3							2					1
	연합경찰	2	2							2					
	건설교통환경신문	1	1												1
	한국기독공보	2	2									2			
	부천신문	3	3							3					
	교회복음신문	1	1												1
	대한건설기계신문	4	4							4					
	법률신문	2	2									2			
	소 계	61	56		2				3	36	2	9	2		12
월간지	신동아	13	13							4	1	6			2
	월간조선	2	2									1			1
	교회와이단	3	3									3			
	119매거진	2	2							2					
	월간폴라리스	2	2								2				
	하동평의회	2	2							2					
	소 계	24	24							8	3	10			3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22	21						1	8		3	2		9
	오마이뉴스	13	9		3				1	6		2	2		3
	프레시안	6	5						1	3			1		2
	이타임즈	3	2					1					1		2
	CNBNEWS	3	3												3
	투데이코리아	4	4							1					3
	뷰스앤뉴스	3	2						1				1		2
	민중의소리	3	2		1										3
	뉴스천지	3	2						1				1		2
	뉴스웨이	1	1							1					
	뉴데일리	6	6							4					2
	독립신문	1	1												1
	한강타임즈	1							1				1		
	화천인터넷뉴스	2	2							2					
	코리아헬스로그	1	1												1
	헬스코리아뉴스	1	1												1
	더데일리	1	1												1
	인터넷한국뉴스	2	2									2			
	시사제주	3	3							2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뉴스앤거제	1	1												1
	불교닷컴	1	1							1					
	대전뉴스	1	1												1
	미디어제주	2	2												2
	성남뉴스넷	2	2												2
	공무원뉴스	3	3												3
	뉴스엔	3	3												3
	디시뉴스	2	2												2
	TV Daily	3	3												3
	서울e조은뉴스	2	2												2
	우리안산넷	1	1							1					
	스타뉴스	1	1												1
	데일리정경뉴스	1	1												1
	인벤	1							1						1
	아크로팬	1	1												1
	고성인터넷뉴스	3	3							2					1
	거제인터넷신문GJN	2	2												2
	한국모바일방송	4	4												4
	디지탈화순뉴스	3	3							2			1		
	의정부인터넷뉴스	1	1												1
	경원일보	2	2												2
	용인일보	1	1												1
	인터넷뉴스 신문고	2	2							2					
	e중앙뉴스	2	2							2					
	통영타임즈	2	2												2
	나눔뉴스	2	2												2
	뉴스와이어	2	2							2					
	아이비타임즈	2	2												2
	OSEN	2	2												2
	희망뉴스	2	2												2
	모모뉴스	2	2												2
	빅뉴스	2	2								2				
	호남뉴스 일번지	2	2												2
	e파이낸셜신문	2	2							2					
	엠파이트	1	1												1
	뉴스토마토	1	1												1
	한국대표문학신문	2	2								2				
	뉴스페어	2	2									2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강원	2	2									2			
	데일리안	3	3							2		1			
	브레이크뉴스	4	3						1				1		3
	프런티어타임스	1	1												1
	e뉴조	2	2												2
	폴리뉴스	4	3						1	2			1		1
	마이데일리	7	5	1	1										7
	메디컬투데이	5	4		1					2					3
	EBN	2							2				2		
	아이뉴스24	1	1										1		
	메디게이트뉴스	1	1												1
	소비자가만드는신문	7	7							2					5
	에이블뉴스	2	2												2
	코메디닷컴	2	2							2					
	미디어스	2	2							1	1				
	폴리스타임즈	1	1												1
	컨슈머타임즈	3	3							2					1
	메디파나뉴스	2	2										1		1
	문화저널	3	2		1							2			1
	스포츠서울TV	2	1		1								1		1
	서울신문NTN	2	2												2
	이슈제주	2	2							2					
	제주투데이	3	3							2					1
	광주투데이	2	2												2
	제주의소리	7	7							6					1
	시티뉴스	2	2							2					
	굿데이스포츠	4	3		1										4
	세종뉴스	1	1							1					
	동아닷컴	6	6								1		2		3
	디지틀조선일보	23	21					2		7	2	1	5		8
	한겨레닷컴	17	16						1	4	2		3		8
	아시아투데이닷컴	9	7		1				1				1		8
	한경닷컴	6	6									2			4
	조인스닷컴	15	12				1		2	2	2	1	1		9
	인터넷한국일보	8	7						1	6					2
	인터넷머니투데이	7	4	2	1								2		5
	파이낸셜뉴스닷컴	5	5							2					3
	스포츠조선닷컴	2	2												2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IS PLUS	1	1												1
	매경닷컴	14	11		1		1		1	1	2		1		10
	인터넷아시아경제	3	2						1	2			1		
	인터넷내일신문	2	2							2					
	문화닷컴	5	3		2					2			3		
	경향닷컴	19	18						1	6	4		1		8
	인터넷호남도민일보	2	2												2
	인터넷호남신문	2	2							1					1
	인터넷한국축구신문	4	4							2		2			
	인터넷보건신문	2	2												2
	인터넷한국농정	1	1									1			
	쿠키뉴스	4	3		1					1					3
	시민일보인터넷	2	1						1				1		1
	시사서울닷컴	5	3		1				1	1			1		3
	맥스닷컴	3	2		1										3
	인터넷강원일보	2	1		1					1					1
	인터넷전북일보	2	2									1			1
	인터넷오늘신문	2	2							1					1
	세계닷컴	9	8						1	3	2		1		3
	인터넷이투뉴스	2	2							2					
	인터넷충청매일	3	3							3					
	인터넷충청시대	1	1							1					
	인터넷온아신문	1	1							1					
	인터넷시사보령	1	1							1					
	인터넷도시재생신문	2	2							2					
	제주뉴스닷컴	3	3							2					1
	인터넷한라일보	2	2							2					
	위클리경향닷컴	1							1	1					
	인터넷아주경제	2	2												2
	경인일보닷컴	4	4												4
	City	2	2												2
	인터넷부산일보	2	2												2
	인터넷이뉴스투데이	2	2							2					
	뉴스한국닷컴	1	1												1
	독서신문i	1	1												1
	FNN	1	1												1
	서울경제닷컴	2	2							1					1
	서울파이낸스닷컴	2	1						1						2
	인터넷스포츠칸	2	2												2
	헤럴드경제닷컴	9	8		1					3			1		5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울산제일일보	1	1												1
	인터넷일간경기	1	1												1
	매일신문닷컴	1	1												1
	119매거진닷컴	2	2							2					
	인터넷환경일보	2	2								2				
	인터넷영남일보	2	2							1					1
	인터넷뉴스리더	2	2							2					
	인터넷안성신문	1	1							1					
	인터넷전자신문	2	2							1					1
	인터넷한국대학신문	1	1							1					
	인터넷서울신문	3	3							1					2
	인터넷재경일보	6	6							2					4
	인터넷디지털타임스	1	1												1
	인터넷양신문	1	1												1
	인터넷이투데이	2	2									2			
	주간조선닷컴	2	2							2					
	인터넷경남여성신문	4	4							2	2				
	인터넷에너지타임즈	1	1							1					
	인터넷경남일보	2	2							2					
	인터넷오마이건설뉴스	4	4												4
	인터넷고양신문	1	1							1					
	인터넷매일신문	1	1							1					
	조선비즈닷컴	2	2							2					
	법보신문닷컴	1							1				1		
	인터넷미디어오늘	10	9						1	7	2		1		
	인터넷당진시대	2	2							2					
	인터넷전북중앙신문	2	2							2					
	인터넷프라임경제	2	2							1					1
	인터넷의정부신문	2	2												2
	인터넷광명지역신문	2	2							2					
	인터넷화순미래뉴스	10	10							4		3			3
	인터넷일요서울	4	4							2					2
	인터넷신아일보	2	2												2
	인터넷북경기신문	1	1							1					
	인터넷경기북부신문	1	1							1					
	지뉴스코리아	3	3												3
	충청세종신문닷컴	2	2							2					
	인터넷국제신문	2	2												2
	인터넷인제신문	2	2									2			
	인터넷재외동포신문	1							1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사건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소통신문	1	1							1					
	시사IN Live닷컴	2	2												2
	내외TV	3	3							2					1
	인터넷코리아타임즈	1	1												1
	인터넷충청일보	2	2							2					
	뉴코리아리포스트닷컴	2	2							2					
	인터넷내외일보	2	2							2					
	인터넷현대일보	2	2							2					
	인터넷일요신문	1	1							1					
	소 계	567	513	3	19		2	3	27	190	26	29	43		279
인터넷뉴스서비스	네이버	203	176	3	15			3	6	24	13	3	16		147
	다음	189	172	3	12			1	1	21	10	3	10		145
	야후	80	71	2	5			1	1		10		5		65
	파란	82	71	2	9					3	8		3		68
	네이트	163	146	2	12			1	2	17	12	3	7		124
	구글	29	24	2				1	2		12		2		15
	드림위즈	36	32		4						3				33
	코리아닷컴	1	1												1
	천리안	2	2												2
	MSN코리아	5	5												5
	라이코스	1	1												1
	하나포스	9	9								2				7
	고	1	1							1					
	로지아이닷컴	2	2												2
	iMBC	14	8		5				1	8	1		2		3
	SBSi	3	3								2				1
	KBSi	12	11		1					3	1	2	3		3
	BBS불교방송	1	1												1
	디지털와이티엔	6	4		2							2			4
	와우넷	1	1												1
	인터넷 EBS	1	1								1				
	소 계	841	742	14	65			7	13	77	75	13	48		628
기타	iKNN	2	2												2
	소 계	2	2												2
	총 계	2,205	1,995	20	109	3	4	20	54	630	149	157	137	1	1,131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를 서울과 지역으로 나누어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81.6%, 지역은 72.3%로 집계되었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중재부가 9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제3중재부와 대전중재부가 각각 90.2%와 89.2%를 나타내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중재부의 조정성립률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중재부가 65.7%, 경남중재부가 64.0%를 나타냈다. 서울중재부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22.2%로 낮고, 취하율은 5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서울의 경우, 원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성립의 결과, 후속보도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포털 등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함에 따라 신청인이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역시 전체 149건 가운데 약 85.9%인 128건이 서울중재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 외 지역중재부에서 내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경남중재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중재부 7건, 경기중재부 2건이었다. 기각 및 각하결정의 경우도 138건 가운데 126건이 서울중재부에서 이루어졌다.

〈표 2-9〉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 연도	중재부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서울1	103	31	15	3		20		3	4	27	(17)	65.6
	서울2	95	47	4			20	(1)	4		20	(14)	72.5
	서울3	112	51				2		3		56	(44)	87.2
	서울4	104	46	5	3		5		4		41	(28)	79.0
	서울5	101	48		2		12	(1)	2		37	(30)	79.8
	서울6	92	45		4		9		1		33	(23)	74.7
	소계	607	268	24	12		68	(2)	17	4	214	(156)	76.8
	부산	24	5		1		10	(1)	1		7	(2)	34.8
	대구	30	18								12	(5)	76.7
	광주	46	14	1	3		12				16	(10)	54.3
	대전	32	12				2				18	(10)	68.8
	경기	108	29	1	1		23				54	(39)	63.9
	강원	15	11	2			1				1	(1)	93.3
	충북	19	10								9	(4)	73.7
	전북	39	19	3			5				12	(5)	69.2
	경남	27	9	4			4		3		7	(5)	75.0
	제주	7	7										100.0
	소계	347	134	11	5		57	(1)	4		136	(81)	66.2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서울1	178	47	23	9		1		49	1	48	(42)	87.5
	서울2	173	53	5	1		11		46	4	53	(23)	65.9

구분 / 연도	중재부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서울3	180	72	9			3		44		52	(48)	94.9
	서울4	177	39	17	10		14		35	1	61	(46)	72.3
	서울5	174	55				11		39		69	(48)	76.3
	서울6	188	78	2	3		9		7	2	87	(34)	63.7
	서울7	103	22	7	2				36		36	(29)	86.6
	소계	1,173	366	63	25		49		256	8	406	(270)	76.9
	부산	15	8				2		1		4	(4)	85.7
	대구	35	18	1	2						14	(2)	60.0
	광주	72	36		2		16				18	(13)	68.1
	대전	42	20								22	(16)	85.7
	경기	103	32	2	9		4				56	(24)	56.3
	강원	26	4								22	(19)	88.5
	충북	36	9				10			2	15	(8)	50.0
	전북	33	18		1		4				10	(2)	60.6
	경남	26	15				3				8	(3)	69.2
	제주	12	12										100.0
	소계	400	172	3	14		39		1	2	169	(91)	67.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서울1	258	41	48	8				34		127	(109)	88.4
	서울2	234	85				11		17		121	(104)	87.1
	서울3	241	75	12	3	(2)	5		16	1	129	(113)	90.2
	서울4	225	32	8	12		10	(1)	3		160	(136)	79.7
	서울5	215	27	10	2		24		6		146	(104)	67.5
	서울6	238	74	23	1		6		9		125	(92)	82.5
	서울7	216	27	1			20		40		128	(101)	73.3
	소계	1,627	361	102	26	(2)	76	(1)	125	1	936	(759)	81.6
	부산	59	13				13		1		32	(19)	55.2
	대구	31	16				8	(1)	2		5	(1)	62.1
	광주	77	20	3	4		18	(2)	1		31	(14)	51.3
	대전	42	29						5		8	(4)	89.2
	경기	120	44		2		17				57	(48)	76.7
	강원	28	9				15	(1)			4	(4)	50.0
	충북	35	23				4		3		5	(3)	81.3
	전북	49	22				5				22	(14)	73.5
	경남	89	57	4	8						20	(14)	84.3
	제주	48	36				1				11	(11)	97.9
	소계	578	269	7	14		81	(4)	12		195	(132)	72.3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제3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처리결과

2010년 접수된 2,205건의 청구별 현황을 보면 정정보도청구 1,211건(54.9%), 손배해상청구 773건(35.1%), 반론보도청구 171건(7.8%), 추후보도청구 50건(2.3%) 순으로 나타났고, 손해배상청구는 정정보도청구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청구별 조정신청 현황은 <표 1-3> 참조). 2010년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2009년의 699건보다 74건이 증가한 수치이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약 9%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2009년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의 '루저 발언'과 관련하여 261건의 손해배상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례가 2010년에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 및 비율

구 분 / 연 도	전체 조정사건 수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	비율(%)
2008	954	324	34.0
2009	1,573	699	44.4
2010	2,205	773	35.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취하 54.2%, 조정성립 28.2%, 조정불성립결정 7.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5.4%, 기각 4.9% 순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에는 손해배상청구 기각률이 4.9%로 전년의 33.2%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담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내하여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사건 취하율이 5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정이나 반론과 함께 병합 청구된 경우 정정이나 반론으로 합의되면 손해배상은 취하하는 경우가 많거나, 초상권 · 음성권 침해 사건의 경우 그 침해여부가 비교적 명확히 가려지고 조정액 선례가 많이 있어 언론사가 신청인 측과 기일 전에 접촉하여 사건을 해결하면 취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립률은 2009년에 비해 3.5% 포인트 높아진 28.2%를 기록했으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2009년에 비해 13% 포인트나 높아져 무려 80.0%라는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처리결과

구분 / 연도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324 (100)	115 (35.5)	11 (3.4)	7 (2.2)	51 [2] (15.7)	4 (1.2)	2 (0.6)	134 [101] (41.4)	72.0
2009	699 (100)	172 (24.7)	16 (2.1)	13 (1.7)	33 (4.7)	232 (33.2)	6 (0.9)	227 [121] (32.3)	67.0
2010	773 (100)	218 (28.2)	24 (3.1)	18 [1] (2.3)	56 [1] (7.2)	38 (4.9)		419 [344] (54.2)	80.0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6,500만 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조정액은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조정액 평균은 168만 원, 중앙액은 100만 원으로, 평균액과 중앙액 모두 작년보다 5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액(빈도가 가장 많은 배상액)은 100만 원(10회)이었으며, 이어 50만 원(4회), 200만 원 및 15만 원(각 3회) 등이었다. 고액 순의 빈도를 보면 1,500만 원 1건, 660만 원 1건, 300만 원 2건 등이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구분 / 연도	청구액				조정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8	110,000	10,000,000,000	185,920,574	20,000,000	300,000	10,000,000	3,331,250	2,750,000
2009	100	50,000,000,000	221,393,861	20,000,000	120,000	30,000,000	3,594,103	2,000,000
2010	100	10,000,000,000	65,993,749	20,000,000	150,000	15,000,000	1,832,759	1,000,000

손해배상 조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37.9%로 가장 많았다.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반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늘어났다. 500만 원 이상의 경우도 다소 줄었다.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약간 감소하는 분포를 보였다.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조정액 분포 현황

구분 / 연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계
2008	3(9.4)	9(28.1)	11(34.4)	6(18.8)	3(9.4)	32(100.0)
2009	6(15.4)	9(23.1)	16(41.0)	4(10.3)	4(10.3)	39(100.0)
2010	9(31.0)	11(37.9)	7(24.1)	1(3.4)	1(3.4)	29(100.0)
계	18(18.0)	29(29.0)	34(34.0)	11(11.0)	8(8.0)	100(100.0)

※( ) 안의 숫자는 %

3. 침해유형별 조정액 현황

침해유형별 조정액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660만 원, 최저 100만 원, 평균 220만 원 정도였으며,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 원, 최저 15만 원, 평균 106만 원 정도였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1,5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533만 원으로, 음성권 침해는 15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표 3-5〉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0. 1. 1. ~ 2010. 12. 31. 단위 : 원)

조정액 / 침해유형	인용빈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최 빈 액
명예훼손	8	1,000,000	6,600,000	2,200,000	1,500,000	1,000,000
초상권	18	150,000	3,000,000	1,061,765	1,000,000	1,000,000
음성권	1			1,500,000		
프라이버시권	3	500,000	15,000,000	5,333,333	500,000	500,000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627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97건(12.5%), 프라이버시 침해 20건(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정이나 반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청구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침해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사건 자체가 3건에 불과한 음성권(33.3%)을 제외하면, 명예훼손(30.6%), 초상권(21.6%), 프라이버시권 침해(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20건 중 55.0%에 해당하는 11건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다수 포털을 상대로 신청된 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표 3-6〉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현황

(2010. 1. 1. ~ 2010. 12. 31.)

구 분 / 침해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조 정 성 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명예훼손	627	192 (30.6)	39 (6.2)	44 (7.0)	20 (3.2)		332 (53.0)
신용훼손	8			1 (12.5)			7 (87.5)
초상권	97	21 (21.6)	1 (1.0)	10 (10.3)	6 (6.2)		59 (60.8)
음성권	3	1 (33.3)	1 (33.3)				1 (33.3)
성명권	4						4 (100.0)
프라이버시권	20	3 (15.0)	1 (5.0)	1 (5.0)	11 (55.0)		4 (20.0)
기 타	14	1 (7.1)			1 (7.1)		12 (85.7)
계	773	218 (28.2)	42 (5.4)	56 (7.2)	38 (4.9)		419 (54.2)

※(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신청인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530건(6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업체 121건(15.6%), 일반단체 83건(10.7%) 등의 순이었다.

국가기관의 손해배상청구가 1건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손해배상청구는 정정이나 반론청구와 달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3-7〉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현황

(2010. 1. 1. ~ 2010. 12. 31.)

구분 / 신청인 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530	134	30	34	35		297
	(100)	(25.3)	(5.7)	(6.4)	(6.6)		(56.0)
국가기관	1			1			
	(100)			(100.0)			
지자체	9	4		2			3
	(100)	(44.4)		(22.2)			(33.3)
공공단체	3	1					2
	(100)	(33.3)					(66.7)
일반단체	83	34	5	9	2		33
	(100)	(41.0)	(6.0)	(10.8)	(2.4)		(39.8)
기업체	121	35	5	8	1		72
	(100)	(28.9)	(4.1)	(6.6)	(0.8)		(59.5)
언론사	23	9	2				12
	(100)	(39.1)	(8.7)				(52.2)
교육기관	3	1		2			
	(100)	(33.3)		(66.7)			
계	773	218	42	56	38		419
	(100)	(28.2)	(5.4)	(7.2)	(4.9)		(54.2)

※( )안의 숫자는 %

제4장 인터넷신문서비스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 · 중재 대상 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매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수는 시행 초기인 2005년도 45건에서 출발해 2006년 77건, 2007년 113건, 2008년 157건, 2009년 2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567건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약 2.4배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인터넷신문이 전체 조정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5년도 5.4%(883건 중 48건), 2006년도 7.1%(1,087건 중 77건), 2007년도 10.8%(1,043건 중 113건)에 이르던 수치가 2008년도 16.5%(954건 중 157건), 2009년도 14.8%(1,573건 중 233건)[1], 2010년도 25.7%(2,205건 중 567건)라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2]에 따라 그 동안 조정 · 중재대상 매체가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인터넷신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매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조정 및 중재신청 사건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현황

구분 / 연도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157 (100)	62 (39.5)	8 (5.1)	2 (1.3)	17 (10.8)	5 (3.2)	4 (2.5)	59 (37.6)	80.4
2009	233 (100)	118 (50.6)	3 (1.3)	5 (2.1)	14 (6.0)	6 (2.6)		87 (37.3)	78.9
2010	567 (100)	190 (33.5)	12 (2.1)	14 (2.5)	29 (5.1)	43 (7.6)		279 (49.2)	80.7
계	957 (100)	370 (38.7)	23 (2.4)	21 (2.2)	60 (6.3)	54 (5.6)	4 (0.4)	425 (44.4)	80.2

※( )안의 숫자는 %

1) 2009년 청구된 총 1,573건 중 KBS-2TV <미녀들의 수다> '루저 발언' 관련한 청구 265건을 제외한 인터넷매체 비율은 17.8%(1,317건 중 233건)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조정 · 중재대상 매체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나,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에 따라 2009년 말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 수는 5개월이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181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한 해에만 841건이 신청되어 전체 건수의 38.1%라는 비약적 증가를 나타냈다.

〈표 5-1〉 인터넷뉴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현황

(2009. 8. 7. ~ 2010. 12. 31.)

구분 / 연도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181 (100)	47 (26.0)	16 (8.8)	3 (1.7)	2 (1.1)	6 (3.3)	4 (2.2)	103 (56.9)	84.8
2010	841 (100)	77 (9.2)	69 (8.2)	6 (0.7)	13 (1.5)	48 (5.7)		628 (74.7)	88.7
계	1,022 (100)	124 (12.1)	85 (8.3)	9 (0.9)	15 (1.5)	54 (5.3)	4 (0.4)	729 (71.3)	87.7

※( )안의 숫자는 %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청구된 841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626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정성립 77건(9.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75건(8.9%), 기각 48건(5.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는 대개 기사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사를 단순히 전재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의 특징적 모습으로는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이 이뤄지는 동시에 해당 사건도 함께 접수되며, 처리결과 면에서도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의 조정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즉,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이 성립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경우 역시 조정성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취하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의 조정성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하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5-2〉 인터넷뉴스서비스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2009. 8. 7. ~ 2010. 12. 31.)

구분 / 연도	청구명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정정	91	23	14	2			1	51(42)	87.8
	반론	23	5	1			5	1	11(11)	100.0
	추후	2	2							100.0
	손배	65	17	1	1	2	1	2	41(29)	75.8
	계	181	47	16	3	2	6	4	103(82)	84.8
2010	정정	474	43	53	3	5	15		355(311)	88.9
	반론	46	2	5			20		19(15)	84.6
	추후	11	3						8(8)	100.0
	손배	310	29	11	3	8	13		246(221)	88.2
	계	841	77	69	6	13	48		628(555)	88.7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제6장 중재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고유한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새로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중재신청이 전혀 없었고, 사전에 양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해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 등 2005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이에 위원회는 2009년부터 중재제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09년에는 중재처리건수가 1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에도 77건을 처리했다.

1. 침해유형별 현황

2010년 신청된 중재사건 77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76건으로 대부분이었다. 3년치 현황을 보면, 역시 명예훼손이 90.4%를 차지했고, 그 외 초상권이 7.6%, 음성권이 1.5%를 나타냈다.

〈표 6-1〉 침해유형별 현황

구분 / 연도	중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8	10	4		5		1		
2009	111	99		10		2		
2010	77	76						1
계 (%)	198 (100.0)	179 (90.4)		15 (7.6)		3 (1.5)		1 (0.5)

2. 청구권별 중재건수 및 처리결과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청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반론청구가 28건, 추후보도청구가 12건을 나타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중재신청건수는 2건에 그쳐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중재결정이 76건, 기각결정이 1건이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 2건의 경우 중재청구액 평균은 2천만 원이었고, 중재액 평균은 2백5십만 원이다.

〈표 6-2〉 청구권별 중재건수 및 처리결과 현황

구분 / 연도	청구명	중재 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8	정정	1	1					
	반론							
	손배	9	9					
	계	10	10					
2009	정정	61	30	31				
	반론	25	20	5				
	추후	7	3	4				
	손배	18	12	6				
	계	111	65	46				
2010	정정	35	34		1			
	반론	28	28					
	추후	12	12					
	손배	2	2					
	계	77	76		1			

3. 매체유형별 현황

중재청구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4건으로 7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신문, 신문, 뉴스통신, 방송 순서였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중재신청이 많은 것은 기사제공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이 성립되는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재된 동일기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신청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중재신청에 합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3〉 중재사건 매체 유형별 현황

구분 / 연도	중재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2010	77 (100.0)	54 (70.1)	12 (15.6)	7 (9.1)	3 (3.9)	1 (1.3)	0

※( )안의 숫자는 %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40건이다. 그 중 인용이 8건, 기각/각하가 7건, 취하가 3건, 진행중인 사건이 22건이다. 자동소제기된 주요 매체를 살펴보면, KBS-TV, 중앙일보, 미디어오늘 등이 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구분 / 연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정정반론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2008	12	4		3	4	1			3	8	1	6	3	3	
2009	24	7	2	1	12		2		4	17	3	7	8	8	1
2010	40	20	1	18				1	7	31	2	8	3	7	22
계	76	31	3	22	16	1	2	1	14	56	6	21	14	18	23

※인용은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청구인낙 등을 포함

〈표 7-2〉 2010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 현황

구분 / 매체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EBS-TV	1			1			1					1
KBS-1TV	2	1		1			2			1		1
KBSi	1	1					1			1		
MBC-TV	1	1					1			1		
경인일보	2	1		1		2						2
경향닷컴	2	1	1			2			2			
구 글	4	2		2			4				4	
동아닷컴	1	1					1					1
동아일보	1	1					1					1
미디어오늘	3	3				3						3
빅뉴스	2	1		1				2				2
인터넷EBS	1			1			1					1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2	1		1			2					2
인터넷 환경일보	2	1		1			2		2			
전광일보	2	1		1			2					2
조인스닷컴	2	1		1			2		1		1	
중앙일보	2	1		1			2		1		1	
진주MBC - TV	2	1		1			2					2
한겨레닷컴	1	1					1				1	
함안신문	3			3			3					3
함안정통신문	1			1			1					1
함평신문	2			1	1		2		2			
계	40	20	1	18	1	7	31	2	8	3	7	22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조 정

(1981.3.31. ~ 2010.12.31.)

구분 / 연도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계	16,096 100.0%	5,280 32.8%	424 2.6%	308 (29) 1.9%	0 0.0%	2,638 (277) 16.4%	699 4.3%	87 0.5%	6,660 (3,894) 41.4%	0 0.0%	64.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건수 + 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건수 + 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 / 조정건수(기각, 각하 제외)

■중 재

구분 / 연도	중재사건 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계	219 100.0%	172 78.5%	46 21.0%	1 0.5%			

2010년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746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284건의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2009년 253건에 비해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31건(12.3%)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2009년 93건에서 2010년 199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형사사건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2009년 97건에서 2010년 49건으로 크게 준 것(2009년 대비 49.5% 감소)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는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각 96건, 149건으로 2009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09년 대비 각각 68.4%, 12.9% 증가).

1.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분석

2010년에는 개인적 법익침해건수가 63건으로 2009년 119건에 비해 47.1% 감소한 반면, 사회적 법익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도 99건에 비해 123% 증가했다. 이는 2010년도에 사회적 법익침해 유형인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이 70.1%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관련 보도가 199건(70.1%), 형사사건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가 49건(17.3%),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수법 상세묘사 등) 18건(6.3%), 사생활 침해 10건(3.5%), 마약 용량 · 용법 등 공개 4건(1.4%),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및 목격자 · 신고자 · 피해자 신원공개 각 2건(0.7%) 순으로 나타났다.

2.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분석

2010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 결정한 284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49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간지가 96건(33.8%), 뉴스통신 20건(7.0%), 주간지 14건(4.9%), 월간지 5건(1.8%)순이었다.

2009년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갖춘 언론사닷컴도 시정권고 대상 매체에 포함되는 등 심의대상 인터넷신문의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09년에는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57건으로 2008년 121건 대비 52.9%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96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일간지 96건 가운데 지역일간지는 74건으로, 일간지 중에서는 77.1%를 차지했다.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0. 12. 31.)

구분 / 연도	권고 건수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보도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75		124	19	1	31	112	2
2009	253		1	97	6	15		93	41		57	15		20	132	29
2010	284	2		49	2	10	4	199	18		96	14	5	20	149	
계	6,014 100.0%	719 12.0%	134 2.2%	1,972 32.8%	1,041 17.3%	314 5.2%	1,008 16.8%	617 10.3%	209 3.5%		5,089 84.6%	126 2.1%	21 0.3%	291 4.8%	455 7.6%	32 0.5%

제2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 제2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총 2,205건의 조정사건과 77건의 중재사건 중 시사적 가치가 큰 103건의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1절 인쇄 · 통신매체 대상 조정 · 중재사례

1. 스트레이트 기사가 문제된 사례

가. 정치 · 행정 관련분야

사례 1

과천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건축이 정비계획에 의한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을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경기조정7　정정청구
신 청 인 : 과천시
피신청인 : 과천저널(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1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덟 가지 사항을 모두 포함하면 별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과천시가 이에 따를 경우 재건축 일정을 2년여 단축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과천시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 통과 후 도시 · 주거환경 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과천시의 경우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예산 및 시간단축 효과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은 과천시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과천저널 : 『과천시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추진 가능』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1~2면)

내 용 :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과천시가 2010년 1월 주민공람 예정인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계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8일 밝혀졌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담당자는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에 도정법 제4조1항의 항목을 포함하면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수립에 의한 재건축보다 길게는 2년여 기간 단축되고, 정비계획용역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즉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역예산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여 경기도 승인되기까지 소요되는 2년 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정비계획 없이 모든 단지의 재건축 추진위 설립이 가능하다.

본지가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이 내용은 2005년 3월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 고시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가』를 명시하면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마친 후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승인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내용에 대하여 8일 과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정비계획 없이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재건축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은 거의 끝나 주민공람준비에 들어가는 단계"라며 "다시 수정하게 되면 새로 추가할 항목이 많아 기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도정법 제3조에 의거 정비계획은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어 사업시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단지별 재건축시기가 도달하면 정비계획을 세워, 각 단지별로 따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예산도 세우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진단 용역업체

발주도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8일 “현재까지 안전진단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안전진단 용역 발주가 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의 방침대로라면 정비계획수립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시는 2010년 예산에 정비계획용역 예산수립도 세우지 않아 2010년 정비계획 수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한 전문가 (황윤호 교수)는 "도정법 제3조의 사업시행시기는 현재 과천시 정비기본계획 상에 재건축 수립시기는 2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공2단지가 1단계(사업시기 2011), 나머지 모든 단지는 2단계 (사업시기가 2020년)로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경관계획도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 과천시에 전달 될 예정이다. 따라서 1월 중 정비기본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쏟아져나와, 재건축 일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은 근거하는 법률은 다르지만 내용이 유사하다. 정비계획은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것으로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즉 지구단위계획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동간격 등을 규제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는 종 상향도 가능해 주민의 욕구에 따라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5년 단위로 다시 수립해야 함에 따라 과천시는 2008년 6월 수립해야 했으나, 2009년 8월 주민공람 예정이었다가 또 다시 경관계획의 3차원 시뮬레이션을 추가하기로 하여 2010년 1월 주민공람을 하겠다고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과천시의회 백남철 의장이다. 지난 12월 29일 백남철 의장은 의원간담회 도시과 업무계획보고에서 도시과정에 질의했으나 같은 답변이었다.

12월 14일 제160회 과천시의회 건축과 예산심의에서 안중현 의원은 “정비계획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정비계획 용역예산을 먼저 수립해 시기를 단축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임기원 의원은 “시의 의지에 따라 재건축 추진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며, “조합원간 갈등해결의 순서에 따라 단지별 재건축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므로 모든 재건축단지의 추진위 접수를 다 받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축과장은 “일괄적으로 모든 재건축단지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이 결과에서 나오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계획을 세워, 경기도에서 승인되면 그 후 재건축 추진위 접수를 하겠다”며, “이는 도정법에 명시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과장은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 1~2개 단지씩 추진하겠다고 예산심사 특위에서 답변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과천저널 제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 피신청인은 과천저널 인터넷판(www.gcjoumal.co.kr) 메인화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30일간 게시되도록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뜨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과천시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추진 가능" 보도 사실과 달라

2. 내 용 : 본지가 2010년 1월 11일자 1면 『과천시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추진 가능』 제목의 기사에서 "과천시 주택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에 정비계획에서 정한 8개 항목만을 포함시 정비계획이 인정되며 이렇게 되면 재건축 일정이 2년여 단축되고 정비계획 용역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과천시가 현재 정비계획 수립용역예산도 세우지 않고 안전진단용역업체 발주도 안된 상황이라는 내용의 보도와 건축과장이 의회 예산 특위시 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2개 단지씩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명시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여야만 하고 안전진단 실시 후 통과된 단지에 한하여만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에 8개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예산 및 시간단축 효과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며 예산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한 위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2009년도 예산에 정비계획수립용역 538백만 원 및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 1,489백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으며 정비계획은 (주)선진엔지니어링과 용역수행 중에 있고 안전진단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과 안전진단용역 발주가 안된 상황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하며, 건축과장의 의회 답변내용 중 '재건축은 안전진단 종료 후 주민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져 재건축을 1~2개 단지씩 추진하겠다고 보도한 내용도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과천저널 : 『반론보도문 – "과천시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추진 가능" 보도에 대한 과천시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1일자 1면)

내 용 : 본지가 2010년 1월 11일자 1, 2면 "과천시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추진 가능"이라는 제목과 "안전진단 용역발주도, 2010년 정비계획수립예산도, '전무' "라는 부제목으로 '과천시 주택재건축사업이 지구단위계획에 8개 항목 포함 시 정비계획으로 인정되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 일정이 2년여 단축되고 정비계획 용역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과장이 의회 예산특위 시 '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2개 단지씩 추진하겠다' 고 했다는 내용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천시에서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 통과 후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한하여 정비계획수립이 가능하며, 과천시의 경우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예산 및 시간단축 효과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2009년도 예산에 2단지 정비계획수립용역 538백만 원 및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 1,489백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2단지 정비계획수립은 (주)선진엔지니어링과 용역수행 중에 있고 안전진단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전체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1월 11일 이후 수행 중임으로 안전진단이 완료되고 단계별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으며, 재건축 단계별 사업규모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으며 건축과장의 의회 답변내용 또한 단계별 재건축 규모결정은 "안전진단 종료 후 한 단지를 할 것인가 두 단지를 할 것인가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사례 2

정청래 전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던 신청인이 당시 정 의원의 경쟁후보 선거 사무장이었고, 제보가 허위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70 · 171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정청래 전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던 신청인이 자신의 제보가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정 전 의원에게 사과했으며, 법원은 2심에서 신청인이 정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그러한 사항은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며, 신청인은 깊은 유감을 표시했을 뿐이므로 '사과'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 : 『"왜곡보도 고통, 평생 멍에로 남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9일자 20면)

내　용 : "허위보도, 이거 파렴치 범죄 아니에요?" 인터뷰 끝무렵, 그의 짧은 반문에는 1년 반동안 언론과의 싸움에서 삭힌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언론에 의해 전국민적 '이지메'를 당하면 평생 멍에로 남죠."

지난해 4 · 9총선을 코앞에 두고, 통합신당 마포을 정청래 후보는 보수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정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구내 한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자르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문화일보>는 닷새 동안 관련기사 11건을, <조선일보>는 7건을 쏟아냈다. 특히 총선 전날엔 문화일보의 자매 무가지인 <에이엠7>도 가세했다. 결과는 6383표 차 낙선이었다.

그는 이들 신문 등에 대해 민 · 형사소송 모두 6건을 제기해 최근 1년6개월여만에 '법정투쟁'을 마무리지었다. 그는 두 신문이 사실상 허위보도를 했음을 인정하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제보자인 한나라당 구의원 이아무개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 전 의원에게 사과하고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상대가 승복하면서 마무리됐다.

신문들은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아무개 씨 등 2명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했으나 이아무개 씨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였음을 인정했고 또 다른 1명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정 전 의원의 경쟁후보 선거사무원이었다. 이씨는 상대후보 비방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강안남자>(연재 소설)의 선정성을 강하게 문제삼은 바 있다. 또 그가 신문 · 방송 겸영 금지와 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문법을 2004년 대표발의하면서, 보수신문의 '공적'이 됐고 이에 앙심을 품었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생각이다.

"중1인 아이가 방과후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아빠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소리지르며 울다 오곤 했대요. 판결문을 같이 읽고, 저의 중학교 시절 일기를 읽어주면서 어른에 대한 불신을 씻어주고 있어요."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이 결정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의 1면 우측상단에 상자 기사 및 http://www.hani.co.kr 사이트에 인터넷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 활자체로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청래의 폭언관련 제보에 대해 제보자인 이아무개 씨가 경쟁후보 선거 사무원이었고,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2. 내 용 : 본 신문은 2009. 11. 28. '[이 사람] 왜곡보도 고통, 평생 멍에로 남아'라는 제목으로 정청래 후보가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자르겠다는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인 이아무개 씨가 자신의 제보가 허위임을 인정했고, 이씨가 경쟁후보 선거사무원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제보자 이아무개

씨는 이러한 제보가 허위임을 인정한 바 없으며, 정청래 전 의원의 경쟁후보의 선거사무원도 아니어서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2심 소송에서 '정 전 의원에게 사과하고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있었다는 기사에 대한 반론

2. 내 용 : 본 신문은 2009. 11. 28. '[이 사람] 왜곡보도 고통, 평생 멍에로 남아'라는 제목으로 '제보자인 한나라당 구의원 이아무개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 전 의원에게 사과하고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상대가 승복하면서 마무리됐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인 이아무개 씨는 '이러한 내용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합의한 화해권고 결정문의 내용이며, 정청래 측이 사과라는 표현을 쓰면 배상금을 1,600만원을 낮추어 준다고 제안하였음에도 사과라는 표현을 수용하지 않고 깊은 유감이라고 표시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사과라는 보도는 잘못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①

한 겨 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35면)

내 용 : 2009년 11월 19일치 20면 "왜곡보도 고통, 평생 멍에로 남아" 기사에서 이아무개 씨는 정청래 전 의원이 교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2심 판결에서 정 전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씨는 사과가 아니라 깊은 유감을 표시하라는 것이었으며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②

한겨레닷컴 : 『2월 10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9일자)

내 용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①의 보도내용 참조〉

사례 3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를 위한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단체는 주민협의체 결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사　　건 : 2010강원조정1　반론청구
신 청 인 : 현대제철 석회석저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
피신청인 : (주)강원일보사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현대제철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동해시가 유관기관과 주민단체 간 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현대제철 석회석 저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는 동해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치협의체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유치협의체의 결성에 참가할 의사도 전혀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강원일보 :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 협의체 결성』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20면)

내　　용 : 답보 상태에 빠진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현대제철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 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주민단체 간 협의체가 결성된다.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연간 300만톤가량인 현대제철 석회석 화물을 동해항으로 유치, 오는 10월부터 충남 당진군의 당진제철소로 수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를 두고 송정동 주민들 간에 찬반양론이 일며 갈등을 빚고 있어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 석회석 화물이 적기에 수송되려면 지난해 상반기 중 동해항 수송 시설 공사가 시작돼야 했지만 반대 주민들의 민원에 부닥쳐 이달 현재까지도 제동이 걸려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동해지방 해양항만청과 현대제철, 현대 글로비스, 대한통운, 주민 찬성단체와 주민반대단체 대표자 등으로 협의체를 결성,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의체는 오종식 부시장이 회장직을 맡아 현대제철의 석회석 화물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의 공해 피해 등이 적정한 선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종식 부시장은 "현대제출의 석회석 화물은 지역경제 부양과 주민 공해피해 등 득실이 함께 점쳐지는 만큼 유관기관과 주민단체 간 입장 조율에 공정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일보 20면 본문의 위치에 다음의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의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내 용 : 강원일보가 지난 2010년 1월 20일자 20면(동해 삼척 태백)에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 협의체 결성」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제철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 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주민단체간 협의체가 결성된다' 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반대단체(현대제철석회석 저장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원웅)에서는 유치 협의체는 현재 시에서 계획하는 사안으로 아직 결성된 것이 아니며 주민반대단체는 유치 협의체 결성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나. 내 용 : 본 지 는 지난 1월 20일자 20면(동해 · 삼청 · 태백)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 협의체 결

성」 제하의 기사에서 현대제철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동해시가 유관기관과 주민단체 간 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치협의체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주민반대단체(현대제철석회석 저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원웅)는 유치협의체 결성에 참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2월 1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일보 20면에 박스기사의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010. 2. 12.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강원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20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4

함안군청이 과오납 세금을 5년간 방치하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경남조정1 · 2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함안군
피신청인 : (주)더함안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경남 함안군 수곡리 주민들이 당초 50여 기의 납골묘지 설치를 협의해 주었으나 함안군이 300여 기를 허가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묘한 업무처리이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함안군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함안군수가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군수 출마예정인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함안군에서 지방세를 과오납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4년 8개월간 방치하고 이자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를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함안군은 수곡리 가족묘지 설치는 관련 법률에 따른 군수 허가사항으로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며, 함안군의 인구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군수 선거가 돈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수준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며, 지방세 과오납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함안군은 환부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고, 과오납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서 지방세법령에 따라 원단위 삭감에 의해서 미지급된 것이라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결과,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고, 손배청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The 함안신문 : (1) 『납골묘지 설치 강행 주민 원성』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1면)

내　　용 : 납골묘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이현동과 군북면 수곡리 주민에 따르면 함안군의 납골묘지 조성 편법허가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일방적이고 편의 주의적 업무처리라고 말하고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악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칠원면 구성리 이현동의 경우 지난 2007년 1000㎡가량의 산림을 훼손하여 납골 묘지를 조성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 복구를 했으나 함

안군은 2009년 2월 26일 19기의 납골묘지 설치를 재허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북면 수곡리의 경우 수곡리 산 99. 98-2번지 내 1000㎡의 납골묘지(300여기) 설치를 2009년 6월 16일 허가를 내줬다. 납골묘지 조성의 경우 도로로부터 300m, 주민거주마을로부터 500m 이내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칠원면 구성리 이현동 주민들은 "위법으로 인한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 또는 산림훼손 처벌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진 그 장소에 재허가를 해주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무법천지의 아방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군북면 수곡리 주민들은 "법을 떠나 인간의 도리 차원에서 당초 50여 기의 납골묘지 설치를 협의해 줬는데도 300여 기를 허가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묘한 업무처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납골묘지 설치 반대 주민결의서"를 작성, 주민 80여명이 연대서명 날인하여 함안군에 제출한 후 군청을 방문, 군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밝혔으나 군수는 "과장전결 사항인지라 잘 몰랐다"는 답변에 분개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면담자리에 동석한 주민복지과의 관계자에 따르면 군수가 "과장전결 사항이라 잘 몰랐다"는 말은 잘못 들었다. 그날 군수는 "과장전결사항"이지만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칠원면 구성리 이현동과 군북면 수곡리의 납골묘지 설치 재허가와 신규 허가에 대해 당초 실무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도로에서 300m 마을에서 500m 이내 일지라도 나무나 산으로 가리어졌을 때는 우연성을 발휘,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더욱 민감한 사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만일의 경우 허가 취소에 따라 복구 명령이 수반될 경우 공사비용도 논란대상이 될 조짐이다. 칠원 이현 및 군북 수곡의 공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칠원의 재 허가와 군북의 신규 허가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배상책임은 함안군이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주위의 여론은 색깔이 다르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전결결재자에게 배상책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여론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공무원의 업무실수 또는 편법처리로 인해 배상책임이 가해 질 경우 함안군 재정 또는 사유재산에 손실이 따를 것이라는 견해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여론들이다.

(2) 『 '초심으로 돌아갈 때' 』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2면)

논어에 "위정자는 무력도 돈도 버릴지언정 국민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무리 강력한 무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군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필경 버림받고 만다는 얘기다. 군민의 마음은 약속을 지키면서 얻어진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약속을 한다.

"꼭 지키겠다"고 말이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가 '선출의 잣대'가 되고 선택을 받는다. 혼란 속에서 함안군의 위정자들도 이런 약속을 군민들에게 했고, 그런 약속을 믿고 군민들은 뽑아 주었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수치로 알 수 없는 약속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속은 수치로 계량화되어 군민들에게 알려진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약속도 있고, 이미 지켜져 완결된 약속도 있다. 그런데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함안군의 위정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선출직은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명제를 두고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 가지의 명제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군민들의 선택은 나눠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선출직은 단연코 행정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군민들은 어떤 위정자를 선택했을 때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한데, 요즘 함안군을 보면 행정은 없고 선거만이 난무하고 있는 느낌이다.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행정은 온통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군민의 편안함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가뜩이나 늦게 시작한 그리고 혼란 속에서 시작한 행정이 구호만 요란할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물론 짧은 행정을 탓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행정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군민들은 이점을 중요시한다. 그렇다면 어떤 행정가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답도 간단하다. 흉내를 내는 행정은 결코 환대 받지 못한다. 아울러 현재 함안군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함안군은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이다. FTA 등 굳이 외부적 요인을 들먹이지 않아도 교육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구는 자꾸 줄고 있으며 이런 상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함안을 놓아 버려야 하는가? 그래서 위정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군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위정자가 필요하다. 함안군의 미래를 내다보며 대비하는 위정자들이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현재 함안군의 위정자들은 결코 '미래 함안'을 밝혀 줄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도 빠르다. 방법은 현재의 위정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행정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함안군이 닦여지고, 조여지고, 기름칠 해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한다. 함안군의 미래를 볼 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답은 하나다. 위정자들의 자세변환이 이뤄져야 할 때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의 선택이 이뤄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3)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4면)

다가오는 6.2 지방 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벌써부터 마타도어식 불법 선거가 우려 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상대 출마 예정자를 비방하는 음해성 발언이 난무하는 등 혼란스럽다며 선관위

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29일 법수면 부남동 마을 회관 준공식에서 한 군수 출마 예정자를 현직 군수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마을 회관 준공식이 끝나고 오후 1시경 동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영규 군수가 모 군수 출마예정자를 지칭하면서 50억을 쓸 계획이다 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는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출마 예정자는 이날 오후 3시경 마을 회관 준공식에 축하 하려고 뒤늦게 참석했다가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사실을 접하고 현직 군수가 돈 선거를 부추기는 것 같아 황당하고 냉담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선거법의 위반여부를 제쳐두고 소위 현직 군수라는 신분으로 마을 회관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여 이 같은 발언으로 상대후보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인격 및 자질함양은 물론 군민 대표로서 숙성이 안 되었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또 내가 만일 현직 군수라면 마을회관이 건축이 잘 되었는지?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농민들의 생활 근황에 따른 불편이 없는지? 2010년 영농준비와 농가소득증대 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퍼트려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군수의 발언을 식사 중에 들었다는 마을 주민 안○○ 씨는 군수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면서 축하하는 자리에 와서 불필요한 발언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부르짖고 있는데 군수의 발언은 선거법을 떠나 아주 잘못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여부와 명예훼손" 등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⑷ 『무사안일 함안군 재무 행정 '빈축' 과오납 세금 4년 8개월여 동안 방치 "이자는 못줘"』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11면)

"환부금은 납세자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대리인을 통한 수령이 가능하다"

"위환급금을 최초 통지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을시 에는 군금고로 환수된다"

군민 A는 함안군 재무과에서 발송한 납부 통지서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 23일 군 · 도세를 농협에서 납부했다. 뜻밖에도 지난 2009년 8월에 세입 과오납금 지급 통지서를 처음으로 받았다. 쉽게 말해 지방세를 2번 납부한 오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2004년 12월 23일에 오납된 세금 환급통

지서를 2009년 8월에 보내면서 4년 8개월간의 이자는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민이 납부하는 모든 세금은 지역 농 · 축협에서 수납 정산하여 함안군 금고(농협 군지부 군청출장소)로 송금하게 되고 함안군은 군 금고에서 출금, 모던 사업비로 충당하게 된다. 더구나 납세자가 납부일을 넘기면 그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백성 등쳐먹는" 세무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재무과 징수계의 한 관계자는 2009년 경기도 평택시의 중앙감사에서 과오납금 방치가 적발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함안군의 경우 중앙감사, 경남도감사, 함안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획 감사실의 자체 감사 등이 주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4년 8개월여 동안 감사에서 누락 된 것은 감사의 기법이나 능력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함안 건설"에 대한 반비례의 근본이 될 수도 있다. 군민의 재산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업무처리의 정서함양이 절실한 대목이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The 함안신문 제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상자안에 색깔을 넣을 것)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중 제1면 '납골묘지 설치강행 주민 원성'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창간호 함안군 관련 기사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2일 (금)자 창간호에서 함안군의 군정 및 군수 관련 기사를 여러 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제1면 '납골묘지 설치강행 주민 원성', 제2면 함안논단 '초심으로 돌아갈 때', 4면 '상대후보 출마자에 음해성 비방', 11면 '무사안일 함안군 재무행정 빈축' 등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첫째, 제1면 납골묘 관련 기사에서 '당초 50여 기의 납골묘지 설치를 협의해 줬는데도 300여 기를 허가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묘한 업무처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가족 또는 종중, 문중묘지를 설치하려 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치 함안군이 50여 기의 납골묘지를 설치하는 협의를 한 후 300여 기의 허가를 내줘 협의를 위반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주민을 우롱하는 무법천지의 아방궁 행정' 표현을 보도하여 함안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둘째, 제2면 논단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구는 자꾸 줄고 있으며 이런 상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2005년 연말기준 61,376명으로 가장 적었던 함안군의 인구가 2006년 63,460명, 2007년 64,865명, 2008년 66,050명, 2009년 66,582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칼럼의 해당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인구의 증감이 행정평가의 아주 중요한 척도임에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칼럼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함안군에게 사과드립니다. 셋째, '현직군수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확인 결과 함안군 군수는 행사 당일 참석한 사람들이 돈을 뿌리는 선거풍토에 대해 비판을 하는 분위기에서 돈선거가 되면 안된다는 일반론 차원으로 "항간에 몇십억 원을 쓴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돈선거가 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함안군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성 비방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넷째, 11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 관련 기사 역시 사실확인 결과 2004년 12월 23일 과오납 세금의 발생 4일 이후인 2004년 12월 27일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발송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군에서 환부를 독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함안군이 의도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면서 '백성 등쳐먹는 세무행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군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정정청구 – 조정성립

손배청구 – 조정신청 취하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함안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2일자 창간호에서 함안군의 군정 및 군수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

습니다. 이 중 일부 기사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1면 '납골묘지 설치강행 주민 원성' 기사와 관련, 함안군에서 구성리 납골묘는 당초 허가를 내준 바가 없으므로 재허가는 사실과 다르며, 함안군에서는 수곡리 가족묘지 설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군수 허가사항으로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함안군이 50여 기의 납골묘를 설치하는 협의를 한 후 300여 기의 허가를 내줘 군이 협의를 위반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둘째, 2면 함안논단 '초심으로 돌아갈 때' 내용 중 '열악한 환경으로 인구는 자꾸 줄고 있으며 이런 상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2005년 61, 376명 이후 군의 인구는 2009년 66,000여명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11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 관련 기사 관련, 과오납 발생 직후 함안군에서 환부금지급통지서를 발송했으므로 '방치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과오납금액이 5천원 미만이어서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자가 원 단위 삭감에 의해서 미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피신청인은 The 함안신문 제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중 제1면 창간사 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제2항을 2010년 3월 12일까지 이행하며, 피신청인이 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위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고, 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 4건을 상대로 다른 민 · 형사상 소송은 하지 아니한다.

2010. 3. 3.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The 함안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1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5

시의회 부의장인 신청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건설회사가 포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사　　건 : 2010경기조정30 · 31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종 근
피신청인 : (주)경기도민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포천시가 전 · 현직 부의장이 소속된 건설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수억여원의 관급공사를 발주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직 시의회 부의장인 신청인이 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S건설도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 중 하나이고, 신청인이 이 S건설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현재 이사로 재직중이며, 포천시의회에 입성한 후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등의 경우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피해가기 위해 현장소장으로 함께 일하던 L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겨 시와 수의계약을 맺어왔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S건설은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 · 부의장의 지역구에 배정된 사업비 관련 공사를 도맡아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현재 등기상 이사직도 사임했으며, L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신청인이 시의원이 되어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 현행법을 피해가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정정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고, 손배청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①

경기도민일보 : (1)『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1면)

내　　용 : 속보=포천시가 14개 읍면동에서 현행 법규를 무시하며 지난 5년간 발주한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말썽이 된 가운데 (본지 2009년 12월 21 · 22 · 23일자 1면 보도) 그동안 관내에서 전 · 현직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소속된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억여원의 관급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 본청과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6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본청에서 828건과 14개 읍면동에서 1635건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의 경우 420여 건의 공사에 100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10개의 업체가 전체 공사의 절반이 넘는 220여 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업체 중 5개 업체에서 110여 건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으며 대부분이 14개 읍면동에서 모두 공사를 많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수의계약에 대한 편중 시비와 함께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4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 중 S건설과 T건설의 경우 전 · 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부의장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된 주민숙원 사업비와 관련된 공사를 거의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말썽이 되고 있다.

또한 전 · 현직 부의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들 건설회사는 14개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에서조차도 수의계약을 수주해 부의장의 직책을 이용해 시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거나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강태선 전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T건설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에서 39건 5억 2,300여만원의 공사를, 본청에서는 4건 4,350여만원의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건설도 마찬가지로 현 정종근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이사로 재직 중이다. S건설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에서 총 30여 건 4억 4,000여만원의 공사를, 본청에서 6,080여만원의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전 · 현직 두 부의장은 "건설회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며 "신문을 활용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없다"고 해명하면서 특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모 건설사 사장은 "포천시에 있는 130여 개의 건설업체 중 5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4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공사를 독식한 것에 건설업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특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시의원이 자신의 직분을 활용해 이권사업에 관여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데 급급한 모습은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전 · 현직 부의장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시가 14개 읍면동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전 · 현직 부의장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

에 밀어준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 『자치계약법 위반 특혜 '파장'』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5일자 1면)

속보=포천시가 지난 5년간 포천시의회 전 · 현직 부의장이 소속된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억여 원의 관급공사를 발주해 특혜의혹(본보 1월 14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금까지 현행 자치계약법을 위반하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시가 공개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청과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T건설과 S건설은 시청에서 각각 4건을 계약했고 읍면동에서 T건설은 53건, S건설은 3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5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이 조항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장 및 의원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세부조항으로 명시해 두었다.

하지만 포천시의회 강태선 전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T건설의 경우 지난 5년간 시청과 14개 읍면동에서 57건, 8억 4,000여만원의 공사를 계약했다.

T건설은 강태선 전 부의장이 지난 2002년 당시 포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배우자인 K(45)씨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2005년까지 3년간 자치단체와 1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2건은 2005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을 명백히 위반한 채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총 53건의 공사 중 무려 33건(63%)을 강 전 부의장의 지역구에서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건은 강 전 부의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있는 영중면에서 집중적으로 발주했다.

현 포천시의회 정종근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S건설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시청과 14개 읍면동에서 총 39건, 5억여 원의 공사를 계약했다. 정 부의장은 현재 S건설 이사로 재직 중이다.

S건설은 지난 2004년 1월 10일부터 정 부의장의 배우자인 L(43)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나 정 부의장이 포천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사임처리 됐다. 이후 현장소장으로 함께 일했던 또 다른 L(48)씨가 대

표이사를 수행하면서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배우자와 관련이 있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정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S건설도 지난 5년간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총 30건의 수의계약 중 정 부의장이 포천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이사로 있던 시절 무려 18건(60%)의 공사를 체결했으며, 이중 자신의 지역구에서 절반인 9건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강 전 부의장은 "건설회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면서 "신분을 활용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다시 대표이사를 할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정 부의장도 "S건설에 이사로 등재돼 있으나 재직 중이 아니고 법인의 은행 대출관계 때문에 본인이 빠질 수 없어 비상임 이사로 있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수의계약 업체 중 독식을 한 상위 5개 업체에 S건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포천시의회 전 · 현직 부의장이 지난 5년간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설회사를 이용해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억원의 관급공사 발주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이 시 담당부서에 정식으로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 (1)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1) 참조〉

(2) 『자칙위법 위반 특혜 '파장'』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5일자)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2)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기도민일보 종합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도민일보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포천시의회 현직 부의장 소속 건설회사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4일자 종합 면에 『포천시의회 전 현직 부의장 소속 건설회사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14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 중 S건설과 … 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부의장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된 공사를 거의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어 말썽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S건설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본청에서 수주한 건수는 총 발주 802건 중 29건으로 건수 순위는 약 24위, 수주공사 금액순위는 약 18위에 해당됨이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 14개 읍면동에서 S건설이 수주한 건수는 전체 1876건 대비 31건으로 비중은 1.7%, 전체발주금액 대비 비율은 1.9%에 불과함이 밝혀져, S건설은 같은 기간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에 해당되지 않고, 신청인의 지역구에 배정된 사업비 관련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위 기사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전 현직 부의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들 건설회사는… 본청에서조차도 수의계약을 수주해 부의장의 직책을 이용해 시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거나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 , S건설도 마찬가지로 현 정종근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이사로 재직 중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정 부의장은 2010. 1. 10. 등기상 이사도 사임하였고, 정 부의장이 S건설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책을 이용한 로비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월 25일자 종합1면에 『포천시의회 전 현직 부의장 소속 건설회사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S건설은 지난 2004년 1월 10일부터 정 부의장의 배우자인 L(43세)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나 정 부의장이 포천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사임처리 됐다. 이후 현장소장으로 함께 일했던 또 다른 L(48)씨가 대표이사를 수행하면서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배우자와 관련이 있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정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정 부의장의 배우자가 사임한 후 L(48)씨가 대표이사를 수행한 것은 시의원이 되어 오해를 사는 것을 피하고, 올바른 시정을 펴는 데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L씨가 회사를 잘 알고 있기에 대표이사를 역임토록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4일자 종합 면에 "포천시의회 전 현직 부의장 소속 건설회사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14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 중 S건설과 ... 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부의장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된 주민숙원 사업비와 관련된 공사를 거의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어 말썽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S건설은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 부의장 지역구에 배정된 사업비 관련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위 기사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S건설도 마찬가지로 현 정종근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이사로 재직 중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정 부의장은 2010. 1. 10. 등기상 이사도 사임하였고, 정 부의장이 S건설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월 25일자 종합1면에 "포천시의회 전 현직 부의장 소속 건설회사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 또 다른 L(48)씨가 대표이사를 수행하면서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배우자와 관련이 있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정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배우자가 사임한 후 L(48)씨가 대표이사를 수행한 것은 시의원이 되어 오해를 사는 것을 피하고, 올바른 시정을 펴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L씨가 회사를 잘 알고 있기에 대표이사를 역임토록 한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3월 9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포천시의회 전 · 현직 부의장 소속 건설회사)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도민일보 2010년 3월 9일자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게시하되,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한다.

2010. 3. 4.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1

경 기 도 민 일 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2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3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 조정대상보도 하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6

신청인 회사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내지 않았고, 분양을 통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겨 흑자부도를 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359 · 360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펀스테이션
피신청인 : (주)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2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기도 성남시가 외자유치 명목으로 신청인 (주)펀스테이션에 부지 등을 무상제공한 영어교육시설이 공사중단과 특혜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50억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성남시가 신청인 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운영권을 준 계약조항을 내세워 300여억원의 분양수익을 챙겼고, 분양금만으로 공사를 해도 수십억 원이 남아 흑자부도를 낸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계약당사자인 성남시가 지체상금을 아직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지체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분양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는 등의 나머지 내용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기사를 게재한 경향닷컴 대상으로도 조정을 신청(2010서울조정361 · 362 사건)하였으며, 심리결과 동일한 취지의 정정보도가 게재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경향신문 : 『성남 '펀스테이션 특혜' 사실로』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14면)

내　　용 : 경기 성남시가 외자유치 명목으로 (주)펀스테이션에 부지 등을 무상 제공한 영어교육 시설이 공사 중단과 특혜의혹 등으로 물의(경향신문 2월 1 · 2일자 14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맺은 계약서가 공개됐다.

3일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는 시유지 무상 사용, 40% 분양 허용 등의 업체측에 유리한 각종 혜택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또 펀스테이션이 계약조건을 위반했음에도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계약서는 2005년 4월 20일 이대엽 성남시장과 펀스테이션USA 리처드 버틀렛 사장이 서명했다. A4 용지 17장으로 된 계약서는 시유지 무상 사용권 부여 · 건물 건축 및 완공 조건 · 사용과 수익 ·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이 명시돼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펀스테이션에 시가 500억 원 상당의 분당구 수내동 시유지 6563㎡의 20년간 무상 사용권을 부여했다. 또 이 회사가 건물 연면적 60%를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40%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했다. 펀스테이션은 이 조항을 내세워 분양해 300여억원을 챙겼다.

황남주 펀스테이션 수분양자협의회장은 "건물 공사비는 270억 원으로, 분양금만으로 공사를 해도 수십억 원이 남는 셈"이라면서 "펀스테이션이 낸 부도가 '흑자 부도'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펀스테이션은 계약조건도 멋대로 위반했다. 계약서 제11조(투자) 1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08년 4월 20일)에 3,000만 달러를 유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계약서보다 한 달 늦은 2008년 5월 20일 외자를 유치했다. 이 회사는 또 착공(2006년 9월) 후 2년 이내에 준공하라는 조항(제4조 건축 및 준공)을 어겼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50여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계약 해지는커녕 봐주기로 일관했다. 계약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항(제15조 비밀유지)까지 만들어 특혜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계약서 때문에 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펀스테이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외자유치는 1회 연장해줘 한 달 늦어진 것에 불과하며, 지체상금은 준공 후 받으면 된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계약 해지를 안했던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향신문 전국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억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성남 펀스테이션'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4일자 전국면에 "성남 '펀스테이션 특혜' 사실로" 라는 제목으로 펀스

테이션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50여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펀스테이션이 분양을 통해 300여억원을 챙겼다', 수분양자협의회 회장 발언을 인용하며 '건물공사비는 270여억원으로 분양금만으로 공사를 해도 수십억원이 남는 셈, 흑자부도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펀스테이션사 및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성남시가 펀스테이션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지체상금 금액 등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분양금만으로 공사를 해도 수십억 원이 남는다는 주장과 분양을 통해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본보 2월 4일자 14면 『성남 '펀스테이션 특혜' 사실로』 제하 기사에서 '펀스테이션은 공사지연에 다른 지체상금(50억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분양을 통해 300여억원을 챙겼다'고 보도하는 한편, '건축비가 270억 원이어서 분양금만으로 공사를 해도 수십억이 남아 흑자부도를 낸 의혹이 있다'는 수분양자협의회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펀스테이션측은 "지체상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계약당사자인 성남시가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는데도 회사가 마치 내야할 돈을 안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분양금만으로 공사를 해도 수십억원이 남는다는 인용발언과 분양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3월 11일까지 '경향신문' 2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크기는 경향신문이 통상적으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시 행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를 보도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계류 중인 민 · 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 3일 이내로 취하한다.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7

구례군이 예산을 낭비하고 불법, 편법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 담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광주조정9　정정청구
신 청 인 : 구례군
피신청인 : (주)호남매일신문사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2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구례군이 예산을 낭비하고 불법 내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행정처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례군이 수억원의 관비기계 구입예산을 임의로 조작해 농민 수십명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관광단지 조성을 이유로 산림 3천여 평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구례군은 관비기계 구입예산 집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관련 공무원이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지목이 본래 산림이 아닌 대지와 전이어서 형질변경은 물론 지목변경도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호남매일 : 『구례군 부패사슬 度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1면)

내　　용 : 수억 원의 관비기계 구입 예산을 임의로 조작해 농민 수십명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고 수사중에도 버젓이 문제의 업체와 거래중.

- 야생화타운 1만여평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십억 원을 투입, 문도 열지 못한 채 공매처분 위기.
- 특정업체의 산업폐기물 수백톤을 대신 처리해 주려다 의회의 반발과 고소. 고발로 무산.
-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뒤바뀌고 특정 사업에 부당압력 의혹이 성행.
- 그러면서도 매사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직의 전형적인 구태가 성행하는 곳.

구례군의 지난 민선 4기 성적표다. 주민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낭비되고 있는 대표적 자치단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례군의 반응은 "할테면 해 보라"는 식의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여년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문제가 터진 사업마다 공통점은 업자와 연계된 이권 의혹이다. 여기에 온갖 불 · 편법이 난무하고 예산의 졸속처리와 혈세낭비 등 잇따른 비리의혹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만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수사당국의 회초리를 비웃기나 하듯 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구태를 되풀이 하는 파렴치함은 이미 상식의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구례군 간전면 농공단지의 한 업체엔 대규모 산업폐기물이 흉물로 방치된 지 오래다.

17일 구례경찰서와 구례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문제의 업체가 간전농공단지 내 5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입주했으나 당초 방치된 폐기물처분 조건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감정가(2억 4천만원)의 30%에 해당하는 7천5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 업체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군청이 자청해 나선 데서 비롯됐다. 군의회는 구례군이 전례에 없는 예산낭비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군민 모씨도 구례군수를 산업폐기물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앞서 구례군은 지난 2008년 말 친환경 시설원예 농업지원을 위해 마련된 산소 관비(농가살수장치) 사업자금 2억 6천200만 원을 임의로 조작해 시행하다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혐의는 국고지원액 중 농가가 30~40%의 부담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납품업체 부담으로 돌려 시중가 보다 높게 구입한 것이다.

이 바람에 자부담을 하지 않았던 농민들 2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횡령혐의로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이 바람에 관비기기를 제공 받지 못한 농민들과의 형평성 시비, 납품업체 벌금대납 의혹, 남은 자부담 몫에 대한 졸속 처리 의혹 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의혹으로 남게 됐다.

문제는 이후에도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전히 말썽이 일고 있는 특정업체로부터 물품구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 전용과 불 · 편법 행정, 특정업체와의 담합의혹이 제기된 극명한 사례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군은 재작년에도 구례 화엄사 단지 내 1만여 평에 '야생화 타운'을 조성한다며 군비 5억 원과 모건설업체의 민자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을 투입했으나 개장조차 못한 채 공매처분 대상이 돼 버렸다.

관광단지 조성을 빌미로 거액의 예산이 소진되고 애꿎은 산림 3천여 평이 형질변경 돼 특정업자 편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주민 K아무개 씨(농민. 46 구례군 간전면)는 "지난 4년 동안 군이 한 일이라곤 허구 헌날 경찰에 불려가고 적당히 빠져 나오는 게 전부였다"며 "무슨 위원회다 작목반이다 해서 공무원들은 빠져 나오고 업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귀신이 아닌 바에야 경찰이 무슨 수로 단속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경찰은 농공단지 폐기물 고발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과 업자를 소환, 위법사실이 드러난 대로 형사처리할 방침이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호남매일 〈종합1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구례군 부패사슬 度 넘었다'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8일자 종합1면에 『구례군 부패사슬 度 넘었다』라는 제목으로 "#수억원의 관비기계 구입예산을 임의로 조작해 농민 수십명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고, 수사중에도 버젓이 문제의 업체와 거래중" 이라고 보도했으며, 『관광지구 개발 10억 원 탕진, 개장전 공매중』이란 부제로 "구례 화엄사 단지내 '야생화 타운'이 개장조차 못한 채 공매처분 대상이 돼 버렸다. 관광단지조성을 빌미로 거액의 예산이 소진되고, 애꿎은 산림 3천여 평이 형질변경돼 특정업자 편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간전농공단지 내 폐기물과 관련하여서 이 업체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군청이 자청해 나선 데서 비롯됐다"고 하였고, "조달청으로부터 낙찰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산소관비 사업은 시공업체가 일부 농가의 자부담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요구한 참여농가와 함께 벌금형을 받았지만 공무원은 그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부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 등의 조사는 수차례 받았으나 부당행위로 어떠한 처벌도 받은 바 없으며,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공무원이 관여한 바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례화엄사 단지내 '야생화 타운'은 운영사업자의 국세 체납으로 공매에 들어갔으나 유찰되어 공매가 취소된 상태로 구례군에서는 재산권 확보를 위해 운영사업자의 재산 100여건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사업부지 지목은 산림이 아닌 대지와 전이며 본래의 상태에서 야생화만 식재하였으며, 지목 또한 사업전과 변동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간전농공단지 내 폐기물은 그간 법적검토를 거친 결과 낙찰받은 업체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아

니며, 구례군에서는 농공단지내 적치된 폐기물 처리에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각각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8일자 종합1면에 "구례군 부패사슬 度 넘었다"라는 제목 아래 수억원의 관비기계 구입예산을 임의로 조작해 농민 수십명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관광단지 조성을 이유로 산림 3천여 평이 형질변경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공무원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으며, 산림형질변경과 관련해 산림이 형질변경된 사실은 없고, 다만 사업부지 지목이 대지와 전으로서 지목 또한 사업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3월 12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호남매일 종합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010. 3. 5.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호남매일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1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8

신청인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 · 경북지역 언론사들의 논조에 불만을 표하면서 'TK X들' 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대구조정1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동 관
피신청인 : (주)경북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세종시와 관련된 대구 · 경북지역 언론사들의 논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인 신청인이 "TK X들, 정말 문제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 경북 언론에 대해 불만이 많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석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 · 경북지역의 논조가 다소 지나치다고 언급한 말이 전달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며, 당시 신청인은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내용 역시 전달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당사자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피신청인은 경북일보 명의의 사과문이 포함된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조정대상보도

경북일보 : 『靑 "세종시 관련 대구 · 경북 언론논조 불만 많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일자 3면)

내　　용 :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잇따라 대구 · 경북지역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 경북 언론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이 대통령의 말을 빗대어 자신의 불만도 털어놓았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대구 · 경북)X들, 정말 문제 많다. 이건 기사로 써도 좋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이 이처럼 대구 · 경북민들에게 대해 저속한 표현까지 써가며 언급한 것은 최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언론의 논조가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매우 섭섭해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이어 "대구 · 경북지역이 역차별 운운하며 다른 지역보다 (이 대통령의 정책에) 더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구 · 경북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수석은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라며 "그런데도 고향인 대구 · 경북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박형준 정무수석도 최근 대구 · 경북기자들과의 모임에서 이 수석과 비슷한 말로 대구 · 경북 여론에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박 수석은 "이명박 정부들어 대구 · 경북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폭지지는커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반대의 소리가 높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북일보 2면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본 기사와 동일한 3단 기사의 비중으로 하되 제목은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박스 기사 형태로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일자 제3면 『靑 "세종시 관련 대구 · 경북 언론 논조 불만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TK(대구 · 경북)지역 언론의 논조에 불만을 표하면서 'TK X들'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동관 수석은 이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사석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 · 경북지역 언론의 논조가 다소 지나치다고 언급한 말이 전달 과정에서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본지는 동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 경북 언론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 수석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바 없으며 이 또한 중간 전달 과정의 착오로 빚어진 것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본지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를 게재해 줄 의사는 있으나 정정보도를 할 수는 없다.

조정불성립결정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경북일보 : 『정정보도문… '이동관 수석, 저속한 표현했다' 와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7일자 3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일자 3면 『靑 "세종시 관련 대구 · 경북 언론 논조 불만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TK(대구 · 경북)지역 언론의 논조에 불만을 표하면서 'TK X들'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동관 수석이 사석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 · 경북지역 언론의 논조가 다소 지나치다고 언급한 말이 전달 과정에서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본지는 동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 경북 언론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내용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라는 이 수석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또한 중간 전달 과정의 착오로 빚어진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전언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이동관 수석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북일보

사례 9

신청인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 인사들에 대해 '반대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사　　건 : 2010서울조정512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정 길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2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통령실장인 신청인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를 향해 "천주교 쪽은 반대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이어서 설명을 하면 외려 말꼬리를 잡아 반대논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천주교 관련 발언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 위원회에 워낙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오해를 부를 것 같아 안 갔다"는 4대강 추진본부 측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 : 『여권 수뇌부, 4대강에 맞선 천주교 성토』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1면)

내　용 :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 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22일 당 · 정 · 청 공식회의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 쪽을 성토했다고 여러 명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박순자 최고위원 등이 "4대강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4대강 사업의 친환경적인 면도 적극적으로 알려 천주교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하지 않느냐"고 잇따라 질책했다. 그러자 정 실장은 "천주교 쪽은 반대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이어서 설명을 하면 외려 말꼬리를 잡아 반대 논리에 활용할 것이라 여겨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듣고 보니 결과적으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여러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정 대표는 "최근 지역구의 신부 한 분을 만났더니 '(4대

강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유럽만 보고 유럽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생떼를 쓰고 굉장히 위선적이고 편향되어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더라"며 천주교의 4대강 반대 운동을 비판했다고 여러 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정 대표의 말이 파장을 부를 것으로 우려되자, 한 장관이 '이 발언은 밖에 알려지면 안 된다' 고 입단속을 당부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엔 안상수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운찬 국무총리, 몇몇 부처의 장관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며, 환경운동이나 천주교 쪽을 비방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밤 "정 실장이 천주교 쪽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고 직접 평한 게 아니라 4대강 추진본부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쪽에 4대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2단 기사의 비중으로 하되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박스 기사 형태로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3일자 1면 〈여권 수뇌부, 4대강에 맞선 천주교 성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를 향해 "천주교 쪽은 반대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이어서 설명을 하면 외려 말꼬리를 잡아 반대 논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3월 22일 고위당정협의 때 나온 정 실장의 천주교 관련 발언은 4대강 추진본부의 말을 간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실장은 당시 "4대강추진본부의 말을 들으니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위원회에는 워낙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괜한 오해를 부를 것 같아 안 갔다' 고 하더라"고 하였으나 마치 정 실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므로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일수록 정부가 더욱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3월 23일자 1면 「여권 수뇌부, 4대강에 맞선 천주교 성토」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당시 고위당정협의회는 천주교와의 효과적인 소통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였으며, 4대강 추진본부의 설명을 전달한 것일 뿐, 천주교를 직접 비판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4월 7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4월 7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해당 보도문을 송고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4. 1.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①

한 겨 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②

한겨레닷컴 : 조정대상보도 하단 『4월 6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10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해경의 현장 접근에 제동을 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886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군본부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5.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해경에 4척의 구조보트가 있음에도 2척만 보내라고 하는 등 해경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해군본부는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는 해경 구조보트 2척이 있었으며, 해경과 긴밀한 협조로 58명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동의, 반론보도가 게재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동아일보 :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1일자 6면)

내　　용 : 해경이 말하는 사고당일 해군 구조활동 의문점

26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앞 바다에서 침몰한 해군 천안함 사고 해역에서 생존자 58명 가운데 민간어선이 구조한 2명을 제외하고 56명을 구조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500t급 경비함인 501함이 30일 오전 1시경 해경부두에 돌아왔다. 경비함에 탔던 경찰관과 전투경찰 등 28명의 얼굴에는 나흘간 계속된 수색작업으로 지친 표정이 역력했지만 당시 구조작업을 통제한 해군의 태도에 아쉬움과 함께 의문을 잇달아 쏟아냈다.

이들에 따르면 501함이 사고 해역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해군은 해경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26일 오후 9시 33분경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해군의 통보를 받고 당시 대청도 인근 해상에

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501함과 1002함 등 2척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501함은 전속력으로 달려 사고를 접수한 지 4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경 사고 해역 인근에 도착했다. 501함이 침몰해 가는 천안함에 가까이 가려고 했으나 해군이 제동을 걸었다. 해군은 무전교신을 통해 501함에 천안함에 접근하지 말고 구조대원들이 탄 고속단정(립 · RIB) 2척만 보내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해경과 수차례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립은 1002함에도 2척이 있어 모두 4척이었는데 501함의 2척만 보내라고 한 것도 의아한 부분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501함이 보낸 립 2척만이 생존자 56명을 실어 날랐다.

501함보다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군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은 것도 해경 측이 품는 의문점이다. 501함이 도착했을 때 사고해역에서 해군 고속정 4척은 침몰해가는 천안함과 주변 해역을 서치라이트로 비추고만 있었다. 천안함의 장병들은 포대와 조타실 등 함수(艦首) 부위에 모여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방위 답변에서 "해군 고속정은 립이 없어 (침몰하는 초계정에) 접근하면 더 빠른 침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당시 파도가 높고 고속정에는 접안용 고무패드가 없어 천안함에 접근할 경우 배가 부서질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해군은 구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했다는데 생존자들 인터뷰에도 나오듯 함수 근처에 있던 생존자들이 (충돌을 우려해) 해군 군함의 접근을 막았다. 그래서 해군은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해경은 사람을 구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해군이 갖고 있는 구명벌(life raft · 천막형태의 구명장비) 같은 구명기구로 생존자 구조를 먼저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천안함이 폭발과 함께 두동강이 나면서 사고현장에서 순식간에 침몰한 함미(艦尾)에 대다수 실종자가 갇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왜 사고 초기부터 함미 수색에 집중하지 않았는지도 논란거리다. 사고 이튿날인 27일 침몰 해역 주변에서 더는 생존자나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자 나머지 실종자들은 주로 함미에 남아 있다고 해군과 해경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군은 해난구조대(SSU)를 함미에 잠수시켜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수면 위에 모습을 보이다가 거센 조류에 6km나 떠내려간 뒤 가라앉은 함수 수색에 나서는 등 갈팡질팡했다는 것이 현장을 지켜본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함수와 함미의 수색에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함미가 180m 휩쓸려가서 가라앉아 정확한 지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함미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도 미스터리이지만 사고 뒤 보인 해군의 수색구조작업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에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동아일보(3. 31)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 3월 31일자 6면에 실린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기사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해군은 천안함 침몰 당시 해경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고속정이 2척이 먼저 도착해 구조안전을 지원하여 생존자들이 안전한 가운데 립보트를 이용, 해경정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군은 해경과 원활한 협조 속에 구조작전을 진행하였으며,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동아일보는 "해경과 실랑이", "해경과 수차례 대립",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은 것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오·왜곡되고 악의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한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보도문을 동아일보 사회면 혹은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알려왔습니다'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5.

〈별 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내 용 : 본지 3월 31일자 6면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제목의 기사와 관련, 해군에서는 천안함 침몰 구조 당시 현장에는 해경 구조보트 2척이 있었으며, 해경과 긴밀한 협조로 58명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11

충청도에 살았으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거라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934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무총리실
피신청인 : (주)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5.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 모임에서 "나도 충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뒤통수 맞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국무총리실은 당시 국무총리의 발언취지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분들을 정서적으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정안을 선택해야 하므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과 같은 언급은 아예 한 적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경향신문에 정정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경향닷컴에도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경향신문 : 『"나도 충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5일자 1면)

내　　용 :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가 이달 초 한 모임에서 "나도 충청도에 살고 있었으면 당연히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것"이라며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를 전격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는데 나만 바보가 됐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충청지역 일간지 서울주재기자 7명과의 오찬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한 참석자가 "정부에서는 (충청도에서) 수정안 지지여론이 원안

고수 측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지역 '밑바닥'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자 정 총리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나도 지금 충청도에 살고 있었으면 당연히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전반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9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충북 오송 · 오창 지역은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 바로 시행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지난 1월 "경제자유구역이 6개나 지정돼 있지만 제 역할을 아직 못한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정 총리의 이 발언을 놓고 참석한 기자들로부터 '기사거리다' 라는 얘기가 나오자 동석한 총리실 김창영 공보실장이 '지역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말씀이니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 며 2건의 발언 모두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총리로서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세종시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던 총리가 '충청도에 살면 반대했을 것' 이라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측은 이에 대해 "정 총리의 발언은 충청인들이 수정안의 장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역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미"라며 "총리는 수정안을 제기한 당초부터 지금까지 입장이 달라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향신문 1면 좌측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나도 충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 반대" 정정보도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10년 5월 15일자 종합 1면에 "나도 충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달 초 한 모임에서 "나도 충청도에 살고 있었으면 당연히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것"이라며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가 「"뒤통수 맞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이날 국무총리 발언의 취지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분들을 정서적으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지역 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정안을 선택해야 하므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서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한 당초부터 지금까지 결코 기존 입장을 달리 한 적이 없고,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과 같은 언급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지난 5월 15일자 1면 '나도 충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 제목 기사와 관련해,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분들을 정서적으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수정안을 선택해야 하므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서 수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며, 총리는 수정안을 제기한 당초부터 지금까지 결코 기존 입장을 달리 한 적이 없으므로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6월 15일까지 경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경향닷컴(www.khan.co.kr) 정치면 초기 화면에 2010년 6월 15일까지 '바로잡습니다(정운찬 총리 세종시 발언 관련)'라는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1.항의 보도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 및 3.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해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한다.

2010. 6. 18.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①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2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②

경향닷컴 : 『바로잡습니다 (정운찬 총리 세종시 발언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2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12

낙동강 구미보의 부실시공으로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01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피신청인 : (주)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7. 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4대강 보 공사 가운데 30공구 낙동강 구미보가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다루면서, 수문을 들기 위한 권양기가 설치된 약 40m 높이의 권양대가 너무 약하게 시공되어 시운전을 하다가 상판에 균열이 생겼으며, 시공에 참여한 공사업체 관계자가 이 때문에 시운전을 중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시방서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균열이 구미보 상판에서 발견된 바 없으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제3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공단 재난예방팀장 역시 구미보 상판에 안전기준 허용치를 넘어서는 균열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균열로 인해 시운전을 중단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 내일신문에 게재된 동일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청구(2010서울조정1102)했다. 심리결과, 인터넷 내일신문에 저장되어 있는 동일기사의 하단에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내일신문 : 『4대강 구미보, 부실시공 의혹제기』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일자 1면)

내　　용 : 4대강 보 공사 가운데 30공구 낙동강 구미보가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문을 들기 위한 권양기(쇠밧줄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 · 사진 타원 안의 상판 위에 보이는 둥그런 물체)가 설치된 약 40m 높이의 권양대가 너무 약하게 시공돼 시운전을 하다가 상판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시공에 참여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지난 6월 9일 시운전을 하다 상판에 균열이 발생해 시운전을 중단했다"며 "토목설계와 기계설계가 맞지 않고 공사를 너무 서두르다 생긴 부실공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목 기초가 너무 약하게 설계돼 수문을 들면 수백억짜리 권양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면서 "모두들 쉬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보에는 수문이 두 개 설치된다. 철제로 된 수문은 무게가 650톤이고 높이 11m, 폭 4m다.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시운전을 하다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하중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구미보 현장 확인결과, 수문을 지탱하는 3개의 권양대 기둥은 보조지지대로 떠받쳐져 있고 1개 수문은 들어 올려져 있었다. 이 지지대는 1일 새벽 급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낙동강 살리기 현장 방문"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상판은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균열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권일상 감리단장은 "균열은 없다"며 "어제 오늘 시운전하고 내년까지 수문을 들어 올린 채 놔두어야 한다. 지지대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받쳐 놓았다"고 부실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시공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남윤원 부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성상 균열이 간다"면서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균열이 생겼으면 재시공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시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지 않고 보조대를 설치해 시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공기단축을 너무 재촉해 이 같은 부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수의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급하다 보니 설계도면을 일본에서 구매해 한국업체들이 베꼈다"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설계도면도 일본의 20~30년 전의 도면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다 지난 해 연말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이 청와대 오찬에서 "6월말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부담으로 철야작업 등 무리한 시공을 계속해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미보는 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일대에 건설 중이며 총공사비는 1,787억 원이다. 포스코건설이 75% 지분이고 동양종합건설, 동대건설, 진영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보 공정률은 60%이고 전체 공정률은 31%가량 진행한 상태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석간 내일신문 1면 종합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4대강 구미보, 부실시공 의혹제기”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일자 종합면에 “4대강 구미보, 부실시공 의혹제기”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구미보의 상판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균열로 인해 시운전을 중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구미보 균열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4대강 구미보 상판 균열로 시운전이 중단되었다는 의혹(본지 7월 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4대강 구미보 현장소장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본부 재난예방팀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4대강 구미보 현장관리를 총책임지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서상일 현장소장은 구미보 상판에서 시방서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균열이 발견된 바 없으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제3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 역시 구미보 상판에 안전기준 허용치를 넘어서는 균열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8월 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7. 28.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내일신문 : 『‘구미보 균열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30일자 1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13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28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7.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업무 폐지는 복지부가 보편적 연금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등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한 어떠한 방침도 결정한 바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업무 중 일부인 정보화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화를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 : (1)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3일자 1면)

내　용 : 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정반대여서, 노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복지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을 보면, 복지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 방식을 현행 수급

률에서 '선정기준액'으로 바꿔, 2028~2030년께까지 지급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40%로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작성된 이 문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률(노인 인구의 70%) 목표로 운영할 경우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운용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수급률이 40%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하는데, 현재의 수급률(70%)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70만 원 미만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문서의 '추진전략 1단계'에서 "최초 법제화 시점에서 선정기준액을 높여 대상 노인을 확대한 뒤, 장기적으로 수급률을 하락시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진계획에서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리면 당장은 기초연금을 받게 될 대상자가 4% 늘어나지만, 수급률은 장기적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관련 정책연구 및 공론화'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돼 있는데, 연구원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라는 용역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노인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살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라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⑵ 『야당 · 학계 '기초노령연금 축소' 반발』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4일자 2면)

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겨레〉 13일치 1 · 5면)하는 것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학계, 야당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어 "참여정부시절 한나라당 등이 주장해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제

도인데 집권 뒤 재정 문제로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3.3%)의 3배(45.1%)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 등에는 쓸 예산이 있으면서 정작 노후생활 보장에 쓸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은 "지금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9만 원도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용돈 수준인데, 연금 대상자마저 줄이면 노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는 "경제부처 쪽에서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복지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노후의 빈곤 문제를 방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당시 부칙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며 "한나라당의 거부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즉각 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현행 70%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40%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부자정권의 반서민정책이 다시 발동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논평을 내어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2028년까지 급여액을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상향조정도 없었다"며 "법이 규정한 인상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수급률을 줄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3) 『국회 위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결정권 없다면서… 공단 관련업무 멋대로 폐지 추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4일자 10면)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의 업무 조정이나 연금 대상자 축소 등은 국회 권한이라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업무 폐지를 추진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12일 입수한 복지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센터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연금공단에 알렸고, 현재 센터 폐지 작업이 진행중이다. 연금공단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연금공단이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수행하느냐 마느냐는 연금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다. 우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전체 65살 이상 노인의 80~90%까지 확대돼 '보편적 복지'로 갈 경우, 국민연금과 통합돼 연금공단이 관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을 적절하게 조율하려면 두 연금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는 지난 3월 펴낸 '공적노후소득보장 관리체계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보편연금이 될 경우 국민연금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1층(기초노령연금)과 2층(국민연금)의 유기적인 연계는 노인빈곤 대응책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이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로 가게 되면 통합 관리는 어렵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따져 연금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현실적이다. 복지부가 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폐지하려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40%까지로 축소시키겠다는 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공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은 보편적 연금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달리 정치권에선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연금공단으로 넘기고, 연금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미 양승조 · 박은수 ·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고,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연금공단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복지부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에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위탁을 찬성하고 있어 설득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민연금공단 쪽 책임자를 배석시켜 직접 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노조 포함)이 국회와 언론 등 대외 수단을 이용해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공단 이관 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하도록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에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40% 축소 추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사에서는 2010년 7월 13일 기사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추진"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등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한 어떠한 방침도 결정하지 않았으며 본 언론사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사에서는 2010년 7월 14일 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업무 폐지는 복지부가 보편적 연금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국민연금과 위탁된 업무 중 정보화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 문제와 전혀 무관하며 업무의 중복 ·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언론사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나. 내 용 : 7월 13일치 1면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 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사에 언급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은 실무자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대해 어떤 방침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7월 14일치 10면 『국회 위 복지부?』 기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센터 폐지는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공단에 위탁된 업무 중 일부인 정보화 관련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8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

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8. 4.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6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14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33　반론청구
신 청 인 : 강 용 석
피신청인 : (주)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7.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학생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등 성희롱 내지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사내용은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아니한 학생들의 전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허위보도라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중앙일보와 조인스닷컴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중앙일보 :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0일자 20면)

내　　용 : 한나라당 강용석(41 · 마포을) 의원이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 인근 고깃집. 강 의원은 서울 소재 모 대학 남녀 대학생 20여 명과 저녁을 먹었다. 15~16일 이틀간 열린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심사위원을 맡은 국회의원들의 대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당시 동석했던 한 대학생에 따르면 강 의원은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할 때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을 조언해주겠다"며 "못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동석한 대학생의 절반가량은 여학생이었다.

화제가 대학생의 장래 희망으로 옮겨졌다. 강 의원은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특정 사립대학을 지칭하며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리에 있었던 한 학생은 "특정 직업인(아나운서)이 성접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들렸다"며 "제3자인 나도 불쾌했는데 그 말을 직접 들은 여학생은 오죽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자기 계발을 위해 토론대회에 참석했던 것인데 정작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실력이 아닌 외모를 보고 평가했다니 실망스러웠다"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여학생에에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며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옆에 사모님(김윤옥 여사)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강 의원은 이 여학생의 청와대 방문자리에 동석했었다.

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회가 끝난 후 대학생들과 저녁을 먹었고, 지난해 청와대에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현희(여 · 민주당) 의원이 불과 5분 차이로 그 자리에 도착해 계속 함께했다. 전 의원이 알것"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시간 가량 늦게 도착해 강 의원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저녁식사에 곁들이는 정도였고 강 의원 역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동석했던 한 학생도 "전 의원은 한 시간가량 지난 뒤 동석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정하경주(32) 사무국장은 "강 의원의 발언은 성희롱 중에서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왜곡된 성의식에 기초한 그런 발언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는 제헌절을 기념해 매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4명이 심사위원을 맡고 국회의장이 직접 수상한다. 국회 주최 대회여서 대학생 사이에서는 최고 권위의 대회로 꼽힌다. 올해는 3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중앙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2010. 7. 20.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라는 제목으로 지난 20일 강용석 의원은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기사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사내용은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아니한 학생들의 전언을 바탕으로 한 허위 왜곡된 내용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7월 20일자 사회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목의 기사와 관련, 강용석 의원은 당시 학생들과의 모임이 주위가 매우 시끄럽고 산만한 고깃집에서 있었고, 대화가 4인 테이블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며, 문제의 아나운서 발언은 취재 기자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신청인의 발언이라는 부분도 평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며 전후 맥락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8월 2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중앙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24시간 동안 〈조인스닷컴〉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

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상기 보도문을 송고한다.

2010. 7. 29.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1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2

조인스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15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고소한 소위 '신한사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293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통령실
피신청인 : (주)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1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한은행 사태'에 대해 다루면서 금융권의 한 고위 임원의 주장을 인용, 청와대의 민정라인에서 신상훈 사장이 호남 정치인을 후원해 왔기 때문에 차기 신한지주 회장에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라응찬 회장이 신상훈 사장의 제거에 나서게 되었으며, 청와대가 이번 신한은행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신한은행 사태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내일신문 : 『신한사태 출발점 청와대 있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4일자 1면)

내　　용 : 신한은행이 지난 2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전격 고소한 것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청와대 민정라인이 작성해 올린 신 사장 관련 보고 내용을 파악한 데 따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금융권의 한 고위 임원은 13일 "올 2월 라응찬 회장의 4연임이 확정되기 전, 민정라인에서 '신 사장은 오랫동안 호남 정치인들을 후원해 와, 차기 신한지주 회장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을 관련 인사에게서 직접 들었다"면서 "이를 알게 된 라응찬 회장이 후계자로 거론되던 신 사장 제거를 결심한 것이 이번 사태의 뿌리인 것으로 민정측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신한사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촉발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신상훈 사장은 최근 "신한지주와 은행측이 4~5개월 전부터 나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사태가

터진 뒤에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때부터 자신의 행장시절 비서실장 한명이 해외로 발령나는 등 주변 인물들이 정리됐다고 신 사장은 주장했다.

라 회장이 민정측 보고 내용을 알게 된 시점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고서 자체를 부인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그런 식의 보고서를 누가 쓰겠느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민정라인 관계자는 "신한은행 건은 지켜보고 있을 뿐, 우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태 초기부터 '1위(라응찬)와 3위(이백순 신한은행장)가 손잡고 2위(신상훈)를 제거' 하려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라-이측이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절차 없이 급작스레 사건을 터뜨린 데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란 의문이 증폭돼 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3일 국회 예결위에서 "라 회장이 문제의 비자금 50억 원을 재일동포 등 9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감원도 지난해 정기검사때 이를 확인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라 회장을 비호하는 현 권력의 핵심 실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영포라인의 라 회장 비호 및 사태 개입 의혹을 거론했다. 한편, 신 사장은 14일 오후 2시 열릴 이사회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6,6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신한은행측 고소 내용에 대해 "라응찬 회장도 문제의 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다.

신 사장은 이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15억여 원을 내 개인이 썼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당시 자금관리를 했던 비서실장들이 고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사장측 관계자는 "라 회장도 명예회장 자문료를 썼다"며 "필요하면 구체적 사용처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이사회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내일신문 1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신한은행 사태'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4일자 1면 종합면에 "신한사태 출발점에 청와대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신상훈 사장이 호남 정치인을 후원해 왔기 때문에 차기 신한지주 회장에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라응찬 회장이 신상훈 사장의 제거에 나서게 되었다'는 금융권 고위 임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신한지주와 은행측이 4~5개월 전부터 나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사태가 터진 뒤에 알았다'는 신상훈 사장 측의 주장과 라 회장이 민정 측 보고내용을 알게 된 시점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맥락을 같이한다며, 청와대가 금번 신한은행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는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청와대는 신한은행 사태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신한금융사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인 지난 9월 14일자 1면 종합면에 "신한사태 출발점에 청와대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신상훈 사장이 호남 정치인을 후원해왔기 때문에 차기 신한지주 회장에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라응찬 회장이 신상훈 사장의 제거에 나서게 되었다'는 금융권 고위 임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신한지주와 은행측이 4~5개월 전부터 나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사태가 터진 뒤에 알았다'는 신상훈 사장 측의 주장과 라 회장이 민정 측 보고내용을 알게 된 시점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맥락을 같이 한다며, 청와대가 금번 신한은행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청와대는 신한은행 사태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사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10월 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9. 29.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내일신문 : 『'신한금융사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11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4일자 1면에 '신한사태 출발점에 청와대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신상훈 사장이 호남 정치인을 후원해왔기 때문에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라응찬 회장이 신상훈 사장의 제거에 나서게 되었다'는 금융권 고위 임원의 주장을 인용, 청와대가 금번 신한은행 사태의 발단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한은행 사태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와대 민정라인에서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사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사례 16

신청인 기관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영유아식에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97　정정청구
신 청 인 : 식품의약품안전청
피신청인 : (주)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11. 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마케팅 활동애로'를 내세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월 29일 식품첨가물 관련 기준을 고쳐 인체에 유해한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를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식'에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스테비오사이드는 이미 국제적으로 캔디류나 식빵, 유가공품 등 일반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천연첨가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감미료라고 평가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내일신문 : 『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8일자 1면)

내　　용 : 영유아식이나 식빵 등에 사용이 금지됐던 식품첨가물 스테비오사이드가 '마케팅 활동 애로'를 내세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약칭 국경위) 요청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6일 국경위 회의자료인 '제11차 기업현장 애로 개선활동 보고'를 보면 '식품첨가물인 스테비오사이드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마케팅활동에 애로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약칭 식약청)에서 9월 29일 식품첨가물 관련 기준을 고쳐 사용제한 규제를 풀었다'고 적시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설탕보다 200~300배의 단맛을 내는 물질이다. 그러나 유해성 논란 때문에 주류

에는 사용이 허용됐지만, 영유아식 · 식빵 · 유가공품 등에는 사용을 금지해왔다. 또 다른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하며, 극소량이라도 사용하면 반드시 원재료 명칭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스테비오사이드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1996년에는 정부에서 주류에 사용금지를 추진하다가 업계 반발로 무산되는 등 유해성 논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물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10월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1994년 호주에서는 스테비오사이드가 포함된 우리나라 소주를 수입한 즉시 폐기처분했다"며 "당시 호주 정부는 '스테비오사이드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다음 세대에 정신질환이나 지체장애 신체장애 또는 저능아 탄생 위험 우려를 제기할 정도로 유해하다' 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1996년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이를 소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당시 재경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당시 재경위에서 허신행 소비자 보호원장은 "다수 선진국들이 스테비오사이드를 안전성 미확인을 이유로 식품첨가물로 인정치 않고 있고, 특히 유럽연합이 이 성분을 독성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물질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우리도 스테비오사이드를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한 관계자는 "스테비오사이드 사용 규제완화는 식품첨가물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금지됐던 물질이 기업 활동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이 허가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일신문 종합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2010년 10월 28일자 종합면 1면에 『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케팅 활동 애로' 를 내세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9월 29

일 식품첨가물 관련 기준을 고쳐 인체에 유해한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를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29일이 아닌 7월 12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면서 그 중 '일반사용기준'에서 이미 '영유아식'에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스테비오사이드의 '개별사용기준'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식'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서 '영유아식'에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없고, ② 스테비오사이드는 이미 국제적으로 캔디류, 식빵, 유가공품 등 일반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천연첨가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감미료라고 평가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규제를 풀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됐던 물질이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이 허가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테비오사이드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인 JECFA(FAO/WHO)에 의하여 1일섭취허용량(10㎎/kg.bw/day) 이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한 품목으로 평가되었고, Codex,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캔디류, 식빵, 유가공품 등 일반식품에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사실과 다른 기사로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28일자 1면「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제목의 기사에서 스테비오사이드를 영유아식과 식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으나 영유아식에는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빵 등에 사용이 허가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현재까지 스테비오사이

드의 유해성이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11월 30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내일신문 2010년 11월 19일자 2면 기사의 부제목("영부인 문제, 국민정서상 역풍 맞을 수 있어")과 동일한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지면에 기사를 게재한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내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상기 보도문을 송고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1. 25.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①

내 일 신 문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②

인터넷 내일신문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③

인터넷 내일신문 : 조정대상보도 하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17

연평도 사태 피난 아동들에 대한 인천시의 무상지원이 민간 기부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면서도 인천시장인 신청인이 마치 자신이 사준 것처럼 생색을 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59　정정청구
신 청 인 : 송 영 길
피신청인 : (주)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12.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송영길 인천시장이 연평도 학생들에게 옷가지를 사주면서 기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송 시장이 기부금을 갖고 생색을 낸 것처럼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옷가지를 지원하도록 한 시점은 옹진군이 민간인 기부자에게 기부금으로 학생들에게 옷가지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날보다 하루 전이었고, 따라서 자신은 민간인 기부자의 기부사실과 대금지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사실이어서 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사자 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동일기사를 전재한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정정청구(2010서울조정1560)를 제기했으나 위 사건과 병합심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기부자 따로 있는데… 생색낸 송영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일자 A10면)

내　　용 : 송영길 인천시장이 기부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연평도 학생들에게 옷가지를 사준 것처럼 기부금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 유용 비리로 기부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자를 알리지도 않고 선심 쓰듯 기부금을 쓴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의 인천영어마을에는 지난달 29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영어캠프에 참가중인 연평도 학생들이 저마다 새 점퍼와 운동화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차○○(13)군은 "어제 7만원짜리 운동화를 (송영길) 인천시장님이 사주셨다"고 자랑했다. 추○○(13)군은 "11만원짜리

운동화와 두꺼운 점퍼를 사주신 시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

연평도 학생 107명은 30일 오후 관광버스 3대에 나눠타고 인천시내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점퍼, 바지, 운동화 등 1인당 20만원어치 쇼핑을 했다. 이날 오전 영어마을을 찾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 등의 의류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이 사진까지 찍은 뒤였다. 영어마을 관계자는 "학생들이 옷과 신발을 사준다는 말에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며 "시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운동화와 점퍼는 외과 전문의 이상달(46)씨가 옹진군청에 5,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사주게 된 것이다. 이씨는 "20년 전 연평도에서 공중보건의로 있을 때 알고 지냈던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찜질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지난달 29일 기부의사를 밝혔다. 연평도에서 화염에 그을린 소주병을 보고 "이거 진짜 폭탄주네"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송 시장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4일 만에 글을 올렸다. '영어마을에 들러 연평학생 106명을 격려했습니다. 씩씩하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 옷과 신발을 사줄 계획입니다.' 인천시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는 연평도 초 · 중 · 고교생 107명에게 개인별 취향을 반영하여 3종(점퍼, 바지, 운동화)의 의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는 '인천시가 연평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의류를 지원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던 이씨에게 1일 오전 옹진군청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신세계 백화점의 계좌번호가 적인 이메일에는 학생들의 의복 구입 대금 2,8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써 있었다. 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이씨에게 필요한 물품을 정리해 보내온 1,492만 원어치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었다. 나머지 2,200만 원을 기부하기 위해 1일 오후 옹진군청을 찾은 이씨는 "할인마트에서 샀으면 더 많은 물품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비싼 백화점에 갔는지 모르겠다"며 "누가 준 것으로 하든 어차피 아이들에게 쓰였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조금은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청은 1일 "옹진군 예산으로 의복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확인해보니 개인 독지가가 기부를 한 것이 맞다. 옹진군청과 혼선이 있었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이어 옹진군청은 1일 오후 늦게 이씨가 2,200만 원과 2,800만 원 상당의 의복을 기부했다는 보도자료를 급히 냈다. 또 송영길 시장은 "(인천)시가 기획을 하면 옹진군청이 집행을 하는데, 기부금이 쓰였다는 건 나도 전혀 몰랐다"며 "당연히 시에서 할 거였는데 이상한 상황이 됐다. 돈 3,000만 원 가지고 생색내려 한 건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송영길 인천시장, 기부금 생색 기사 사실과 달라

2. 내 용 : 본 신문 12월 2일자 A10면에 실린 "기부자 따로 있는데… 생색낸 송영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본지 기사의 첫 머리인 "송영길 인천시장이 기부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연평도 학생들에게 옷가지를 사준 것처럼 기부금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대목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 유용 비리로 기부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자를 알리지도 않고 선심 쓰듯 기부금을 쓴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작성한 잘못된 보도입니다. 송 시장이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11월 30일이었고, 옹진군이 민간인 기부자에게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옷과 신발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그 다음날인 12월 1일이었으며, 송 시장은 민간인 기부자의 기부행위와 대금 지급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치 송 시장이 민간인의 기부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으로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하고, 시장 개인이 생색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송 시장의 명예를 훼손시킨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이 사실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나. 사건 · 사고 관련분야

사례 18

형사고소사건의 담당형사인 신청인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안 될 땐 쌍방과실이 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경기조정1　반론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주)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형사사건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 사건담당 형사인 신청인이 조사 당시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합의가 안 될 땐 쌍방과실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었으며, 폭행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신청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피고소인 4명에 대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으며, 진단서 접수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중부일보 : 『"경찰이 합의 종용...진단서 제출도 거부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22면)

내　　용 : 경찰이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진단서 제출도 거부하는 등 편파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홍 모(49 · 여) 씨는 지난달 27일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홍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 음식점의 초교 동창모임에서 이 모(50 · 여) 씨 등 동창생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것.

홍씨는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보름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며 고소장을 제

출했다. 하지만 홍씨는 "경찰이 조사 때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합의가 안 될 땐 쌍방과실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줬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필요 없다' 고 증거자료 제출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담당 경찰은 '내가 성질이 대단한 사람' 이라며 윽박지르고 첫 조사 때부터 피고소인 측과 대질을 벌이는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형사는 "홍씨의 처벌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감정문제로 형사처벌할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또 진단서를 제출하면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 홍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원 남부경찰서 김○○ 형사과장은 "양측 입장을 듣고 사건을 좀 더 알아본 뒤 문제가 있을 땐 내부감사를 통해 진상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현재 피고소인 3명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중부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중부일보 인터넷뉴스(http://www.joongboo.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경찰이 합의 종용..진단서 제출도 거부했다")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경찰이 합의 종용... 진단서 제출도 거부했다"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23일자 사회면에 "경찰이 합의 종용... 진단서 제출도 거부했다"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홍 모(49세, 여) 씨가 제출한 공동폭행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 때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합의가 안 될 땐 쌍방과실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줬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필요 없다' 고 증거자료 제출도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담당 경찰은 "내가 '성질이 대단한 사람' 이라며 윽박지르고 첫 조사 때부터 피고소인 측과 대질을 벌이는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은 사전에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함께 조사를 받았던 이모 씨 등 피고소인 3명도 고소인이 진단서를 제출하려 한 사

실이 없었고 합의하라고 윽박지른 사실이 없으며 편파수사 없이 친절 공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중부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23면)

내　　용 : 본보가 지난달 23일자 22면에 '경찰이 합의종용… 진단서 제출도 거부했다' 란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관련 수원남부경찰서측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4명에 대해 합의종용 및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겁을 준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언쟁 중 윽박지른 것이 아닌 조용히 해달라고만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관련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고소인의 편의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첫 조사 때 고소인측과 대질을 벌인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수사절차를 무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사례 19

신청인이 칸첸중가 등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60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은 선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내 일부 산악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여성 최초로 해발 8,000미터 이상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도전하고 있는 신청인이 히말라야 칸첸중가 정상에 올랐음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아 정상 등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신청인은 국내 일부 산악인에 의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외국 산악계도 '정상이 아니라고 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정상등정 기록을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 : 『오은선 씨 히말라야 등정 성공 의혹제기,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4일자 10면)

내　용 : 여성 최초로 해발 8000m 이상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도전하고 있는 산악인 오은선(43)씨가 앞서 등정에 성공했다고 밝힌 13좌 가운데 한 봉우리는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내외 산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히말라야 고산을 올랐던 산악인들은 23일, 오씨가 히말라야 칸첸중가 정상에 올랐음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칸첸중가는 해발 8586m로 세계에서 셋째로 높은 산인데, 오씨는 지난 5월 6일 이 산 정상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의 출발점은 오씨가 공개한 '정상사진' 이다. 이 사진으론 이곳이 칸첸중가 정상인지 알 수 없다. 남선우 한국등산연구소장은 일반론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정상임이 인정되는 사진을 찍

는 것은 정상 등정 행위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며 "통상 정상에서 보이는 다른 고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전에 올랐던 다른 산악인이 꽂아 놓은 깃발 등 인공 흔적을 찍어 정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칸첸중가의 경우, 보통 정상에서 서쪽에 있는 얄릉캉 봉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 기상악화로 시야가 극히 불투명해도 정상 등정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산악인들은 전했다.

8,000m급 봉우리를 여러 번 올랐던 산악 잡지 〈사람과 산〉의 박기성 전 편집장은 "날씨가 좋지 않아 배경이 안 보이면 이전에 정상을 밟은 이들이 남겨 놓은 깃발, 또는 본인의 고도시계에 나타난 고도를 찍어도 된다"고 말했다. 자동 고도가 기록되는 지피에스(GPS)를 휴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상 사진이 없을 때는 등정 당시의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판단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씨의 등반 과정이 이전의 등정자들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칸첸중가에 오르기 전, 오씨는 오씨를 촬영하던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해발 8,000m 지점에서 마지막 모습이 촬영됐다. 이때가 당일 오후 2~3시께였다. 곧이어 산 뒤편으로 사라진 오씨는 오후 5시 40분 "베이스, 베이스 정상에 섰습니다"라고 무전으로 알려왔다. 정상까지 최대 3시간40분이 걸린 셈이다. 오씨는 당시 산소통을 메지 않고 '무산소 등정'을 했다고 밝혔다. 두 지점 사이는 거대한 암벽이 버티고 있는 난코스로, 산악인 박영석 씨는 1999년 산소통을 메고도 이 구간을 5시간 걸려 통과했다. 오씨보다 며칠 뒤 이 봉우리에 오른 세계적 여성 산악인 에두르네 파사반은 오씨와 같은 무산소 등정으로 10시간이 걸려 정상에 올랐다.

2000년 칸첸중가에 오른 엄홍길 씨는 "등반은 해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전 상황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칸첸중가 등반 경험이 있는 여러 산악인들은 "등반 기록을 볼 때, 오씨는 마지막 전진캠프인 '캠프4'에서 출발해 마지막 망원 관찰 지점(해발 8000m)까지 가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미뤄 많이 지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거기서 정상까지 남들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이는 '정상 사진'과 관련해 오은선 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날 날씨가 흐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앞서 가던 셰르파가 '여기가 정상'이라고 말해, 지쳐 있던 나는 '그냥 여기서 사진을 찍자'면서 정상보다 5m 아래, 10m 보다는 위 지점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오씨의 소속사인 블랙야크 관계자는 "네팔 정부가 발급한 등정증이 올라갔다는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리 쪽 기록에는 8,000m 지점에 도착한 것이 오후 2시로, 정상까지 가는데 3시간 40분이 걸렸다"며 "다음날 3일 공식 보고회를 열어 칸첸중가 등 올해에 오른 4좌 등정에 대해 설

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오은선 씨 히말라야 등정 성공 의혹제기,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 관련 정정 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4일자 사회면에 "오은선 씨 히말라야 등정 성공 의혹제기,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산악인 오은선 씨의 칸첸중가 등정 성공에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오은선 씨가 여성 산악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미터 13좌등정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한겨레 : 『"칸첸중가 등정에 성공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29면)

내 용 : 〈한겨레〉는 지난해 11월 24일 10면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오은선 본인의 칸첸중가 등정 성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기사에선 의혹의 근거로 마지막 관찰지점인 해발 8000m에서 정상까지 너무 적은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지점은 해발 8400m의 '손톱바위' 부근으로, 여기서 정상(8586m)까지 약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정상 사진도, 당시 심한 화이트아웃으로 몇 미터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였기에 정상 주위의 바위를 배경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이트아웃 상황에서는 등반가의 안전을 위해 정상 부근의 촬영도 인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본인의 등정 당시 정황을 들어 의혹을 제기한 박아무개 씨는 1999년 칸첸중가에 오른 사람으로, 히말라야는 매년, 매일, 매시간 변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기억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겨레는 또 12월 4일 10

면 '의혹만 키운 기자회견'이라는 기사에서 정상에는 산소통이 없었다는 본인의 말에 대해, 5월 18일 칸첸중가를 올랐던 김아무개 씨의 정상 사진에는 산소통 두 개가 놓여 있었다며 또 다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상의 산소통은 본인이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등정한 인도팀과, 본인 직후 그리고 김아무개 씨보다 한 시간 앞서 등정한 노르웨이팀도 "정상에서는 산소통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부 산악인에 의해 제기된 본인의 등정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외국 산악계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정상 등정 기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선/산악인

사례 20

사회복지재단의 간부인 신청인이 구청으로부터 수탁관리, 운영해오던 자활센터를 통해 거액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부산조정1 · 2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박 ○ ○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피신청인 : 부산일보(주)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1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재단이 1997년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해오던 자활센터 소속 사업단 2곳이 2001년 말부터 J전기로부터 차단기 조립 관련 물량을 수주 받아 납품하던 중 2002년 6월경 J전기가 센터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거래를 끊고 S전기와 거래를 해왔으며, J전기와의 거래기간 동안 J전기가 매월 최소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을 감안할 때 센터실장 P씨가 10억 원 이상의 액수를 횡령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사단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P씨로 적시된 신청인은 재단이 J전기와 직접 거래한 적은 없었고, 처음부터 S전기와 거래를 해왔으며, J전기가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사업단의 수익금은 월 200~400여만원에 불과하며, P씨의 횡령의혹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부산일보 : 『자활센터 횡령 알고도 '쉬쉬'』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8일자 6면)

내　　용 : 한 복지재단 간부가 구청으로부터 수탁관리 · 운영해오던 자활센터를 통해 3년여 동안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전개 과정=사회복지 관련 일을 수행하는 E재단은 1997년에 부산 D구청으로부터 종합복지관과 자활센터(이하 센터) 관리운영권을 수탁했다. 이 센터 소속 사업단 중 2곳은 2001년말부터 J전기로부터 차단기 조립 관련 물량을 수주받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6월께 J전기가 센터에 세금계산

서를 요구하자 센터는 사업자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 등으로 S전기를 통해 납품하겠다고 통보했다. S전기는 당시 센터 실장이었던 P(51)씨의 부인 L(46)씨의 명의로 그해 7월에 급조된 개인사업체였다. J전기로부터 물량을 수주받은 S전기는 차단기 조립 사업단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일을 진행시켰다. S전기와 사업단 사이에는 단가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단은 S전기가 책정한 단가에 맞춰 납품했다.

2001년 말부터 2004년 말까지 P실장은 사업단의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400만 원을 적립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참여자 월급을 제외한 월 수익금이 1천500만 원에 이르고, J전기가 매월 최소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 기간동안의 수익금은 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P씨는 자활 사업단의 인력과 설비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셈이어서, 인건비와 설비비를 포함하면 횡령액이 1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익금 적립액이 턱없이 적어 당시 사업 참여자들 가운데 자립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업단에서 일했던 A(50)씨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먹듯이 했다"면서 "횡령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그저 군말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허술한 관리 및 조치=뒤늦게 관련 사실을 파악한 관할 구청은 2005년 3월께 재단에 감사를 요청했고, P실장은 퇴직했다. 구청은 그러나 수년간 감사를 실시했으면서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고 횡령한 수익금을 환수하지도 못했다.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자활 담당 공무원이 1~2년새 여섯차례나 바뀌는 바람에 횡령 사실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고, 관련 규정상 사업단의 관련장부나 작업일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재단 전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부산일보의 제1면의 위치에 아래 정정보도문을 2009. 12. 8.자 『자활센터 횡령 알고도 '쉬쉬'』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제1항과 동시에 인터넷신문 'http://www.busan.com'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자활센터 횡령 알고도 '쉬쉬'』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라.

3.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안에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

5.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09. 12. 8.자 6면에서 윤○○ 기자 작성의 「자활센터 횡령 알고도 '쉬쉬'」 제목의 기사, 2009. 12. 14.자 18면에서 윤○○ 기자 작성의 「자활센터 횡령 전면 재조사」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E재단이 1997년에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수탁관리 운영해오던 종합복지관 소속 자활센터(이하, 센터)의 소속사업단 2곳이 2001년 말부터 J전기로부터 차단기조립 관련 물량을 수주받아 납품하던 중 2002년 6월경 J전기가 센터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센터는 사업자등록이 안됐다는 이유 등으로 S전기를 통해 납품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J전기가 센터와 직접 거래를 한 적은 없었고, 처음부터 S전기와 거래를 해왔으며, 센터는 2001년 말부터 S전기와 거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01년 말부터 2004년 말까지 사업단의 월 수익금이 1천5백만 원에 이르고 J전기가 매월 최소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을 감안했을때, 이 기간동안의 수익금은 7억여 원에 달하고, 센터실장 P씨가 횡령한 액수가 1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으나, 사업단의 월 수익금은 월 200~400여만원에 불과했으며, J전기가 단 한푼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기간동안의 수익금이 7억여 원에 달한다거나 P씨가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

나.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12월 8일자 6면에 『자활센터 횡령 알고도 '쉬쉬'』 제목의 기사, 2009년 12월 14일자 18면에 『자활센터 횡령 전면 재조사』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E재단

이 1997년에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수탁관리 운영해오던 종합복지관 소속 자활센터(이하 센터)의 소속사업단 2곳이 2001년 말부터 J전기로부터 차단기조립 관련 물량을 수주받아 납품하던 중 2002년 6월경 J전기가 센터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센터는 사업자등록이 안됐다는 이유 등으로 S전기를 통해 납품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으나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01년 말부터 2004년 말까지 사업단의 월 수익금이 1천5백만원에 이르고 J전기가 매월 최소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 기간동안의 수익금은 7억여 원에 달하고, 센터실장 P씨가 횡령한 액수가 1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일보 오피니언란에 2단 크기로 게재하되,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1

부 산 일 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14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2

인터넷 부산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21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경찰에 고발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 2010전북조정2　추후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주)전북일보사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수업시간 중 학생을 상대로 싸움을 부추기고 벌을 서고 있는 학생을 때리거나 욕설을 일삼는 교사를 피해학생의 삼촌이 경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해당 교사인 신청인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관련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즐거운생활 교과시간에 태권도 겨루기 게임을 한 것일 뿐 싸움을 부추긴 적이 없고,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대한 사실도 없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함께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후속보도를 속보형식으로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 한편 신청인은 전북일보의 인터넷판 기사에 대해서도 추후보도청구를 제기(2010전북조정3), 인터넷 전북일보에 동일한 내용의 후속보도가 게재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전북일보 : 『"선생님이 학생싸움 부추기며 욕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4일자 6면)

내　　용 :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며 교사를 경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과 해당 교사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무주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J 모 양(8)과 언니(12)는 지난 9일 집을 찾아온 삼촌 J 모 씨에게 "담임 선생님이 같은 반 학생들끼리 싸우라고 시키고 욕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쏟아내는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J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전교생이 12명으로 세 학급이 전부인 B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2학년과 6학년, 3학년과 5학년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다. 삼촌 J씨는 "6학년인 언니가 지각을 하자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 2학년인 동생에게 때리라고 시키면서 '천천히 때리면 다시 때리라고 할테니까 한 번에 세게 때리라' 고 말했고, 친구들끼리도 '싸워서 이기면 대장이고 지면 졸병' 이라며 싸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의자를 들고 벌을 서는 학생을 때리고 오라고 다른 학생에게 시키는가 하면, 말이 어눌한 아이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담임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J씨는 지난 10일 담임 교사 A씨(35)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교사 A씨와 학교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A교사와 교장은 "매주 월요일 태권도 수업 시간에 대련을 시킨 것을 아이들이 오해한 것이며, 수업 시간에 40여 분 지각한 J양을 장구채로 손바닥 몇 대 때린 것이 체벌의 전부"라며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J양 자매가 당시 상황을 잘못 전달한 것이며, 삼촌 역시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먼저 담임 교사와 학생 측의 이야기를 토대로 무주 교육청의 실사를 거쳐 진위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적절한 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전북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1. 제 목 : "무주 B초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 학생싸움 부추기며 욕설 등 무혐의로 밝혀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4일자 사회면에 "선생님이 학생싸움 부추기며 욕설"이라는 제목으로 무주 B초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싸움을 시키며 욕설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인 6학년 주모 양 사실확인서 진술 결과 즐거운생활 교과시간에 태권도 겨루기 게임을 한 것이었고, 학생들에게 욕설과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학대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피해학생들의 삼촌이 담임교사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자 본교에 다니는 6

학년, 2학년인 조카들과 6학년 조카 친구 주 모 양에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토록 시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무주 B초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2010년 01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전북일보 : 『"교사가 학생 싸움 부추긴다" 돈노린 거짓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6면)

내 용 : 속보=수업시간 중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싸움을 부추기며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다며 학생의 삼촌이 교사를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09년 10월 14일 6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삼촌 J씨가 무주의 한 초등학교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씨는 "A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각을 하자 같은 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세게 때리라고 하는 등 학생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말이 어눌한 아이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등 학생을 학대한다"며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J씨가 돈을 노리고 조카 등에게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거짓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교사와 관련한 신고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A교사는 "농촌학교에서 학생들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그릇된 주장과 신고로 학교 교사들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 22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으로 어느 입시생이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했다고 보도했으나, 사건 당일 열차 운행은 조기 정상화되었으므로 학생의 지각과는 무관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331 · 332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피신청인 : (주)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1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철도파업으로 인해 임시로 투입된 대체인력 군 기관사가 구로역에서 사고를 내 인천과 수원발 청량리행 모든 열차가 40~60분가량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서울대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7시에 소사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한 학생이 면접시간에 늦어져 대학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소사역의 경우 7시를 전후해 철도가 정상화되었고, 서울대 면접 입실시각은 8시 15분인 반면, 해당 학생이 소사역에서 전동차를 탄 시각은 7시 41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학생이 면접시간에 늦어진 것은 철도파업이나 구로역 사고와 관계가 없다며 정정보도와 2백5십만 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정정보도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이 사안은 자동 소제기되었으며, 법원의 1심 재판결과 정정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손배청구는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동일기사를 게재한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를 상대로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2010서울조정333 · 334 사건)했고, 위 사건과 병합심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결과는 위사건의 결과와 같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 이다.

조정대상보도

중앙일보 :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4일자 1면)

내　　용 : "그날 아침 열차만 멈추지 않았더라면…." 경기도 시흥시 소래고등학교 3학년 이○○(18)

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탄했다. 그는 철도파업으로 대학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군은 27일 오전 7시 소사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렸다. 서울대농생명공학과의 2차 전형인 면접을 보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는 1차전형을 통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10분, 20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열차가 오지 않았다. 그때 '구로역 전동차 사고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구로역의 이날 사고는 철도 파업 이틀째를 맞아 투입된 대체인력인 군 기관사가 구로역의 지리를 몰라서 생겼다. 이 때문에 인천과 수원발 청량리행 모든 열차가 40~60분가량 지연됐다.

이군은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부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군 부모는 아들을 배웅한 뒤 각자의 일터로 나선 뒤였다. 이군 어머니는 "서울대에 전화했는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꼭 9시까지 와야 한다고 하더라"며 야속해했다. 아들에게 전화해 침착하라며 버스를 타라고 일렀지만 쿵쾅거리는 마음을 다잡기는 어려웠다.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린 버스 승강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이군은 서너 대의 버스를 놓친 뒤 가까스로 서울대에 도착했다. 9시20분이었다. 면접은 불허됐다.

이군이 서울대 진학에 매달린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다. 서울대에 진학해야 시흥시가 주는 입학금과 4년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현재 다른 명문 사립대 기계공학과 특별전형도 통과했지만 입학금(800만 원)과 매학기 등록금(600만 원) 때문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래고 홍원표 교장은 "○○이는 자연계열 전교 1등으로 면접만 봤다면 서울대 입학은 문제없었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에 이군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군 부모는 "남들은 다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는데 형편이 어려워 혼자 전철을 태워 보낸 못난 부모가 죄인"이라며 가슴을 쳤다. 이군은 "그날 아침 멈춘 열차로 내 인생도 멈춘 듯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8일 만인 3일 파업을 접었다. ○○이는 대학의 꿈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중앙일보 1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합원 1인당 100원씩 2만 5천명 분으로 총 2백 5십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철도파업과 소래고등학교 이○○ 군의 서울대 면접 지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4일 기사에서 "파업으로 열차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는 제하에 '철도파업으로 투입된 대체인력 군 기관사가 구로역에서 사고를 내' '인천과 수원발 청량리행 모든 열차가 40-60분 가량 지연됨으로써' '소래고등학교 이○○ 군이 9시까지인 서울대 면접이 불허되어' 결과적으로 "철도파업으로 대학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사역은 7시를 전후해 전동차가 정상운행되고 있었고, 서울대 면접실 입실시각은 8시 15분이었으며 이○○ 군은 소사역에서 7시 41분 전동차를 탄 것이 확인되어 철도파업이나 구로역 사고와는 관계없이 면접시각에 이미 늦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 보도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사과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 (주)중앙일보사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별지]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20분 늦게 도착, 서울대 면접 볼 기회")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인스닷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별지] 보도문의 제목을 1일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별지] 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을 이 사건 보도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1,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5.

〈별 지〉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본지는 2009년 12월 4일자 1면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제하의 기사에서 '소사역에서 7시에 전철을 기다리던 학생이 구로역 사고로 9시까지 입실해야 했던 서울대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당시 학생은 소사역이 아닌 부천역에서 7시20분을 전후해 전철을 기다리다가 7시 30~40분 사이 지하철을 탄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수험생이 서울대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한 것과 철도노조 파업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 23

신청인이 소속된 '우리법연구회'가 결성된 이후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408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형 배
피신청인 : (주)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2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법원 내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다루면서 이 단체가 1988년 '제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결성된 이후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장이었던 신청인은 우리법연구회는 5집에 걸쳐 논문집을 발간했는데, 그 속에는 발표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회원이 참관한 가운데 수차례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홈페이지에 창립 이래 지금까지의 활동내역과 최근 세미나 발표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우리법연구회장 "비밀단체 아니야… 해체 안할 것"』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10면)

내　　용 :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최근 법원 사태의 와중에서 제기된 해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사법시험 31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우리법연구회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 올해 안으로 논문집을 내고 회원 명단도 공개할 것"이라며 해체 요구를 일축했다. 오 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해체 요구 등) 외부 논의에 완전히 귀를 닫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급하게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회원 120여 명 중 15명가량이 참석했으나, 회의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결성된 이후로 회원 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가 이 모임 소속 판사 명단 129명의 이름과 소속을 폭로하자, 지난 연말 총회에서 회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누가 탈퇴했고 누가 입회했는지는 여전히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이 사법연수원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사법시험 28회)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해체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판사는 최근 논란이 된 '튀는판결'의 상당수는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된다고 해도 권력자가 관심을 갖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우리법연구회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2일자 사회면에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결성된 이후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우리법연구회는 논문집을 5집까지 발간하였고, 그 속에는 발표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9. 10. 10., 2008. 9. 27., 1998. 11. 21.을 포함하여 비회원이 참관한 가운데 여러 차례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www.urilaw.co.kr)에 창립 이래 지금까지 활동 내역과, 최근 세미나 발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2010년 2월 22일자 A10면 『우리법연구회장 "비밀단체 아니야… 해체 안할 것"』 제하 기사에 대해 이 모임 전 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10일에 공개세미나를 개최한 일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3월 25일자 조선일보 2면에 게재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한다.

2010. 3. 23.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24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대전조정19 · 20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주)대전일보사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3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자살한 원인이 당시 경찰이 진행하고 있던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자살한 교수의 유족인 신청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살한 원인은 개인적인 채무문제와 우울증 때문이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아버지는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며 정정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유감을 포함한 정정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대전일보 : 『대학병원 교수 자살 왜?』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1면)

내　　용 : 〈속보〉=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을 놓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밝혀진 것이 없지만 공교롭게도 경찰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맞물리면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대전 모 대학병원 A교수가 병원 내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역 의료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와의 관련성에 의문을 품는 등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 확대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근거 없는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교수의 자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A교수는 이 대학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구매를 결정하는 약사위원회(Drug Committee)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리베이트와의 관련 소문이 확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A교수의 지인이자 직장 동료인 B교수는 "A교수가 개인 채무와 리베이트 조사 문제로 괴로워하다 자

살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자살 사건이 맞물려 일어나면서 병원은 물론 지역 의료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A교수가 병원에서 처방약 목록을 결정하는 약사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소문이 더 확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리베이트 수사가 확산돼 지역 의료계가 홍역을 치를 수도 있어 관련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그러나 A교수의 자살과 리베이트 조사의 관련성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학병원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교수가 4개월여 전부터 개인 채무 문제로 괴로워했다"며 "리베이트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병원 동료인 C교수도 "우리 병원은 다수의 교수 및 약사 등이 참석, 심의를 거쳐 의약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약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약품 구매 입찰 선정 과정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항간의 소문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A교수의 인품까지 거론하며 리베이트 관련성 여부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대전시의 사회 관계자는 "A교수는 평소 강직하고 긍정적이었다. 리베이트와는 전혀 무관할 것"이라며 "순수하게 금전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학병원장은 "유가족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때에 근거도 없이 리베이트 수사 관련성을 제기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명망가인 대학교수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주에는 서울 모 대학병원 교수가 신변을 비관, 병원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 유명 사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대전일보 1면에 상자기사로 아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대학병원 자살교수 의약품 리베이트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2. 내 용 : 본사는 지난 3월 1일 모 대학병원 A교수가 자진한 사건에 대해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와의 연관성을 제기하였지만 A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교수의 유가족과 병원 측에 따르면, 교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채무문제 및 우울증 등의 원인으로 자살을 택한 것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최근 이 지역의 경찰 리베이트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유족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3월 1일자 1면 "대학병원 교수 자살 왜?"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 모 대학병원 A교수의 자살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A교수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유족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2010년 4월 23일까지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부제목(경찰 리베이트…)크기로, 조정대상기사의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4월 23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네이트닷컴측에 조정대상기사는 4월 19일에, 정정보도문은 전송시점부터 1주일 게재 후 삭제토록 한다.

5. 신청인 및 가족일동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4. 16.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대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3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25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 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693 정정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주)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3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검찰이 보람상조와 그 계열사에 대해 벌인 압수수색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 의정부의 보람병원이 보람상조의 계열사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람병원은 보람상조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보람상조 계열사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피신청인의 조정대상기사를 전송받아 게재한 네이버와 네이트, 다음 등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 해당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게재 받았다.

조정대상보도

뉴시스 :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내　용 : 부산지검 특수부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보람상조 본사와 의정부 보람병원 등 16개 계열사와 이 회사 대표인 최모 회장(52)의 부산 남구 용호동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회사 대표가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 회장은 현재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와 보람상조개발 · 보람종합건설 등 16개 계열사를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이 맡긴 돈으로 호텔을 사들이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금액만 최근 몇년 사이 1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람상조 그룹은 회원 수만 75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업계

로 알려지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뉴시스(http://www.newsis.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정정보도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30일자 사회면에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의정부 보람병원이 보람상조의 계열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보람병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은 보람상조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재활전문병원일 뿐 보람상조의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뉴시스 : 『[바로잡습니다]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내 용 : 지난달 30일자 뉴시스 사회면에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 의정부 보람병원이 보람상조의 계열사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보람병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은 보람상조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중인 재활전문병원으로 보람상조의 계열사가 아님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례 26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부당청구 조사대상을 전체 병원과 약국으로 확대한다면 환수금액이 지금보다 10배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805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대한의사협회
피신청인 : (주)한국경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4. 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전국 병원이나 약국 중 1%인 850여 곳을 대상으로 환수한 부당청구 의료비가 45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만일 조사대상을 전체 병원이나 약국으로 확대한다면 4조 5천억 원의 부당청구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건보재정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대상 1%에 해당하는 요양기관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곳들이 아니라 그 동안의 진료비 청구 패턴 분석결과 문제소지가 있는 곳들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단순 산술계산을 통해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환수금액도 10배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보도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국경제 : 『"올해만 2조원 적자..." 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14면)

내　　용 : "내년 건강보험 대규모 적자를 막으려면 최소 보험료 9.1%를 인상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작년 지출이 수입보다 3조 원가량 많았다. 이대로면 건보제도 근간이 흔들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료를 4.9%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군불지피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공단의 행보가 수상쩍기 때문이다. 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이 지난 10일 9.1% 인상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낸 지 닷새 만인 15일 공단은 "지출액(보험급여비)이 수입액(보험료부과액)보다 3조 8,000여억 원 많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라는 지적이다.

◆내년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되나?

2008년 1조 3,000여억원의 흑자를 냈던 보험공단은 작년 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1조 8,000억~2조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올 1월 적자폭은 2,268억 원.이는 한 해 2조 5,700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002년의 1월 적자폭 2,444억 원과 엇비슷하다. 작년 21만여 명의 만성질환자 등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데다 심장질환자 및 암 · 혈관질환자 등의 본인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지출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험공단은 통상 건강보험료를 1% 인상하면 보험료 수입이 3,000억 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상 적자 1조 8,000억 원을 보전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보험료를 6% 올리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점을 찾는다. 하지만 지출부문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9%를 인상해도 3,000억 원 이상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입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자. 연구원은 2010~2030년 중 · 장기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전망하면서 건보료가 4.9% 인상된 2010년에는 건보수입 37조 9,593억 원, 지출 34조 8,936억 원으로 2조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치(1조 8,000억 원)와 엇비슷하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보험료를 9.1%로 인상해야 총 지출 38조 3,401억 원, 총 수입 37조 9,593억 원을 기록해 당기수지를 적자 3,809억 원 수준에 겨우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혜택자가 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장기적인 수지균형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결국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 올 11월께 결정하겠지만 대폭 인상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왜 보험료 인상에만 매달리나?

보험공단은 매년 전국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비 450억 원 정도를 환수하고 있다. 전국 8만 5,000여 곳의 병원과 약국 중 1%를 대상으로 거둬들인 돈이다. 매년 8만 5,000곳을 모두 조사한다면 4조 5,000억 원의 부당 의료비 환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10년이면 45조 원이 쌓여건보재정의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8만곳이 넘는 병원과 약국을 일일이 조사할 인력이 부족하고 저항이 만만찮은 병원과 약국에 대한 조사권도 없어 매년 1%(850여 곳)를 대상으로 부당의료비를 환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고가 무좀약을 집중 처방하거나 서울 거주자가 전라도에서 진료받는 등 부당청구사례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 뻔히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 이라며 "부당청구의료비만 제대로 징수해도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행

위별 수가제도 건보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진료행위 하나 하나마다 일정한 값을 정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된 의료비 지불 방식이다. 보험공단측은 "한국에선 똑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간 진료비가 4배 차이 나기도 한다"며 "선진국처럼 동일진료에 대해선 모든병원의 진료비가 같도록 총액제로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국경제신문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올해만 2조 원 적자...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6일자 14면에 "올해만 2조 원 적자... 건보료 대폭 인상 '군불때기'"라는 제목으로 "건보공단이 매년 전국 요양기관 85,000곳 중 1%를 대상으로 부당청구 의료비 450억 원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8만 5,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4조 5,0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고 10년이면 45조 원이 쌓여건보재정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기사내용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배경지식과 명확한 이해 없이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따라 작성된 기사입니다. 건보공단의 조사대상 1%에 해당하는 요양기관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곳들이 아니라 그동안의 진료비청구 패턴 분석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기관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조사대상을 모집단 전체로 확대할 경우 환수금액도 10배가 될 것이라는 논리는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부당금액이라고 하여 환수하는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당'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경우가 부도덕한 불법행위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단순한 입력 착오나 산정기준 불일치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 기사가 게재되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림

나. 내 용 : 본지 지난 3월 16일자 14면 『"올해만 2조원 적자…" 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의 1%를 조사하여 450억 원의 부당청구의료비를 환수한 것을 전체 의료기관에 일반화하여 4조 5천 억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류임을 알려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4월 21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경제〉의 통상적인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4월 21일까지 〈한경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해당 보도문을 송고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다.

2010. 4. 15.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①

한국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15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②

한경닷컴 : 『[알림] '올해만 2조원 적자…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기사 오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27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77 · 1178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주)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희대 음대의 모 교수가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였고, 심지어 여학생 2명과 학교 근처의 모텔에 출입까지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해당 교수로 지목된 신청인은 기사에서 언급된 장소에서 한 신청인의 언행에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으며, 여학생과 모텔에 출입하였다는 내용 역시 교수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기사를 게재한 디지틀조선일보와, 피신청인으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이를 게재한 네이버, 네이트 등을 상대로도 동일한 청구를 제기했으며, 심리결과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경희대 음대 교수가 여학생들 상습 성희롱"』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4일자 B2면)

내　　용 : 강용석 의원의 여대생 성희롱 발언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음대 교수의 제자 성희롱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를 채비를 차리고 있다. 대학 교수가 부모와 동석한 제자를 희롱하고, 학생 아버지까지 폭행한 것이다.

경희대 음대 학생들은 최근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일부 교수가 학교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 기관과 시민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음대에 재직 중인 A교수의 성추문 등 부적절한 행동을 조목조목 고발했다.

A교수는 이달 초 자신의 제자인 음대 2학년 여학생, 여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 과천에서 저녁식사

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장소는 학부모가 운영하는 중식당이었고, 이 자리에는 모임을 주선한 A교수의 고교 선배이자 여학생의 친척, A교수의 후배 등도 합석해 모두 7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중식당 룸에서 식사를 하던 A교수는 여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고, 여러 차례 술을 권했다. 취기가 오른 A교수는 여학생에게 "내 연구실에 놀러오라" "내 방은 일단 들어오면 문 열고 나가기가 힘들다" "학교 앞에서 자취해라. 그래야 많은 경험을 한다"고 했다. A교수는 "내가 경희대 음대의 실세"라는 말도 곁들였다. 한 참석자는 "직업이 무색하게 A교수 입에는 욕설이 배어 있었다"고 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교수가 딸에게 술을 계속 권하고 듣기 거북한 대화가 이어지자 딸에게 먼저 집으로 가라고 했다. 회식이 끝날 무렵, A교수와 여학생의 아버지 두 사람만 테이블에 남았다. 다른 사람들은 식당 밖으로 나갈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이때 A교수가 여학생 아버지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쳤다고 한다. 기절한 여학생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가 머리 상처 부위를 15바늘 꿰맸다. A교수는 폭행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당시 A교수가 만취했고, 나도 상당히 취했지만 때리고 맞을 만한 말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했다. 여학생 아버지가 피 흘리며 쓰러지자 식당 밖에 있던 일행과 여학생의 어머니가 다시 들어와 폭행을 말렸다고 한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처음에 사과를 해왔던 A교수가 수일 전부터 자신이 오히려 맞았다고 주장해 어이가 없다"고 했다.

탄원서에 등장하는 A교수의 문제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라는게 학생들 주장이다. A교수는 지난 2월 남녀 학생 수십명과 함께 인천의 한 펜션으로 3박 4일간 캠프를 떠났다. 입학식을 앞둔 신입생과 교수 · 선후배가 모여 친목을 다지는 자리. 당시 자신의 숙소에서 학생들과 술을 마셨던 A교수는 자정을 넘긴 시각 남학생들을 모두 나가라고 하고 여학생들과 2시간가량 별도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한 남학생은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학생들이 말하진 않았지만 부적절한 술자리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시 캠프에선 고학년 남학생이 여자 신입생에게 키스를 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고 한다. 캠프 인솔자는 A교수였다.

A교수가 캠프 일주일 뒤 강촌에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벌인 행동도 탄원서에 올랐다. A교수는 캠프에 참가하지 못한 한 신입생을 불러 그 경위를 추궁했다. 학생이 "돈(캠프비 15만원)이 없어 못 갔다"고 하자, A교수는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모두 무릎 꿇게 한 뒤 "왜 거짓말 하느냐"고 신입생을 다그쳤다고 한다. 신입생으로부터 "정말 돈이 없었다"는 거듭된 해명을 듣고서야 A교수는 자리를 떴다는 것.

학생들을 가장 흥분하게 만든 건 A교수와 여학생의 모텔 출입 의혹이었다. A교수는 작년 말 학생들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여학생 2명과 학교 후문 근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다른 학생에게 목격됐다

고 한다. 당시 A교수를 고발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학생회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해당 여학생들이 쉬쉬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학생들은 A교수가 부적절하게 처신해도 음대 내부 특성상 누가 나서서 비판할 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A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60여 명에 대한 학점, 장학금은 물론 취업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 한마디로 '제왕'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다. 학생회 간부는 "A교수가 자신을 비판하는 학생에게 F학점을 주는 등 실제로 보복을 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A교수의 잘못을 알아도 참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A교수의 학부모 폭행사건은 현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내용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도 A교수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이 A교수 행적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경희대 음대 총동문회가 교수 임용 과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경희대 음대 역시 내홍(內訌)에 빠지게 됐다. 음대 총동문회는 "학교가 지난 2월, 교수 3명을 선발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단이나 학장의 친분을 보고 뽑았다"며 지난 15일 '신임 교수의 자격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총동문회는 또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금품 거래가 오고 갔다며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 학교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교수를 임용한 것이고 일부 동문들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토요섹션 2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경희대 음대 교수 성희롱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4일자 토요섹션 B2면에 '경희대 음대 교수가 여학생들 상습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경희대 음대 교수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관계된 학생 등에게 확인한 결과 위 기사에 언급된 교수의 과천 음식점, 인천 캠프, 강촌 신입생오리엔테이션에서의 언행에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으며, 여학생과 모텔에 출입하였다는 내용 역시 교수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만한 사안이 아님이 확인되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의 지난 7월 24일자 '경희대 음대 교수가 여학생들 상습 성희롱' 제하의 보도에 대해 해당 교수는 과천 음식점과 캠프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으며, 여학생과 모텔에 출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1.항의 보도문을 2010년 8월 14일 발행되는 조선일보 토요섹션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8. 11.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4일자 B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28

신청인이 과로사한 전 남편의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고 보험금만 수령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0경남조정62 · 63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안○○
　　2. 박○○
피신청인 : (주)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박 모 씨의 이혼한 전처인 신청인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면서도 보험금 수령절차를 밟고 있고, 아이가 두 살 때 신청인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숨진 박 씨의 누나가 3년 정도 조카를 돌보았으며, 신청인이 자신의 빚을 이혼 후 남편에게 떠넘겼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 남편의 장례식 첫날에는 자리를 지켰으며, 전 남편 사망 후 나오는 보험금은 아직 수령절차를 밟은 바 없고, 이혼 후 별거하게 된 것이지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사실이 없으며, 빚을 전 남편에게 떠넘긴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경남도민일보 및 인터넷 경남도민일보에 정정 및 사과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중재를 받기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손배청구에 대해 담당 중재부는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중재결정하였다.

조정대상보도

1

경남도민일보 : 『"죽은 남편 안 보이고 보험금만 보이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면)

내　　용 : 한 제조업체에서 고된 작업에 시달리던 박모(41) 씨가 과로로 세상을 등졌다. 열두 살 아들 하나를 남긴 채였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박씨의 이혼한 아내가 보험금을 챙기고자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박씨 누나는 울화통만 터질 뿐이다.

도내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일하던 박씨는 지난 19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

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고 무리한 작업에 따른 과로사로 판명됐다.

박씨 누나(46 · 창원시 ○○○○구 ○○동)에게는 그저 착하고 성실한 남동생이었다. 동생은 고된 일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떠안았던 빚이 줄어드는 데 보람을 찾았다.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이 독이 됐다. 박씨의 누나는 처음 쓰러졌을 때 병원 치료만 받았더라도 동생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겼다. 박씨의 아버지(72)는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잠시 접고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숨진 박씨에게는 10년 전 헤어진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애가 두 살 때 집을 나간 아내였다. 박씨는 아이를 누나에게 맡겼다. 박씨 누나는 3년 정도 조카를 돌봤다. 박씨 아내는 아들이 다섯 살이 돼서야 데려갔다. 그때 박씨 누나는 올케를 마지막으로 봤다. 동생도 이후 아내를 만나지는 않은 듯했다. 지난 8월 22일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올케와 조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씨는 그렇게 올케와 조카를 잊기로 했다.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살면 그만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동생이 죽고 보험금이 나왔어요. 당연히 상속인은 아들이겠지요. 남보다 못한 올케가 이미 '법정대리인'으로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고 있더군요. 산재보험금도 마찬가지고요.' 몇억 원은 될 돈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올케냐는 것이다. 동생에게 빚만 떠안긴 채 도망가고, 병원은커녕 장례식장에도 얼굴조차 내밀지 않던 사람이다. 동생을 죽게 한 회사에 같이 따지러 가지도 않았고, 동생이 장기 기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법으로 따져보니 어쩔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②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 "죽은 남편 안 보이고 보험금만 보이나" 』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남도민일보 1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주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각각에게 금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이혼한 아내 보험금 수령'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일자 1면에 '죽은 남편 안 보이고 보험금만 보이나'라는 제목으로 과로사로 사망한 박모 씨의 이혼한 전처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면서도 보험금 수령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후 전처 A씨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첫째, 실제 아들(12세)은 장례기간 내내 장례식 자리를 지키면서 상주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 역시 첫날에는 장례식 자리를 지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후 A씨는 전 시댁 식구들과 같이 전 남편 회사에 항의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숨진 박모 씨의 누나가 3년 정도 조카를 돌봤다는 내용 역시 실제 거의 A씨가 아들을 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A씨는 아직 전 남편 사망 후 나오는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민법에 의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생모가 진행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 별거하게 된 것이지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집을 일방적으로 나갔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며, 본인 빚을 이혼 후 남편에게 떠넘겼다는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라면서 본보 보도에 강한 항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본지는 공익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일방적인 한 쪽 가족 주장만 반영해서 A씨와 A씨 아들의 명예를 훼손해 심적인 아픔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경남도민일보 지면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보도문을 게재하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 목 : '이혼한 아내' 오보 사과드립니다 (주제목)

장례식 불참, 보험금 수령 등 사실과 달라 (부제목)

나. 내 용 : 본보는 지난 9월 1일자 1면에 '죽은 남편 안 보이고 보험금만 보이나'라는 제목으로 과

로사(추정)로 사망한 박 모 씨의 이혼한 전처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면서도 보험금 수령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도 후 전 처 ㄱ씨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경남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첫째, 실제 아들(12세)은 장례기간 내내 장례식 자리를 지키면서 상주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ㄱ씨 역시 장례 첫날에 장례식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후 ㄱ씨는 전 시댁 식구들과 같이 전 남편 회사를 항의방문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ㄱ씨는 보도 당시에는 전 남편 사망 후 나오는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족급여 신청서는 보도 후인 9월 15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고인의 과로사 여부는 공단 심사를 거쳐 판단될 예정으로 산재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도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숨진 박 모 씨의 누나가 3년 정도 조카를 돌봤다는 내용 역시 ㄱ씨는 5~6개월 정도만 아이와 떨어져 있었을 뿐 그 이후 본인이 계속 키웠다고 밝히고 있어 진실과 거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ㄱ씨는 또한 이혼 후에 별거하게 된 것이지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집을 일방적으로 나갔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본보 보도에 강한 항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전 남편쪽 친척들이 주장하는 ㄱ씨의 빚 관련 내용도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보는 공익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사실 확인이 부족한 채로 보도해 ㄱ씨와 ㄱ씨 아들의 명예를 훼손해 심적인 아픔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경남도민일보 1면 우측 상단에 2단 이상의 박스기사로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주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주제목(‘죽은 남편 안보이고...)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부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주제목 상단의 부제목(10년 전 남남된 올케...)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며(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및 문단 구분 할 것),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제2항을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2010년 9월 20일까지 이행하며, 피신청인이 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매일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9월 17일 정오부터 최소 3일간(72시간 이상)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에서 아래로 5번째 이내 위치에 게재(주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표시한 후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할 것)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한다. 또한 언론사 홈페이지 외에 외부 인터넷 게시판, 포털 블로그 등에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되어 있을 경우 속히 삭제되도록 조치한다.

4. 신청인은 상기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위원회 중재절차로 넘기기로 신청인과 합의하고 피신청인 언론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0. 9. 16.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1

경 남 도 민 일 보 : 『'이혼한 아내' 오보 사과드립니다 장례식 불참 · 보험금 수령 등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1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2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이혼한 아내' 오보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29

신청인이 과로사한 전 남편의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고 보험금만 수령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0경남중재1　손배청구
신 청 인 : 1. 안 ○ ○
　　2. 박 ○ ○
피신청인 : (주)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박 모 씨의 이혼한 전처인 신청인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면서도 보험금 수령절차를 밟고 있고, 아이가 두 살 때 신청인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숨진 박씨의 누나가 3년 정도 조카를 돌보았으며, 신청인이 자신의 빚을 이혼 후 남편에게 떠넘겼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 남편의 장례식 첫날에는 자리를 지켰으며, 전 남편 사망 후 나오는 보험금은 아직 수령절차를 밟은 바 없고, 이혼 후 별거하게 된 것이지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사실이 없으며, 빚을 전 남편에게 떠넘긴 사실도 없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 중재부는 손배청구에 대해 3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정정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사례28 참조)했고, 심리결과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정정 및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손배청구에 대해서는 중재부의 중재를 받기로 하는 것으로 각각 화해하여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중재대상보도

경남도민일보 : 『"죽은 남편 안 보이고 보험금만 보이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면)

내　　용 : 〈2010경남조정62 · 63 사건의 조정대상보도 1 의 보도내용 참조〉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 각각에게 금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중재신청사유

〈2010경남조정62 · 63 사건의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참조〉

사건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안○○에게 금 2,000,000원, 신청인 박○○에게 금 1,000,000원을 2010. 10. 20.까지 각 지급하라. 피신청인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보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 안○○의 이혼한 전 남편(사망) 누나의 제보에만 의존해 위 신청인이 10여 년 전 이혼한 이후 아무런 왕래도 없었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전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 및 산재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 판단

사회의 목탁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 · 신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을 생각할 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폐단으로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출처 불명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개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나날이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 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는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어떠한 정보에 접한 언론이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그 의문점을 해소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 이후 중재부에서 전 남편의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조사한 내용 및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신청인들의 장례식 불참, 보험금 수령절차 착수, 사망 후 회사 방문 여부 등 보도의 주요 내용이 진실로 확인되지 아니하였거나 피신청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보도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보도 당시 신청인의 전 남편이 7월 하순 병원에 입원한 후 20여 일 동안 수술과 투병을 거쳐 사망한 사실을 다른 유가족, 전 남편 소속 회사 및 병원에 문의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 당일에 뇌출혈로 쓰러져 과로사 했다고 보도하였고, 신청인들에게는 아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누나 제보에만 의존하여 신청인들이 망인의 장례 등에는 관심없이 보험금만 챙기려 한다고 보도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취재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인이 아닌 사인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경우 보도 요건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공익성)이 부각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 안○○의 이혼 사실 등을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 지면 및 기사의 분량, 피신청인 언론사의 규모 및 영향력, 보도 경위, 신청인들의 피해 정도, 언론사에서 익명처리한 정도, 피신청인의 사후조치(인터넷 기사 삭제 조치 및 정정 사과보도 합의) 및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안○○에게 금 2,000,000원, 신청인 박○○에게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30

신청인이 동생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전북조정27　손배청구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주)군산뉴스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간치상혐의로 만기출소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강간해 긴급 체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동생과 피해자인 누나의 성과 나이, 이들이 거주하는 동네 이름 등을 공표했다.
- 이에 이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군산뉴스 : 『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 강간』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8일자)

내　용 : 강간치상혐의로 최근 만기 출소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또 강간해 군산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7일 군산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모(○○ · □□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씨는 강간치상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이달 13일 군산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으며, 출소 후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누나 ○모(○○)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날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누나가 평소 싫어하는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일명 맥가이버 칼인 등산용 칼로 누나 ○씨의 목 부위를 한차례 긋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행동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누나를 강간하는 폐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위 기사는 실제 기사에서 언급된 성(姓)을 ○으로, 나이를 ○○으로, 동네 이름을 □□동으로, 각각 처리한 것임 … 편집자 주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군산뉴스 『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 강간』 기사에서 피해자 ○씨(○○)로 보도된 사람입니다. 보도내용은 맞는 내용이지만 신청인에게 있었던, 알려지기 싫은 '성폭행' 사건이 피신청인의 보도로 주위에 알려져 현재 매우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당시에도 이 일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경찰에 요구했음에도 신문에 보도되어 주위에서 단순 폭행이라고 알았던 분들도 '성폭행'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확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생이 교도소에 갔다오고, 누나랑 같이 살고 있었고 기사에 '○' 씨라고 나왔기 때문에 □□동에 오래 사신 주위 분들은 이 이야기가 신청인의 이야기인 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인은 신문에 보도된 사실도 몰랐으나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밖을 나갈 때도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직장에 나가는 일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이들도 이 보도내용을 알까봐 두렵습니다. 신문사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부모형제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보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행' 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해 신청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 피신청인 측에서 이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본 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에게 2010년 9월 30일까지 금 5십만 원을 지급한다(별지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9. 17.

다. 문화 · 종교 관련분야

사례 31

기사에서 '승려'라는 예삿말 대신 '스님'이라는 높임말을 써서 "경찰관들이 지관스님을 폭행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81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만취한 경찰이 한 사찰의 주지스님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스님'은 '중'이나 '승려'의 높임말로서, 특정 종교의 신분에 대해서만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담당중재부는 이 사건기사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어 신청인과 사건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스님'이라는 표현은 '중'이나 '승려'를 높여 이르는 말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정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연합뉴스 : 『김포경찰, 스님, 경찰 폭행혐의 조사(종합)』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7일자)

내　　용 :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용화사 주지 A스님과 경기도 의왕경찰서 소속 B경사, 경기경찰청 609 전투경찰대 소속 C경사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님과 경찰관들은 지난 19일 오전 0시30분께 김포시 운양동 용화사 주변에서 멱살 잡이를 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A스님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입술을 다치게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C경사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나의 얼굴을 때려 7바늘이나 꿰맸다"면서

"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경찰서는 B경사가 최근 벌인 2차 조사에서 " '스님이 플래시로 나의 입술을 때렸다'는 1차 진술에 대해 '스님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며 진술을 바꿨다"라고 밝혔다.

B경사는 "스님을 폭행하지 않았고 스님의 얼굴 상처는 멱살잡이를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나뭇가지에 긁혀 생긴 것이다"면서 "다만 물의를 빚은데 대해 공직자로서 사과를 하고 스님도 사건을 서로 원만히 끝내자고 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B경사는 C경사와 함께 용화사에서 30m가량 떨어진 형의 집에 놀러 갔다가 개짖는 소리를 놓고 A 스님과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 시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 추가 조사를 한 뒤 기소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 연합뉴스는 인터넷뉴스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스님"을 "승려"로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피신청인은 지난 1월 27일자 인터넷뉴스에서 "승려"를 "스님"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이라는 표현은 중이나 승려의 높임말로 단어 선택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였기에 "승려"로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27일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포경찰, 스님. 경찰 폭행혐의 조사(종합)」 제하의 기사(이하 '사건기사'라 한다)에서 만취한 경찰이 한 사찰의 주지스님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스님'은 '중'이나 '승려'의 높임말로서, 특정 종교의 신분에 대해서만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하며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어 신청인과 사건보도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스님'이라는 표현은 '중'이나 '승려'를 높여 이르는 말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5.

사례 32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관련해 정부가 10억 원을 지원하고 국립극장 측이 대관을 해준 것은 모두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321　반론청구
신 청 인 : 문화체육관광부
피신청인 : (주)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절차도 없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요덕스토리 해외공연 사업'에 지원예산을 배당하였고, 이 때문에 세금으로 '코드지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에 의해 요덕스토리를 비롯한 40여 개의 국내외 대표적 작품 및 행사가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예산절차로서 코드지원이 아니라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경향신문 : 『정부 10억 지원 '이상한 스토리'』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2일자 1면)

내　　용 : 공모절차 없이 예산 배정 / 작품성 시비 · 대관 특혜도 / 세금으로 '코드 지원' 논란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창작뮤지컬 〈요덕스토리〉에 정부가 무려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달 9일부터 국립극장 무대에 오르는 〈요덕스토리〉는 북한정치범 수용소를 소재로 새터민인 정성산 씨가 제작 · 연출한 작품. 2006년 3월 초연된 이 뮤지컬은 북한 수용소를 다룬 내용이 당시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일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높은 관심을 샀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는 내내 끊임없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면서 "〈요덕스토리〉에 눈과 귀를 닫은 노무현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한 31명의 국회의원이 후원회까지 결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절차도 없이 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작품에 대한 지원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심의에 앞서 이를 '국민무시 황당예산 50선'에 포함시켰던 민주당조차 문제의식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문화부 예술정책과 정은영 사무관은 "〈요덕스토리〉는 해외투어 공연 계획이 있는 데다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대표적 공연이라고 판단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91억여 원 중 단일 작품에 대한 지원은 〈요덕스토리〉가 유일하다. 정부가 지원키로 한 대다수 공연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부산국제합창제, 씨어터올림픽스 등 대규모 국제행사들이다.

그간 단일 뮤지컬에 대한 정부지원은 뮤지컬 〈명성황후〉가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1997년과 98년 각각 1억원과 6억원을 지원한게 전부였다. 〈요덕스토리〉측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2개 지역에서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연장이 확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덕스토리〉가 국립극장 무대에 오르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국립극장 측은 공연 예정이었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대관료 미납으로 취소되자, 지난달 〈요덕스토리〉에 공연장을 쓰라고 먼저 제안했다. 당시 대관을 담당했던 손주옥 팀장은 "공모를 하기엔 일정이 촉박해 공연을 준비 중이던 〈요덕스토리〉에 대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극장이 공모절차 없이 특정 작품에 대관한 건 특혜라는 게 공연업계의 지적이다.

뮤지컬업계에서는 이 작품이 해외시장에 내보일만한 예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씨는 "정치색이 짙은 작품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로 해외투어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정치외교학)는 "북한을 비판하는 작품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 대화를 통해 화합을 모색해야 할 남북관계에 독이 된다"면서 "보수세력의 구미에 맞는 작품이라면 보수단체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향신문 1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정부 10억 지원 이상한 스토리"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지는 지난 1월 22일자 1면 "정부 10억 지원 이상한 스토리"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체육관광

부는 공모절차도 없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요덕스토리 해외공연 사업'에 지원예산을 배정하였고, 이는 세금으로 코드지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에 의해 요덕스토리를 비롯한 40여 개의 국내외 대표적 작품 및 행사가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예산절차로서 코드지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내 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2일자 1면 '정부 10억 지원 이상한 스토리'에서 정부가 공모절차 없이 〈요덕스토리〉 예산을 지원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연예술활성화 사업은 공모절차 없이 정부와 국회의 통상적인 예산심의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국립중앙극장 역시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3월 4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전재한 각 포털사에 위 보도문이 게재되는 즉시 송고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2. 25.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33

신청인 연합회가 한국예총 대전연합회가 사용하던 '대전예총'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연합회는 '대예총'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　　건 : 2010대전조정11 · 12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사단법인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2. 리 헌 석
피신청인 : (주)중도매일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리헌석 회장이 이 단체의 약칭을 '대전예총'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가 약칭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와 리헌석은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는 약칭으로 '대예총'을 사용했을 뿐 공식적으로 '대전예총'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중도일보 : 『'대전예총' 약칭 사용 제동』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일자 6면)

내　　용 : 지역 예술인 신년교례회에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대예총)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불참했던 한국예총대전연합회(이하 대전예총)가 이번엔 약칭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전예총은 최근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등장, 지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지자체에 약칭 사용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예총은 '대전예총' 약칭과 관련 지난 2008년 한국예총지역연합회(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의 변경에 따라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지회(약칭 예총대전시지회)'가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약칭 대

전예총)' 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예총은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가 일부에서 약칭을 '대전예총' 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전예총 관계자는 "본 회 정관 1조(명칭)에 보면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약칭 대전예총)라 칭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며 "2003년 약칭 변경 시 당시 문인협회장이었던 리헌석 회장도 회의에 참석해 약칭 변경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리 회장이 대전예술단체 총연합회를 만들면서 약칭을 대전예총을 사용하고 있어 예술인은 물론 지역민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이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중도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대전예총' 약칭 사용 제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2010. 3. 1.자 6면에 "대전예총 약칭사용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예총 대전연합회에서 제보한 내용을 확인과정 없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리헌석이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를 만들면서 그 약칭으로 "대전예총"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는 혼란야기행위이고 명예훼손행위이니, 약칭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하여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와 대표자 리헌석은 이 보도가 심각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기사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바로잡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는 대전지역의 33개 예술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통합총회를 개최하여 만든 것으로, 서울에 본부를 둔 10개 단체의 지회로 구성된 한국예총 대전연합회 소속의 단체와 중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무관한 독립단체임에도 허위 제보를 통하여 비방함으로써 대전예술단체 총연합회와 리헌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는 약칭을 "대예총"으로 사용하였을 뿐 "대전예총"이라는 약칭을 사용한 일이 없고, 홈페이지도 각각의 약칭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또한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연합회"는 공식 명칭상 차별성이 있고, 별도 사단법인 설립 등기까지 되어 있으므로, 예술인과 지역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대전 한예총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기사화되게 하였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는 리헌석 개인이 만든 단체가 아니고, 대전 지역 자생 예술단체의 대표자들이 통합하여 창립한 단체였으며, 약칭을 "대예총"으로 사용할 뿐 "대전예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전 한예총의 허위 사실 제보에 의해 작성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 '대전예총' 약칭 사용 제동"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지난 3. 1.자 6면 " '대전예총' 약칭 사용 제동"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리헌석 회장이 약칭을 '대전예총'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가 약칭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는 약칭으로 '대예총'을 사용했을 뿐 공식적으로 '대전예총'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에 2010년 3월 26일까지 6면에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예총대전연합회…)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010. 3. 23.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 '대전예총' 약칭 사용 제동"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6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34

고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인 신청인 단체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331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면서 "최근 관련인사로부터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도 삼성이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함 신부의 발언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기사를 게재한 한겨레닷컴과,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도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담당중재부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각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모두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 : 『"한국 천주교, 부정 · 불의 외면... 공범자적 삶 살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8일자 5면)

내　용 :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선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가 3년 연속 징계성 안식년을 받은 사실(〈한겨레〉 17일치 1 · 5면)과 관련해, 천주교계 원로인 함세웅(68) 신부가 17일 "부끄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가톨릭계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함 신부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으로, 과거에 사제단을 이끌기도 했다.

함 신부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 천주교가 부정과 불의를 외면하는 등 예언자적 소명을 소홀히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부패한 정부와 불의한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공범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톨릭계의 내부 반성 필요를 강조하며 "일제 때 폐쇄적 교회관으로 시대적 고민을 망각했던 부끄러움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징계성 안식년 사태를 낳은 삼성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광복절 특사로 삼성 고위 임원들이 모두 사면을 받은 것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와 권력의 문제"라며 "우리 모두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삼성이 끊임없이 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신부는 전 신부의 안식년 연장과 관련해, 인사권자이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의 인사권 남용 문제를 분명한 어조로 비판했다. 함 신부는 "전 신부의 안식년 연장은 지혜롭지 못한 교구행정"이라며 "일반 대중들이 징계라고 생각할 수준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회 공동체의 예언자적 소명을 잃어버린 조치로, 근본적으로는 종교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함 신부는 '신부들의 사회참여를 막으려는 추기경의 뜻이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함 신부는 "올해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이다. 당시 주교와 사제는 폐쇄적 교회관으로 안 의사를 배척하는 등 시대의 고민을 망각한 결정을 했는데, 이는 두고두고 한국 가톨릭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다"며 "과거의 폐쇄적 교회관이 후대의 교직자들에 의해 반복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천주교가 사회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할 일"이라고 밝혔다. 함 신부는 "교회공동체의 여정은 등산에 비유될 수 있다. 등산길은 기본적으로 오름과 내림이 있는데 지금은 내리막길"이라며 "그렇지만 오랜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평등 · 평화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상승의 길로 나아간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 등은 한국 천주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회적 증언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최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선 "하느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역사의식이 있는 이가 사목 책임을 맡으면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역사의식과 현실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책임을 맡으면 내려가는 것"이라고 함 신부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진석 추기경의 사목관에 대해 "법에만 집중하면 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법을 넘어서야 한다"며 "교구행정을 제도적 · 관료적이고 금권지향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믿음을 중심으로 인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교회법에 교구장은 만 75살이 지나면 직책을 내놓게 돼 있다"며 "정년에 사임하는 것이 교회 공동

체의 기본정신"이라고 정 추기경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 추기경은 12월이면 만 79살이 된다.

함 신부는 사제단이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김용철 변호사를 만나고 일을 진행하면서 검찰, 공직자, 권력자, 언론 등 삼성의 돈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 영역도 그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최근 관련 인사로부터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인 '바보의 나눔'에도 삼성이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함 신부는 마지막으로 "천주교가 삼성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정과 불의를 외면한다면 결과적으론 정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이는 신학적으로 공범자적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사회면(5면)에 정정신청의 대상이 된 기사와 동일한 지면량과 내용으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2단폭)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아래의 정정보도 내용과 함께 본 재단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재단의 설립취지와 사업을 알리는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한국 천주교, 부정 · 불의 외면…' 바로잡습니다 (또는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 바보의 나눔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8일자 사회면(5면)에 "한국 천주교, 부정 · 불의 외면… 공범자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천주교의 종교적 영역까지 삼성의 돈이 들어와 있으며, 삼성이나 정권에 부정과 불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댓가로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이어가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기사는 바보의 나눔 재단의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된 기사이며, 확인결과 바보의 나눔 재단은 기사일 현재까지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전종훈 신부 징계성 안식년 비판 함세웅 신부")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위 보도문을 동일 기한 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을 이 사건 보도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1.

〈별 지〉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한겨레〉 8월 18일치 5면 "한국 천주교 부정 · 불의 외면… 공범자적 삶 살고 있다" 기사에서 함세웅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인 '바보의 나눔'에도 삼성이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바보의 나눔 재단'은 삼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8일자 2면)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라. 언론 관련분야

사례 35

경기방송에서 알력다툼이 불거져 상호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76 · 77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경기방송
피신청인 : (주)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주)경기방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부 사원들의 주장을 인용, 경기방송에서 알력 다툼이 불거져 상호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경기방송 사옥 이전 계획 과정에서 제3자가 회사 대리인인 양 행세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경기방송은 사옥 이전과 관련한 대리인은 이사회를 거쳐 정당한 절차로 선임된 대리인이며 나머지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7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미디어오늘 : 『경기방송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2면)

내　　용 : 경기지역 민영라디오방송사인 경기방송에서 알력 다툼이 불거져 상호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방송 ㄱ경영관리국장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지난 4일 새벽 2시30분께 사내 문건을 훔치다 현장에서 적발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회사는 ㄱ국장과 함께 절도 혐의로 조사 받은 PD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징계를 받은 ㄴPD 등 경기방송 사원 12명은 지난 7일 '경기방송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만든 뒤 회사 내부 문제를 잇따라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추진된 경기방송 사옥 이전 계획 과정에서 회장의 묵인 아래 제3자가 회사 대리인인 양 행세한 일이 있고 △사우회가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등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명목으로 총 17억여 원을 지원 받은 뒤 이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수익으로 잡아놓거나 사원들에게 창사기념비로 30만 원씩 용돈을 쥐어주는 등 지원금을 전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ㄷ회장과 ㄹ부회장이 경기방송의 1대 주주 회사인 '경기필'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하면서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매달 각 1,000만 원, 700만 원에 이르는 월급을 부당하게 지급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제기한 의혹들을 청와대에 민원접수하는 한편 절도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사원 10명을 폭행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내부 문서를 빼돌리다 절도죄로 입건된 이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기방송 고위관계자는 "사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일 경찰과 검찰에 진정서를 넣었으며 조만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행죄로 고소당한 이들 역시 상대측을 무고죄로 맞고소,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경기방송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내부의 알력다툼에서 불거진 추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기방송에서 3년 동안 작가로 일한 관계자는 "사주의 비리 여부는 확인해 볼 사안이지만 사내 세력 다툼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내반응 역시 추진위에 싸늘한 상태다. 경기방송의 한 PD는 "전체 사원이 4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추진위에 함께 하는 사람이 12명이고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이 31명이라면 여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이런 식의 세력다툼은 어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미디어오늘' 신문 종합면(2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금액 3억 9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경기방송에 무슨 일이?'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12월 16일자 종합면(2면)에 '경기방송에 무슨 일이?'란 제목으로 경기방송 사내에서 알력다툼이 불거져 상호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

으나, 사실 확인결과 같은 달 4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ㄱ 전 경영관리국장 등 일행이 당일 저녁 7시 50분쯤부터 1시간30여 분 동안 회사의 중요서류를 훔치다 특수절도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이후 ㄱ국장 일행이 범행을 저지하던 일부 회사직원들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을 뿐 알력다툼에 의한 상호 고소고발과 이전투구양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본 신문은 지난 6월부터 추진된 경기방송 사옥 이전 계획 과정에서 회장의 묵인 아래 제3자가 회사 대리인인 양 행세한 일이 있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방송 사옥 이전 대리인으로 활동한 ㄷ씨는 10월 초순쯤 회장 등 4명의 이사와 간부 등 6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적법하게 만장일치로 선임된 대리인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이와 함께 본 신문은 경기방송 사우회가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등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명목으로 총 17억여 원을 지원받은 뒤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수익으로 잡아 놓거나 사원들에게 창사기념비로 30만 원씩 용돈을 쥐어주는 등 지원금을 전횡한 사실이 있다는 '경기방송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프로그램 제작비는 경기방송이 받은 것이며, 경기방송 직원들의 모임인 사우회는 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경기방송 회장과 부회장이 경기방송의 1대 주주 회사인 '경기필'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하면서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매달 각 1,000만 원과 700만 원에 이르는 월급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경기필' 관계자 확인 결과, 대표이사와 이사가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12월 16일자 '경기방송에 무슨 일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사옥이전 과정에서 제3자

가 회사 대리인인 양 행세한 일이 있고' 라는 부분은 회사가 정당한 대리인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또 경기방송 사우회가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등에서 17억여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우회가 아닌 경기방송이 지원금을 받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경기방송은 회장과 부회장이 '경기필'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정상적 절차를 밟아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1월 27일까지 〈미디어오늘〉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미디어오늘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1.항의 보도문을 2010년 1월 21일까지 미디어 오늘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 및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 및 3.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 20.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7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36

KBS내에 수신료 납부 대상자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계약직 직원보다 이들을 관리 · 감독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내근인력이 2배 가까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1 · 142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피신청인 : (주)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1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관리 업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KBS 수신료 현장조사 직원인 자원관리원이 107명에 불과한데 이들을 관리하는 내근 관리자가 184명으로 2배이고, 전기세와 통합 징수된 이후에도 내근 관리자가 별로 줄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신료 업무 관련 내근인력은 164명이고, 수신료 업무부서의 관리자는 본사 재원관리국장, 재원운영팀장, 각 사업지사의 지사장만이 해당되고, 이 외의 내근인력은 실무인력으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발굴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한국방송공사 측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미디어오늘 : (1)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1면)

내　　용 : KBS내 수신료 대상자를 현장 조사하는 계약직 직원보다 이들을 관리 · 감독하고, 수신료 행정을 보는 정규직원의 숫자가 무려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비합리적인 관리체계부터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BS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 · 법인의 수상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다니는 '자원관리원'(무기계약직)의 총 인원은 모두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들을 관리하는 내근자는 재원관리국 24명, 재원운영팀 18명, 서울 경기 6개지사 47명 등 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23개 지역총국 · 방송국 · 사업소에 소속된 KBS 내근 정

규직 인원 95명을 합하면 수신료 관리에 종사하는 정규직 내근직원은 모두 1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관리원' (무기계약직)은 과거 수신료 통합징수 이전에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러 다녔던 사람들로 통합징수 이후에는 수상기 보유 여부를 확인해 수신료를 부과 또는 말소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내근 직원들은 자원관리원들을 1대 1로 관리하고 TV수상기 발굴대수의 신규입력 및 말소 보고를 1차 결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자원관리원에 대한 급여지급, 전체 실적 관리 등 주로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본사의 재원관리국과 재원운영팀은 전국적인 수신료 부과대상을 총괄하거나 한국전력과의 대외협력 및 계약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현장조사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보다 이들을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보는 인원이 거의 두 배에 이름을 보여준다.

107명의 자원관리원들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인건비 · 퇴직충당금 · 보험 등을 다 합쳐 모두 51억 원 가량이며, 수신료 발굴 수입액에서 모든 경비가 충당된다. 이에 반해 이들을 관리 · 감독, 행정업무를 보는 KBS 직원들의 급여는 연봉 평균 7000만~8000만 원(간부급 포함)으로 계산해도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자원관리지부가 집계, 작성한 것으로 KBS 본사에도 비공식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2) 『KBS 수신료관리, '방만한 사각지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3면)

수신료 인상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가 수신료 발굴조사 인력보다 이들을 관리하거나 행정업무를 보는 인력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 시점에서 KBS가 과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기본적인 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낳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BS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수상기 보유자 확인을 위해 현장을 뛰며 발굴하고 수신료 대민업무를 하는 자원관리원(KBS 무기계약직)은 107명인 데 반해 이들을 관리하거나 수신료 관련 행정업무를 보는 내근자(KBS 정규직)는 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미디어오늘 제1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KBS 수신료관리, 방만한 사각지대"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3일 제1면에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KBS 수신료관리, 방만한 사각지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① KBS 수신료 관리 "현장조사 직원보다 내근 관리자 2배", ② 전국의 수상기 보유자 확인을 위해 현장을 뛰며 발굴하고 수신료 대민업무를 하는 자원관리원(KBS 무기계약직)은 107명인데 반해 이들을 관리하거나 수신료 관련 행정업무를 보는 내근자(KBS 정규직)는 184명, ③ 전기세와 통합 징수된 이후에도 내근관리자는 별로 줄지 않았다, ④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자원관리지부가 집계, 작성한 'KBS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이 KBS 본사에도 비공식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①② 수신료 업무부서의 관리자는 본사 재원관리국장, 재원운영팀장, 각 사업지사의 지사장만이 이에 해당되며, 이 외의 내근인력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인력으로서 자원관리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업무(수입관리, 실적평가, 기획 발굴, 한전업무, 자원관리원 운영, 법령관리, 인사 및 예산관리, 민원처리 등)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원과 동일하게 자원 발굴(가정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전체 발굴대수는 자원관리원(일반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2009년 발굴대수 : 내근 연 519,702대, 자원관리원 연 558,204대, 2009년 민원처리 : 내근 연 29,772건, 자원관리원 26,728건), 순수 수신료 업무에 종사하는 내근직원은 164명으로서 자원관리원 107명의 약 1.5배에 불과하며, 자원관리원은 근로기준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년 60세가 보장된 사원 신분의 근로자다. ③ 수신료 업무에 종사하는 내근직원은 1987년 대비 73.5%가 줄었고, 한전에 위탁된 1995년 대비 43.7%가 줄었다. ④ 한국방송공사는 'KBS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 자료를 자원관리지부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는 것이 밝혀져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KBS 관련 책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BS의 실정을 왜곡 보도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3일자 1면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제하의 기사와 관련, KBS 수신료 내근 관리자가 184명이라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164명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KBS는 내근 직원이 행정업무 뿐 아니라 자원 발굴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2월 10일까지 〈미디어오늘〉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미디어오늘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2. 3.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37

신청인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경기조정8 · 9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경기방송
피신청인 : (주)경기도민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청취율이 중앙 라디오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수원시내를 제외한 일부지역마저도 잘 들리지 않으며, 단 한 차례도 청취율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경기방송에 경기도가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비로 28억 원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경기방송이 이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25%의 청취율은 매우 높은 것이며, 지난 해 전계강도를 측정한 결과 청취강도가 청취 양호 기준수치를 훨씬 넘어섰고, 경기방송은 매년 청취율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지급한 금액은 프로그램 제작비만이 아니라 광고홍보비가 포함된 것이므로 특혜와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경기도민일보와 인터넷 경기도민일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1

경기도민일보 : (1) 『작년 28억, 올 10억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내　　용 : 경기도는 청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 지방 라디오방송사에 지난해 캠페인 프로 제작비 28억여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1개 교통프로를 위해 10억 원 의 예산을 책정, 교통정보 프로그램 제작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내는 인구, 자동차 대수, 도로연장 등을 볼 때 교통정보 요구가 가장 많으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정체 심화 등으로 교통혼잡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통정체 완화와 교

통혼잡비용 저감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지난 200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교통혼잡비용은 5조 5077억 원으로 수도권 12조 4021억 원의 44.3%에 달한다.

이에 도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및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 지방방송사를 협약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송은 도내를 가청권역으로 하고 있지만 수원시내를 제외한 일부 지역마저도 잘 들리지 않는가 하면 한수이북 지역의 경우 더욱 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는 지난해 MBC, YTN, CBS 등 7개 방송사엔 2억 7000만 원을 협약해 준 반면 이 방송사 한 곳에 10배가 넘는 28억여 원을 각종 프로 제작에 지원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올해도 교통체증 도민홍보를 위해 책정된 예산 12억 원 가운데 10억 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이 방송사에 책정해 다른 방송사와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청취율을 보면 이 방송사가 7년 전에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도내 3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조사되지 않고 수원, 오산, 평택 등 6개 지역에서만 중앙 A사는 37.7%, 이 방송사는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전 지역을 조사할 경우 청취율이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에 살고 있는 김모(56)씨는 "도민의 혈세를 가청권역이 얼마 되지 않는 지방방송에 지난해 28억 원을, 올해도 1개 프로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민들 혈세를 대부분의 주민이 청취할 수 있는 방송사를 제쳐두고, 이 방송에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의혹을 사고도 남는다"고 도의 교통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후략)

(2) 『청취율 자료제공 요청 거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1면)

속보=경기도는 18일 청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방송사에 대한 특혜의혹(본보 1월12일자 14면 보도)과 관련, 내년에는 문제점을 보완해 이 방송사와의 재계약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권 도 교통건설국장은 취재기자들의 특혜의혹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성 예산의 집행으로 특혜는 아니다"면서 "타 방송보다 떨어지는 청취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조사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중략)

청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방송사에 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사와의 협약은 도 대변인실과 협의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변인실과 협의, 청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송사와 협약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앞으로 청취율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 교통건설국에서 과제로 삼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가 이 방송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방송은 지난 2003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청취율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도가 어느 시기의 청취율을 근거로 올해 협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보예산 12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10억 원을 이 방송사에 지원하고 있어 특혜의혹 논란을 계속 빚고 있다.

2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 (1) 『작년 28억, 올 10억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1) 참조〉

(2) 『청취율 자료제공 요청 거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2)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 '경기도민일보' 신문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경기도민일보' 신문 홈페이지(www.kgdomin.co.kr)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 회사의 물적,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1억 원의 금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2010년 1월 12일자 1면에 "도, 청취율 낮은 지방방송사와 협약. 작년 28억, 올 10억 특혜 논란", 1월 19일자 1면에 "도, 특혜의혹 지방방송 재계약 신중 고려. 청취율 자료 제공 요청거부" 각 각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는 청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 지방라디오 방송사에 지난해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비 28억 원을 지원...", "이 방송은 도내를 가청권으로 하고 있지만 수원 시내를 제외한 일부지역마저도 잘 들리지 않는가 하면 한수이북지역의 경우 더욱 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지난 해 7개 방송사엔... 반면 이 방송사 한곳에 10배가 넘는 28억 원을 각종 프로 제작에 지원해 준 것으로...", "수도권의 청취율을 보면 ... 수원, 오산, 평택 등 6개 지역에서만 중앙 A사는 37.7%, 이 방송사는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지가 이 방송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방송은 지난 2003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청취율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도는 홍보예산 중 거의 대부분인 10억 원을 이 방송사에 지원하고 있어 특혜의혹 논란을 계속 빚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도가 작년 해당 방송사에 지급한 금액은 프로그램 제작비만이 아닌 광고홍보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성사된 상호간 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7개 타 방송 등에 지원된 금액의 10배가 넘는다는 내용도 타 방송사의 단일 프로그램 제작지원비와 해당방송에 연간 지급된 홍보비 총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수원 시내를 제외한 일부 지역마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지난 해 조사한 전계강도 측정결과, 청취강도가 청취 양호 기준수치를 훨씬 넘어선 25.9dB~67.7dB인 것으로 확인되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 중앙방송사와의 청취율 비교 내용도, 중앙과 지역의 단위 상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수치를 보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25%의 청취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방송사는 보도내용과는 달리 매년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가 마치 해당방송사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정정청구 – 조정성립

손배청구 – 조정신청 취하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가 지난 2010년 1월 12일자 1면에 『도, 청취율 낮은 지방방송사와 협약. 작년 28억, 올 10억 특혜 논란』, 1월 19일자 1면에 『도, 특혜의혹 지방방송 재계약신중 고려. 청취율 자료 제공 요청거부』 각각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는 청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 지방라디오 방송사에 지난해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비 28억 원을 지원...', '이 방송은 도내를 가청권으로 하고 있지만 수원 시내를 제외한 일부지역마저도 잘 들리지 않는가 하면 한수이북지역의 경우 더욱 청취

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지난 해 7개 방송사엔... 반면 이 방송사 한 곳에 10배가 넘는 28억 원을 각종 프로 제작에 지원해 준 것으로...', '수도권의 청취율을 보면 ... 수원, 오산, 평택 등 6개 지역에서만 중앙 A사는 37.7%, 이 방송사는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지가 이 방송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방송은 지난 2003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청취율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도는 홍보예산 중 거의 대부분인 10억 원을 이 방송사에 지원하고 있어 특혜의혹 논란을 계속 빚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도가 작년 해당 방송사에 지급한 금액은 프로그램 제작비만이 아닌 광고홍보비가 포함된 것으로써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성사된 상호간 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7개 타 방송 등에 지원된 금액의 10배가 넘는다는 내용도 타방송사의 단일 프로그램 제작지원비와 해당방송에 연간 지급된 홍보비 총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수원 시내를 제외한 일부 지역마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지난 해 조사한 전계강도 측정 결과, 청취강도가 청취 양호 기준수치를 훨씬 넘어선 25.98dB~67.7dB 인 것으로 확인되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 중앙방송사와의 청취율 비교 내용도, 중앙과 지역의 단위 상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수치를 보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25%의 청취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방송사는 보도내용과는 달리 매년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가 마치 해당방송사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2월 11일 14면 우측상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 활자크기(7개 타 방송엔 2억 7000만 원만 지원)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도민일보 2010년 2월 11일자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게시하되,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한다.

2010. 2. 9.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①

경 기 도 민 일 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14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②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③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 각 조정대상보도 하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38

신청인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조정심리에서 중앙일보 측 대리인이 취재과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95　정정청구
신 청 인 : 강 용 석
피신청인 : (주)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일보사와 합의한 반론보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재위원회의 심리당시 참석했던 기자가 취재과정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는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에 참석했던 중앙일보 측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담당중재부는 당사자 간에 의견차이가 커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중앙일보 : 『강용석 끝 없는 거짓말...언론중재위 문건까지 왜곡』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일자 2면)

내　　용 : 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41 · 서울 마포을) 의원이 이번엔 언론사 반론보도의 취지를 왜곡한 보도 자료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이 게재키로 한 반론보도를 마치 정정보도에 합의한 것처럼 부풀려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언론중재위 반론보도 결정' 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 보도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매일경제신문, "합의하지 않은 내용 호도" =보도자료에서 강 의원 측은 "대통령 관련 발언은 강 의원이 아닌 동석한 남학생이 말한 것으로 매일경제 기자에 의해 확인됐다"고 했다. 또 "매일경제 기자가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해당 학생을 만나 취재한 결과 해당 학생은 이 같은 발언을 듣지 못했고,

'아나운서는 시키면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에서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매일경제신문은 2일 반론보도문에서 "강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들 외모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만 게재했다. 이 신문은 "강 의원이 언론중재위에서 나눈 대화를 거두절미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합의서를 만들려고 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이 '대통령의 사모님(김윤옥 여사)'까지 언급하고도 마치 한 남학생이 이 같은 말을 한 것처럼 왜곡하려 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은 주장했다.

• 중앙일보 입장 왜곡=강 의원은 또 "중앙일보는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취재기자가 해당 학생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취재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던 본지 기자는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본지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상대로 취재를 했고,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 기사화했다. 본지는 다만 강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의 주장을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 "언론중재 장치 악용"=언론중재위도 강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권오근 홍보팀장은 "언론중재법 19조8항에 보면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조정 과정에서 오간 말이나 문서 등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법률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강 의원이 거짓말로 일관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버리고 사법을 능멸한 행동"이라며 "강 의원은 국회의원직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연맹은 또 "강 의원의 이번 행동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장치를 악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변호사라는 전문 직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것은 지식을 공익을 위해 쓰기 때문이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별지 정정보도문을 이 결정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1면 우측상단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 활자체로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조인스닷컴 주식회사는 별지 정정보도문을 이 결정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

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http://www.joins.com/ 사이트에 인터넷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 활자체로 하여야 한다.

3. 제1, 2항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때, 정정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거나 피신청인의 보도가 정확하다는 등의 정정보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 아니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지난 7월20일 오전 03:00분에 출고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의 기사는 잘못됐기에 다음과 같이 반론을 게재합니다.

2. 내 용 : 본지 지난 8월 3일자 사회면 『강용석 끝없는 거짓말 .... 언론중재위 문건까지 왜곡』 제목 하에, " '강의원은 또 중앙일보는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취재기자가 해당 학생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취재한 것을 인정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던 본지 기자는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하였던 본지 기자는 "아나운서 관련 발언의 해당 학생인 김모 여학생에게 전화 통화를 확인한 바 있지만, 김모 여학생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라고 인정하여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반론보도문이 작성된 것이기에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사례 39

신청인 언론사가 보도한 한나라당 대표의 포탄 동영상이 연출된 영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91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와이티엔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12.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연평도 방문 당시 불에 그슬린 보온병을 들어 보이며 포탄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영한 YTN의 돌발영상에 대해 다루면서 이 장면이 사실은, 포탄이라는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안 대표에게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해 촬영한 '연출영상'이며, 따라서 "전후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YTN이 이를 방영한 것은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 ·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취재당시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안 대표 일행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안 대표가 문제의 보온병을 들고 '이것이 포탄'이라고 설명했으며, 신청인 측 카메라 기자는 이를 연출없이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과 함께 '연출영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자동소제기 간주되어 법원에 계류중이다.
- 한편, 신청인은 동 기사를 전재한 동아닷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며,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위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 자동소제기 간주되었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조정대상보도

동아일보 : 『연평도 간 안상수, 보온병 보고 "포탄" 동영상 알고 보니 방송사의 '연출 영상'』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일자 A08면)

내　　용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4일 연평도 방문 당시 불에 그슬린 보온병을 들어보이며 포탄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인터넷에는 안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지

만 확인 결과 이 장면은 포탄이라는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방송사 카메라기자들이 안 대표에게 포즈를 취해 달라고 요청해 촬영한 '연출영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YTN은 30일 '돌발영상'을 통해 안 대표가 포격으로 폐허가 된 민가를 둘러보며 쇠로 만든 통 두 개를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방영했다. 옆에 있던 안형환 대변인은 "이게 몇 밀리미터(mm)포냐"라고 물었고 육군 중장 출신의 황진하 의원은 "작은 통은 76.1mm 같고, 큰 것은 122mm 방사포탄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이어 안 대표 일행이 자리를 뜬 뒤 현지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통을 살펴보면서 "상표 붙은 것 보니까 포탄이 아니야…보온병!"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SBS는 8시뉴스에서 이 장면을 방영하며 안 대표를 비판했다. 인터넷에는 "아무리 군대를 안 갔다 왔다지만 너무하다" "이건 군면제당이 아니라 개콘(개그콘서트)당이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안 대표의 보온병 개콘을 보며'라는 논평을 발표해 비판했다. 안 대표는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동아일보 확인 결과 당시 현장 안내자들이 포탄이라고 말하자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안 대표에게 '들고 포즈를 취해 달라'고 요청해 촬영한 것인데도 방송사들은 그런 설명 없이 방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형환 대변인은 "안내자가 포탄이라고 설명했고 화염에 그슬려 있어 포병장교 출신 황 의원, 그리고 안 대표에게 포즈를 요청한 촬영기자 등 현장에 있던 누구도 포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방송 기자들이 자신들의 요청으로 '그림'을 '연출'하다가 빚어진 실수인데 전후 과정을 밝히지 않은 채 방영한 것은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동아일보 정치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알고 보니 방송사의 '연출 영상'"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YTN 돌발영상 '연출' 사실 없어』

2. 내 용 : 동아일보는 2010. 12. 1. A08면 『연평도 간 안상수, 보온병 보고 "포탄" 동영상 알고 보니 방송사의 '연출 영상'』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11월 24일 연평도 방문 당시에 불에

그슬린 보온병을 들어 보이며 포탄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방송사 카메라기자들이 안 대표에게 포즈를 취해 달라고 요청해 촬영한 ' 연출영상 '인데도 YTN이 돌발영상을 통해 그런 설명 없이 방영한 것은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 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당시 취재한 방송사 카메라기자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안 대표 일행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안 대표가 문제의 보온병을 들고 "이게 포탄"이라며 설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아일보 2면에 다음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는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정정보도 제목과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다 음 -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YTN은 지난 12월 1일자 A08면 "연평도 간 안상수, 보온병 보고 '포탄' 동영상 알고 보니 방송사의 '연출 영상' "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취재 당시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안 대표 일행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안 대표가 문제의 보온병을 들고 '이게 포탄' 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연출 없이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본지의 연출영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2. 기자수첩 등 논평관련 기사가 문제된 사례

사례 40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가 노사정 합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258 · 259 · 260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피신청인 : (주)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시행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며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2년 반 늦추기로 한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쟁노조의 출현으로 핵심노조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입장이 이중적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민주노총은 당시 민주노총의 복수노조 관련 주장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기자수첩〉 "야합 비난" 민노총의 이중성』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9일자 4면)

내　　용 : 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이 정면으로 보이는 서울 여의도 KB빌딩 앞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밀실야합 규탄! 민주노조 사수! 이명박 정권 퇴진!' 이란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등단한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 4일 타결된 노 · 사 · 정 합의를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노총이 등졌다"고 비난했다. 임

위원장 등 지도부는 국회 앞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자 다시 KB빌딩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4일 노사정 합의 이후 연일 '야합'을 비난하는 논평 · 성명 등을 내놓고 있다. 도심시위 등 연말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투쟁 일정표도 내놓았다. 민노총으로선 투쟁 노선강화를 통해, 정부와 타협한 한국노총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민노총이 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야합론'에 대해 노사정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민노총은 "헌법상 기본권인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이나 유예해 사실상 사문화시켰다"(7일 논평)고 비난하고 있으나, 민노총 역시 노사정 6자회의 때 '복수노조 시행 유예'를 주장했었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말부터 열렸던 6자회의의 마지막날인 11월 25일,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이 복수노조 3년 유예를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민노총은 공식적으론 '복수노조 허용 및 창구 단일화 반대'를 외쳤지만, 내부적으론 경쟁 노조의 출현으로 현대차 등 핵심 노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민노총에 대해 노동계에선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노총이 6자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주장했다'는 복수의 참석자들 증언은 사실일까. 기자가 민노총에 문의했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민노총 관계자는 "확인해봐야 큰 의미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12월 9일 기자수첩 인용문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12월 9일 본지 기자수첩에서 인용한 민주노총의 정확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이나 유예해 사실상 사문화시킨 반면, 노조활동 말살을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인용문의 출처도 7일 논평이 아닌 6일 기자회견문이었음을 확인한바,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

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기자수첩 '야합비난 민노총 이중성'에 대한 반론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9일자 기자수첩이 복수노조 문제만을 놓고 민주노총이 이중적인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복수노조 관련 주장은 전임자 문제와 연계된 주장으로서 이들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2009년 12월 9일자 A4면 기자수첩에서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문제를 놓고 이중성을 보였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시 주장은 전임자 임금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2월 1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A1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2월 19일까지 〈조선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2. 11.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1

조 선 일 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1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2

디지틀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3

디지틀조선일보 : 조정대상보도 하단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41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정수장학회 등 엄청난 금전적 유산을 물려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490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근 혜
피신청인 : (주)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1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등 현재 기준 최소 1조 원에서 5조 원에 이르는 유산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은 재단법인이고, 영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사인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 중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오마이뉴스 :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1일자)

내　　용 : 박정희와 김대중 해방이후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정치적 인물이다...(중략)...보수세력들이 언젠가는 김대중을 역사에서 파렴치한 부정축재자로 낙인찍으려한 그 '김대중의 수조 원 재산설'의 진상이 드디어 밝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이 19일 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전 재산이 12억여 원이라고 한다...(중략)...박정희는 무려 1조 원 이상의 유산을 남겼는데, 그런 보수세력들이 입만 열면 부정축재를 하지 않았다는 '깨끗한 박정희'는 얼마를 남겼을까. 미안하게도,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5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정도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치자금의 아버지뻘인 박정희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조였던 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 당시 남긴 재산은 MBC(문화방송) 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

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그리고 6억 원의 현금이었다.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이들 재산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는 지난 2005년 정수장학회 재산을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최근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MBC의 자산가치가 10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어, 정수장학회의 자산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의 30%를 소유한 대주주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벌어진 육영재단의 경우에는 3만여 평의 어린이회관 부지만도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중 가장 넓은 80여 만 평의 대학 부지를 갖고 있는 영남대학교도 자산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영남대는 지난 96년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2천5백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지금은 그 몇 배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개인 사업가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부정축재 재산이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유족들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때, 청와대 금고 속에 있는 10억여 원의 현금 중 6억 원은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일반적인 자산관리를 했다면 지금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정희뿐 아니라, 당시 그의 최측근이었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나 김종필 전 총리도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했다가 지난 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많은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

이처럼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현금과 재단 등 어림잡아도 현재 기준 최소 1조 원에서 5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김대중은 '고작' 12억 원의 현금만을 남겼다. 김대중은 장학재단이든, 대학재단이든, 육영재단이든 그 어떤 이권이 있는 재단을 유족들에게 남기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권을 남기고, 김대중은 책을 남겼다. ...(중략)...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재산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봐도 최소 1조 원대 12억 원이고, 최대 5조 원 대 12억 원이다. 노무현은 마이너스 3억(-3억 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갖고 온갖 험담을 해대던 보수세력들은 이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최소한 인간적 도리로 "미안하게 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파헤치는 데는 보수세력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무능하지 않다.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돈의 팔촌까지의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현미경으로 논바닥의 이삭 찾듯, 참빗으로 머릿속의 서캐를 솎아내듯 샅샅이 훑어왔다.

박정희를 신처럼 무조건 받드는 일부 보수세력들에게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고무신 한 짝만 남겼어야 하는데, 최소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그리고 영남대학교도 사실은 박정희의 재산이 아니라 김대중의 재산이라고 믿고 싶은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어 있는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유산을 남겼나〉 제하의 기사에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바로잡습니다] 지난 2010. 2. 21일 보도된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하의 기사 내용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MBC(문화방송)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등 현재 기준 최소 1조 원에서 5조 원에 이르는 유산을 남겼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은 재단법인이고, 영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2월 21일자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목의 기사 내용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MBC(문화방송)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등 현재 기준 최소 1조 원에서 5조 원에 이르는 유산을 남겼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은 재단법인이고, 영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3월 30일 이내에 1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한다.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제하로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에 위 보도문을 송고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3. 25.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①

오마이뉴스 : 『[알려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②

오마이뉴스 : 조정대상보도 하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42

태풍 '덴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 대다수의 직원들이 잠을 자느라 재난상황실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286 · 1287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피신청인 : (주)내외엔이더블유에스 (내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1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일부 남원시 공무원들이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상황실 근무를 소홀히 했으며, 과거에도 불성실한 근무로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갔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장소는 재난상황실이 아닌 당직실이었고, 당시 당직자들은 비상근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갔다는 표현은 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비난이라며 정정보도와 6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를 직접 언급한 바 없어 신청인과 이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내외일보 : 『[기자수첩] 전국에서 배짱 제일 좋은 남원시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2일자 11면)

내　　용 : 4호 태풍 '덴무'가 30㎞로 11일 오전 6시를 기해 남해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 상황에서 남원은 간접으로 212㎜가 넘게 비가 오고 있으며, 곳에 따라 100㎜가 넘는 곳만 해도 7곳이 넘고 있어 지리산 지역에는 국지성 폭우가 예상된다.

남원시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11일 오전 4시 40분경 남원시 숙직자 3명 중 1명만이 근무, 2명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의 재난상황실을 보고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농작물 · 시설 침수, 인명피해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느라 바쁠텐데 재난상황실엔 4명이 근무

할뿐 잠을 자느라 자리를 지키지 않는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근무를 하지 않는 면 · 동은 7곳이 있어 한가했다.

집에 가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었는가? 이런 정신으로 남원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의문이 들며, 스스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겠는가? 라고 묻고 싶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의없는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재난상황실은 패쇄를 해야 마땅하다.

몇년 전 운봉에서도 비가 많이 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물에 떠내려가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9천만 원이 넘게 지급됐다. 남원시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갔으며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으나 아직까지 대책 하나 없다. 이런 상황이 남원 공무원들의 현주소인 것이다.

재난상황실은 진정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상황실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이런 상황의 책임자인 간부들이 더욱 큰 문제다. 모든 일을 지시만 했을 뿐 수시로 확인도 안했으며, 보여주기식 보고는 뭐하러 받는지 답답하다.

이제 남원시 간부들은 달라져야 한다. 불시에 방문해 긴장감을 높이고 잘못된 직원들은 대화와 설득, 질책과 문책을 과감히 함으로써 간부들이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의 정신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근무태도가 지속되지 않도록 이번 일에 대해 감사를 똑바로 해야 하며 근무중 이탈한 공무원들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보고도 묵인한다면 시민들은 거세게 태풍처럼 항의할 것이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내외일보 호남면 1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억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전국에서 배짱 제일 좋은 남원시 공무원" 바로잡습니다.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2일자 호남(11면)에 "전국에서 배짱 제일 좋은 남원시 공무원"라는 제하의 기자수첩 기사에서 11일 오전 4시 40분경 3명 중 1명만이 근무, 2명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의 재난상황실의 모습에 실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장소는 재난상황실이 아닌 당직실이었으며 당직실은 정상 근무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엔 4명이 근무할 뿐 잠을 자느라 자리를 지키지 않는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시의 기상특보는 비상근무 메뉴얼에 따라 상황실에 1명이 근무하고 기타 인원은 해당부서에서 대기하는 상황으로 이 또한 정상적인 상황실 근무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운봉에서 비가 많이 와 초등학생이 사망하였고 시민의 혈세가 9천만 원이 넘게 지급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공무원 비상근무와는 별개 문제로 비유가 올바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갔으며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는 보도도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였습니다. 취재기자의 억측에 따른 잘못된 보도로 남원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원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정중히 사죄드리오며, 앞으로 취재기자의 교육과 기사검증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지난 2010. 8. 12.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터넷 내외일보 "[기자수첩] 전국에서 제일 배짱 좋은 남원시 공무원"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일부 남원시 공무원들이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상황실 근무를 소홀히 했으며, 과거에도 불성실한 근무로 일부 공무원들이 시

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갔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급된 장소는 재난상황실이 아닌 당직실이었고 당시 당직자들은 비상근무 메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조정대상기사에서 '남원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갔다'는 등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와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는 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제18조 제2,3항에 의해 정정보도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해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에서는 남원시 일부 공무원을 지칭하고 있을 뿐, 신청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남원시 일부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인격적 · 사회적 법익마저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 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탐사 · 심층 · 기획 기사가 문제된 사례

사례 43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이즈피엠피'라는 컨벤션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정태근 의원 덕분에 이 업체가 급성장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510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정 태 근
　　2. 한 ○ ○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MB정부 들어 정부, 광역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국가행사를 수주, 매출이 급등하는 등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했고,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정태근 의원과 그 부인)은 정 의원의 부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자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 회사에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나 지금까지 단 1주의 주식도 보유했던 적이 없고, 정태근 의원이 국가행사 발주 또는 수주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동의, 정정보도가 게재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신동아 : 『'친이계 핵심' 정태근 의원 부인 회사 MB정권 들어 컨벤션업계 1위 '대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호 92~99면)

내　용 : 정태근 의원은 친(親)이명박계의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다. 정 의원의 부인 한 모 씨는 이벤트 · 컨벤션 전문 회사인 (주)이즈피엠피(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부사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다(이즈피엠피 관계자). (중략)

• 유례없는 단기간 고도성장

취재 결과 이즈피엠피의 매출은 2005년 51억 원, 2006년 52억 원이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008년에는 111억 원 이었고 2009년에는 187억 원이었다. 대선이 있던 2007년은 112억 원이었다. 2009년은 2006년에 비해 매출이 3.6배나 뛰어올라 매출 기준으로 135억 원을 더 벌어들인 셈이었다. 이벤트 · 컨벤션 업계 관계자들과 이즈피엠피 황광만 대표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9녀 컨벤션업계 1위에 올랐다. 황 대표는 "회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9년도에 업계 1위라고 발표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회사와 같이 단기간에 고도성장한 경우는 이 업계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한다. 다음은 이벤트 · 컨벤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즈피엠피는 수년 전만 해도 업계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소규모 회사였다. 순위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2009년 업계 1위로 도약해 업계 종사자들이 놀라고 있다. 이벤트 · 컨벤션업은 고도의 첨단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니어서 특정업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정상에 오른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이벤트 · 컨벤션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 및 이즈피엠피의 매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즈피엠피의 매출이 수직상승한 결정적 요인은 '정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국가행사의 압도적 수주' 에 있었다. 예를 들어 이 회사는 2009년에 인천시의 '인천세계도시축전', 서울시의 'C40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 대전시의 '대전국제우주대회' 등 발주액수도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3개의 메이저 국제행사를 모두 수주했다. 2008에도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발주한 최대행사 중 하나인 '람사르협약당사국 총회'를 수주했다. 그 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간규모의 행사 중 상당수도 이 회사가 맡았다.

올해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G20 정상회의'를 제외하고는 가장 주목되는 국제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행사도 이즈피엠피에 돌아갔다. 업계에 따르면 이즈피엠피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행사인 'G20 정상회의'도 정부로부터 수주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 액수 큰 국가행사 집중 수주

이즈피엠피 측은 발주처, 사업내용, 매출금액 등 구체적인 수주 내역의 제공을 거부해 '신동아'는 이를 독자적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행사의 경우 이 회사가 수주한 사실은 파악했으나 사업내용이나 매출금액을 알아내지 못했다. 2008~09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해 이 회사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행사는 다음과 같다(일부 행사는 대형 광고대행 · 이벤트 회사와 함께 진행).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의 개회식, 국제회의, 환영만찬, 야외전시(32억 원)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발주한 '람사르협약당사국 총회'의 대통령 참가 개막식, 주제관, 녹색성장 홍보관 전시, 국제회의(26억 원 · 공동수급)

△군산시가 발주한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의 개 · 폐막식, 국내외자동차 전시, 국제컨퍼런스(26억 원 · 공동수급)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주한 '세계철도학술대회'의 환영리셉션, 개막식, 홍보전시, 국제회의(11억 원)

△보건복지가족부, 충청북도,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식'

△보건복지가족부가 발주한 '아이로 미래로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KBS가 발주한 '2008 코리안 람사르 페스티벌'

△인천시의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가 발주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광주시가 발주한 '2013 광주유니버시아드 실사단 방문행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발주한 '2009 세계한상대회'

△대전시가 발주한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제천시와 2010엑스포조직위원회가 발주한 '2009 제천한방건강축제'

이밖에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우정사업본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상상어린이공원 실시설계 연구용역, 서초구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기관이 발주한 사업도 이 회사가 수주했다.

• 정태근 부인, 사장에서 부사장으로

정태근 의원의 부인 한씨는 과거에는 이즈피엠피 사장이었으나 이후 부사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다. 업계에선 사장에서 부사장으로 직함이 내려간 것을 두고 "남편이 정치인이어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즈피엠피의 황광만 대표는 "한 부사장은 당시 국제회의부문 사장이었다. 이후 회사사정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직급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했다.

정태근 의원은 부인 한씨가 30%의 지분을 가진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이즈피엠피가 설립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정 의원의 설명과는 달리 정 의원 부인의 30% 지분이나 합병은 없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업계에서는 내가 바지 사장이고 정태근 부인이 실제 사장이라는 루머가 떠도는데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내가 사장이고 정태근 부인이 부사장이다. 부사장은 지분이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선 정 의원의 부인인 한씨를 '부사장' 또는 '현 (주)이즈피엠피 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중략)

• 청와대 · 지식경제부로 면피?

이즈피엠피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발주한 '2010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IASP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s) 총회' 행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후 대덕특구측은 이즈피엠피에 "허위서류를 제출했으니 우선협상대상에서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즈피엠피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즈피엠피가 승소했다고 한다. 당시 모 지역 언론은 이즈피엠피가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 부인의 회사라는 점에 의혹을 두는 보도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즈피엠피가 황광만 대표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신청까지 고려했는데 그럴 경우 소문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태근 의원은 청와대와 지식경제부를 각각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황 대표에 따르면 이즈피엠피는 이 점을 고려해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발주하는 행사 사업의 입찰에는 불참해왔다. 지식경제부가 업계용어로 '맛나는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데도 이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해왔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향후에는 정 의원이 부시장으로 재임했던 서울시 행사 입찰에도 참가하지 않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10년 5월호의 본문 첫 번째 면에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0년 4월호 월간 신동아의 표지에 〈MB정권 출범 후 컨벤션업계 휩쓴 정태근 의원 부인 회사〉라고 크게 기재한 후, 본문 두 번째 기사로 제92면부터 제99면에 걸쳐 밀착취재 〈'친이계 핵심' 정태근의원 부인 회사, MB정권 들어 컨벤션업계 1위 '대박'〉이라는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본지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정태근 의원이 정권 실세임을 이용하여 국가행사 발주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정태근 의원이 국가행사 발주 또는 수주에 관여하였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또한 위 기사를 통해, 주식회사 이즈피엠피가 정태근 의원 부인의 회사라고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주식회사 이즈피엠피의 주식등변동상

황명세서에 따르면, 정태근 의원 부인은 주식회사 이즈피엠피의 설립 후 현재까지 단 1주도 주식회사 이즈피엠피의 주식을 보유했던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정태근 의원 부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정태근 의원 부인은 주식회사 이즈피엠피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의 영업성과와 관련하여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근로 제공에 따른 근로소득만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지는 위 기사를 통해,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주식회사 이즈피엠피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러한 전제 하에 정태근 의원이 주식회사 이즈피엠피의 국가행사 수주를 위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업계 관련자들의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신동아〉 '밀착취재' 면 혹은 본문 첫 번째 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정부 · 광역단체 · 공공기관의 국가행사 압도적 수주… 업계에선 핫이슈')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별 지〉 보도문

가. 제 목 : 정태근 의원 관련 알림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호 〈'친이계 핵심' 정태근 의원 부인 회사, MB정권 들어 컨벤션업계 1위 '대박'〉 기사에서, 정태근 의원 부인 회사가 MB정권 들어 정부, 광역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국가행사를 수주, 매출이 급등하는 등 단기간 고도성장을 했고, 이에 관련 업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태근 의원 부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이자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 회사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나 지금까지 1주의 주식도 보유했던 적이 없고, 정태근 의원이 국가행사 발주 또는 수주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 이행결과

신동아 : 『정태근 의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호 106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호 〈'친이계 핵심' 정태근 의원 부인 회사, MB정권 들어 컨벤션업계 1위 '대박'〉 기사에서, 정태근 의원 부인 회사가 MB정권 들어 정부, 광역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국가행사를 수주, 매출이 급등하는 등 단기간 고도성장을 했고, 이에 관련 업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태근 의원 부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이자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 회사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나 지금까지 1주의 주식도 보유한 적이 없고 정태근 의원이 국가행사 발주 또는 수주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이즈피엠피가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행사를 수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주)이즈피엠피 측은 황광만 대표가 신동아 인터뷰에서 "향후 서울시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없으며, MB 정권 출범 이전인 2007년에 이미 컨벤션업계 1위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사례 44

신청인이 2003년 재산공개 당시 소유임야를 누락시키는 등 부동산의 보유 및 매각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894　반론청구
신 청 인 : 권 태 신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5. 1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무총리실장인 신청인의 과다 부동산 보유 논란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이 참여정부에서 세종시 원안의 이론적 논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며, 2003년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임야 2필지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 당시 자신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세종시 원안의 이론적 논리를 만들 입장이 아니었고, 고양시 덕양구 소재 부동산 관련 재산신고의 경우, 재산등록제가 시작된 1993년부터 등록해왔으며 2003년 등록업무를 대행한 직원의 단순실수로 등록재산에서 누락되었으나 2004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보완신고를 했으며, 그밖에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신동아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과다 부동산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호 82~91면)

내　용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1월 10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때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발전의 핵"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세종시 수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이란 세종시 원안에 규정된 9부2처2청의 행정부터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첨단과학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종시 문제에 있어 권태신 실장은 공격적인 언사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다. 그는 한 특강

(2월4일)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균형 발전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가라고 했더니 당시 노무현 장관이 범 부처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자리(1월11일)에선 세종시 원안 고수를 '낭떠러지로 차를 모는 것'에 비유했다. 이튿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승객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본다"며 반박했다. 권 실장은 한 토론회(2월3일)에서 "도시 전문가들 말로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유지되면 사회주의 도시'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전(前) 정권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해 청와대 비서관과 재경부 차관 등 요직에 발탁되었으며 당시 세종시 원안의 이론적 논리를 뒷받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을 할 때는 세종시 원안을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이뤄질 때쯤이 되면 공무원이 아닐 테니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서 찬성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신동아'는 권 실장의 부동산 문제에 있어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권 실장(두 차례), 국무총리실 측(한 차례)과의 대화와 국무총리실이 별도로 보낸 소명자료를 통해 당사자의 반론을 들었다.

권 실장은 2003년 4월 1급 공무원(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에 올라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 '신동아'가 2003년 6월7일자 제15415호 관보와 부동상 등기부등본을 비교한 결과 권 실장은 이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본인 및 두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번지 임야 3,174㎡와 산○○-○번지 임야 331㎡를 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두 임야는 권 실장과 그의 자녀가 1988년 9월17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고위 공직자의 윤리성, 청렴성, 업무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재산의 누락이나 축소신고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문제는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고위공직자의 재산축소 신고는 사회 문제가 되어 여러 공직자가 옷을 벗기도 했다.

권 실장은 이 두 필지의 임야에 대해 2003년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산공개에는 빠져 있었다는 점을 '신동아'에 인정했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나는 신고했는데 관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과 두 자녀는 2005년 8월 29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번지 임야 3174㎡와 산○○번지 임야 1487㎡를 건설교통부에 매각했다. 매매가격은 6억 637만 5천원으로 평당 43만 원 꼴이었다. 두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정부 측은 공시지가의 3배 정도에 이 땅을

매입한 셈이다. 매매가는 두 감정평가회사의 평가에 의해 결정됐다고 한다.

매매가 이뤄질 무렵 권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2004년 5월~2005년 7월), 재정경제부 2차관(2005년 7월~2006년 5월)에 재임하고 있었다.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권 실장 측은 임야 매각 대금 일부와 대출금 등으로 당시 26세인 장남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구입했다.

권 실장은 '신동아'에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것은 맞다. 감정평가의 평균치로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건교부의 토지매수청구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략)

권 실장 소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산○○-○○번지 임야 7441㎡는 2009년 3월 현재 4억 6,803만 원(권 실장의 재산신고가)이었다. 2006년 2월의 2억 5,448만 원(권 실장의 재산신고가)보다 2억 1,355만 원 높아졌다. 이 땅 일대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지만 인근 지역이 대부분 개발되어 이 일대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다. 시세는 공시지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어 가치가 없다. 2009년 신고가격이 높아진 것은 신고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땅은 1995년 2월 25일 부천시 오정구청에 의해 압류(제12163호)된 점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났다. 해당 압류처분은 5년여가 지난 2000년 8월 12일(제55440호)에 말소됐다. 오정구청 관계자는 이 압류 건에 대해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래된 기록이어서 체납액수와 체납기간은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땅의 경우 1994년 부과분도 1998년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권 실장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문제에 대해 "1998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영국에 재경관으로 체류하여 그 기간 내 부지에 대한 압류나 압류해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소명자료에서 "권 실장은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발 더 나아가 "95년, 96년 토지세를 정상납부하였으므로 토지세 체납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그 증거로 이 땅에 대한 1996년 10월 6일자 권 실장의 납세영수증과 1997년 2월 1일자 권 실장의 납세영수증을 '신동아'에 제시했다. 그런데 이 중 1997년 2월 1일자 납세영수증은 "종합토지세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이라는 제목에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총리실이 "토지세 체납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제시한 이 영수증은 오히려 '권 실장이 이 영수증 발부 전 종합토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추가적 정황이 됐다. '신동아'가 해명을 요청하자 권 실장은 "구청으로부터 고지서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 항목에 따르면 권 실장은 재무부 경제협력과장(1991년 5~12월) 재임 시절인 1991년 8월 29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번지 대지 211.6㎡를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의 '접수' 항목에 따르면 실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된 시점은 2002년 3월 15일로 약 11년 뒤였다. 이 중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한 기간(지번이 나오지 않은 기간) 5년을 빼면 권 실장은 약 6년 동안 이 땅을 '미등기' 상태로 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1990년대 초에는 잔금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매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 유리한 관행도 있었다"고 했다. '신동아'는 홍보실을 통해 이 땅의 매각 경위, 미등기 원인을 토지주택공사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으나 토지주택공사는 "알아보겠다"고 한 뒤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권 실장이 이 땅을 매입한 1991년은 분당신도시가 한창 조성되던 때였다. 그는 1억 3,000여만원에 이 땅을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 중인데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땅값이 많이 올라 현 시세는 7억여 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당시 2차 분양으로 매입했다. 택지개발지구여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토지공사가 5년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지번이 부여된 뒤로도 6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영국 체류 이후 2002년 귀국한 시점에서 토지개발 추가비용 잔금인 50~100만 원의 미납부로 인한 미등기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납부하여 등기했다"고 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동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권태신 총리실장, 재산공개때 고양시 임야 누락" 반론보도

2. 내 용 : 신동아 3월호의 『권태신 총리실장의 과다 부동산 논란, 재산공개 때 고양시 임야 누락』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반론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본인이 前 정부에서 세종시 원안의 이론적 논리를 뒷받침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2005년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세종시는 소관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원안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종시 원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

대를 표명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재산등록을 해 오면서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재경부 차관, 국무총리실장 등 총 일곱 차례의 재산검증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고양시 화정동 산 ○○-○번지와 산 ○○-○번지 임야가 2003년도 관보에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착오며, 2004년도에 누락된 것을 알고 즉시 보완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미 1993년 첫 재산등록시부터 매년 소유재산으로 등록하여 왔습니다.

화정동 소재 임야는 2005년 공시지가의 3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부에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당시 본인은 토지 매매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매매가격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인 토지공사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 평균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당연히 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액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 매수를 청구한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당시 정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방침'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많은 그린벨트내 토지 소유자들이 정부에 매수 청구를 하였습니다. 매수청구제도는 당시 건설교통부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차원에서 시행한 제도이며, 매수대상 토지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소재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6만 9천 원입니다. 이만한 세금을 체납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997년 체납 사실을 인지한 후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분당동 소재 대지는 1991년 매입 당시 택지개발지구 미개발지(C7-44-6 블록)이었기 때문에 이후 5년 동안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해외(영국) 근무를 끝내고 2002년도에 등기가 안 된 사유가 잔금 지불이 안 되었기 때문임을 인지하고, 즉시 토지개발 추가비용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에 앞서 동 대지는 1993년도부터 소유재산으로 등록하고 매년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미등기 전매한 사실도 없습니다. 동 대지는 노후를 대비해 집을 지어 살려고 매입하였던 것이며, 매입 당시 본인은 해외업무를 전담하는 재무부 경제협력과장으로서 개발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내 용 : 〈신동아〉 2010년 3월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과다 부동산 논란 – 재산공개 때 고양시 임야 누락』 제하의 보도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전(前) 정권에서 세종시 원안의 이론적 논리를 뒷받침해왔다' 고 보도한 바 있으나, 권 실장은 이에 대해 "2005년 본인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원안의 이론적 논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3년 공직자 재산등록시 고양시 덕양구 임야 2필지가 누락됐다' 는 보도에 대해 권 실장은 "재산등록제가 시작된 93년부터 등록해왔으며 2003년 등록업무를 대행한 직원의 단순실수로 등록재산에서 누락됐던 사실을 2004년에 알게 되어 바로 보완신고를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동아〉 2010년 7월호에 '말길글길' 코너에 위 보도문을 별도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하며 제목은 고딕체로 한다.

2010. 5. 27.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신동아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호 593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4. 광고가 문제된 사례

사례 45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실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216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박 ○ ○ (목양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목양신문에 안 모 목사가 신청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광고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맡고 있는 신청인이 안 모 목사와 마찰을 빚는 등 목사로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신청인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며 광고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이 광고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지만 광고는 광고주의 의사일 뿐,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목양신문 : 『안○○ 목사가 최○○목사에게』 제하의 광고 (2010년 7월 17일자 12면)

내　　용 : 지난 7월 9일(금) 전국 총회원들 앞으로 온갖 허위사실과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저와 총회 및 대표총회장과 총회임원들 그리고 총회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인천순복음교회 성도(스스로 '이○○'이라고 표현함)이며 최○○ 목사의 법률고문인 방○○이라는 사람입니다.

7월 12일(월) 현재 저는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확보하였는 바, 그 내용의 허위성 및 범죄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 편지 안에 제가 최○○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내용증명도 첨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총회원들에게 발송하게 한 것은 그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여 공론화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최○○ 목사에게 아래의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총회원들과 인천교회 성도들 및 기자들을 모시고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통신상으로 내용증명을 공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개규명 제안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은 6개항의 내용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니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경우 일시와 장소는 최○○ 목사가 정하십시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래의 사실과 관련하여 안○○ 목사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행위의 정당성이 전혀 없음을 시인하는 것임과 아울러 2010년 5월 31일자 내용증명과 2010년 7월 1일자 내용증명에 기재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로 최○○ 목사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방○○이 제게 공증하여 준 "각서에 갈음하는 사과문"을 공개합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목양신문 1면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사과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각서에 갈음하는 사과문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7일자(토) 12면에 "안○○ 목사가 최○○ 목사에게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각서에 갈음하는 사과문'을 포함하여 안○○가 제공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기사 제공자인 안○○ 목사와 방○○ 간에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불과하고 인천순복음교회 및 최○○ 목사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동 교회와 담임목사인 최○○ 목사의 실명을 거론하여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여 최○○ 목사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었으며, 최○○ 목사에게 깊은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같은 면에 게재한 '각서에 갈음하는 사과문'은 관련 당사자인 방○○이 기사 작성자인 안○○ 목사에게 작성해 준 것이나 최○○ 목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충분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목양신문에 지난 2010. 7. 17.「안○○ 목사가 최○○ 목사에게,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제하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광고가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맡고 있는 신청인이 신청외 안○○ 목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동일면에 게재된 "각서에 갈음하는 사과문"은 신청외 안○○와 방○○ 간의 사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청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광고의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는 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게재한 광고의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광고주의 의사일 뿐,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적 주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광고의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2절 방송매체 대상 조정 · 중재사례

1. 뉴스프로그램이 문제된 사례

사례 46

신청인들이 무주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관광농원 진입로를 불법적으로 막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전북조정1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최 ○ ○
　　2. 최 □ □
　　3. 백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무주군으로부터 관광농원 조성공사를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사차량 이동에 필요한 '농어촌도로'를 누군가 불법적으로 좁게 만든 탓에 4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방송했다.
- 이에 대해 해당 도로의 소유주인 신청인들은 이 도로에 돌을 쌓고 나무를 심은 것은 관광농원 측이 산림을 훼손한 것을 원상 복구한 것이며, 해당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무주군에서도 확인해준 바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전주KBS-1TV : (1) 「뉴스9-전주」 프로그램 '현장추적7400-엉터리 행정'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1일 21:00)

내　　용 : ▷앵커 : 거액을 투자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하려던 한 사업자가 4년 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청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때문인데요. 조○○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 콘도와 체험 농장이 들어설 관광농원 한 예정지입니다. 터 넓이만 13만㎡ 부지를 사들이고 기반공사에 들어간 돈만 현재까지 2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4년째 중단 되고 있습니다.

▷김○○(불법 관광농원 허가자) : 근데 공사가 지연되니까 자금 투자한 것이 회수가 안 되니까 자금 압박을 받아가지고 부도 상태이지요.

▷기자 : 이 관광농원은 군청의 허가를 받았던 때는 지난 2004년. 관광농원측은 이듬해 터 닦기에 들어갔지만 공사차량이 들어가야 할 도로가 막히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4m폭 도로 안쪽에 누군가 돌을 쌓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의 넓이는 3m를 조금 넘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관광농원측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군청은 도로가 아니라서 행정기관이 나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주군청 담당공무원 :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만 돼 있지, 사업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용지 매수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기자 :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07년 당시 무주군이 직접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농어촌 도로인 점이 확인되었지만 지금껏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군청 측은 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7년에 난데없이 공사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2) 「뉴스9-전주」 프로그램 '〈속보〉 관광농원 행정 거짓 들통'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4일 21:00)

▷앵커 : 관광농원 입주까지 가로막히고 있는 무주군청의 엉터리 행정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후속 취재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거짓 주장이 잇따라 들통나고 있습니다.

▷기자 : 도로 한쪽에 커다란 돌덩이가 쌓여있고, 나무들이 빼곡하게 서있습니다. 지난 2006년, 도로를 좁게 만들기 위해 누군가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무주군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투자자 : 제가 민원을 제기할 때는 구두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지금 3년 6개월입니다.

▷기자 : 무주군은 이곳이 정식도로가 아니라서 행정기관이 나서거나 중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 설계도에도 나와 있듯이 이곳은 무주군이 7년 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엄연한 농촌도로입니다. 설계도면에 도로였던 사실이 드러나자 담당공무원은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은 됐지만 군에서 정식으로 고시한 적은 없다고 다시 발뺌합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9시 뉴스네트워크 관광농원 막는 행정기관 보도에 신청인 소유지 내 농로에 대하여 편파 · 왜곡방송한 것이 잘못되어 정정 보도요청

2. 내 용 : 본 방송은 2009년 12월 11일 9시 뉴스네트워크〈현장 7400〉 관광농원 막는 행정기관 방송에서, 관광농원공사가 4년이 지연된 것은 관광농원 공사차량이 드나들어야 할 도로가 막혀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청 농업기술센터에 확인결과, 관광농원 사업시행 측에서 지금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지 않아 관광농원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4미터 한쪽에 누군가 도로에 돌을 쌓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도로에 돌을 쌓고"는 도로소유자인 신청인을 지칭한 것이며 돌을 쌓았기 때문에 방송과 같이 도로가 막혔다는 내용의 방송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청인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판결, 대법원판결과 같이 김○○의 재산침탈행위(덕유농원 자체 농로를 관광농원 허가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농로 확장한 행위)에서 침탈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입니다. 해당 방송은 왜곡보도로 바로잡습니다.

한편 본 방송은 2009년 12월 14일 뉴스네트워크 '〈속보〉 관광농원 행정 거짓 들통' 보도에서 "도로 한쪽에 커다란 돌덩이가 쌓여있고, 나무들이 빼곡하게 서있습니다. 지난 2006년, 도로를 좁게 만들기 위해 누군가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불법으로 설치"는 도로소유자인 신청인을 지칭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도로를 좁게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판결, 대법원판결과 같이 김○○의 재산침탈행위에서 침탈부분을 원상복구 한 것입니다.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이 설계도에도 나와 있듯이 이곳은 무주군이 7년 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엄연한 농촌도로입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청에서는 신청인 소유지내 비포장 농로를 신청인의 승낙 없이 무단 포장한 것입니다. 무주군청에서 무단포장했다고 해서 엄연한 농촌도로라

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 소유지내 자체 농로입니다. 따라서 해당보도의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 본 방송은 "하지만 지난 1991년, 무주군은 이곳을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공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무주군 농어촌도로 지정공고를 살펴보면, 신청인 소유지 내 농로(무풍면 삼거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 지번이 없으므로 공고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 지정공고는 왜곡보도이므로 해당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무주 관광농원공사 중단 관련 속보

나. 내 용 : 무주군으로부터 관광농원조성공사를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사차량 이동에 필요한 농어촌도로를 누군가 불법으로 좁게 만든 탓에 4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난해 12월 보도와 관련해, 해당 도로의 소유주인 최 모 씨 측은 도로통행 관련 소송결과를 근거로 도로에 돌을 쌓고 나무를 심은 것은 관광농원 측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산림을 훼손한 것을 복구한 것이며, 이미 무주군에서도 해당도로가 관보에 고시된 농어촌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해당 관광농원의 사업계획 승인에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수차례의 협의 이행 촉구에도 관광농원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승인 취소를 예고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2월 8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KBS-1TV 〈KBS뉴스9-전주〉 프로그램에 1회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하단에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2010. 2. 5.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전주KBS-1TV : 「뉴스9-전주」 프로그램 '무주 관광농원공사 중단 관련 속보'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8일 21:40)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47

신청인 방송사로 인해 2006년 월드컵 중계권료가 2002년 대비 233% 인상됐다고 보도했으나, 133%가 맞다.

사　　건 : 2010서울조정312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에스비에스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스포츠 콘텐츠의 가격이 유독 한국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06년 서울방송이 지상파 3사의 공조체제를 깨면서 6천만 달러였던 월드컵 중계권이 1억 4천만 달러로 무려 233% 인상되었다고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상률은 233%가 아니라 133%이며, 서울방송은 에스비에스를 잘못 말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방송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한국이 봉?'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9일 21:00)

내　　용 : ▷앵커 : 올림픽 월드컵등 스포츠콘텐츠 가격은 유독 한국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방송의 방송권 독점이 계속된다면 한국 시장은 국제 스포츠 시장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공조체제가 유지됐던 지난 2002년 월드컵. 한국 시장은 지상파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올리려던 FIFA와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사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서울방송이 공조를 깨면서 6천만 달러였던 월드컵 중계권은 1억 4천만 달러로 무려 233% 인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합동 방송 시스템을 유지한 독일의 37%, 프랑스의 56%, 영국의 131%와 비교할 수 없는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전통적으로 독점방송을 해 온 미국의 212%보다도 높

은 인상률입니다. 중계권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올림픽 중계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2008년 1,890만 달러였던 한국 시장의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이 2014/2016년에는 두 배가 넘는 3,95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료 시청권 보장과 비정상적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1TV 〈9시뉴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SBS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9일 뉴스프로그램에서 "'한국이 봉?' 국제스포츠시장 먹잇감 위기"라는 제목으로 2006년 서울방송이 공조를 깨면서 6천만 달러였던 월드컵 중계권은 1억4천만 달러로 무려 233% 인상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방송은 에스비에스를 잘못 말한 것이며, 인상률은 133%가 맞는 표현이므로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KBS-1TV 「뉴스9」 프로그램 중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별 지〉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2월 9일 〈한국이 봉?〉 제목의 보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월드컵 중계권 인상률을 233%와 212%로 보도한 바 있으나, 실제 인상률은 133%와 113%이며, 서울방송은 SBS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10년 3월 9일 21:00)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48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계약한 회사는 SBS인터내셔널임에도 계약주체가 서울방송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330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1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스포츠 중계권 확보 전쟁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서울방송이 독점계약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가격은 한국 방송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계약한 회사는 서울방송이 아니라 SBS인터내셔널이며,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KBS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담당중재부는 이 사건기사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어 신청인과 사건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선진국, 독점방지 대세는 합동방송'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10일 21:00)

내　　용 : ▷앵커 : 우리보다 앞서 스포츠중계권 확보전쟁을 치른 선진국들은 미국을 빼고 거의 모두 합동방송을 선택했습니다. 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올림픽과 월드컵은 지난 90년대 극심한 상업주의 열병을 앓아왔습니다.

IOC와 FIFA가 각국 방송사들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전세계 중계권가격은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유럽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스포츠 시장의 질서회복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을 제도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나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한 합동방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시장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 NHK와 민방이 경비와 인력을 공동부담하는 합동방송을 선택했습니다.

▷이또 료지(NHK 서울 지국장) : "불필요한 방송사간 경쟁이 계속되면 올림픽 중계권만 더 비싸지게 됩니다"

▷기자 : 유럽과 일본 호주 등 전세계가 합동방송을 하고 있지만 오직 미국만은 독점중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미국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양문석(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 "시장 자체가 엄청크죠. 한 방송사가 돈을 좀 더주고 사더라도 의미있는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기자 : 서울방송이 독점계약한 중계권 가격은 한국 방송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무한경쟁을 통한 출혈 독점방송이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합동방송이냐 선택은 분명합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1TV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스포츠 뉴스 시그널 송출 후 뉴스 시작 전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선진국, 독점방지 '대세는 합동 방송'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10일 저녁 9시 스포츠 뉴스에서 "선진국, 독점방지 대세는 합동 방송"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방송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계약하고 중계권 가격은 한국 방송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합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계약한 것은 서울방송이 아니라 SBS인터내셔널인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송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KBS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만약 적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독점계약한 SBS인터내셔널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방송을 정정합니다. 잘못된 기사를 보도한 점 사과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0년 2월 10일 KBS-1TV 〈9시 뉴스〉 스포츠뉴스부문 「선진국, 독점 방지 '대세는 합동 방송'」 제하의 기사(이하 '사건기사'라 한다)에서 서울방송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계약하고 중계권 가격은 한국방송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계약한 회사는 서울방송이 아니라 SBS인터내셔널이며,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KBS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어 신청인과 사건보도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6.

사례 49

신청인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와 태아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부검결과 사인은 불치병인 양수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사　　건 : 2010제주조정13 · 14　추후 · 손배청구
신 청 인 : 차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제주KBS-1TV)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제주시내의 모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심박동이 멎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으나 아기는 숨졌고, 산모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해당 산부인과의 원장인 신청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숨진 산모와 태아의 사망원인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예방과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진 '양수색전증'으로 밝혀졌다며 추후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신청인이 구하는 추후보도를 피신청인이 3회에 걸쳐 방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제주KBS-1TV : 「9시뉴스」 프로그램 '제왕절개 출산 도중 산모, 태아 숨져'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7일 21:15)

내　　용 :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29살 임모 씨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지만 숨졌고, 산모 임씨도 과다출혈로 3시간 뒤에 숨졌습니다. 임씨는 어제 오전 출산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할 예정입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TV 뉴스프로그램 (17시, 19시, 21시, 23시50분)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추후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

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1. 제 목 : 분만 중 산모 태아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17시, 19시, 21시, 23시50분) 뉴스에서 "제왕절개 출산도중 산모, 태아 숨져"라는 제목으로 제주시내 모 산부인과에서 태아 심박동이 멎어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했으나 아기가 숨졌고, 산모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분만 중 산모와 태아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

나. 내 용 : 지난 2009년 12월 17일 제주시내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 후 산모와 태아가 모두 숨진 사건은 국과수 부검 결과 과다출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숨진 산모와 태아를 부검한 결과, 숨진 산모와 태아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예방과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진 양수색전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3월 15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7시 네트워크 제주뉴스〉 및 〈뉴스9 제주〉 프로그램과 2010년 3월 16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뉴스광장〉 프로그램에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1.항의 보도문을 방송할 때 수술실 내부 전경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되 자료화면임을 명시하여 방송하며, 조정대상보도에 사용된 신청인 병원의 전경은 다시 방송하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1.항 내지 3.항의 내용을 이행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3. 12.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①

제주KBS-1TV : 「뉴스네트워크 제주」 프로그램 '산모 · 태아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5일 19:00)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②

제주KBS-1TV : 「뉴스9 제주」 프로그램 '산모 · 태아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5일 21:00)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③

제주KBS-1TV : 「뉴스광장 제주」 프로그램 '산모 · 태아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6일 07:43)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50

신청인 단체 소속 대원이 고 한준호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을 벌인 곳이 침몰된 천안함의 함수 부근이 아닌 제3의 지점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841　반론청구
신 청 인 : UDT동지회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4. 1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고 한주호 준위와 함께 함수쪽 실종자 수색작업을 한 UDT동지회 심해잠수사의 말을 근거로, 고 한주호 준위가 침몰된 천암함의 함수부분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형 구조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UDT동지회는 소속회원과 고 한주호 준위가 작업을 했던 장소는 침몰 함수 위치였으며, 순직한 장소 또한 제3의 지역이 아닌 함수부근이라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다른 곳에서 숨졌다'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7일 21:00)

내　　용 : ▷앵커 : 그런데 고 한주호 준위가 당초 군 당국이 발표한 장소가 아닌 제3의 지점에서 숨진 것이라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백령도 현지에서 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천안함의 함미가 침몰한 지점에 대형 크레인이 떠 있고, 그로부터 남동쪽 6.4km 떨어진 함수 침몰 지역에 소형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 여기가 어디라구요?

▷함수 인양 관계자 : 함수

▷기자 : 다른 데는요?

▷함수 인양 관계자 : 함미

▷기자 : 바로 이곳 함수 부근에서 고 한주호 준위가 사망했다고 군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원태제(국방부 대변인) : 함수 부분에서 있다가 의식 잃고 나와서...

▷기자 : 크레인이 가서 작업 벌이고 있는 그 지점 말씀하시는 거죠?

▷원태제 : 그렇죠, 예

▷기자 : 하지만 실제로 고 한주호 준위는 이곳 함수가 아닌 수색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함수로부터 북서쪽 해상 용트림 바위 바로 앞에서 빨간색 부표가 설치된 곳입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 1.8km, 함미로부터 6km 떨어진 곳. 함수도 함미도 아닌 제 3의 부표에서 고 한주호 준위가 숨졌다는 겁니다.

▷기자 : 추모제 지냈던 바로 앞에 있던 그 지점인가요?

▷UDT 동지회 대원 : (사망 지점이) 부표 있었던 지점이었거든요.

▷기자 : 부표가 용트림 바위 바로 앞에 그 부표 말씀하시는 거에요?

▷UDT 동지회 대원 : 그렇죠.

▷기자 : 실제로 UDT 동지회는 고 한주호 추모제를 이곳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UDT 동지회 대원 : 부표 설치한 곳을 바라보며 추도사를 낭독하겠습니다.

▷기자 : 하지만 고 한주호 준위가 사망한 지점이 군의 발표와 달리 용트림 바위 앞바다라면 과연 한 준위의 정확한 임무가 뭐였는지 군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1TV 저녁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고 한주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2010년 4월 7일 저녁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주호 준위와 함께 함수쪽 실종자 수색작업을 한 UDT동지회 심해잠수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고 한주호 준위가 제3의 지점에서 숨졌고 숨진 제3의 장소에서 대형 구조물의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도하였으며 해군에서 그 의혹을 설명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UDT동지회는 고 한 준위와 수색작업을 한 장소는 침몰 함수 위치였으며, 순직한 장소 또

한 제3의 지역이 아닌 함수부분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UDT동지회원의 제3의 부표에서의 대형 구조물 작업은 다름이 아닌 함수쪽의 작업에 대한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보도와 달리 UDT동지회 심해 잠수사의 증언은 귀가 운전 중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현장이 아닌 상황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단순 답변한 내용이었으며 함수쪽 작업 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3의 장소는 있을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UDT 동지회, "고 한 준위, 함수에서 사망"

나. 내 용 : KBS는 지난 7일 〈9시뉴스〉를 통해 故 한주호 준위가 천안함 함수 위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UDT출신 심해잠수사의 증언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UDT 동지회는, 한 준위가 숨진 장소는 천안함 함수 침몰 위치가 확실하며 심해 잠수사가 증언한 제3의 부표는 잠수 장소를 착각해 대답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KBS-1TV의 〈KBS 뉴스〉(09:00)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자막으로 게시하고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한다.

2010. 4. 23.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KBS-1TV : 「930뉴스」 프로그램 (2010년 4월 28일 09:40)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51

이비인후과 의사와 같은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842 · 843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3. 대한비과학회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4. 1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전문의가 아닌데도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환자들이 전문의인 줄 알고 수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고, 잘못된 수술로 낭패를 본 환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대한비과학회는 의료법에 의하면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고유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타과 전문의도 얼마든지 성형수술을 할 수 있으며, 성형외과 비전문의라고 해서 성형수술을 잘 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수련과정 중에 안면성형과정이 있어 안면성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와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1)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치과 · 이비인후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5일 08:00)

내　　용 : ▷여자앵커 : 요즘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나이와 성별을 넘어서는데요. 그래서인지 성형외과가 참 많아졌죠?

▷남자앵커 : 그런데 이 중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버젓이 전문의로 둔갑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의인 것처럼 보일려고 이런저런 편법도 쓴다죠?

▷기자 : 예. 보통은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보고 가는데요. 전문의가 아닌데도 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의인 줄 알고 수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처럼 포장하고 영업하는 병의원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 성형외과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입니다. 간판에 분명 성형외과라고 적혀 있는 병원을 들어 가봤습니다. 원장은 본인이 중국에서까지 활동하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라는 걸 강조합니다.

▷의사 : "제가 중국에서 성형외과 개원의거든예. 거기에서 제가 오랫동안 의사들한테 성형도 많이 가르치고 시술을 많이 했어요."

▷기자 : 그러나 상담 뒤 병원 관계자에게 캐묻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실토합니다.

▷병원 관계자 : "성형 쪽 전문의는 아니시고요. 저도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 밑에서 일을 해봤지만 전문의라고 해서 무조건 더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자 : 또 다른 성형외괍니다. 간판을 보면 마치 성형외과 같지만, 알고보니 이비인후과가 전문인 병원입니다.

▷병원관계자 : "이비인후과 전문의세요. 코는 원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하는게 맞아요. 코 조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비인후과밖에 없어요."

▷기자 : 코 성형부터 얼굴윤곽 성형까지 안하는 성형수술이 없습니다. 이처럼 비전문의와 타과 전문의들이 너도나도 성형외과로 영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원관계자 : 의약 분업화가 되고 나서 약에 대한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관계자 : "그죠 이제 성형외과 쪽 피부과 쪽 이런데 막 공부하시고 막 이쪽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기자 : 비전문의가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전문의나 타과 전문의의 경우, 진료과목을 따로 구분해서 써야 하지만 대부분 병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원(의료소비자시민연대 총장) : "간판 보면 다 불법적으로 붙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붙여논 데가 있고 '성형외과'를 크게 써가지고 멀리서 보면 누구누구 성형외과라고 보이게끔 간판을 쓴다거나 이렇게.."

▷기자 : 유 모 씨는 영등포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유○○ (비전문의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 : "제가 지방흡입후에 그로 인해서 과다출혈이 있게

되는데 중환자실서 제가 있었다가 병원에 거의 20일 넘게 있었어요 제가 3주 넘게 걷지를 못했어요. 수술 당일날..."

▷기자 : 비전문의의 잘못된 조치로 다리에는 울퉁불퉁한 상처만 남았는데요. 과실여부를 다투다가 유씨는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 (비전문의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 :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걸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고 파혼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뭐 더 이상 바닥은 없는 거 같아요."

▷기자 : 이 병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유씨뿐만이 아닙니다.

▷강○○ (비전문의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 : " '여기는 왜 이렇게 됐냐? 왜 아프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자기가 직접 물어봐요. '거기가 왜 아플까요?' 막 이런 식으로요"

▷여자앵커 : 예~

▷기자 :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버젓이 성형외과란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라고 밝히자 원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 : "오늘 좀 긴거여가지고 몇 시에 끝날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릴거 같은데..."

▷기자 : 원장님 전공이 뭐죠?

▷직원 : 성형외과요.

▷기자 : 성형외과 전문의?

▷직원 : 네

▷기자 : 하지만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확인한 결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앵커 : 그렇군요.

▷기자 : 성형외과 전문의 증명서를 땄다는 국제미용 성형외과학회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칭 시정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관계자 : "전문의 아니신거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 검색이 안 되거든요. 국제 미용 성형외과는 국가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구요. 저희도 전에 계속 사용하시는 비전문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권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기자 : 김 모 씨 역시 비전문의에게 보톡스를 맞았다가 얼굴이 비뚤어지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 (비전문의 성형 수술 부작용 피해자) : "병원을 봤을 때 간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비전문의인지 전문의인지 딱 구별을 할 수 있게끔... 병원에 들어갔을 때도 그러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 실제로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하려고 다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성형외과 전문의) : "쌍커풀이건 간단한 코수술이건, 에, 그걸 이제 그냥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전문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수술을 하게, 하시고, 이제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기자 : 강남 성형외과 350여 곳 가운데 90곳 이상이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성형외과를 선택할 땐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면허를 확인하거나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문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2) 「뉴스타임」 프로그램 '이비인후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5일 20:00)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2TV 「아침 뉴스타임」 및 KBS-2TV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와 동일한 방영시간 동안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각각 2회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보도별로 각각 금 5천만 원씩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5일 '[현장] 비전문의 성형수술... 부작용 속출'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자막 상 '이비인후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이라는 부제하에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전문의인 줄 알고 수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성형외과) 비전문의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전문의 중 이비인후과 의사가 대표적이고 이비인후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듯이 부제를 달아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성형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고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타과 전문의도 얼마든지 성형수술을 할 수 있으며 성형외과 비전문의라고 해서 성형수술을 잘 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음이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비인후과는 전문의 수련과정 중에 안면성형과정이 있어 안면성형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면성형의 비전문의인 것처럼 기사에서 묘사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내 용 : 지난 2월 5일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치과 · 이비인후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이비인후과 의사도 이비인후과 관련 분야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5월 7일까지(5월 5일은 제외) KBS-2TV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알려왔습니다")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4. 30.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KBS-2TV :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7일 08:55)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52

'대한민국 사진대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개인전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899 · 900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5. 1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대한민국 사진대전'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진작가인 신청인의 개인전 당시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전 당시 장면이 비리를 보도하는 뉴스에 방영되는 바람에 신청인이 마치 비리와 연관된 작가인 것처럼 세간에 비춰지게 되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보도내용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고, iMBC에 같은 내용을 게재하며, 포털사이트에도 정정내용이 게재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대한민국 사진대전, 3천만 원 줘야 대상'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13일 21:00)

내　　용 : ▷앵커 : 국내 최고 권위를 가졌다는 대한민국 사진대전이, 알고 보니 뒷돈을 받고 상을 주는 장사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주면 대상, 우수상은 천5백만 원, 이런 식으로 상을 팔아왔습니다. 유○○ 기자입니다.

▷기자 : 대한민국 사진대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아마추어 작가 J모 씨가 2-30년간 취미 생활 끝에 사진예술 최고의 영예를 안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J씨는 먼저 한국사진작가협회 김 모 사무처장에게 3천만 원을 줘야 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사진작가 42명이 김 사무처장에게 4억여 원을 주고 사진대전과 서울시사진대전에서 각종 상을 받아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

난 3년간 사진대전에서 특선 이상 주요 상을 받은 작가 가운데 70% 가까운 숫자입니다.

▷서모 씨/수상작가 : "특선 정도면 700(만원) 뭐 그 정도고 대상 정도는 천 몇 백씩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하던 거예요."

▷기자 : 대상은 3천만 원, 우수상은 1천5백만 원, 특선은 7백만 원 등 일종의 가격구조까지 형성돼 있었습니다. 김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에게 돈을 준 작가들의 샘플 작품을 미리 보여줘 숙지시키거나 해당 작품이 심사장에 들어오면 신호를 보내 선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작가협회 직원 : "신호 방법도 연구해 와라 해서, 방법으로 한 것이 일어섰다 앉았다로 하는 걸로…"

▷기자 : 심사위원들은 사진계의 최고실력자인 김씨에게 잘못 보이면 강좌에 출강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봐 김씨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국사진대전은 올해 29회째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회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상작가 42명과 심사위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대한민국 사진대전', 3천만 원 줘야 '대상' 관련 정정 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13일자 뉴스데스크에서 "'대한민국 사진대전', 3천만 원 줘야 '대상'"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 사진작가 양○○ 씨의 개인전 화면을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작가 양○○ 씨는 이 사건 뉴스에서 보도한 비리 및 혐의와 아무관련이 없으며, 해당 화면은 양○○ 씨의 개인전 보도시에 촬영한 자료사진으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지난 5월 13일자 뉴스데스크에서 "대한민국 사진대전, 3천만원 줘야 대상"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진작가 양○○ 씨의 개인전 화면을 방영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화면은 양○○ 씨의 개인전 보도시 촬영한 화면으로 이 사건과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6월 8일까지 17:00~17:20에 방송되는 MBC 뉴스에 보도하되,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개인전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그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iMBC(www.imbc.com)에 2010년 6월 8일까지 '알려드립니다 (양○○ 사진작가 관련)' 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위 1.항의 보도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2010년 6월 8일까지 위 3.항의 내용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게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 및 3.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해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2010. 6. 1.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1

MBC-TV : 「뉴스」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4일 17:00)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2

iMBC : 『알려드립니다 (양○○ 사진작가 관련)』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4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53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학교수 재직 시절 논문을 이중게재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915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선 영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5.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교수 출신 국회의원 중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6명이라고 지적한 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가 된 논문은 2003년도 '제2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기념발표 논문으로 가톨릭대학교의 교내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한국언론법학회'가 재수록한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학회가 상을 받은 수상작이나 초빙논문을 당 학회지에 수록하는 경우 이를 이중게재로 보지 않으므로 신청인과 관련해서 제기된 논문 이중게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 '학자와 논문 ② 공직의 무게'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4일 22:00)

내　　용 : ▷내레이터 : 민의의 전당 국회 전체의원 299명에서 대학교수출신은 현재 12명이다. 확인결과 이중게재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6명이었다. 1993년에서 2003년 사이였다. 의원들의 해명도 공직자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선영 의원 : 저같은 사람이 쓰면 막 여기저기서 달라고 그래요... 논문을 ...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논문 발표했던 논문도 "발표된 것 잘 봤습니다" "그것 좀 싣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쪽에 실으면서 "니 논문에 그것을 안 썼느냐?"고 원저자에게 얘기하면 참 원저자는 답답한거죠...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2TV「시사기획 KBS 10」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논문이중게재' 반론보도문(또는 논문이중게재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4일 본 프로그램에서 "學者와 論文"이라는 제목으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논문이중게재의혹에 대한 인터뷰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은 본 방송이 의혹을 제기한 해당 논문은 2003년도 '제2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기념발표문으로서 당시 재직 중이던 가톨릭대학교의 교내학회지『가톨릭 법학』(제1호)에 게재된 것을 한국언론법학회가 자신들의 요청에 따라 수상기념 발표문이자 학술세미나 기념논문을 재수록한 것으로써『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집』등 각종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은 '선집이나 특집호로 재게재되는 경우는 이중게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논문은 이중게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논문이중게재'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지난 5월 4일 본 프로그램에서 "學者와 論文"이라는 제목으로 박선영 의원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당 논문은 2003년도 '제2회 철우언론법상' 수상기념 발표 논문으로 가톨릭대학 교내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한국언론법학회'가 재수록한 것으로, 해당 학회가 상을 받은 수상작이나 초빙논문을 당 학회지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이중

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6월 15일에 방송하는 KBS-1TV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제목 및 내용을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KBS홈페이지(www.kbs.co.kr)에 게시되어있는 조정대상보도 서두에 위 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을 자막으로 게재한다.

4. 신청인은 위 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6. 7.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KBS-2TV :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 (2010년 6월 15일 22:00)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54

제주도 화산석의 일종인 '송이'라는 명칭을 신청인 업체가 상표 등록을 통해 독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당한 절차로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037 · 1038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송이산업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6.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제주도 화산석의 일종인 '송이'라는 명칭을 신청인 업체가 상표등록을 통해 독점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송이'라는 상품에 대한 특허권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KBS-1TV에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보도를 게재한 KBSi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2010서울조정1039 · 1040)했다. 심리결과, KBS-1TV에 방영될 반론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함과 함께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뉴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송이 독점사용 안돼!'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8일 19:00)

내　　용 : ▷앵커 : 제주에는 '송이'라고 불리는 화산석이 있는데요, 한 업체가 '송이'라는 명칭을 상표 등록해 독점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곽○○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공기 구멍이 많고, 불그스름한 색을 지닌 화산석 '스코리아'. 제주에서는 흔히 '송이'라고 부릅니다. 송이를 이용해 벽돌과 타일을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송이'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해 상품 이름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고○○/(주)제주○○○ 대표 : "우리가 사과나 포도를 가지고 사과잼, 포도잼 표시하지 또 다른 표현을 돌려서 표현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바로 적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기자 : 상표 등록을 한 업체는 '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자신들에게 비용을 내라는 입장입니다.

▷박○○/(주)송이산업 대표 : "저희들이 20년 이상 관리를 해오고 브랜드 가치를 올려 놓은 것을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기자 : 제주도 보존자원인 '송이'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는데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제주도 환경정책과장 : "이런 부분을 저희도 두 업체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 제주의 공공자원인 송이를 특정기업의 상표로 등록해준 특허청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1TV 오후7시 〈뉴스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송이 독점사용 안돼!' 정정보도문 (또는 특허권 '송이상표'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8일 뉴스프로그램에서 "송이 독점 사용안돼!"라는 제목으로 '송이' 상표 특허권자인 송이산업이 특허권을 독점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송이산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송이' 상표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 '송이' 상표 등록 적법 절차"

나. 내 용 : KBS는 지난 6월 8일 '송이' 상표 특허권자인 송이산업의 특허권 독점 사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이산업은 지난 2007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이' 상표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7월 9일까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주참여시간에 신청인 업체를 배경으로 하여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6. 30.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송이' 상표 등록 적법절차"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일 19:00)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55

4대강 공사로 인해 대체서식지로 이식된 단양쑥부쟁이가 대부분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29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7.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체 서식지에 이식된 단양쑥부쟁이가 대부분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방송하면서 이식된 단양쑥부쟁이가 말라 죽은 듯한 영상을 내보냈다.
- 이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청인 국토해양부는 영상 속의 대체 서식지에 이식된 단양쑥부쟁이는 성공적으로 활착하여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뒤늦게 '보호''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일 21:00)

내　　용 : ▷앵커 :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 가운데 환경파괴 문제가 늘 논란의 핵심인데요. 특히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처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자 : 4대강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변에서 멸종위기종인 층층둥글레가 발견됐습니다. 6만여 개가 국내 최대 규모의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한강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여주의 올레길 여강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곳곳에서 층층둥글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한강과 만나는 섬강으로 가봤습니다. 한 시간만에 4군데서 멸종 위기종인 삵의 배설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 "잘 틔여서 다른 동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배설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남한강에서만 수리부엉이와 큰 기러기, 참매와 가창오리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두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는 누락돼 있었고 당연히 보호대책도 없습니다.

▷최○○/녹색연합 사무처장 : "계절의 변화를 다 반영한 4계절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4개월도 안되는 조사를 했고..."

▷기자 : 정부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 "서식지를 원형보존하고 일부 호안정비라든지 훼손이 불가피한 곳에 서식하는 보호종들은 이식해서 키울 예정입니다."

▷기자 : 하지만, 앞서 발견된 '단양쑥부쟁이'의 경우 이식한 뒤 대부분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MBC 뉴스데스크에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신청인이 첨부한 이식된 단양쑥부쟁이 현재 모습을 화면으로 삽입하고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조정대상보도 속의 글자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4대강 공사중에 이식된 단양쑥부쟁이가 대부분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해"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일자 MBC 뉴스데스크 「멸종위기종 서식처 잇따라 발견… 뒤늦게 '보호'」 제하의 보도와 관련, 영상속의 대체서식지에 이식된 단양쑥부쟁이는 죽거나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도일 현재 성공적으로 활착하여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멸종 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이식 성공'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8일 21:00)

내　　용 :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4대강 사업 한강 6공구 지역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종 단양 쑥부쟁이 3만 8천 그루를 강천섬으로 옮겨 심은 결과, 현재 20센티미터까지 자라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56

신청인이 운영하는 해상 주유소가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켰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215　정정청구
신 청 인 : 동양산업(주)
피신청인 : (주)에스비에스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면서 그 자료화면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촬영한 장면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불법면세석유를 취급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뉴스추적」 프로그램 '불법석유가 판친다'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1일 23:05)

내　　용 : ▷사회자 : 최근 해상경유의 불법유통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 건수는 미미합니다.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마침 해상에서는 주유선 한척이 어선에 급유중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대형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기름은 세금이 면제되서 면세유라 불리는데 가격은 시중가격 절반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거래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 면세유를 쓰지 못하는 배들은 여기 바지선에 직접 접안해서 기름을 공급받고, 연안부두로 못 들어오는 큰 배들은 ○○산업이라고 적힌 저 배가 가서 기름을 직접 공급해 줍니다.

▷사회자 : 해양경찰청은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문과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 : 어떻게 해요 보통?

▷해양경찰 : 바깥에는 해경 경비정들이 하고

▷기자 : 야간에는 단속 안해요?

▷해양경찰 : 야간에는 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동해, 속초나 이쪽에는 18시 넘어서 일몰 후에는 잘 안 하죠. (중략)

▷사회자 : 현재 해상면세유는 약 3조 원가량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중 상당량은 선박에 쓰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육상으로 유입되는 양은 얼마인지, 그중 차량에 주입되는 양은 또 얼마인지 파악조차 힘듭니다.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감시 활동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면세유의 불법 유통도 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석달간 불법 면세유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91건, 232명을 적발했습니다.

▷해양경찰 : 선박용 면세유는 한번 적발되면 상당히 탈세액이 많은 그런 경우로 적발이 되는데 이거(선박용 면세유)는 특별단속 때보다는 저희들이 평소에 범죄첩보 수집활동이나, 그다음에 기획수사를 강화해서 1년에 몇 건씩 적발되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자 : 단속결과 지난해 보다 61%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해상면세유는 조직화되고 대형화된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해양경찰 : 주로 사설부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한번씩 첩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시가 소홀하다고 봐야죠. 개인 부두안에는 물론 개인 사설업에 맡기기도 해서 그런다고 해서 영원한 사각 지대는 아니지만 아마 그런 형태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현장고발 불법석유가 판친다

2. 내 용 : SBS 뉴스추적 지난 8월 11일자 방송과 관련하여 불법석유류 방송화면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불법석유류를 취급하지 않는 해상주유소에 대하여 불법석유류를 취급하는 것 같은 내용을 방송화면에 내보냈습니다. 해상주유소는 불법석유류를 취급하지 않는 회사이며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회사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이에 SBS 뉴스추적팀은 방송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해상주유소를 방송을 내보내 해상주유소가 피해를 보게 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지난 8월 11일자 "불법석유가 판친다" 제목의 방송에서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때 방송된 화면의 해상주유소는 불법석유를 취급하지 않는 회사이며 단순히 설명을 위한 화면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0년 9월 8일까지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고 제목은 화면 좌측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내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며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주 2백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2010. 8. 31.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SBS-TV : 「뉴스추적」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일 23:05)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57

대학생인 신청인이 교육감 선거에 무지한 것처럼 인터뷰 내용을 왜곡 편집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289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한국교육방송공사 (E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보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한 예로 대학생인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내보냈다. 이 인터뷰에서 신청인은 '지방선거 전까지 교육감 선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몰랐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터뷰 당시 자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자택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러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투표하기 전까지는 지방선거에 교육감 선거가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처럼 보도되었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십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소송에 계류중이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보도를 전재한 인터넷EBS에 대해서도 같은 청구(2010서울조정1290)를 제기했고, 담당중재부는 위 사건(2010서울조정1289)에 동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 위와 동일한 결정을 한 바있다.

조정대상보도

EBS-TV : 「EBS뉴스」 프로그램 '선거법 개정이 대안'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7일 20:30, 22:00)

내　　용 : ▷앵커 : EBS뉴스는 이틀에 걸쳐 현행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지난주 치러진 교육감선거는 후보는 너무 많은데 공약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극심했는데요. 교육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거법을 대폭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는 모두 일흔 네 명, 경쟁률은 4.6대 1로 평균경쟁률의 두 배

에 이릅니다. 대학교수나 교사출신이 대부분으로 정당지원을 받는 자치단체장 후보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습니다. 실제로 선거 일주일 전까지도 후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유권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배○○(6.2지방선거 전날) / 고3 수험생 학부모 :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잘 모르고, 오늘 집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내일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강○○(6.2지방선거 당일) / 대학생 : "지방선거 전까지 교육감이라는 게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리포트 : 후보들이 일단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다보니 선거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이념공방과 조직싸움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육감후보들의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교육감후보는 정당공천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 신념을 표시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법까지 시도지사와 똑같이 제한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은 13일, 정당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감 후보에게는 정책홍보는커녕 얼굴 알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강○○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 "만일에 좀 더 직선제를 강화해나갈라고 한다면 더 많은 기간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리포트 : TV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참여자격도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공식선거운동 한 달 전부터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퍼센트 이상을 받은 후보들만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충분히 공약을 살펴볼 수 있도록 권고조항으로 규정된 정책공약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교육감후보 세 명 가운데 한명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 정책 우선순위 등이 설명된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유○○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현재는 발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임의조항을 교육감후보자 정도는 반드시 발간을 해서 자신의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지요."

▷리포트 : 교육가치의 의미를 살리면서 직선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2010년 6월 7일에 방영된 EBS뉴스와 10시뉴스에 보도된 '선거법 개정이 대안' 제하 보도기사에서 기자의 요청에 의해 인터뷰에 응한 25세 남성이며, 피신청인은 지상파TV채널 및 케이블 채널, 인터넷서비스 등 교육 및 방송컨텐츠를 제공, 보도하는 방송사입니다.

피신청인은 '선거법 개정이 대안' 제하의 보도에서 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교육감 선거방식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 화면을 4초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인터뷰의 내용은 전체 인터뷰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편집 보도한 것으로 신청인의 인터뷰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도되었습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투표를 마치고 여자친구와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던 신청인에게 기자가 다가와 "같이 있는 그림이 너무 예쁘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기자가 제시한 인터뷰 주제는 '6.2지방선거와 한국의 정치현실' 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평소 정치, 사회분야에 관심이 많고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기도 했기에 인터뷰에 응했고 6.2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념으로써의 진보와 보수, 한국 정치현실의 문제와 개선방안 등의 정치,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약 5분여 간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인터뷰에서의 4초간의 발언은 "이번 선거 전에도 교육감이라는 것을 알았는가?"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뒤이어 "그러나 자택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정책 검색 등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자를 선택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보도의 쟁점에 걸맞게 신청인의 발언을 선택적으로 편집하여 방송사의 의도대로 신청인을 '교육감 선거에 무지한 대학생'으로 보이게끔 보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인의 원래 발언내용은 "지방선거 전까지 교육감이라는 게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내용에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하기 전까진 교육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보도되어 마치 선거 투표 직전까지 교육감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투표한 유권자로 보이게끔 신청인의 발언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인터뷰 사전 혹은 진행 중, 후에도 신청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임의적으로 편집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뷰의 주된 의도 또한 '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혹은 '교육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임을 사실대로 통보하지 않고 '지방선거와 정치' 라고 접근하여 신청인을 기만하였습니다. 방송의 내용을 보면 시민 인터뷰는 '교육감선거방식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교육감에 대해 무지하다' 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는 신청인에게 처음부터 기획된 의도를

가지고, 위법하게 신청인을 속이고 접근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것입니다. 평소 신청인은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념이 뚜렷하다고 자부해 왔으나 이 보도로 인하여 주변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나댔다", "한심하다", "그게 자랑이냐", "실망했다", "투표는 제대로 할 줄은 알았냐?"는 등의 얘기를 들었으며 보도로 인한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와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보도내용의 삭제만으로는 이미 훼손된 신청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첨부한 보도내용과 기존 보도자료 일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십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 58

신청인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375 · 1376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5.18실체규명위원회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광주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광주5 · 18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극우단체인 신청인 5 · 18 실체규명위원회가 광주 5 · 18공원에서 집회를 가지려다 5 · 18단체 회원들과 충돌했다"고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5 · 18실체규명위원회는 5 · 18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을 뿐 극우단체는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3천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이후 이 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

광주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북한이 배후라고?'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21:00)

내　　용 : ▷앵커 : 5 · 18의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오늘 광주 5 · 18 공원에서 집회를 가지려다 5 · 18 단체 회원들과 충돌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극우단체가 5 · 18 공원에서까지 망령된 행동을 벌이는 모습에 광주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기자 : 자유북한군인연합 등 탈북자와 이른바 5 · 18 실체규명위원회의 집회가 신고된 5 · 18 기념공원. 이들이 성명서를 낭독하려는 순간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5 · 18 구속부상자회 등 5 · 18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 저지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기자회견은 무산됐고 몸싸움 과정에서 극우단체 회원 한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이들은 80년 당시 북한군이 5 · 18을 주도했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극우단체 회원들은 5 · 18기념재단

등의 우려 성명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김○○, 5 · 18 실체규명위원회 : "여러분들은 5 · 18을 민주화운동으로 알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북한 특수요원들이 있다는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기자 : 5 · 18 단체 회원들은 일부 시대착오적인 극우세력들의 호도로 5 · 18의 보편적 가치가 왜곡돼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5 · 18 구속부상자회 : "5 · 18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이곳에서 그것도 광주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자 :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5 · 18 민주화운동이 일부 극우단체의 근거없는 북한 배후설로 또다시 몸살을 앓아야 하는지 지켜보는 시민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⑵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북한이 배후라고?'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19:00)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1) 참조〉

2

광주KBS-2TV : 「뉴스타임」 프로그램 '북한이 배후라고?'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20:00)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1)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1TV 〈7시 뉴스네트워크, KBS 9 뉴스〉 및 KBS-2TV 〈KBS 8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천2백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5 · 18 북한배후설 극우단체' 바로잡습니다 (또는 '5 · 18 북한배후설 극우단체'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9일자 사회면에 "5 · 18 북한배후설 극우단체 – 5 · 18 단체 몸싸

움” 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7월 9일 오후 2시 광주 5 · 18 기념문화센터 앞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5 · 18 단체의 집단테러로 이를 방해받은 사건에 대하여 5 · 18실체규명위원회 및 그 회원에 대하여 극우단체 회원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하여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극우단체인지 여부와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였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KBS 1TV 뉴스네트워크(광주지역)에 다음의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다 음 –

• **제 목** : 5 · 18실체규명위원회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7월 9일 9시 뉴스 등에서는 5 · 18실체규명위원회를 극우단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는 5 · 18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극우단체는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 이행결과

광주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5 · 18 실체규명위원회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9일 19:00)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사례 59

변호사인 신청인이 수임한 북한 주민 관련 상속 소송에 북한 보위부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11　정정청구
신 청 인 : 배 금 자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북한주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송이 실제로는 북한 보위부가 공식적으로 개입 주도하여 달러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당국이 진행하는 소송으로 밝혀졌고, 북한주민들의 상속권이 인정되면 백억대의 유산 일부가 북측으로 넘어가 북한당국이 가져가며, 법무부가 백억대 상속재산 소송에 북한보위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고, 소송위임장 사진을 찍는 데도 북한보위부 요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관련 가사소송사건 대리 변호사인 신청인은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은 소송당사자 중 피신청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북한주민 소송에 북한 보위부가 관여하거나 북한당국이 개입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북한주민이 승소하더라도 당장 북측으로 재산이 넘어가거나 북한당국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마치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이 해당 상속재산 관련 소송을 변호사로서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정대상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인격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北 보위부, '이산가족 상속재산' 소송에 개입'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24일 21:00)

내　　용 : ▷앵커 : 북한 보위부가 6.25때 월남한 이산가족의 백억 원 대 상속재산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 작년 2월 북한 주민 4명이 월남해 백억 원 대 재산을 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을 나눠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당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DNA 검사를 위해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조사기관의 머리카락의 DNA 분석 결과 친자로 확인됐고, 다음 달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권이 인정되면 백 억원대의 유산 일부가 북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사진을 찍는 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속 재산 소송에 대해 북한 보위부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북한 보위부 주도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게 법무부의 분석입니다. 무역 제재로 인한 달러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승소해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남한에 법정대리인을 세워 재산을 강제로 신탁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유재산제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남한 재산이 북한에 국유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무부는 특례법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MBC-TV 〈저녁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종합 오늘의 주요뉴스편과 및 7번째 보도편)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북한주민 소송, 북한당국 관여'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24일 〈저녁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北 보위부, '이산가족 상속재산' 소송에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주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송은 실제는 북한보위부가 공식적으로 개입 주도하여 달러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당국이 진행하는 소송으로 밝혀졌고, 북한주민들의 상속권이 인정되면 백억대의 유산 일부가 당장 북측으로 넘어가 북한당국이 가져가며, 법무부가 북한보위부가 백억대 상속재산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소송위임장 사진을 찍는데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법무부가 포착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정황을 포착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북한주민이 제기한 신분관계 가사소송에서 피신청인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신청인측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소송을 진행하는데 북한을 왕래하는 자선활동가의 도움으로 자선활동가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개인적으로 몰래 받았을 뿐이고 북한보위부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북한을 왕래한 증인의 증언도 신청인측 주장과 동일하고, 이러한 사실은 소제기단계부터 신청인측에서 밝힌 사실이고 새삼스럽게 법무부가 소송도중에 정황을 포착하거나 밝힌 것이 전혀 아니며, 북한주민 소송에 국가보위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하거나 북한당국이 가져가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현재 재판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승소하더라도 당장 북측으로 넘어가거나 북한당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MBC는 『北 보위부, '이산가족 상속재산' 소송에 개입』 (2010년 9월 24일 9시 뉴스데스크) 제하의 보도에서 북한 보위부가 6.25때 월남한 이산가족의 백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시청자들이 해당 보도를 통해 위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신청인이 마치 북한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변호사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에 북한 보위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하거나 북한당국이 상속 재산을 가져가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명백하게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보면, ① 법무부가 상속재산 소송 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점, ② 법무부가 상속재산 소송에 대해 북한 보위부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는 점 등을 보도하였고, 나아가 위 기사는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 소송과 관련, 북한 주민이 승소하더라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남한에 법정 대리인을 세워 재산을 강제로 신탁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신청인과 북한정권(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등으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이 북한 보위부 주도의 소송을 남한에서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다'라고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보도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암묵적 승인이나 개입이라고 밝힘으로써 소송을 진행하는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까지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해당 상속재산 소송을 변호사로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인격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5.

2. 시사 · 고발 프로그램이 문제된 사례

사례 60

신청인 업체의 줄기세포 화장품이 주름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266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알앤엘바이오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2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줄기세포 화장품'이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없으며, 줄기세포 화장품에 항생제, 첨가물, 노폐물 등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고, 화장품의 원료물질이 '국제화장품원료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줄기세포 화장품 중 식약청 등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터뷰에 나왔던 신청인 회사 제품 이용자는 주름개선 등의 효과를 경험했으며, 일부 업체의 줄기세포 화장품에는 항생제 등 위험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제화장품원료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안전성을 입증하는 절차이며, 식약청 인증업체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신청인 회사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배양액의 경우 최종 제조단계에는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줄기세포 화장품'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4일 22:00)

내　　용 : ▷진행자 : 지난해 우리 나라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7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세계 12위라고 합니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알만하지요. 요즘에는 보습효과뿐만 아니라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노화방지효과까지 있다는 기능성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격도 일반 화장품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죽은 세포도 재생시킨다는 화장품까지 등장했는데

요, 아직 써보진 않으셨어도 소문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르기만 해도 어린 피부로 만들어준다는 이 줄기세포 화장품의 효능, 과연 어떨지 무척 궁금한데요. 김○○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내레이션 : 나이를 거스른다는 줄기세포 화장품의 실태.

▷김○○ PD : 화려하게 진열된 화장품들. 까다로운 여성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업체의 판촉이 한창입니다.

▷여자 1 : 피부 안에 있는 줄기세포 자체를 지금 변경을 해서 아예 새 세포로 소생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이 라인이.

▷김○○ PD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줄기세포 화장품. 피부를 재생시켜 젊음을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 여자 2 : 세월을 거슬러서 만약에 내가 30이다. 그러면은 29살, 28살 이렇게 나이를 거스르게끔 해주는 화장품이 가장 인기예요.

▷임○○(A화장품 연구소) : 여기가 인공적으로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곳이고요.

▷김○○ PD : 업체들은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해 유용한 화장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임○○(A화장품 연구소) : 세포들이 배양액에 유효성분을 이렇게 분비를 해 내게되는, 나중에 이 배양액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는 폐기를 하고.

▷김○○ PD : 줄기세포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여자 3 : 사실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줄기세포라는 말을 듣고 '주름이 많이 개선이 되겠다' 라는 이 기대감이 컸었지요. 근데 막상 관리를 받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개선은 안 됐어요.

▷김○○ PD : 바르는 것만으로도 세월을 거슬러 어린 피부로 되돌려준다는 줄기세포 화장품의 실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자리잡은 이곳에 한 화장품 매장의 입점광고가 눈에 띕니다. 개점 준비로 북적이는 매장. 화장품 업체로선 유일하게 입점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열린 입점행사는 성대했습니다. 매장 행사장에는 제품을 구경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했다는 이 화장품. 고객들에게 직접 발라주며 효능을 설명합니다. 줄기세포를 연구하던 바이오벤처회사의 제품임을 강조합니다.

▷라○○(A화장품 업체) : 피부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또는 피부를 더 젊게 만드는 소재가 앞으로 저는 뜰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관심 가졌던 분야는 바로 피부의 그 나이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느냐.

▷김○○ PD :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는 것은 모든 여성의 꿈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화장품

을 발라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이미 노화된 피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화장품이 실제로 가능할까. (중략)

▷김○○ PD : 제작진은 줄기세포 화장품을 사용해 봤다는 또 다른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김미애(가명) : '주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 주름이 쫙 펴진다' 라는 그 문구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사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김○○ PD : 한 화장품 업체의 주름개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미애 씨. 평소 눈가 주름이 고민이었던 어머니와 함께 두 달간 꾸준히 제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미애(가명) : 눈가의 주름이 전혀 개선이 안 된 걸로 거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관리실에서도 하는 말이 "유난히 효과를 못 본 모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음)

▷김○○ PD : 올해 들어 화장품 업계의 키워드는 줄기세포입니다. 시중에 판매중인 줄기세포 화장품을 직접 구입해 봤습니다. 줄기세포 화장품은 제작진이 확인한 것만 해도 20종이 넘었습니다. 한결같이 줄기세포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하는 화장품들. 전문가를 통해 줄기세포 화장품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중략)

▷김○○ PD : 줄기세포 화장품을 만드는 또 다른 업체. 이곳은 원래 줄기세포를 연구하던 곳입니다. 지금 이 업체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한 화장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A화장품 연구소) : 그렇지요. 세포가 저 안에서 이렇게 점점, 한번 보시면 돼요.

▷김○○ PD : 아, 그래요? 저거하면 되나요?

▷임○○(A화장품 연구소) : 이제 인큐베이터인데요.

▷김○○ PD : 예.

▷ 임○○(A화장품 연구소) : 예. 요 안에,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배양을 시키고 있는거지요.

▷김○○ PD : 아. 이게 날짜들은.

▷김○○ PD : 지방줄기세포는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양액 속에서 키워집니다.

▷임○○(A화장품 연구소) :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줄기세포가 분비해내는 인자들이 굉장히 활성이 좋은 인자들이 많아요.

▷김○○ PD : 배양액 안에는 줄기세포가 내뿜는 각종 성장인자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업체는 주장합니다. 이 업체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그 자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걸러낸 배양액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배양액에 들어가는 영양물질과 각종 첨가물 또한 함께 있습니다.

▷임○○(A화장품 연구소) : 요거 같은 경우엔 저희가 완제품을 다 만들어 놓은, 원료는 찍으시면 안

되고. (웃음)

▷ 김○○ PD :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할 때는 항생제와 첨가물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업체에서 사용하는 첨가물은 어떤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임○○(A화장품 연구소) : 첨가물은 여기 있는데 이건 이제 보안상.

▷김○○ PD : 아. 이 아래는 첨가물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뭐뭐뭐가 첨가물이에요?

▷임○○(A화장품 연구소) : 항생제.

▷임○○(A화장품 연구소) : 예, 항생제. 그리고 뭐 우태혈청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김○○ PD : 줄기세포를 걸러내고 난 배양액에는 어떤 물질들이 남아 있을까.

▷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생명공학과) : 좋은 물질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노폐물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체들은, 특히 외부에서 영양물질을 공급받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질소노폐물들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노폐물들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노폐물의 전형적인 형태들입니다.

▷김○○ PD :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연구하는 이곳에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배양액은 수시로 갈아줍니다. 세포에서 걸러낸 배양액에는 유용한 성분뿐만 아니라 노폐물 등도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로 간주합니다.

▷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생명공학과) : '좋은 물질이 줄기세포로부터 분비가 될 것이다' 그런 가정 하에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지요.

▷김○○ PD : 근데 그것이 규명이 되어 있나요?

▷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생명공학과) : 규명이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 PD : 음.

▷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생명공학과) : 대부분 아직 베일에 가려 있고, 그것이 정말 다른 세포들의 뭐 성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분명히 검증이 되어야 할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김○○ PD : 음.

▷김○○ PD : 배양액에 들어가는 첨가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액을 피부에 직접 바를 경우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김○○ 교수(전남대학교 피부과 전문의) : 모낭상피 중에서 특정하게 표피에 가까운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 세포를 키우다 보면 세포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잖아요.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세포를 키우든지 항생제를 같이 배지에 첨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항생제라는 것은 화장품의 배합 금지물질이잖아요.

▷김○○ PD : 전문가들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자체 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략)

▷김○○ PD : 줄기세포 배양액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업체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리○○(A화장품 업체) : 유해하지 않은 거는 화장품에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국제화장품규격집에도 원료를 등재시켰고.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열심히 해 볼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이제 식약청에서 다른 데가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유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김○○ PD : 업체의 대표는 자사 원료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미국의 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이 원료를 등록했습니다.

▷국제화장품원료사전 담당자(미국화장품협회) : 원료로 등록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원료 등록 시에 안전성 검토과정이 없고, 엄격한 규제절차도 없습니다. 원료 안정성 관련 정보나 제조, 시험성적 등 이런 책임소재는 모두 회사측에 있습니다.

▷김○○ PD : 또한 이 업체는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입증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협회에 확인해 봤습니다. 업체는 이같은 업체의 주장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며 홈페이지에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상은 제품의 안전과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원료의 안전성과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 줄기세포 화장품 효능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인정한 바가 없고, 한 번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중간에 내용을 보니까 저희 요건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인정될 수는 없고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완이 안 되면 반려하든지 지금 그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 PD : 줄기세포 화장품은 지금까지 원료의 안전성과 제품의 효능 그 어떤 것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화장품은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인증받고도 이 같은 인증이 마치 줄기세포의 효능 때문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

와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줄기세포 화장품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가. 본 방송은 지난 6월 4일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세월을 되돌릴 수 있을까? 줄기세포 화장품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특정 업체의 줄기세포 화장품을 체험해본 사용자가 그 제품에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그 사용자는 그 업체의 줄기세포 화장품을 사용하여 주름개선 등의 효과를 경험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나. 본 방송은 줄기세포 화장품 제품에 항생제, 첨가물, 노폐물 등 위험한 물질이 있다는 의미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업체의 줄기세포 화장품에는 그러한 위험한 물질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 본 방송은 국제화장품원료사전에 등재되는 것이 그 원료 물질의 안전성에 관하여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국제화장품원료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안전성을 입증하는 절차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라. 본 방송은 식약청 등 정부에서 안전성,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전혀 없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식약청 인증업체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지난 6월 4일 소비자고발에서는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업체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배양액의 최종 제조단계에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정합의 후 3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말미에 스튜디오 멘트 형식으로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9. 29.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2010년 10월 8일 22:00)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61

신청인들이 도굴된 고구려벽화를 매수하여 팔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93 · 1594 · 1595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2. 김 ○ ○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12.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협회장인 신청인이 고구려벽화 도굴사건에 관여되어 있고, 도난된 고구려 벽화를 매수하였으며, 한국고미술협회와 신청인이 허위감정을 일삼았고, 신청인이 깨진 도자기를 수리한 후 이를 숨긴 채 모 박물관에 납품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충분한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당사자 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사라진 고구려 벽화'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27일 23:00)

내　　용 : ▷진행자 : 지난 2000년, 중국 집안(集安)시의 고구려 고분 두 곳의 벽화가 도굴당했다. 사라진 벽화는 고구려 시대의 대표적인 고분인 삼실총과 장천1호분의 벽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과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자료로 손꼽혔던 유물들이다. 당시 벽화 도굴죄로 4명의 조선족이 사형판결을 받으면서 벽화의 행방은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사라진 고구려 벽화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진은 집안시를 찾았지만 고분의 입구는 이미 시멘트로 봉해져 출입이 통제된 상태. 그러나 그곳에서 어렵게 입수한 중국 인민법원 판결문을 통해 도굴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인물은 도굴범들에게 55만 위안(당시 한화로 약 8천5백만 원)을 주고 도굴을 지시. 벽화를 구입했다는 것. 중국 현지에서 만난 조선족은 판결문의 한국인으로 인사동의 골동품상인 이 모 씨를 지목했다. 이 모 씨는 현재 고

미술품상인들의 연합인 한국고미술협회에서 이사와 감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인물이다. 제작진이 찾았을 때 벽화와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씨. 몇 번의 설득 끝에 당시 도굴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씨는 당시 중국을 다녀간 사실을 인정하지만, 돈을 건넨 사람은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가 지목한 인물은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인 김○○ 씨.

실제로 제작진은 2000년 도굴사건 이후 김○○ 회장에게 벽화 구매를 제의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김씨가 국내에 벽화를 들여와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판매를 시도했다는 것. 당시 벽화를 본 수집상들은 벽화 속 여인들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여인처럼 아름다웠다고 말한다. 벽화의 입수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김 회장은 끝까지 도굴사건과의 연루설을 부인했는데... 사건 발생 10년만에 밝혀지는 고구려 벽화 도굴사건의 전모. 사라진 고구려벽화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략)

김○○ 씨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의 주된 업무는 고미술품 감정. 국가공인 감정기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고미술협회는 가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고미술협회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제보들이 들어왔다. 진가(眞假) 여부와 시대구분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판매금액이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오고간다는 것이다. 한 골동품 상인에 따르면, 고미술협회의 감정은 상인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한다. 그는 김 회장과의 친밀도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고미술품 상인 유○○ 씨는 2001년 김○○ 회장을 통해 가짜 겸재정선 그림을 진품으로 감정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판매가도 3백만 원에서 2억으로 올랐다. 감정위원들의 공정성도 문제였다.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한 감정위원들이 보험사기, 담보 대출사건에 연루되며 구속되는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한 것.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고미술협회의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심이 실력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감정. 잃어버린 양심으로 인해 공신력마저 의심받는 고미술품 감정의 세계를 취재했다.

(중략)

김○○ 회장과 약 2,3천 점 이상의 거래를 한 골동품 중개상 황○○ 씨. 그는 김 회장이 가장 선호한 물품이 수리도자기라고 밝혔다. 깨진 파편으로 원래 모양을 유추해 새 파편과 함께 온전한 모양으로 완성시킨 것을 수리도자기라고 한다. 이들 중엔 진짜 파편이 30%가 채 되지 않는 물건도 있었다. 문제는 수리도자기 중 일부가 국내 유명 박물관에도 납품되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진짜 파편이 부족한 도자기는 본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전시돼 역사적인 자료로 공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고미술의 역사가 왜곡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유통

구조 속에서 유물의 역사적 가치마저 왜곡되고 있는 고미술품계의 현실을 〈PD수첩〉이 고발한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TV 「PD수첩」 프로그램에 다음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김○○과 고미술협회의 "사라진 고구려 벽화"와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2010. 9. 27.과 10. 5. 두 차례에 걸쳐

① 김○○은 고구려벽화 도굴사건에 관여되어 있고 도난된 고구려 벽화를 매수하였으며, 김○○과 그가 협회장인 한국고미술협회가 허위감정을 일삼았고,

② 김○○이 도자기의 깨진 것을 수리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모 박물관에 납품하였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해당방송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TV 「PD수첩」 프로그램에 다음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억 원을 지급하라.

사건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충분한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보도로 신청인의 정정이나 손배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교양 · 정보 프로그램이 문제된 사례

사례 62

신청인 회사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튀김전용유에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지 않다.

사　　건 : 2009서울조정468 · 469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홀랄라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치킨 제조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 다루면서 한 치킨집의 점주가 사용하는 튀김기름이 대두경화유로서 트랜스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방송했다.
- 이에 대해 방송화면에 등장한 상표의 튀김유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 신청인은 해당 튀김전용유에는 대두경화유가 아닌 극도경화유가 전체 유지 중 0.5%만 포함되어 있으며, 극도경화유의 경우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라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수상한 치킨'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17일 18:50)

내　　용 : ▷내레이션 : 다른 치킨집. 여기선 손님에게 한번 낸 것은 절대로 다시 내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남다른 방법을 보여주셨다. (중략)

▷내레이션 : 다행인지 불행인지 재고치킨 하루 이상은 안 쓰신단다.

▷점주 : 나는 기름관리 좀 철저히 해. 후라이드 ... 기름 갈고 5마리 나갔거든 통상 이게 25마리 정도 되면 기름이 거의 산화가 돼.

▷내레이션 : 다른 건 몰라도 기름관리 하나만큼은 철저히 하신다더니 30마리도 채 튀기지 않고서

튀김유 교체한다. 그런데 아니 이게 뭔가 새 튀김유가 투명하지 않고 허옇다.

▷취재작가 : 기름이 왜 이렇게 하얘요?

▷점주 : 쇼트닝. 안에 쇼트닝이 있어

▷취재작가 : 쇼트닝? 안에 들어있어요?

▷점주 : 그런 거 같아.

▷취재작가 : 쇼트닝이 들어갔다고 기름이?

▷내레이션 : 쇼트닝이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결합해 만든 반고체 상태의 유지제품으로 천연지방이 아니다. 인공지방이다. 다량의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취재작가 : 이게 쇼트닝인 것 같다고?

▷점주 :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쇼트닝 같아.

▷취재작가 : 겉에는 식물성 써 있는데?

▷점주 : 모르겠어.

▷취재작가 : 트랜스 걱정 끝 트랜스 지방 안심 제품 이렇게 써있는데..

▷내레이션 : 본사에서 공급하는 튀김유로 다행히 쇼트닝은 없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대두경화유? 대두경화유는 쇼트닝, 마가린과 마찬가지로 인공유지다. 트랜스지방의 함량이 자그마치 약 25%나 된다. 다른 치킨집들의 튀김유는 어떨까 제작진은 서둘러 곳곳의 치킨 튀김유를 수거했다.

▷하○○(한국식품연구원) : 기름을 가열을 한단 말이에요. 가열을 하게 되면 트랜스지방이 생겨요. 그런데 트랜스지방이 가열에 의해 생길 경우에는 보통 0.5에서 많이 생기면 1.0이니까 만약에 1.0 이상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경화유가 들어있는 기름, 예컨대 쇼트닝이나 마가린 이런 것을 넣었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여○○○(가정의학과전문의) : 트랜스지방은 1그램이 들어가도 나쁘다고 되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나쁘다고 하는 포화지방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레이션 : 트랜스지방 안심제품이라는 글귀는 대체 뭘 믿고 적어 놓은 것인가. 심지어 치킨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해당 메뉴만 설명이 쏙 빠져있었다. 소비자는 알고싶다.

▷B치킨업체관계자 : 일단은 공식적으로도 메뉴판에서 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오일에 관해서 제품을 중단할 계획이에요. 가맹점에서 후라이드 제품은, 서브메뉴는 판매가 안 되도록 시정할 계획입니다.

▷서○○ : 쇼트닝이나 마가린 정도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대두경화유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네요.

그동안 트랜스지방 유해성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많았는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극도경화유의 트랜스지방 함유량 0%'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17일 제166회 프로그램에서 "수상한 치킨" 이라는 제목으로 A회사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튀김전용유에는 쇼트닝, 마가린과 같은 인공유지로 트랜스지방이 35%가 함유되어 있는 대두경화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튀김전용유에는 쇼트닝, 마가린과 같은 대두경화유가 아닌 극도경화유가 전체 유지(16.5㎏)중 0.5%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극도경화유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0%로 확인되어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지난 2월 17일 「불만제로-수상한 치킨」 방송 중 A회사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튀김전용유에 쇼트닝, 마가린과 같은 인공유지로 트랜스지방이 35% 함유된 대두경화유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해당 튀김전용유에는 대두경화유가 아닌 극도경화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대두경화유'라고 표시한 것이며,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트랜스지방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인 100g당 2g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3월 31일자 MBC-TV 〈불만제로〉 프로그램 중에 보도하되, 진행자 중 1인이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3. 25.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10년 3월 31일 18:50)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4. 자막방송이 문제된 사례

사례 63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자막방송 하였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합법적 파업이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093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7.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방송하면서 자막을 통해 "현재 방송중인 '해피 선데이 스페셜'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 방송된 내용의 재편집분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파업은 임단협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결정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심리결과, 당사자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해피선데이 스페셜」 프로그램 중 화면 하단 자막 (2010년 7월 4일 17:20)

내　　용 : 현재 방송 중인 〈해피 선데이 스페셜〉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기 방송된 내용의 재편집분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KBS 2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2TV 「해피선데이」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자막과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동일한

속도와 횟수로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화면 하단에 자막방송 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불법파업'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4일 〈해피선데이〉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 방송된 내용의 재편집 분을 방송한다"고 자막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파업은 임단협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결정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파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 소속인 KBS본부가 벌이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불법파업이며, 따라서 신청인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제3절 인터넷매체 대상 조정 · 중재사례

1. 인터넷신문이 문제된 사례

가. 정치 · 행정 관련분야

사례 64

한의대 졸업생들을 공중보건의에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9 · 150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피신청인 : (주)보건신문사 (인터넷 보건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1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한의대 졸업생들을 공중보건의에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는 '공중보건 한의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고, 정부 역시 공중보건 한의사를 꺼리고 있으며, 정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수행하는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산업의 2010년도 사업안내서를 근거로 정부는 이 사업을 보다 더 발전 · 심화시켜 공중보건의료부문에서의 한방의료 역할을 증대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인터넷 보건신문 : 『공중보건한의제도 유명무실로 '폐지론' 대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내　　용 : 지난 1995년 '병역법' 개정으로 2002년 한의대 졸업생들로부터 대거 '공중보건의'에 편입돼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제자리를 못찾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제

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미 공중보건 한의사 1,000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정부가 공중보건한의사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 탓인지 지역보건법에서도 한의사들을 찬밥신세로 내몰고 있다. 급기야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는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소외된 지역의 보건의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한의사들의 실습기간을 땜질하는 수단으로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분을 두고 볼 때 현재 한의대의 커리큘럼과 실습체계로는 의대생이나, 치대생들과 같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략)

정부 역시 공중보건한의사를 꺼리기는 마찬가지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1항의 경우 대도시 보건소에는 한의사를 필수 전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등에 대해서만 한의사를 배치돼야할 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제6조1항(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르면 보건소의 경우 특별시의 구를 비롯해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구 및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의사 3~2명, 치과의사 1명, 조산사 1명, 간호사 18~10명 등을 각각 두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정보처리기사 등을 필수배치 전문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의사와 치과의사의 배치기준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한의사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 한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적용토록 했다.

보건지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배치 전문요원을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 치과위생사 1명으로 명시했을 뿐 한의사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은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일부 지자체가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문제는 법적인 보장이 뒤따르지 않아 언제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반증이다. 특히 의료일원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가 한방의료를 의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한방치료에 대한 비과학화 및 한약재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공중보건한의사조차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인터넷 보건신문(http://www.bokuennews.com) 홈페이지 보건정책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공중보건 한의사 제도 폐지론 대두")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공중보건한의사 제도 폐지론 대두' 기사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23일자 보건정책면에 "공중보건한의제도 유명무실로 '폐지론' 대두"라는 제목으로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과 공중보건한의사의 업무 능력을 폄훼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한의사가 수행하는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사업의 2010년도 사업안내서를 보면 정부는 이 사업을 보다 더 발전 · 심화시켜 공공보건의료부문에서의 한방의료역할 증대와 확충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인터넷 보건신문 : 『"공중보건한의제도 유명무실로 '폐지론' 대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9년 11월 23일자 보건정책면 "공중보건한의제도 유명무실로 '폐지론' 대두" 제하의 기사에서 공중보건한의사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 등을 활성화시켜 공공의료부문에서의 한방의료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중보건한의사 중 전문의 비율 역시 공중보건치과의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사례 65

신청인이 옥외광고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277 · 278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주)일요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옥외광고판 수주관련 로비의혹에 대해 다루면서 선진국민연대 및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출신으로 MB 정권 핵심인사들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영남출신의 신청인 J모 씨가 업체선정 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천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옥외광고사업이나 업체선정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J모 씨가 업체선정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일요서울 : 『박영준 국무차관 '옥외광고탑' 회의 주재』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6면)

내　　용 : 본지가 지난 819호 '인천공항공사 옥외광고판 수주 청와대 A씨 연루설'이 보도된 이후 점차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전방위로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권실세로 알려진 박영준 국무차관은 정부청사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전국적으로 370여 개의 옥탑 설치에 앞장섰다. 특히 인천공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업자로 선정된 C&C 프로젝트팀의 경우 선정 및 설치과정에 '특혜 시비'가 일고 있고 선진국민연대 출신 J모 씨가 중간 브러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이 강한 의혹을 보내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은 행안부에서 국제행사 개최 및 광고물 정비 재원과 기금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총 369기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고속도로 · 국도

에 319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공항 및 고속국도 휴게소 등 50기의 홍보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1차 사업자 선정으로는 1권역인 신공항 · 영동고속도로 등 전홍 컨소시엄이 관심 지역인 6권역에는 공항 · 고속국도휴게소 지역에는 C&C 프로젝트팀이 정부로부터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단은 인천공항주변 20여기의 옥외광고탑 설치를 두고 인천공항공사가 '설치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초 정부는 사업자 선정을 2009년 3월초에 마치고 수익금 접수 및 배분을 같은 해 10월부터로 잡았지만 현재까지 몇 기를 설치할 것이냐를 결정조차 못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표현처럼 인천공항공사 진입로는 1기에 월 광고료가 최소 4,3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 고액으로 20기일 경우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정 속에 특혜시비나 기한 연장 등에 있어 정치권 등 핵심 실세가 개입돼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4년 대구유니버시아드 옥외광고사업으로 16대 문화관광위 위원이었던 강신성 일 한나라당 의원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댓가로 1억 8,7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간 복역한 바 있다. 역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도 1억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영남 출신의 J모 씨가 업체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진국민연대 및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출신으로 MB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특히 영남 출신으로 금융기관 사외인사에 리서치 대표로 있는 그는 선진국민연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고 친이 국회의원들과 어울리는 등 정치권 '마당발'로 알려진 인사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김포, 김해, 제주 등 공항측이 '안전'과 '미관 훼손'을 내세워 설치에 반대하면서 옥외광고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20여 기가 발주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가장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을 발주한 행안부를 비롯해 총리실, 친이 한나라당 의원까지 가세해 인천공항공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5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의 주재로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모여 '광고물 설치협조 요청 및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같은 해 10월 16일 역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보,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역녹색성장과장, 한국옥외광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은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은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박 차장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진국민연대 출신 J모 씨 로비설과 맞물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박 차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하게 공공기관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의혹 어린 시선을 박 차장에게 보내고 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일요서울 정치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옥외광고사업 로비 의혹'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3일자 정치면에 "박영준 국무차관 '옥외광고탑' 회의 주재"라는 제목으로 영남(선진국민연대) 출신의 J모 씨가 업체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 및 관련자에 확인한 결과, 위 J모 씨는 인천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옥외광고사업이나 업체선정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옥외광고사업 로비 의혹'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3일자 정치면에서 "박영준 국무차관 '옥외광고탑' 회의 주재"라

는 제목으로 영남(선진국민연대) 출신의 J모 씨가 업체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J모씨가 인천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옥외광고사업이나 업체선정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2월 22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요서울〉 정치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박영준 국무차관 앞장선 내막'과 동일한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2월 22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일요서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해당 보도문을 송고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2. 18.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1

일 요 서 울 : 『'옥외 광고사업 로비의혹'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8일자 6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2

인터넷 일요서울 : 『'옥외 광고사업 로비의혹'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66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도한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 때문에 경기도의 수입이 줄어 재정자립도가 폭락했다고 보도했으나, 부동산 감세정책은 참여정부시절부터 시행된 것이다.

사　　건 : 2010서울조정270　정정청구
신 청 인 : 1. 경 기 도
　　2. 김 문 수
피신청인 : (주)네오뉴스 (뷰스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또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급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것이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감소로 인한 것이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썼기 때문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들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뷰스앤뉴스 :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내　　용 :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대로 폭락할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경기도의 재정자

립도가 이처럼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지방재정 파탄 위기가 눈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재정자립도란 일반 회계상의 세입규모에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썼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폭락하게 된 데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취 · 등록세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부자감세'를 주창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격감했고 여기에다가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쳐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세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부자감세를 앞장서 주장한 김문수 지사의 자승자박인 셈.

세수가 이처럼 격감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씀씀이는 나날이 커져, 재정 파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예산규모는 무려 37%나 늘었다.

여기에다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소방재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 등도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의 여파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대거 이관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이 급속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 간신히 버티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규모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04년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경기도가 2005년에는 1천억 원, 2006년 2천200억 원, 2007년 2천500억 원, 2008년 2천500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3천5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급속히 악화되는 재정 상황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자사의 홈페이지(http://www.viewsnnews.com) 초기 화면의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3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 원 조정대상기사("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의 기

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월 4일자 초기 화면에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또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폭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때문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뷰스앤뉴스 : 『〈반론 보도문〉 경기도의 입장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관련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2월 4일자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문수 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 재정자립도가 폭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아래와 같이 반론했습니다.

<아 래>

부동산 취 · 등록세의 인하로 인해 경기도의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취 · 등록세의 인하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 · 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

사는 또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썼다는 의미"라고 기술했으나 이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등과 같은 자체 세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및 각종 교부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조달하는 재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재정을 어떻게 '조달'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보도된 것처럼 재정을 얼마만큼 '지출' 했느냐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과도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사에서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썼다"고 표현해 마치 경기도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의 예산규모는 최근 5년간(2005~2009) 37% 증가했는데, 주요 항목별로 보면 복지, 교육, 국고사업, 교통 · 건설 등 법적 · 의무적 경비와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복지재정의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101% 증가했고 ▲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이 1조 3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46% ▲ 국고사업이 1조 8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111% ▲ 도로 · 교통 예산이 1조 3천억 원 에서 1조 7천억원으로 30% 등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사례 67

화순군이 하니움 체육관 사용 관련, 행사 하루 전에 사용 금지 통보를 하는 등 행사 주최측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광주조정53 (2010광주조정61에 병합)　정정청구
신 청 인 : 화순군
피신청인 : (주)화순미래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전라남도 화순군이 신협 설립 5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화순 '하니움' 체육관의 회랑 사용허가 과정에서 행사일 하루 전에 갑자기 사용금지 통보를 하고, 당일에는 회랑에 줄을 쳐 출입을 봉쇄했으며, 귀빈실로 사용중인 '목사골'을 폐쇄하여 불편을 야기했고, 행사 막바지에 사전 통고도 없이 에어컨의 작동을 일방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화순군은 신협에게 대여한 시설이 일정대로 허가 · 사용되었고, 식사장소도 한 달 전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랑 대신 잔디광장으로 전날 결정되었으며, 귀빈실 또한 신협 측의 부탁에 따라 이용 제공되었고, 에어컨도 행사가 끝난 후 작동을 정지했던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 『화순 하니움은 권력의 상징』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6일자)

내　　용 : 모처럼 화순에 걸출한 인물이 왔다. 현재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당의 운명을 거머쥔 박지원 의원이다.

9월 4일(토) 신협 설립 50주년 기념 [사회공헌결의 및 임직원 한마음대회] 행사에 격려차 방문한 박지원 의원은 오전 행사를 마치고 야외에서 1000여 명의 임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김대중 정부의 산 증인이자 호남의 영원한 정객인 박지원 의원은, 야당 인사로는 원로를 통틀어 현존하는 최고의 거물급 인사로 평가받는 현직 의원으로서, 마땅히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물론 신협행사에 격려차 방문한 그분에게 화순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아릴 필요는 없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방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귀빈임이 분명하고,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몇몇 국회의원(이낙연, 조영택, 이용섭, 장병완, 이윤석)과 장태종 신협 중앙회장 등 광주 · 전남 92개 조합에서 1,000여 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한 화순군(군수 전완준)의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했었다는 것에 대하여 분개를 하는 것이다.

화순군은 예술회관과 체육관을 하나로 묶어 효율성과 예산 절감의 이중 효과를 노리며 작년도에 하니움을 준공 하였다. 개관과 더불어 하니움 개관행사, 풍물축제, 바자회등을 개최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체육행사와 전시회, 심지어는 계모임까지 유치했었다.

또한, 관광화순을 표방하며 도민 체전을 유치하고 하니움의 주변 경관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본 행사는 신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화순 신협(이사장 문명룡)측이 나주 신협측과 1개월간의 치열한 물밑 경합 끝에 거둔 성과물로서, 지역 홍보에 중점을 둔 걸로 알려졌으며, 화순군(군수 전완준)과의 임대 협상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정비이고, 누구를 위한 예산의 집행이었는지 오늘 방문한 1000여 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한 화순의 지역민으로서,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회랑의 출입금지다. 하니움 개관시 하니움의 비경으로서 화순군이 전완준 군수의 회심의 작품인 냥 은근히 뽐내던 건축물이었다.

그리고, 문제의 회랑은 하니움 행사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상시 개방되어 있었고, 특히 풍물 축제시에는 요리 경연장, 음식점 장소 등으로 사용했었다.

그런데, 1,000여 명의 임직원이 대회를 치르는 신협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갑자기 하루 전에 사용 금지 통보와 함께 당일에는 회랑에 줄을 쳐 출입마저 봉쇄해 버렸다.

이로 인한 행사를 주관한 측이나, 장소를 알선한 화순신협 측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다. 마치 당일의 날씨는 섭씨 33도로 텐트안의 체감온도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땀이 웃옷을 흥건히 적시었다.

화순신협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행사가 임박한 시점까지 편의시설 사용 및 취사가 허락되지 않아 곤욕' 을 치렀으며, 어렵사리 '하루 전 오후 4시경에야 잔디밭 사용과 취사를 허가하는 통보를 받았다' 한다.

행사 당일에도 시작부터 귀빈실로 사용 중인 '목사골' 을 폐쇄하여 박지원 의원은 앉아 보지도 못하였고, 회랑에 줄을 쳐 놓아 잔디밭 천막에서 점심 식사 중 통행에 큰 불편을 제공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광과 소속의 용역회사 파견 관리직원들은 그늘을 피해 회랑에 들어간 방문객 몇 사

람과 언쟁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으며, 행사 후 뒷 처리 과정에서 분리수거를 요구하여 35만 원의 수거 경비를 지출케 하였고, 임대시간이 경과한 이유인지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사전 통고도 무시한 채 에어컨의 작동을 일방적으로 꺼 버렸다.

이에 광주의 모 신협 임직원은 '화순의 후한 접대를 고이 기억 하겠다'며 못내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고, 무안에서 올라온 또 다른 신협 일행은 '시설은 좋은데 활용을 통제하면 무슨 용도'냐고 따져 묻는가 하면, 특히 '회랑이 문화재도 아닌데 통행마저 차단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화순신협 측은 '현 전완준 화순 군수와의 직접적으로 연결된 코드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윗선으로부터 취한 조치'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밉고 싫어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볼모로 장소를 대여한 후에 집안싸움을 벌이는 화순군의 딴지걸기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권력의 폐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쪽에서는 '화순 알리기'에 총력을 다 하였으나, 막상 고마워해야 할 화순군(군수 전완준)의 어처구니 없는 이율배반적 시설운영을 보면서, 1,000여 명의 방문객들은 화순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고 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하니움의 최종 사용 허가권은 군수의 권한이다. 그렇기에 입으로 관광화순을 외치면서 찾아온 손님들께 한낮의 폭염을 선물한 이는 바로 전완준 화순 군수인 것이다.

연 초에 '돈 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대회'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 전완준 화순 군수다. 그때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전권을 앞세워 행사를 방해한 경험이 있어서일까? 오늘의 신협사태는 권력의 횡포 앞에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피지배자의 설움이었다. 바야흐로 포용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이고, 칼자루 쥔 자의 독재만이 횡행하는 화순의 현실이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화순미래뉴스(http://www.mireanews.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톱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4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화순 하니움은 권력의 상징'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화순 하니움은 권력의 상징'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0. 9. 6일자 탑뉴스 초기화면에 '화순 하니움은 권력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신협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갑자기 하루 전에 사용 금지 통보와 함께 당일에는 회랑에 줄을 쳐 출입마저 봉쇄해 버렸다", "행사가 임박한 시점까지 편의시설 및 취사가 허락되지 않아 곤욕을 치렀으며, 어렵사리 하루 전 오후 4시경에야 잔디밭 사용과 취사를 허가하는 통보 받았다", "행사 당일에도 시작부터 귀빈실로 사용 중인 목사골을 폐쇄하여 박지원 의원은 앉아 보지도 못하였고, 회랑에 줄을 쳐 놓아 잔디밭 천막에서 점심 식사 중 통행에 큰 불편을 제공하였다", "문광과 소속의 용역회사 파견 관리직원들은 그늘을 피해 화랑에 들어간 방문객 몇 사람과 언쟁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으며, 행사 후 뒤처리 과정에서 분리수거를 요구하여 35만 원의 수거비를 지출케 하였고, 임대시간이 경과한 이유인지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사전 통고도 무시한 채 에어컨의 작동을 일방적으로 꺼버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신협이 대여한 시설은 실내체육관이며 일정대로 허가 · 사용하였고, 회랑에서 식사를 하고싶다는 신협측의 요청에 행사 한달 전부터 회의를 통해 잔디광장으로 협의하였으며, 회랑은 8월초에 음식물 기름때와 오물 등으로 훼손된 바닥 점토벽돌을 청소 용역업체에 의뢰 제거한 후부터 주말에만 회랑 보호차원에서 줄을 치고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사 일주일 전부터 점심식사를 도시락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 식사장소를 운동장, 주차장, 잔디광장 중에서 선택하기로 하였고 행사전일 신협측이 천막을 설치하러 왔을 때 잔디광장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귀빈실은 대여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협측의 부탁으로 행사당일 8시 30분부터 에어컨 가동 및 내빈 영접 준비를 하였고, 9시 30분경 내빈이 오셔서 신협 직원이 차를 대접하였습니다.

군청소속 청원경찰이 회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6명에게 장소를 옮길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협 직원이 막말을 하며 불응하였고, 군청직원과 신협 직원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신협측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겠으니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군청 직원이 정중히 거절하자 신협 측에서 처리업자를 선정하여 수거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상 가동되었으며, 행사가 끝난 후 작동을 정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이 아닌 내용의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6일자 탑뉴스 초기화면 "화순 하니움은 권력의 상징" 제목의 기사에서 화순군이 9월 4일 신협 설립 5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화순 하니움 체육관의 회랑 사용허가 과정에서 신협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갑자기 하루 전에 사용금지 통보를 하고, 당일에는 회랑에 줄을 쳐 출입을 봉쇄하고, 귀빈실로 사용 중인 '목사골'을 폐쇄하여 불편을 야기하였으며, 행사 막바지에 사전 통고도 무시한 채 에어컨의 작동을 일방적으로 꺼버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화순군은 신협에게 대여한 시설이 일정대로 허가 · 사용되었고, 식사장소도 한 달 전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랑 대신 잔디광장으로 전날 결정되었으며, 귀빈실 또한 신협 측의 부탁에 따라 이용제공 되었고, 에어컨도 행사가 끝난 후 작동을 정지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개미산 인공폭포가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으며, 선거가 지나서는 본 사람이 없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7월, 8월간의 우기로 인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폭포 가동을 일시 중단하였고, 해당 공사는 부실시공이 아니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화순미래뉴스 초기화면 상단으로부터 5번째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10월 25일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010. 10. 15.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68

신청인이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리호남' 내각참사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13 · 1514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재 오
피신청인 : (주)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11.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북한의 '리호남(본명 리철) 참사'와 비밀접촉했다는 논란에 대해 다루면서 "국가안전기획부 공작원 출신인 박채서의 주선으로 베이징 위양호텔 근처에서 신청인과 리철이 회동했고, 지난 대선 전인 2007년 8월 경에는 신청인이 박채서를 만나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관련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원에서 겸임교수 및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일 때 연구프로젝트를 위해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방문교수 자격으로 베이징에 간 적은 있으나, 체류당시 바쁜 연구일정을 보내 북경대 교수와 연구진 이외에는 다른 현지인들과 교류할 시간이 없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박채서는 알지도 만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리호남과 접촉한 적도 박씨에게 대선관련 아이디어나 협조를 구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과 유감표명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오마이뉴스 : 『"이재오 · 임태희, 북 '리호남 참사' 비밀접촉" MB정권 인사, 수사대상서 제외 ... 표적수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4일자)

내　　용 :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 공작원(암호명 흑금성) 출신의 박채서(56) 씨를 간첩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정원의 수사기록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를 포섭한 반국가단체(북한) 구성원은 리호남(56, 본명은 리철)이라는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이자 신주류로 통하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구천서 전 의원 등이 리호남 '내각 참사'와 접촉했다는 주

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리호남과 접촉한 남한 인사들에 따르면, 리씨는 여러 직함을 사용했으나 지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그는 남북 경제인 간담회에 '민경련 참사'(실제로는 '내각 참사')의 직함으로 참석했다. 그해 10월 3일 당시 대기업 부문 간담회에는 남측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단장으로 해서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이구택 포스코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7명이 대표로 참석했고, 북측은 한봉춘 내각 참사를 단장으로 해서 리호남 참사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가 공개회담에서 사용한 직함인 '내각 참사'로 지칭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박씨를 체포한 이후 리호남과 접촉한 수십 명의 인사를 피내사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07년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방북한 이화영 전 의원과 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재오 장관과 임태희 실장 그리고 구천서 전 의원 등은 리호남 참사 접촉과 관련,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상 정부의 묵인 하에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비선(秘線)으로 활동한 박채서 씨와, 리호남과 접촉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채서 씨의 가족과 변호인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돌파구 마련을 위해 리철(리호남) 참사를 정부 인사들과 연결시켜준 일종의 비선 역할을 했다"면서 "이재오 장관과 임태희 실장 그리고 구천서 전 의원 등도 리철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이재오 장관은 지난 2009년 1월경 베이징 위양호텔(漁陽飯店) 근처의 식당주점 '해당화 본점'(북한 정부는 베이징에서 해당화 본점과 분점, 그리고 모란각-옥류관 등을 직영하고 있다)에서 박씨의 주선으로 리철 참사와 접촉했다. 이 장관은 지난 대선 전인 2007년 8월경에도 박씨를 만나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관련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리철의 회동 시점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에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2008. 7)과 김정일 건강 이상(2008. 8)으로 집권 이후 1년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필요한 때였다. 2008년 총선 패배 후 도미해 존스홉킨스대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이 장관은 베이징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연구 프로그램에 2~3주간 참여하는 일정으로 2009년 1월 17일 베이징으로 건너갔고, 2월 22일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3월 말에 귀국했다.

이 장관은 당시 30여 일 동안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음에도 당일치기 일

정이 가능한 베이징에서 일시 귀국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때문에 이장관이 베이징에서 당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모종의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이 장관은 리첩과 회동한 후 2월 11일 베이징특파원 간담회에서 "현 정부 대북기조에서 추가할 것은 추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겠다"고 밝혀 대북정책 기조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대북 정책과 철학이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북한 사람 만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귀국 직전인 3월 초에는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면서 김정일을 직접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대북특사' 역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비밀리에 접촉했던 리첩 참사와의 회동에서 상당히 깊숙한 얘기가 오갔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이다. 이 장관은 올해 1월에도 일시 귀국한 박채서씨를 만나 북한 사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오 장관 비서관에게 취지를 밝히고 닷새 동안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연결을 피해 이 장관의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2009년 당시 베이징특파원으로 이재오 장관과 박채서 를 잘 아는 한 방송국 기자는 "작년 1월~2월 이 장관이 베이징에 왔을 때 박 실장(박채서)이 이재오 씨와 다리를 놔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두 사람을 소개한 적은 없고 두 사람이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의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이재오 · 임태희, 북 '리호남 참사' 비밀접촉 MB정권 인사, 수사대상서 제외...표적수사 의혹")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이재오 · 임태희, 북 '리호남 참사' 비밀접촉"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0년 11월 4일자 정치면 초기화면에 "이재오 · 임태희, 북 '리호남 참사' 비밀접촉 MB정권 인사, 수사대상서 제외...표적수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오가 북 '리호남 참사'와 비밀접촉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이재오는 북한의 '리호남 참사'나 '흑금성 박채서'를 알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어, "박채서의 주선으로 베이징 위양호텔 근처 '해당화'에서 이재오-리철이 회동하고, 지난 대선 전인 2007년 8월 경 박채서를 만나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관련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므로, 위 기사의 내용 중 이재오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이재오 장관, 오마이뉴스 보도에 유감(遺憾) 표명

나. 내 용 : 본지 지난 11월 4일자 『"이재오 · 임태희, 북 '리호남 참사' 비밀접촉" MB정권 인사, 수사대상서 제외... 표적수사의혹』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이재오 특임장관은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원에서 겸임교수 및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중심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연구프로젝트를 위해 2009년 1월 17일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방문교수 자격으로 베이징에 갔으며, 체류 당시 동북 3성, 신장 지역의 현지답사를 가는 등 바쁜 연구일정을 보내 북경대 교수와 연구진 이외에는 다른 현지인들과 교류할 시간이 없었다며, 박채서의 주선으로 베이징 위양호텔 근처 '해당화'에서 리호남(본명 리철) 참사와 접촉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박채서 씨를 알거나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2007년 8월경에 박씨를 만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대북정책 관련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와 협조를 구한 바도 없고, 올해 1월에도 박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이재오 특임장관은 당사자로부터 직접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박채서 씨의 주장을 근거로 기사를 게재했다면서 강한

유감(遺憾)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 『"이재오 · 임태희, 북 '리호남 참사' 비밀접촉" MB 정권 인사, 수사대상서 제외... 표적수사의혹』 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2. 3.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이재오 장관, 오마이뉴스 보도에 유감(遺憾) 표명』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5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나. 경제 · 산업 · 비즈니스 관련분야

사례 69

신청인 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5년 묵은쌀로 고추장을 제조한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73 · 1174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대상(주)
피신청인 : (주)씨비에스 노컷뉴스 (데일리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가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묵은 쌀로 고추장을 만들었으며, 일본의 경우 3년 이상 지난 쌀은 무조건 사료용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다.
- 이에 신청인 회사는 자신들이 고추장 제조에 사용하는 쌀은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일본에서는 정부 비축미의 경우 5년 된 쌀이 급식용으로 쓰이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데일리노컷뉴스 : 『우리쌀 고추장 '묵은쌀'로 생색』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6면)

내　　용 : 청정원, 5년 지난 쌀 사용… "맛 · 영양 이상무" 업체 주장에 소비자 분통

가축사료로 처분이 검토되고 있는 묵은쌀이 고추장 시장에서는 1위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다. 업체는 맛이나 영양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쌀'이라는 원료를 핵심 키워드로 대대적인 제품광고가 이어졌던 만큼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확한 지 3년이 넘은 묵은쌀을 가축 사료로 처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북지원의 길이 막힌 데 반해 풍작이 이어지면서 3년 전 쌀은 물론, 2005

년 쌀까지 창고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장기 보관한 쌀은 식용으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3년이 지난 쌀은 무조건 사료용으로 돌린다.

문제는 최근 '우리 쌀로 만든 고추장'이라는 콘셉으로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제품이 이 2005년산 묵은쌀을 쓴다는 것이다.

지난 해 출시된 대상 청정원 '순창 우리쌀 고추장'은 이효리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여왔다.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경쟁사와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공격적인 마케팅 끝에 이 제품은 올해 들어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제품 원료를 중시하는 웰빙 분위기와 쌀을 주원료로 한 제품 업그레이드 추세도 한몫했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쌀에 대한 용도 기준이 없고 가공할 경우 맛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묵은쌀 사용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공을 한다고 해도 식용으로 쓰기 힘든 쌀이 주원료로 쓰인다는 것이 찜찜하다는 반응이다. 박○○(30 · 여) 씨는 "우리 쌀이라고 해도 5년이 지난 쌀이라면 반갑지 않다"고 말했고, 나○○(29 · 여) 씨는 "원료를 그렇게 광고하더니 묵은쌀로 생색내기한 것 같다"고 불쾌해 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노컷뉴스의 1면 중앙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과 내용을 1일동안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억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우리쌀 고추장 묵은쌀로 생색'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28일자 기사에 〈우리쌀 고추장은 묵은쌀로 생색〉이라는 제목 하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상에서 고추장을 만든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 사용 하고 있는 쌀은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5년 된 쌀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지난 쌀은 무조건 사료용으로 돌린다고 허위 보도하였기에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7월 28일자 6면 『우리쌀 고추장 '묵은쌀'로 생색』 제하의 기사에서 대상 주식회사가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묵은쌀로 고추장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으나, 대상이 사용하는 쌀은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일본의 경우 3년 이상 지난 쌀은 무조건 사료용으로 돌린다고 보도했으나, 일본에서는 정부비축미의 경우에는 5년 된 쌀이 급식용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주식회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도 6월 28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2005년도 국내산 쌀은 kg당 768원으로, 장류용 수입밀가루 3등급 kg당 315원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8월 26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데일리노컷뉴스〉 2면에 박스기사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보도의 부제목('청정원, 5년 지난 쌀 사용…')과 동일한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위 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8. 19.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데일리노컷뉴스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70

신청인 회사의 유아용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물질의 유입경로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83 · 1584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품
피신청인 : (주)컨슈머타임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12.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두유 제품에서 머리카락과 눈썹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업체 직원이 소비자에게 이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두유제품을 제조 · 판매한 신청인 회사는 당시 이물 유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품질관리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납득하지 않아, 현재 식약청의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와 신청인에 대한 유감표명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컨슈머타임스 : 『○○식품 '유아용 ○○○' 에 각종 '털' ?』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내　　용 : ○○식품의 유아용 ○○○ 일부 제품에서 사람 머리카락과 눈썹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자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경고하는 등 기사화와 관련한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려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먹을 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다.

◆"내가 쓴 글 게시중단, 황당해 참을 수 없다"

A씨는 16개월 된 자녀에게 ○○식품의 '○○○○ ○○○ ○○○○' (두유)를 먹여왔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젖병에 두유를 따르던 중 정체불명의 검은색 뭉치를 발견했다.

적지 않은 양의 검은 이물질은 하얀 두유 위로 떠올랐다. A씨의 확인결과 사람 머리카락이나 눈썹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사실을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알린 A씨는 "(제품을) 고온 살균처리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눈썹 같은) 이물질은 나올 수 없다"는 응대에 화가 났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가 먹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사과의 말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업체 직원은 A씨의 집을 방문해 성분 분석을 이유로 이물질을 수거해갔다. 업체 측의 자체 분석 결과 이물질은 '섬유물질'로 확인됐다. 업체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뿐 이물 유입경로 등 구체적인 문제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업체 측의 이러한 문제처리 방식에 불만을 느낀 A씨는 그간의 상황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알렸다.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다는 의도에서였다. A씨가 게재한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췄다. 업체 측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섬유물질)이 발견될 수 있는지 원인 규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런 말도 없이 소비자가 쓴 글을 게시중단시키다니 어이없고 황당해서 참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식품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자사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한 듯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실명을 밝히길 꺼려한 이 회사 고객지원팀장은 "자체 분석 결과 (이번에 발견된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될 수 없는 이물"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A씨가 납득하지 못해 식약청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화 되면 회사 이미지 실추 책임져야"

이어 그는 "A씨가 온라인상에 올린 글은 게시중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물질 혼입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그는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기사를 쓰면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성' (?)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낳을 파열음을 우려한 발언으로 읽히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포괄한 소비자 피해개연성은 상대적으로 경시한 것으로 해석돼 또 다른 불협화음이 예고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됐다.

주부 최 모 씨는 "아이에게 평소 ○○○ 제품을 자주 먹여 왔다"며 "우리 아이가 먹는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주부 김 모 씨는 "이물 혼입경로 등 구체적인 문제 원인 파악이 시급한 것 같다"며 "식약청의 조사

결과가 기다려진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은 지난달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 ○○○' 부패사건(본보 11월 24일자 참조)과 관련해 거짓으로 해명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컨슈머타임스(http://www.consumertimes.net/)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에서 2번째 위치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3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문단구분 및 보도제목 축소 하지 말 것)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식품 '○○○ ○○○'에 각종 '털'?)의 기사는 컨슈머타임스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이물질 발견'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컨슈머타임스는 지난 2010년 12월 15일자 종합뉴스 초기화면에 "○○식품 '유아용 ○○○'에 각종 '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모 두유 제품에서 머리카락과 눈썹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업체직원이 이물 유입경로 등에 관하 구체적인 문제 원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물 유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업체측에서 이물이 유입된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매한 두유 제품에서 머리카락, 눈썹 등의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본 인터넷 신문에서는 두유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점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보도하며 구체적인 업체와 제품명을 거론하여 보도한 데 대해 해당 업체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제품에 관련해, 해당 업체에서는 품질관리부 분석 결과를 통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소비자가 이에 대해 납득하지 않아, 식약청에 접수하여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밝혀 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15일자 『○○식품 '유아용 ○○○'에 각종 '털'?』 제하의 기사에서 ○○식품의 유아용 ○○○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소비자의 민원에 따라 청주시청에서 조사결과 해당 이물질이 제조공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며, (주)○○식품 측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일까지 3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컨슈머타임스〉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를 전재한 포털사에 상기 보도문을 송고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2. 30.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1

컨슈머타임스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0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2

컨슈머타임스 : 조정대상보도 하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0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다. 사건 · 사고 관련분야

사례 71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중인 노조에 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의 제동으로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3 · 4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피신청인 : (주)경향신문사 (경향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공사측 고위 관계자가 파업중인 노조측에 전화를 걸어 '파업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 '청와대가 파업을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어서 공사측이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하기 어렵다'며 제안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한국철도공사는 노조측의 교섭 재개요청에 따라 공사의 노사관련 담당업무책임자가 노조 집행부 간부 2명에게 '파업을 철회하는 시점에 대화를 하자'고 말했을 뿐, 통화중에 청와대를 거론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과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 조정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한국철도공사 노무관계자가 노조 간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를 특정해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양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경향닷컴 :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7일자)

내　　용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중인 노조에 '파업철회-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의혹(경향신문 12월16일자 1 · 3면)을 규명하

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민주노총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16일 "지도부가 수배되고 경찰의 노조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1일 밤 10시 50분쯤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파업 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며 제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사측이 제안을 취소한 지난 2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공사의 파업 상황실을 방문,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날이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http://www.khan.co.kr)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1일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 기사(철도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걸어)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http://www.khan.co.kr)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1일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 기사(철도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걸어)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12월 17일자 종합면(1면)에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라는 제목과 『노조 "사측, 제안 하루만에 철회" … 민주 · 민노당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부제로, ["지난 1일 밤 10시 50분쯤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파업 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며 제안을 취소했

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은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조 집행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섭재개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1일 한국철도공사의 노사관련 담당업무 책임자가 노조 집행부의 한 간부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의 내용은 "파업을 철회하는 시점에 대화를 하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며, 당시 철도노조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한 지난 2일 노조 집행부의 다른 간부와 통화하여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더 이상의 답변이 없어 "그렇다면 그만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종료한 것으로서, 철도노조 간부와의 대화에서 청와대를 거론한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12월 17일자 종합면(1면)에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라는 제목과 『노조 "사측, 제안 하루만에 철회" … 민주 · 민노당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부제로, ["지난 12월 1일 밤 10시 50분쯤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파업 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며 제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측이 밝히는 바는, 사실은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조 집행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섭재개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일 노사관련 담당업무 책임자가 노조 집행부의 한 간부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인데, 노사관련 업무 책임자가 통화한 내용은 "파업을 철회하는 시점에 대화를 하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며, 당시 철도노조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한 지난 2일 노조 집행부의 다른 간부와 통화하여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더 이상의 답변이 없어 "그렇다면 그만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종료한 것으로서, 철도노조 간부와의 대화에서 청와대를 거론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합니다.

나아가 한국철도공사 측은 철도공사의 노무담당 고위관계자가 노조집행부 간부와 통화를 하면서 청와대를 거론할 정도로 상식이 없는 바보인지 되묻고 싶다고 하면서, 경향신문의 보도는 철도노조 간부 두 사람의 말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보도문 제목을 경향신문 홈페이지(www.khan.co.kr)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연결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 조정대상 기사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제목의 기사)를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 2.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0.

〈별 지〉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관련
- **본 문** : 지난해 12월 17일 '철도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걸어' 기사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노무관계자가 노조 간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를 특정해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철도공사는 공사 측이 파업 대책을 주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 이행결과

경향닷컴 : 『[바로잡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7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구청장 부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근로를 동원해 경작시키면서, 관련 사항을 작업 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고의 누락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47 (2009서울조정894에 병합)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피신청인 : (주)아이엠비씨 (iMBC)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6.

사건개요

- 피신청인(iMBC)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서울시 강북구청이 공공근로를 동원해 의정부에 소재한 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을 경작하도록 했다' 는 등의 보도를 게재했다.
- 이에 대해 강북구청은 보도에서 언급된 토지는 현재 강북구청이 강북 구청장 배우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현재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강북구청이 공공근로를 시켜 밭을 경작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한편, 신청인은 이 청구에 앞서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동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2009서울조정894 사건을 제기한 바 있고, 담당중재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두 사건의 피신청인 각각에게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iMBC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23일자)

내　　용 : ▷앵커 : 구청 예산으로 고용된 인부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누구 밭인지 취재해 봤더니 다름 아닌 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청 이야기인데요.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구청장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마을. 인부들이 쟁기와 곡괭이 등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한편에 쌓여있는 퇴비를 밭에 골고루 뿌리기도 합니다.

관보를 통해 이 밭의 소유주를 확인해 봤습니다. 소유주는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부인.

그렇다면 구청장 부인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취재 결과, 이 트럭은 강북 구청 소유 트럭으로 인부들은 모두 각종 공공근로를 위해 구청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세금으로 인부를 사서 구청장 부인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작업 내용을 기록한 일지입니다.

강북구 관할 놀이동산 등산로 계단 보수작업, 운동장 돌 나르기 작업 등 각종 작업 내용이 기록돼 있지만, 의정부에서 밭을 갈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구청 차량 운행 일지에도 의정부를 다녀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청 측은 이에 대해 공공 근로 이외의 작업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인부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부들의 말은 다릅니다.

특히 인부들 관리를 맡고 있는 작업반장도 지시가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 작업반장 : "뭐, 윗사람 지시받고 작업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엠비씨(http://www.imbc.com)의 MBC HOME 다시보기 뉴스데스크 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09년 11월 23일자 MBC HOME 다시보기 뉴스데스크 화면에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구청 예산으로 고용된 인부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누구 밭인지 취재해 봤더니 다름 아닌 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이었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①보도된 토지의 용도는 밭이 아니고, 강북 구청장이 배우자의 토지를 강북구청의 양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어 현재에도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북구청의 양묘장이며, ②강북구청장이 공공근로를 시켜 밭 경작을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③작업일지 및 구청 차량운행일지 어디에도 의정부를 다녀왔다는 기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사 건

2009서울조정894, 2010서울조정47(병합)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의 보도문을 2010년 1월 2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기상정보 전)에 보도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2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 홈페이지(www.imbc.com)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별지〉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가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5.

〈별 지〉

1. 제 목 :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2. 내 용 : 지난 11월 23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 제하의 보도에서 '강북구청은 공공근로를 동원해 의정부에 소재한 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을 경작하도록 했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땅은 김현풍 구청장이 강북구에 양묘장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빌려준 땅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강북구청은 2009. 9. 3.자 작업일지 및 구청차량 운행일지는 없으나 그 외 다른 날짜에는 의정부 양묘장을 다녀왔다는 기재가 있으며, 구청장의 지시로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의정부 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iMBC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제하의 보도 하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6일자)

내 용 : 위 기사와 관련하여 보도된 강북 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은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에 양묘장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땅임이 밝혀져 알려드립니다. 또한, 강북구청은 구청장의 지시로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의정부 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사례 73

신청인이 법인화되면서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문제와 관련 설명회 등의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87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립의료원
피신청인 : (주)메디피플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의 신분변동문제와 관련해 국립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 측이 직원대상 설명회를 해줄 것을 사측과 설립추진단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야간수당을 야간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보수표에 책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국립의료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6회의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외에도 노조 측이 참여한 지원단회의를 4회 개최하는 등 법인화 추진과정 및 방향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며, 야간수당은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정정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메디컬투데이 : 『국립의료원, 직원 신분문제 등 대책 마련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내　　용 :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 직원의 신분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국립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은 안정적인 법인화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직원의 신분문제가 중요하며 직원들의 신분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것인지 법인병원으로 가서 민간신분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직원들은 작년 11월 13일까지 설립추진단의 요구대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 선택한 결과를 제출한 바 있으며 법인화와 관련한 모든 안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들은 설립추진단의 지시에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분선택에 대한 설립추진단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드러나 신분확정 문제에 있어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으며 노동조합은 신분변동과 관련해 직원대상 설명회를 해줄 것을 사측과 설립추진단에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이 법인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어느 곳으로 이전하느냐에 대해 궁금해 하지만 사측은 직원들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부서장까지 동원해가면서 신분전환과 관련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궁금함에 대해서는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는 경영진이 무조건 공무원 신분만 버리라고 협박까지 자행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으며 법인화 이후 병원의 보수, 직제, 직급별 정원,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설립추진단이 제시한 보수표는 야간수당을 야간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책정됐고 설립추진단의 사업방식이 이러하다 보니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동안에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는 43%만이 공무원으로 남겠다고 했으나 법인전환을 코앞에 둔 지금 의사직종을 뺀 직원 중 80% 이상이 공무원신분을 원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메디컬투데이(http://www.mdtoday.co.kr)의 홈페이지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공무원 신분 유지자들에 대한 법인화 대책 필요")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공무원 신분 유지자들에 대한 법인화 대책 필요' 정정보도문 (또는 공무원 신분 유지자들에 대한 법인화 대책 필요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3일자 의료면에 "공무원 신분 유지자들에 대한 법인화 대책 필요"라는 제목으로 "①신분확정 문제에 있어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으며 노동조합은 신분변동과 관련해 직원대상 설명회를 해줄 것을 사측과 설립추진단에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했다 ②보수표는 야간수당을 야간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책정 ③설립추진단의 사업방식이 이러하다 보니 법안이 국회에 상정

돼 있는 동안에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는 43%만이 공무원으로 남겠다고 했으나 법인전환을 코앞에 둔 지금 의사직종을 뺀 직원 중 80% 이상이 공무원신분을 원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야간수당은 시간에 비례하게 책정, 설문조사 결과는 의사직종을 뺀 직원 중 70.9%가 공무원신분을 원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메디컬투데이 : 『〈반론보도〉 국립의료원, 직원 신분문제 등 대책 마련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8일자)

내 용 : 국립의료원은 1월 3일 12시 04분 메디컬투데이가 보도한 〈국립의료원, 직원 신분문제 등 대책 마련해야〉 기사와 관련 반론입장을 표명했다.

국립의료원은 신분변동을 포함한 법인의 비전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6회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외에도 양 노조측(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복지가족부지부, 국립의료원 노동조합)이 참여한 지원단회의를 4회 개최하는 등 법인화 추진 과정 및 방향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 중 직능별 소그룹 간담회 등을 가진 후 전체적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임을 노조측에 지난해 12월에 이미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설명회 개최 요구를 거절했다 함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수당을 포함한 보수는 노조측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 · 반영한 사항으로서 개인이 실제로 근무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책정했다 함은 사실과 다르며 법인전환을 코앞에 둔 지금 의사직종을 뺀 직원 중 80% 이상이 공무원신분을 원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고 보도를 했으나 이 설문조사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일 때 노조측이 해당 노조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알려왔다.

국립의료원(설립추진단)에서 2차례 조사한 내용은 1차(2009년 12월1일) 71.1%, 2차(2010년 1월 현재) 64.5%가 공무원신분 유지를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직종을 뺀 직원 중 공무원신분을 원하는 자는 70.9%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편집팀

사례 74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두유를 마신 아이들이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268 · 269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품
피신청인 : (주)씨엔미디어 (인터넷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한 소비자가 변질된 두유제품을 섭취해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을 제조 · 판매한 신청인 회사는 문제가 된 제품 2팩 중 1팩은 아이 아버지가 개봉하였으나 냄새가 나서 수유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1팩은 부패한 냄새나 농도변화 등이 없는 정상제품이었다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상한 음료 먹고 구토" vs "안 마셨잖아"』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8일자)

내　　용 : 변질된 가공식품의 섭취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간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소비자는 변질된 ○○○ 제품 섭취로 인해 자녀가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체 측은 변질된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화성시 내리의 한 모(여.35세) 씨는 1월 초 인터넷 쇼핑몰에서 23개월 된 쌍둥이 자녀를 위해 '○○○ ○○○ ○○○ 3단계 (190㎖)' 9박스(1 box×16개)를 약 8만원에 구매했다. 유통기한은 2010년 4월 8일까지.

구매한 제품을 아이들에게 주기 시작한지 4일째 되던 지난 9일 아이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고 복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원인을 몰라 마음만 졸였다.

하루 뒤 한씨의 남편이 아이들에게 주려고 ○○○을 젖병에 따르던 중 제품이 걸쭉하게 변질된 것

을 확인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이어 다른 제품 하나도 개봉했으나 상태는 마찬가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상한 듯한 시큼한 냄새까지 풍겼다.

한씨는 "1단계 제품부터 꾸준히 먹여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탈이 났을 때에도 의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변질된 제품을 확인하니 무엇보다 아이들의 걱정이 염려스러웠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11일 ○○○에 제품 변질 내용을 신고했다. 다음날 방문한 담당직원은 환불을 해주겠다며 제품을 전량 회수해갔다.

한씨는 "방문직원이 변질된 제품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해 전혀 안내를 해주지 않아 답답했다. 아이들이 탈이 났다고 하니 병원 진단서를 받아오라며 짤막하게 대답하고는 돌아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 관계자는 "변질된 것으로 발견된 2팩은 섭취 전 상태였다. 이전 제품도 젖병에 담아 아이에게 먹였던 만큼 변질됐었다면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질에 대해서는 "멸균 제품인 만큼 제조과정이 아닌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것 같다. 남은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했다. 유통 과정에서 흠집이 나 공기에 노출되면 변질이 될 수도 있다. 회수한 제품은 공장의 품질관리부서로 보내 정확히 조사를 한 다음 결과는 따로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에 따라 환불 조치하고 제품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보상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http://www.consumemews.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3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하고 원 조정대상기사("상한 음료 먹고 구토" vs "안 마셨잖아")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변질된 가공식품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18일자 종합뉴스 초기화면에 "상한 음료 먹고 구토" vs "안 마셨잖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모 두유 제품을 먹고 있던 쌍둥이 아이들에게 구토 및 복통 증상이 나타났고, 원인을 모르던 차에 우유병 수유를 위해 새 제품을 뜯다가 냄새와 함께 걸쭉하게 변한 제

품을 발견, 연이어 개봉한 제품 역시 같은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와 달리 제품 2팩 중 1팩은 아이 아버지가 개봉 후 부패한 냄새가 나서 수유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1팩은 다음날 아이 어머니가 수유한 제품으로 부패취, 농도 변화 등이 없는 정상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매한 두유제품을 먹고서 아이들에게서 구토 및 복통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인터넷 신문에서는 변질된 제품을 먹고 아이들이 구토를 했다고 보도한 점과, 문제된 두유 제품 2팩이 모두 변질되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해당 업체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제품 중 용기손상이 발생한 1팩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서는 멸균 우유 제품의 제조공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동일 기한 제품 전체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동일 유통기한 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클레임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상한 음료 먹고 구토" vs "안 마셨잖아")를 2010년 2월 10일까지 삭제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기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2. 8.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75

신청인 비대위가 궐기대회를 열면서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대전조정2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시원주민생계및재보상대책위원회
피신청인 : 장 ○ ○ (세종뉴스)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제보자의 주장을 인용, 신청인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대책위원회'가 조치원 역에서 주최한 궐기대회의 참가자 상당수가 일당 3만원을 받고 동원된 대전지역의 주민들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돈을 주고 인원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세종뉴스 : 『일당 3만원에 500여 명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집회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내　　용 : 지난 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수정안대책위)에서 주관한 궐기대회에 참가한 700여 명 중 500여 명이 일당 3만 원에 동원된 대전 주민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사전에 연기군민들을 현혹 시키기 위해 일당 3만 원을 주고 동원된 집회라는 사실이 한 제보자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났다.

본지에 제보를 한 김 모 씨는 "이번 집회에 500여 명의 일반인들이 일당 3만 원씩 받고 동원됐으며 이날 참석한 700여 명 중 500여 명이 일당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이들은 "행정도시 사수대책위원회가 무조건적인 행정수도 반대, 보상관련 원주민 투쟁을 할 때 무엇을 했는지 또 원주민들을 설득시켜 주변지역으로서의 반사이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유포하기까지 했다.

덧붙여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조치원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라는 거짓말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김 모 씨는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다 굶게 생기고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기약없는 원안추진 고수보다 하루 빨리 정부와 타협을 통해 세종시 문제가 빨리 매듭을 짓기 위해선 세종시 수정안' 밖에 없지 않느냐?"고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회가 끝난 뒤 양심에 죄책감을 느낀 김 모 씨는 남편을 통해 일당 3만 원을 받고 거짓 발언을 한 것이라고 양심고백을 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세종뉴스에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대책위의 집회시 인원 동원 사실무근으로 확인됨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10년 2월 4일자 사회면에 세종시 원주민생계및재보상대책위 집회시 3만원 돈주고 인원동원한 것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세종시 수정안 집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뉴스 지난 2월 4일자 사회면 『일당 3만 원에 500여 명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집회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도내용 중 "일당 3만원을 주고 동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로 바로잡습니다. 한편 세종시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대책위원회는 원주민을 위한 단체이며 따라서 수정안찬성비대위라는 약칭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세종뉴스 메인면에 2010년 2월 25일 12:00부터 2월 26일 12시까지 24시간동안 보도하되, 제목활자크기(세종시 수정안 집회 관련...)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일당 3만원에...)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하며,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에 링크시켜 배치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문제를 상호 제기하지 않는다.

2010. 2. 24.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세종뉴스 : 『세종시 수정안 집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5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76

신청인이 행시에 합격하고도 고시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억대가 넘는 연봉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건강과 학업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던 것이다.

사　　건 : 2010서울조정392 · 393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매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2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고시 학원의 강사로 나서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한 A씨가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고 유명 학원행을 택한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학원행을 택한 것은 건강 및 학업상의 이유로 임용을 포기했기 때문일 뿐 보도내용과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매경닷컴 :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行試합격자』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내　　용 : 행시출신들 우대, 연봉 공무원의 3~4배 / 공직 사명감 없어…정부 실태파악도 안돼 / 합격자 의무근무기간 법제화 등 대책 필요

행정고시에 합격한 A씨(29)는 최근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고 고시촌 학원가에서 학원 강사로 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임용을 유보한 채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A씨에게 한 차례 권고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유명 학원행을 택했다.

고시촌 학원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B씨(33)는 고시 경제학의 독보적 스타강사로 각광받고 있다. 10년 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했던 그는 이내 고시 학원가로 발을 돌렸고 금세 스타강사로 떠올랐다. 학원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연봉은 10억 원대에 달한다. 집안 사정 때문에 어

쩔 수 없이 학원 강사의 길을 택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시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닌 고연봉을 위한 경력 쌓기의 수단으로 이용된 셈이다.

행시 합격생들의 '학원가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고시를 패스한 뒤 몇 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나서는 경우는 예전에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곧바로, 혹은 잠시 초임 근무만 한 뒤 바로 그만두고 강사로 나서는 합격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중략)

행시 합격자들이 학원가로 진출하는 것은 억대가 넘는 연봉 때문. 상당수 행시 출신 강사들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고 다니며 일부는 공무원 생활로 평생 모을 돈을 강사생활 몇 년 만에 거머쥐는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행정고시는 합격한 뒤 임용되지 않거나 조기에 그만둔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한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요즘 같은 때 우수한 인재로 채워져야 할 일자리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셈이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매경닷컴(http://www.mk.co.kr)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行試합격자'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매체는 지난 2월 18일자 뉴스종합면에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행시합격자'라는 제목으로 'A씨가 학원강사를 이유로 임용을 포기하였으며, 상당수 행시 출신 강사들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고 다니며 일부는 공무원 생활로 평생 모을 돈을 강사생활 몇 년 만에 거머쥐는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건강 및 학업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상당수 행시합격자들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고 다니며 일부는 공무원 생활로 평생 모을 돈을 강사생활 몇 년 만에 거머쥐는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경닷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을 이 사건 보도와 동일하게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 2월 19일자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행시합격자』 기사에서 "A씨가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고 유명 학원행을 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건강 및 학업상의 이유로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 이행결과

1

매경닷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2

매경닷컴 : 『[정정보도문]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행시합격자』 제하의 기사 하단 (2010년 3월 9일자)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사례 77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인 신청인이 정식 기자가 아니어서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26 · 1127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맹 주 석
피신청인 : (주)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7.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삼성그룹에 대해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와 외신기자 간의 간담회를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불허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서울외신기자클럽의 회장인 신청인이 미국CBS를 위해 오랫동안 일했던 어느 한국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 뿐, 정규직 기자나 특파원이 아니어서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198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25년 동안 미국CBS 방송 서울지국에서 기자, 프로듀서로 근무했다며 정정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프레시안 : 『"김용철 책 홍보라서?"... 외신기자클럽,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9일자)

내　　용 :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김용철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불허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가 증언한 삼성 비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지만, 정작 국내 주요 언론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기자들이 취재하는 자리로 준비된 행사가 불허된 것. 결국 이 행사는 공식 간담회가 아닌 비공식 간담회로 치러지게 됐다.

'상업적 이용 가능성' 때문에 간담회 불허?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가 베스트셀러가 된 뒤, 여러 외신기자들이 김 변호사와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신기자들이 김 변호사 인터뷰를 위한 공식적인 간담회를 준비했다. 그런데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던 간담회에 대해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외신기자클럽 명

의로 간담회를 열 수는 없다는 게다. 이는 외신기자클럽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기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맹주석 외신기자클럽 회장은 간담회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를 홍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서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책의 저자는 누구든 간담회에 초대받을 수 없다. 한 외신기자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 관계자가 외신기자클럽에 초대되는 일이 흔했다.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하는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취재 가치가 충분한 인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맹 회장은 왜 회원들을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간담회를 반대했을까.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8층에 있는 외신기자클럽 식당을 신라호텔이 위탁받아 운영한다는 점을 들어, '외압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외신 기자들은 이런 가설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대신, 외신기자클럽 회장의 자격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서 이유를 찾는 기자들이 많다. 맹 회장이 올해 2월 당선된 직후, 미국CBS 아시아 총괄 책임자가 보낸 팩스로 불거진 논란이다. 맹 회장은 미국 CBS 기자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맹 회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외신기자클럽 회장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미국CBS 특파원을 자처했었다.

확인 결과, 맹 회장은 미국CBS를 위해 오랫동안 일했던 어느 한국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기자나 특파원은 아니지만, 미국CBS와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닌 셈이다. 지난 18일,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묻자 맹 회장은 '프리랜서'라고 대답했다.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외신기자클럽은 총회를 열어 맹 회장의 임기를 6개월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공식 임기는 1년이다. 또 외신기자클럽 이사 가운데 일부가 사퇴했으며, 빈자리는 아직 메워지지 않았다. 맹 회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기자들도 있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불허한 결정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돌출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변호사의 증언에 관심이 많았던 기자들은 주로 유럽, 미국 기자들인데, 맹 회장 자격 논란 속에서 회장 퇴진을 요구했던 게 그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변호사 간담회 불허 결정이 나온 뒤, 가장 크게 반발했던 이들도 평소 맹 회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기자

들이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김용철 책 홍보 행사라서?"...외신기자클럽, 시끌시끌)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일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김용철 책 홍보 행사라서?"... 외신기자클럽, 시끌시끌』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18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김용철 책 홍보 행사라서?"... 외신기자클럽, 시끌시끌』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외신기자클럽 맹주석 회장이 정규직 기자나 특파원이 아니어서 외신기자클럽 회장의 자격이 논란이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맹주석 회장은 198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CBS방송 서울지국에서 25년간 기자, 프로듀서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19일자 『"김용철 책 홍보행사라서?"… 외신기자클럽, 시끌시끌』 제하로 "맹주석 회장은 미국CBS를 위해 오랫동안 일했던 어느 한국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정규직 기자나 특파원이 아니어서 외신기자클럽 회장 자격에 논란이 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맹주석 회장은 198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25년동안 미국CBS 방송 서울지국에서 기자, 프로듀서로 근무해온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레시안〉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편집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제목 및 본문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7. 27.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프레시안 : 『바로잡습니다 맹주석 외신기자클럽 회장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78

신청인 단체가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단체는 신청인 단체와 이름이 비슷한 타 단체이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08 · 1409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사)KYC (한국청년연합)
피신청인 : 뉴데일리(주)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좌파단체들이 단결하여 회의를 망치려 하고 있다면서 이 단체들 중에 'KYC'로 불리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있으며, 이 협의회는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친북단체로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활동중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사단법인 KYC는 한국청년연합은 청소년의 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친북단체와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뉴데일리 :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 개 단체 뭉쳤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2일자)

내　　용 :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광우병 시위를 '난동' 수준으로 만든 좌파 단체들이 최근 G20 정상회의를 망쳐보겠다며 뭉치고 있다.

2008년 4월 말부터 시작된 '광우병 난동'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광우병 대책회의'에는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후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루머로 밝혀지고, 참가단체들의 도덕적 해이 부각, 불법폭력시위 주동세력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자 이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이들 단체를 포함, 수십 개 단체가 연대조직을 구성했다. 정식 명칭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 공동대응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 목적은 G20 정상회의 반대 또는 무산이다. 이들은 지난 7월 9일 경향신문 사옥 내 민노총 회의실에서 1차 워크샵을 가진 뒤 조직화를 시작했다. 이후 외양을 확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중행동 측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창립선언문을 보면 80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80개 단체에는 참여연대, 6.15공동선언실천연대, 민노당, 민노총, 진보신당, 사회당, 상상연구소, 조선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전국빈민연합 등 기존의 좌파단체와 함께 기본소득네트워크, 에너지노동네트워크, 이윤보다 인간을,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나눔문화, 대학생사람연대, 진보전략회의,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 등 낯선 단체도 있다.

'민중행동' 참가단체 중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다함께' 등은 2008년 봄 광우병 난동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이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全農) 등은 익히 알려진 대형단체며, 우리민족련방제통일회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국카톨릭농민회 등 또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좌파 단체들이다.

이들 외에 노동인권회관,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와 같이 국내 불법체류자들을 지원하는 조직, 평화재향군인회, 반전평화연대 등과 같은 反안보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와 같은 페미니즘 단체, 재벌공격에 열을 올리는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투명성기구도 이 '민중행동'에 참가했다.

조금 색다른 단체들도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7년 대선 이후 좌파 진영이 헤쳐모여 해서 만든 좌파진영의 중심 단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시위 등에는 직접 나서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일명 'KYC'로도 불리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친북단체다. 공식적으로는 해체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활동 중이다. 학술단체협의회는 일반 연구단체 같이 보이지만 주요 대학에서 '마르크스 코뮤날레'와 같은 좌파 사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산주의에 대해 강의한다. 강정구 前동국대 교수가 이 단체의 공동대표다. 상상연구소는 진보신당의 부설 연구소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그 성향과 활동을 가늠할 수 없는 좌파 단체들이 모두 모여 G20 반대행동에 나서면서 공안기관들조차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80개 단체를 성향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국제사회주의자 조직과 성향을 같이 하는 단체와 친북단체가 4:6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는 점도 특이하다.

이 중 친북단체들은 G20 정상회의를 무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실행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

을 사고 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을 따르는 단체들은 대부분 친중 성향을 띄고 있는데, 일부는 準테러 조직 '마오이스트(Maoist. 모택동주의자. 네팔 공산당을 지칭하지만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공산주의자도 통칭)' 와 연계 의혹도 있다.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것도 이 '마오이스트' 와 무정부주의자 단체들이었다.

현재 좌파 진영 일각에서는 지도층이 이들 '마오이스트' 와 무정부주의자 단체, 해외 공산주의혁명단체 회원들을 세미나 초청 형식으로 국내에 입국시키려 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외국인 관광객' 으로 위장해 회의장 주변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찰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국정원 등을 동원해 문제 소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는 한편, G20 반대시위에 나설 수 있는 단체들, 북한 대남사업 조직의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능력으로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감시하기 어려워 G20정상회의 준비단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 개 단체 뭉쳤다〉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 개 단체 뭉쳤다〉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12일자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 개 단체 뭉쳤다〉 라는 제목으로 KYC에 대하여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친북단체다. 공식적으로는 해체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활동 중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KYC(한국청년연합)는 민법(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임이 확인돼,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12일자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개 단체 뭉쳤다』 라는 제목으로 '일명 KYC로도 불리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친북단체'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KYC(한국청년연합)는 청소년의 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별개의 비영리법인임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부정확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KYC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2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뉴데일리〉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 기사가 전재된 포털사이트에 위 보도문을 송고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0. 28.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①

뉴데일리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9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②

뉴데일리 : 조정대상보도 하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9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79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가처분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일 뿐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32 · 1433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아이이에이
피신청인 : 박 ○ ○ (나눔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11. 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유아 영어 교재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업체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 업체가 영어 교재시장에서 유명한 브랜드인 '키즈브라운'과 비슷한 '키즈브라운2.0'이라는 유사 브랜드를 만들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비윤리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법원이 저작권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의 경쟁업체 측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키즈브라운 2.0'의 출판 · 판매사인 신청인은 (주)IEA는 '키즈브라운'의 상표권자로서 '키즈브라운2.0' 상표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키즈브라운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인 경쟁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을 뿐이라며 정정보도와 3백7십5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나눔뉴스 : 『유아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 소송 승리하고 2011년 론칭』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내　　용 : 조기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제 유치원생들에게도 영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조기교육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이제는 교재부터 꼼꼼히 따져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만큼 유치원 역시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교재를 선택하고, 좋은 교사를 선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유아영어교재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업체들간의 분쟁도 종종 나타난다. 유치원의 유아영어교재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키즈브라운' 역시 후발경쟁업체와의 분쟁으로 위기를 맞을 뻔

했던 사례다.

'키즈브라운'은 유아영어교재 시장에서는 유명한 브랜드다. '키즈브라운'을 개발했던 BEF라는 업체가 현재 '키즈브라운'의 실질 소유주인 (주)SVH(구 엘림에듀)에 개발교재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BEF는 폐업신고를 하고 IEA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키즈브라운 2.0'이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브랜드를 내세워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며 기존 '키즈브라운'의 고객을 빼앗아가려 했던 것이다.

결국 법원은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주)SVH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대해 유치원 기관들이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SVH과 파트너 관계인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은 내년부터 기존의 '키즈브라운'을 업그레이드 한 '뉴키즈브라운'을 선보이기로 했다.

또한 키즈브라운의 총판 및 공동저작권사인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은 국내외 캠프 및 대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브랜드 알리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경쟁업체의 비윤리적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시장 점유율에 위협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내 1위 유아 영어 교재에 걸맞은 더 좋은 교재로 보답하겠다는 의미다.

위기를 넘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의 '키즈브라운', 향후 '뉴키즈브라운'와 '키즈브라운 캠프' 등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유아 영어 교재 업체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나눔뉴스(http://nanumnews.com) 홈페이지 문화교육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유아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소송 승리하고 2011년 론칭")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75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유아 영어 교재 키즈브라운' 정정보도문(또는 유아 영어 교재 키즈브라운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18일자 문화교육면 초기화면에 "유아 영어 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소송 승리하고 2011년 론칭"라는 제목으로 IEA가 '키즈브라운2.0'이라는 유사브랜드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비윤리적 영업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키즈브라운 2.0의 출판 · 판매사인 (주)IEA는 '키즈브

라운'의 상표권자로 '키즈브라운2.0' 상표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으며, 키즈브라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원은 키즈브라운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SVH의 손을 들어주었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나눔뉴스 : 『지난 10월 18일에 보도된 "유아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소송 승리하고 2011년 론칭"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2일자)

내 용 : 지난 10월 18일에 보도된 "유아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소송 승리하고 2011년 론칭"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합니다. 해당 판결문(2009카합3357)에 따르면 키즈브라운의 4가지 구성품 중 드릴북과 키즈브라운2.0의 5가지 구성품 중 스토리북, 워크북, 미니북은 IEA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EA와 법무법인 율촌은 "키즈브라운 2.0 서적 중 문제가 된 코스북과 멀티미디어 씨디를 수정하였으며 구매 및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내용-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5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키즈 브라운(Kids Brown)' 서적 중 스토리북(Story Book), 워크북(Work Book), 오디어 · 멀티미디어 씨디(CD) 및 '키즈 브라운 2.0(Kids Brown 2.0)' 서적 중 코스북(Course Book)과 멀티미디어 씨디(CD)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은 '키즈 브라운(Kids Brown)' 서적 중 스토리북(Story Book), 워크북(Work Book), 오디오 · 멀티미디어 씨디(CD) 및 '키즈 브라운 2.0(Kids Brown 2.0)' 서적 중 코스북(Course Book)과 멀티미디어 씨디(CD)를 제작, 인쇄, 제본,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라. 문화 · 언론 · 연예 관련분야

사례 80

신청인 방송사가 사회주의 성향이며, 참여정부 시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7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시민방송
피신청인 : 신 ○ ○ (인터넷 독립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참여정부 5년 동안 총 150억 원의 법적 근거 없는 정부 지원금으로 시민방송(RTV)이 운영되었고, RTV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는 방송' 이라는 시민단체 방송개혁시민연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시민방송은 RTV의 편성방향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무관하고, 지원금 역시 방송법에 근거하여 지원되었으며, 지원금액도 83억 원이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후속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인터넷 독립신문 : 『시민방송 RTV는 진정한 시민채널인가, 공산주의 선전 매체인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내　　용 : 시민방송을 표방하는 RTV의 이념적 편향성이 도를 넘고 있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채널로서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하고 있다.

RTV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국내 유일의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미디어 접근)전문 채널을 표방하며 200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난 좌파 정권의 정책에 부응하는 편향적 방송으로 일관하며 참여정부 5년 동안 총 150억 원의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시청자 제

작 프로그램에 배정된 방송발전기금의 69%를 할당받는 등 끊임없이 특혜시비가 제기되었던 방송채널이다.

방송심의규정 제 7조 '방송의 공적책임' 1항은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서 공적매체로서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RTV는 시민의 방송이라는 허울 아래 특정 이념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나 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 시민방송으로서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보다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의 방송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은 그동안 RTV에 가장 많이 출연한 단체 명단에 올라 있으며 노조대표는 55번이나 출연시킨 반면, 전경련 대표는 단 한번의 출연에 그쳤고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FTA 방송과 촛불정국 때의 일방적 편파방송은 사회의 진정한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거나, 시민 전체의 목소리를 형평성 있게 다루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시민단체의 간부를 진행자로 삼거나 특정 신문의 논조가 뉴스 브리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퍼블릭 엑세스를 표방하는RTV의 존재 의미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방송 내용과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 신문이나 단체의 논조를 대변하고, 2008년 '양심적 병역 거부' 및 '군대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뛰어들어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강의석 씨의 알몸시위장면을 '무한자유지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과없이 방송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내용의 방송이 빈번하게 편성된다는 것이다. (중략)

방송개혁시민연대는 그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어 편향된 시각의 표출 통로로서 국가의 안보마저 위협하는 이러한 반국가적, 편향적 방송채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방통위는 경영이 부실하고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RTV에 대해 채널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여 그 존폐 여부를 확실히 판가름 해주기를 촉구한다.

2010. 1. 13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 www.cnmr.kr)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시민방송 RTV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시민방송 RTV는 진정한 시민채널인가, 공산주의 선전 매체인가"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참여정부 5년 동안 총150억 원의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됐다",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 방향으로 하는 방송 내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민방송 RTV의 편성 방향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는 무관하고, 지원금 역시 방송법 제3조, 제6조, 제38조, 제70조에 근거하여 지원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83억 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인터넷 독립신문 : 『RTV, "공산주의 선전매체"에 발끈』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내 용 : 방개혁 논평 소개한 본지도 비난

소위 '시민방송'을 자임하는 RTV측이 기고문을 통해 자신들을 '편파방송'으로 비판한 시민단체와, 이 단체의 논평을 소개한 언론들(독립신문, 뉴데일리)을 비난했다.

시민단체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 이하 방개혁)는 지난 13일 『시민방송 RTV는 진정한 시민채널인가, 공산주의선전 매체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RTV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철 RTV 상임부이사장은 19일 한겨레 기고문에서, 자신들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했을 뿐'이란 취지를 피력했다. 그는 방개혁의 논평과 이를 소개한 보도 등을 "아르티브이(RTV) 죽이기"로 규정한 후, "성명과 보도가 명백한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

들이 지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83억 원'이라며, 방개혁이 밝힌 '150억 원 지원' 주장에 반박했다.

또 자신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목소리를 방영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소수자의 목소리가 듣기 싫거든 반박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을 요청할 일"이라며, "소외계층과 소수자들은 공산주의자이며, 이들이 펼친 주장은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 고무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이사장은 계속해서 같은 날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에 기고된 글을 통해서도 방개혁 등을 비난했다.

이하 <한겨레>와 <프레시안>에 기고된 글 전문

- **한겨레 기고문** : 생략 – 편집자 주
- **프레시안 기고문** : 생략 – 편집자 주

사례 81

95년 사망한 가수 故 김성재가 약물복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246 · 247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주)서울신문엔티엔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국내외 대중스타들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아들인 가수 故 김성재를 국내사례 중 한 명으로 언급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가수 故 김성재는 스스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며, 타살과 관련된 형사사건 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서울신문NTN : 『브리트니 머피로 돌아보는 약물 사망 스타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5일자)

내　　용 : 지난 6월 사망한 마이클 잭슨에 이어 최근 할리우드 여배우 브리트니 머피의 사망은 또 다시 스타들의 약물 과다복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타들의 약물 과다 복용은 '스트레스와 명성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약물복용으로 사망한 잘 알려진 스타는 누가 있을까.

마이클 잭슨과 브리트니 머피 외에 대표적인 할리우드 스타로는 마릴린 먼로, 안나 니콜스미스, 엘비스 프레슬리, 브래드 렌프로, 히스레저 등이 있다. 국내 배우로는 가수 서지원과 장덕, 듀스의 김성재 등이 있다. (중략)

가수 서지원도 신작 발표를 앞두고 스트레스에 못 이겨 유서를 남긴 채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95년 인기그룹 듀스의 김성재도 당시 호텔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유가족이 다시 타살 의혹을 제시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십대들은 잘 모르는 가수 장덕도 1990년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서울신문 NTN(http://ntn.seoul.co.kr) 홈페이지에 조정대상 기사 중 김성재 사진과 관련 기사를 삭제함과 아울러 별도의 기사형식으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브리트니 머피로 돌아보는 약물 사망 스타들)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듀스 김성재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서울신문 NTN에서는 지난 12월 25일자 〈브리트니 머피로 돌아보는 약물 사망 스타들〉 제하의 기사에서 약물과다로 사망한 연예인들 사진과 함께 듀스 김성재 사진을 실으면서 또한 '95년 인기 그룹 듀스의 김성재도 당시 호텔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듀스 그룹의 멤버였던 김성재는 스스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동물용 마취제를 투여당한 타살 의혹이 있어서 유력한 용의자였던 당시 여자친구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단순 약물 복용 사망이라고 잘못 보도해 고인에게 불명예를 끼쳤으며 그 유족들에게 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시인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정보도합니다. 또한 유족들은 과거 13년간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해 오셨습니다. 저희 언론사에서는 차후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좀 더 세세한 면까지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면서도 바른 기사를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서울신문NTN : 조정대상보도 하단 『(알려드립니다) 듀스 전 멤버 故 김성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내　　용 : 지난해 12월 25일자에 게재한 '브리트니 머피로 돌아보는 약물 사망 스타들' 기사와 관련, 1995년 사망한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씨의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 여부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 일반약물이 아닌 주사용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있어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기소되었고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례 82

신청인 협회가 대표적인 영화계 우파단체이며, 기획전을 신청인 협회 시사실에서 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304 · 305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영화감독협회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1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원로감독들의 모임인 '한국영화감독협회(이하 협회)'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좌파영화제라고 공격했으며, 협회가 영상자료원 원장에게 압력성 요구를 행사하여 올해 2차례의 기획전을 협회의 남산 시사실에서 열기로 했고, 협회가 영상자료원에 남산 시사실을 통째로 대관,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한국영화감독협회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좌파영화제라고 한 적이 없고, 협회는 원로감독들의 모임이 아니라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대다수 영화감독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정통 영화단체이며, 협회는 영상자료원 원장에게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협회가 남산 시사실을 영상자료원과 공동운영하자는 제안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뒤 백지화되었다며 정정보도와 1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한겨레와 한겨레닷컴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한겨레 : 『영화계 우파 '떡고물 과욕'』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자 24면)

내　용 : 이명박 정권 아래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영화계 일부 우파 인사들의 무리한 행태가 곳곳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이병훈)은 올해 2차례가량의 기획전을 서울 남산에 있는 한국영화감독협회(이사장 정인엽) 시사실에서 열기로 했다. 애초 감독협회는 이 시설을 통째로 대관 운영해달라고 영상

자료원에 요구했으나, 자료원 직원들의 반발로 축소됐다. 원로 영화감독들의 모임인 감독협회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좌파영화제라고 공격하는 등 색깔 공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영화계우파 단체다.

영상자료원은 서울 상암동 청사 지하 1층에 최신 시설의 극장 2개관을 갖고 있으며, 2008년 5월부터 이곳에서 각종 기획전과 특별전을 열어왔다. 아직 올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감독협회에 대관 사용료를 얼마나 지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자료원 직원들은 "멀쩡한 자체 시설을 놔두고 남산의 낡은 극장까지 가서 기획전을 여는 것은 감독협회가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며 한숨짓고 있다.

(후략)

2

한겨레닷컴 : 『영화계 우파 '떡고물 과욕'』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자면)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 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문화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로 하며,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http://www.hani.co.kr)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게 하고,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영화계 우파 떡고물 과욕" 기사 정정합니다.

2. 내 용 : 지난 1월 7일자 문화 24면에 게재된 "영화계 우파 떡고물 과욕" 기사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를, 부산국제영화제는 좌파영화제라고 공격하는 등 색깔공세에 앞장선 대표적인 우파단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정정합니다. 한국영화감독협회는 60년의 한국 영화사를 이어온 정통 영화감독들의 순수 예술단체로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한국영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단체임에도 정치적인 시각에 의하여 우파로 매도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영상자료원의 기획전과 관련하여 감독협회가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기획전을 남산 한국영화감독협회의 시사실에서 열기로 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당초 영화감독협회 시사실의

접근성의 용이함을 근거로 영상자료원의 일부 프로그램을 영화감독협회 남산시사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간 의견이 달라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정정합니다. 한국 영화의 중심에 서있는 한국영화감독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화계를 이념적 대립의 수렁으로 몰아넣어 영화계의 분열을 조장한 점을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정정하는 바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2010년 1월 7일치 24면 『영화계 우파 '떡고물 과욕'』 제목의 기사에서 '원로감독들의 모임인 한국영화감독협회(이하 협회)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좌파영화제라고 공격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협회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좌파영화제라고 한 적이 없으며 협회가 원로감독들만의 모임도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협회가 영상자료원 원장에게 압력성 요구를 행사하여 올해 2차례의 기획전을 협회의 남산 시사실에서 열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최종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자료원 원장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협회가 자료원에 남산 시사실을 통째로 대관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협회는 남산시사실을 자료원과 공동운영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뒤 백지화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2월 26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문화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독립영화전용관 선정 영상자료원 기획전 등")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신문〉 홈페이지의 뉴스홈 동일기사의 하단에도 위 보도

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2. 19.

조정성립 사항 이행결과

1

한 겨 레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5일자 25면)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2

한겨레닷컴 : 조정대상보도 2 하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5일자)

내 용 : 〈조정성립 사항 참조〉

사례 83

신청인 회사가 발행한 <소설 덕혜옹주>가 일본 소설 <덕혜희>를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18 · 1419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다산북스
피신청인 : (주)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권비영이 쓰고 신청인 회사가 출판한 소설 "덕혜옹주"가 사실은 일본인 혼마 야스코 씨가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조사한 내용을 허락도 받지 않고 출처표시도 없이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혼마 야스코 씨가 자신의 책을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표절 검토자료'에 의하더라도 저작권의 법리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이미 표절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후속기사로 상세히 보도해 주었기에 추가적인 정정과 반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삭제를 요구했다. 당사자 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오마이뉴스 : (1) 『"소설 〈덕혜옹주〉, 내 책 40여 곳을 무단도용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내　　용 :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원제목 <덕혜희>)의 작가인 일본인 혼마 야스코는 50만 부 이상 팔린 소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덕혜옹주>)가 자신의 책 수십 곳을 무단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혼마 야스코의 '표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소설 <덕혜옹주>는 어떤 출처 표시도 없이 혼마 야스코가 <덕혜희>를 쓰면서 독자적으로 취재 · 조사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대목이 40여 곳에 이른다는 것이 혼마 야스코측의 판단이다.

혼마 야스코는 이렇게 비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는 "혼마 선생의 책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는 등 인용의 기본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가 중대하기 때문에 소송 등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혼마 야스코는 지난달 25일 <한겨레> 기고글에서 "그 소설은 난해한 소 다케유키의 시를 비롯하여 내 책의 내용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무단차용했다"고 공개적으로 '표절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덕혜옹주> 출판사 측은 "책에서 혼마 야스코의 책을 참고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소설 <덕혜옹주>가 표절 시비거리가 안 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저자인 권비영씨도 "표절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혼마 야스코의 '표절 검토 자료'는 B4 32쪽에 이르는 분량이다. 혼마 야스코는 자신이 일본어로 쓴 <덕혜희>(1998년)와 이것의 번역본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이훈 옮김, 2008년 5월), 소설 <덕혜옹주>(권비영, 2009년 12월)를 비교검토한 내용이다.

혼마 야스코는 이렇게 비교 검토한 끝에 소설 <덕혜옹주>가 40여 곳에서 자신의 책내용을 '무단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소설 <덕혜옹주>가 출간된 직후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이어서 향후 표절 의혹을 받는 대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은우 변호사는 "1차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검토를 한 결과 소설 <덕혜옹주>는 <덕혜희>의 전반을 무단도용했다는 게 혼마 선생의 판단"이라며 "특히 권비영 씨는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일부 내용을 변경, 왜곡했다"고 말했다.

표절 의혹 40여 곳 중에는 혼마 야스코가 독자적으로 취재 · 조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많았다. 혼마 야스코는 <덕혜희>를 쓰기 위해 수년간 한국과 도쿄, 쓰시마를 돌아다니며 관련자료들과 증언들을 조사 · 취재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덕혜희>는 덕혜옹주의 삶을 처음으로 복원한 저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인 권비영씨가 자신의 책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덕혜희>는 가장 완벽한 참고자료였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표절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먼저 덕혜옹주가 창덕궁 관물헌에서 보낸 일상을 서술한 대목을 보자(참고로 여기에서 출처를 나타내는 ①과 ②는 각각 혼마 야스코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와 권비영 씨의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를 가리킨다). (중략)

혼마 야스코는 지난달 25일 <한겨레> 기고글에서 "내 책의 내용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무단 차용하면서도 표현을 바꾸는 식으로 저작권법상의 그물망을 피하려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독자적으로 취재 · 조사한 내용을 표현만 조금씩 바꾸어 표절 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다는 얘기다. (중략)

덕혜옹주의 '조발성 치매증' 발병과 오이소 별장에서 휴양한 것 등은 혼마 야스코가 독자적으로 취재 · 조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설 <덕혜옹주>는 어떤 출처표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혼마 야스코는 "소설 <덕혜옹주>가 <덕혜희>에서 서술한 대목의 일부를 대화내용으로 바꾸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 다케유키의 소년시절을 묘사하는 대목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중략)

소설 <덕혜옹주> 239쪽과 241쪽에는 '고젠사마'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는 덕혜옹주가 소다케유키와 결혼한 후 사용된 호칭인데, 혼마 야스코의 취재로 처음 밝혀낸 내용이다. (중략)

혼마 야스코가 취재 · 조사과정에서 단독으로 발굴한 <히라야마 타메타로 일기>에는 덕혜옹주 부부가 쓰시마를 방문한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소설 <덕혜옹주>는 출처표시 없이 비슷한 내용을 서술해놓았다. (중략)

혼마 야스코의 <덕혜희>에는 소 다케유키의 시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 시들은 소 다케유 키와 덕혜옹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혼마 야스코는 그 가운데 '한회'(閑懷) 라는 시를 일본 <고사기(古事記)>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지어 해석했다. 그런데 이것이 통째로 소설 <덕혜옹주>에서는 다케유키가 덕혜옹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변주됐다. (중략)

또한 소설 <덕혜옹주>는 혼마 야스코가 발굴하고 해석한 소 다케유키의 시를 무단으로 사 용했다. '한회'라는 시의 일부를 언급한 대목이 대표적인데, 원문에 있는 '붉은 서까래 에'라는 표현을 '붉은 서까래 아래'로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중략)

시 '내 꿈은 대마도로 이어진다'와 '사미시라'는 소 다케유키가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무단도용됐다는 것이다. (중략)

심지어 소설 <덕혜옹주>가 소 다케유키의 시를 잘못 번역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 덕혜희>와 <덕혜옹주>에 인용된 '한회'라는 시는 상당히 다르게 번역돼 있다. (중략)

이은우 변호사는 "<덕혜희>는 혼마 선생이 직접 취재하고 발굴하는 공을 들여 만든 저작물"이라며 "하지만 소설 <덕혜옹주>는 저작권법으로 봤을 때도 인용의 허용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작가와 출판사 측이 <덕혜희>를 1차 사료로 썼다고 해명하는 것은 표절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설 <덕혜옹주>는 (표절의) 양과 질에서 모두 문제가 되는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소설 <덕혜옹주>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일본에서 산 삶을 지옥으로 보거나 조선인 방식을 강요해 딸과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묘사했 다"며 "이는 민족감정을 이용해 덕혜옹주의 삶을 왜곡한 상업주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심지어는 수면제를 먹여 한국으로 탈출시키려고 했다거나 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스스로 미친 척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것은 덕혜옹주 가족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것이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혼마 선생은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상업적 책에 의해 덕혜옹주의 삶이 왜곡되고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한 것에 크게 상심하고 있다"며 "자신의 취재에 응한 분들에까지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설 <덕혜옹주>를 펴낸 다산책방의 한 관계자는 혼마 야스코의 '표절 검토 자료'와 관련해 "저쪽에서 그걸 가지고 소송한다고 하니까 소송이 진행되면 우리도 그걸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표절은 없었다'는 우리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설 <덕혜옹주>는 덕혜옹주의 결혼식에 참석한 시노다 차관을 '죠다 차관'으로, 미우라 여사를 미우라 공사로 잘못 표기했다. 또 도쿄공습을 피해 피난 간 '시오바라'라는 지명을 '시오하라'로 잘못 적었다. 혼마 야스코 측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작가 권비영 씨가 제대로 취재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혼마 선생의 책을 표절했다는 증거들"이라고 밝혔다.

⑵ 『[전문] <덕혜희> 작가 혼마 야스코의 '표절 검토 자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① 혼마 야스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이훈 번역, 역사공간, 2008년 5월)
② 권비영,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다산책방, 2009년 12월)
③ 혼마 야스코측 검토의견

① "덕혜가 태어난 것은 조국이 멸망하고 난 2년 후였다. 망국의 씁쓸함 속에서 그 전해인 1911년 고종은 믿고 의지하던 엄비마저 잃었다. 그에게 순진무구한 어린 자식의 미소는 더할 나위없는 위로가 되

었음에 틀림없다." (41쪽)

② "망국의 옹주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고종은 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24쪽)

③ 고종에게 있어서 덕혜옹주 탄생에 대한 혼마 선생의 의미부여(구성, 발상)의 도용.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홈페이지 문화면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5일 동안 게재하되, 각 제목을 표시하면 각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오마이뉴스 2010. 10. 1.자 "소설 〈덕혜옹주〉, 내 책 40여 곳을 무단도용했다" 및 "[전문] 〈덕혜희〉 작가 혼마 야스코의 '표절 검토 자료'" 기사는 일방 당사자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므로 게시를 중단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오마이뉴스 2010. 10. 1.자 "소설 〈덕혜옹주〉, 내 책 40여 곳을 무단도용했다" 및 "[전문] 〈덕혜희〉 작가 혼마 야스코의 '표절 검토 자료'" 기사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공주인 '덕혜옹주'에 관한 평전을 일본어판으로 집필한 혼마 야스코가 권비영이 쓰고 (주)다산북스에서 출판한 소설 '덕혜옹주'에 대해 자신이 "독자적으로 취재, 조사한 내용"을 허락도 받지 않고 출처 표시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책을 '표절' 했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마 야스코의 이른바 '표절 검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그것은 대부분 덕혜옹주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는 식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다만 소 다케유키의 시 작품이 그대로 전재된 부분이 다소 존재하고 있는데, 소 다케유키의 시 작품을 제외하면 문장이나 어구 등 표현이 혼마 야스코의 책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의 내용 중에서 '사상' 즉 '아이디어'에 관한 부분은 보호되지 않고 다만 그것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만이 보호된다고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대원칙입니다. 혼마 야스코가 직접 취재하여 발굴했다는 덕혜옹

주나 소 다케유키의 에피소드나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사상'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만 혼마 야스코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 즉 '사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만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인데, 우선 혼마 야스코의 평전과 권비영의 소설은 그 형식이 달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이 사용될 여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혼마 야스코가 주장하는 40여 곳의 '표절 검토자료'에서 비교된 두 작품의 '표현'은 결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 다케유키의 시 작품을 한국어판 번역본에서 직접 또는 간접 사용한 부분은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시 작품의 창작자인 소 다케유키나 번역자와의 문제일 뿐 혼마 야스코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법상 정당하게 허용되는 '인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소설에 평전이나 학술서적처럼 일일이 각주를 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은 있지만, 새로운 판을 인쇄할 때는 적절히 출처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일부 인명이나 지명에 착오가 있다거나 역사적 사실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은 감사하게 받아들여 그 오류를 수정할 예정이나, 정략결혼에 대한 덕혜옹주의 내면의 생각이나 탈출기도 등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적 허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느니 명예훼손이 된다느니 하는 혼마 야스코 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설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대로 혼마 야스코가 권비영의 소설 덕혜옹주에 대해 자신의 책을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저작권법의 법리상 그가 제시한 '표절 검토자료'를 보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표절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이미 후속보도로 상세히 보도했으므로 추가적인 정정이나 반론보도는 불가능하다.

사례 84

문인협회 선관위 간사인 신청인이 협회 이사장으로 출마한 특정인의 후보자 등록을 등록일 하루 전날 미리 접수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99 · 1600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최 ○ ○ (한국대표문학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12.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제25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청인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후보자 등록을 등록일 하루 전날 접수받아 선관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기위해 등록 · 접수번호를 발부한 사실이 없고, 공식 등록 · 접수 시간 전에 발부한 번호는 단순한 도착 순서를 의미할 뿐, 후보자의 기호가 접수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국대표문학신문 : 『문협 선관위 공정성 논란 휘말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내　　용 : 제25대 한국문인협회(이하 문협)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감독해야할 문협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규정을 무시하고 후보자 등록접수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협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 등록일은 2010년 12월 15일 09:00부터 17:00시로 되어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문협 선관위 접수현황 문건에 따르면 등록일 전날 14일부터 접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는 선거규정에 등록접수 순서로 후보자 기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출마 후보자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에 의하면 "15일 후보자 접수 규정에 의해 등록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교롭

게도 현재 후보자 기호 배정과 접수현황 문건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규정을 준수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규정을 무시하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접수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6명의 후보자중 기호 1번 성○○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들은 접수번호를 발부한 선관위 강○○ 간사를 선관위에서 사퇴할 것을 선관위에 문건으로 접수했으나 아직 선관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국대표문학신문(http://www.munhaknew.net)의 홈페이지 중앙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3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문협선관위 공정성 논란 휘말려')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사실무근의 기사로 말미암아 선관위 간사 강○○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고, 선관위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하였으므로 금 3억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문협선관위 공정성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한국대표문학신문)은 지난 2010년 12월 20일자 뉴스면(뉴스종합)에 '문협선관위 공정성 논란 휘말려' 라는 제목으로 선관위 간사 강○○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15일 09:00 등록 접수를 무시하고 14일 저녁 7시 이후에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의 증언과 15일 09:00 등록 접수에 앞서 열린 선관위의 회의 의결 사항을 확인한 결과, 14일 저녁 7시 이후 등록 접수는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대표문학신문

(http://www.munhaknews.net)'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아래 보도문 제목을 2일 동안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 지난 12월 20일 종합면 『문협 선관위 공정성 논란 휘말려』 제하의 기사와 관련, 강경호 간사는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등록 · 접수번호를 발부한 사실이 없고, 공식 등록 · 접수 시간 전에 발부한 번호는 단순한 도착 순서를 의미할 뿐 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 이행결과

한국대표문학신문 : 『[종합]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2. 외부기고 기사가 문제된 사례

사례 85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민원은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다.

사　　건 : 2010서울중재2　정정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 (한겨레닷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겨레닷컴에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민원인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재개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빈곤문제연구소장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초수급자의 가족과 담당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당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수급자의 급여수급 중단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라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 중 양 당사자는 담당 중재부의 중재를 받기로 합의,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정정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에게 중재대상 기고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신청인 명의의 기고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한겨레닷컴 : 『[왜냐면]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0일자)

내　　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명의로 차명계좌가 개설되어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을 경우, 종전에는 차명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자신이 명의를 도용했거나 차명했음을 밝히고, 돈을 찾아가면 차명임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명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10년 이상 정신과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정신

분열증 환자 김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언니가 김씨 명의로 은행에 거액을 예금하면서 금융재산 과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당하고, 의료급여도 끊겨 강제퇴원을 당해 이 엄동설한에 불쌍한 환자가 거리에 나앉을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김씨를 부정수급자로 몰아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토해 내라고 하고 있다.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빈곤문제연구소 상담원은 동사무소-해운대구청-부산시-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자에게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고, 단지 전산상으로 김씨 명의의 금융재산이 발견된 사실만으로 수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니,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그동안만이라도 급여를 끊지 말아 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든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받는다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고 매정하게 김씨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끊었다.

10월 13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수사를 해운대경찰서 경제2팀의 진 경사에게 맡겼다. 진 경사는 "관련자들과 통화해 보니 김씨네 가족의 돈이더라. 이 사안은 경찰 업무가 아니라 복지 업무이다"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담당 복지사는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를 재개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 복지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부실하게 한 진 경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전화나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니, 다시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11월18일 인터넷으로 2차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조사에 나섰더니, 2차 민원도 바로 징계를 요구받은 당사자인 진 경사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죄라고는 이름을 도둑맞은 죄밖에 없는 불쌍한 환자에게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부정수급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생명줄을 끊어 놓은 후, 민원 처리에 두 달이 지났는데도 누명을 벗겨주기는커녕 진 경사 자신의 징계 문제를 처리하라고 진 경사에게 수사권이 넘겨진 민원은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요란한 광고문구를 내걸고 있는 권익위의 민원은 이와 같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0년 동안 입원중이던 정신분열증 환자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김씨의 이름 도둑맞은 죄를 벗는 과정은 당사자,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두 번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마치 카프카의 소설 <성>의 주인공인 K가 성에 들어가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공정한 수사는 불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간단하다. 김씨의 돈이라면 은행에서 인출해주고, 차명이라면 관련 은행원과 언니는 금융실

명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받고, 김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재개되면 된다.

그것을 밝히는 과정은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은행을 방문하여 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간단하고 빠른 민원처리 창구를 막아 놓는가. 굳이 국민신문고라는 비능률적이고, 코미디라고 할 정도로 황당하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단일 창구만 이용하라고 하는가.

이재오 위원장은 "서민의 피와 땀과 눈물은 서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내몰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불쌍한 환자의 눈물은 서류 속에 갇혀 있는가? 차라리 권익위가 없었다면 김씨의 억울한 누명은 더 신속하게 벗겨지지 않았을까? 신문고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류○○ 빈곤문제연구소장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닷컴(http://www.hani.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빈곤문제연구소는 진 경사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21일자 사회면 "왜냐면"이라는 지면에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라는 제목으로 올해 10.13일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 명의로 권익위원회에 인터넷으로 기초수급자가 수급이 끊긴 내용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 수사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한겨레신문에 "해운대 경찰서 경제2팀의 진 경사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부정수급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여 기초수급을 재개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투고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위 기초 수급자 관련 경찰에서 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허위내용을 투고했기에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 기고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에 게재된 중재대상투고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투고의 제목활자크기("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투고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2010년 1월 15일까지 완료하라.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 2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한겨레 12월 20일자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기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피신청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한겨레 2009. 12. 20.자 사설 · 칼럼 면에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및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고문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을 중재대상 기고문과 동일한 형식의 기고문으로 실어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8.

〈별 지〉

1. 제 목 :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 기고문에 대하여

2. 내 용 : 한겨레신문은 2009. 12. 21.자 29면 [왜냐면]란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라는 제목 하에 "해운대 경찰서 경제2팀의 진 경사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여 부정수급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기초수급을 재개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서 담당 사회복지사 및 기초수급자의 가족으로부터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하여 수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다만,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가족과 빈곤문제연구소에 2회에 걸쳐 답변해 주고 사건을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급여 수급 역시 본인의 수사 개시 이전에 이미 끊겼으며, 따라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부정수급자라는 누명을 씌운 것처럼 표현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경찰서 진 아무개 경사

중재결정 사항 이행결과

한겨레닷컴 : 『"신문고 민원 수사 최선을 다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3.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문제된 사례

사례 86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포털에 게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21　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는 2010서울조정1420 사건(사례99, 426면 참조)의 피신청인 (주)헤럴드미디어로부터 조정대상기사를 전송받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인 '네이트'에 게시하였다.
- 신청인은 네이트를 통해, 인터넷 헤럴드경제를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포털에 추위로 잔뜩 움츠린 채 걷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즉시 해당기사를 전송한 (주)헤럴드미디어와 이를 전송받아 게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했다.
- 신청인과 기사를 전송한 (주)헤럴드미디어 측으로부터 사진의 삭제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가 운영하는 네이트에서는 해당 사진이 요청일로부터 만 하루가 경과되도록 삭제되지 아니했다.
- 이에 신청인은 기사를 작성 · 전송한 (주)헤럴드미디어와는 별도로 피신청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를 대상으로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타 포털사에 비해 피신청인 포털이 장기간 조정대상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십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네이트 :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의 사진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내　용 : 〈2010서울조정1420 사건(사례99, 426면)의 조정대상보도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2010서울조정1420 사건의 조정신청이유 참조〉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 11. 19.까지 150,000원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이 유

피신청인 포털의 영향력, 피신청인 포털과 조정대상기사를 제공언론사와의 관계, 타 포털사에 비해 피신청인 포털이 장기간 조정대상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게 된 경위 그리고 신청인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제2장 기타 인격권 침해사례

제1절 초상권 침해사례

가. 인쇄 · 통신매체 대상 사례

사례 87

하숙집 전단지를 쳐다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72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국민일보(주)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서울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어느 집의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던 신청인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집은 많은데 갈 곳이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한 여학생이 담벼락을 가득 메운 하숙집 전단지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자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국민일보 :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2010년 1월 16일자 8면)

내　　용 :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에서 15일 한 여학생이 담벼락을 가득 메운 하숙집 전단지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개학을 앞두고 대학가 원룸 임대료, 하숙비가 크게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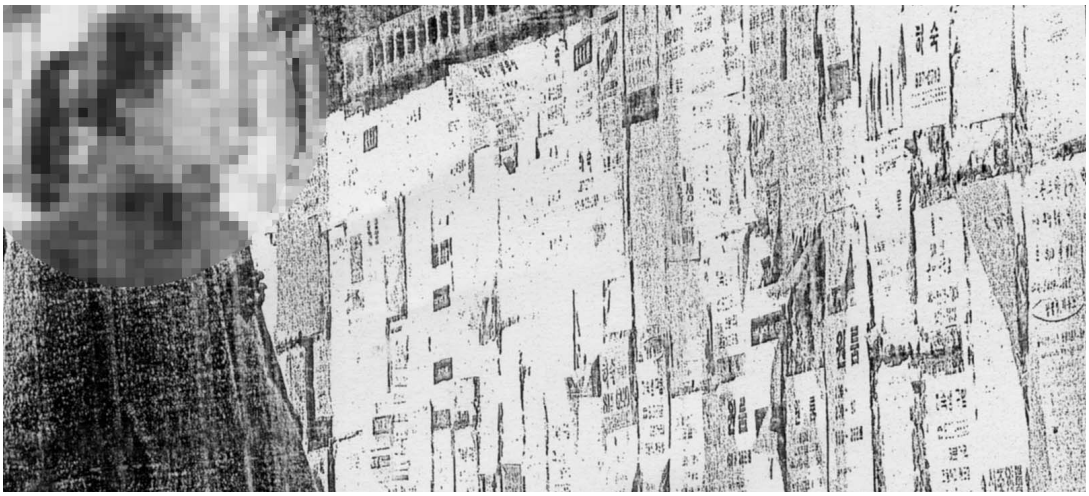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 사진에 언급된 흑석동 길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면서 벽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있던 여성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중앙일간지입니다. 피신청인은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에서 15일 한 여학생이 담벼락을 가득 메운 하숙집 전단지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였고, 이 사진은 당일 밤 10시경 신청인이 삭제요청을 하기 전까지 16일 하루 동안 국민일보의 홈페이지 '쿠키뉴스' 메인 화면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고, 이 사진이 신문에 게재된다는 것에 동의한 적 또한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현재 여학생의 신분이 아니고,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담벼락을 구경하던 중이었으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찌푸린 것이지 '근심어린 표정으로' 하숙집 전단지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중략)

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과 사생활이 아무런 동의없이 공개돼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2010년 2월 12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2. 3.

사례 88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201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교수와 여제자'라는 연극의 음란성 논란에 대해 다루면서 이 연극에 출연한 신청인의 누드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연극 공연 계약당시 기획사가 신청인의 초상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적은 있지만, 그 동의의 범위는 연극홍보에 필요한 통상적인 것일 뿐, 전라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 · 게재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며, 이미 해당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알몸 누드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했고, 신청인은 손배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뉴시스 : 『홀라당 꼴깍…' 교수와 여제자' 가 뭐기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8일자)

내　용 :

신동립의 잡기노트 〈156〉 = '공연 음란죄'라는 것이 있다. 공연(公演)이 아니라 공연(公然)이다. 공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면 벌을 받는다. 도도한 '표현의 자유' 목소리 때문에 음란성 판정이 쉽지는 않다. 서울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곧 공연 한 달을 맞이하는 '교수와 여제자'가 그렇다.

형법망이 성글다는 듯 미끄덩 빠져나오며 160석을 꽉 채우고 있다. 색을 입힌 홍등 같은 것이 없는 내추럴 조명일 뿐더러 야릇한 신음, 성 도구 따위도 배제했으므로 걸려들 구멍이 없다고 연출자는 강변한다.

1993~97년 당시 무려 36만 명이 봤다는 외설극 '마지막 시도' 덕 혹은 탓에 터득한 노하우를 적용했단다. 오픈 런. 무기한 롱런이 가능하던 '마지막 시도'가 당국의 개입으로 무산됐다며 땅을 친다. 그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교수와 여제자'의 형식은 틀림없는 연극이다. 그런데 관객층은 여느 연극과 사뭇 다르다. "연극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보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남녀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3만원짜리 입장권은 곧 묽은 의미의 면죄부다. 성인업소의 '홀딱쇼'가 아니라 소극장의 엄연한 '무대예술' 감상이라는 포장지를 방패 삼았다.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코앞에서 꿈틀댄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교수와 여제자〉라는 연극에 출연했던 연기자이며, 피신청인은 뉴스를 보도하는 통신사입니다. 피신청인은 1월 22일 "홀라당 꼴깍... 교수와 여제자가 뭐기에"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의 누드 사진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연극 공연 계약 당시, 기획사가 신청인의 초상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동의의 범위는 연극 홍보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며 전라의 사진을 제공, 게재하는 것까지 동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계약의 효력은 신청인이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각서에 서명 날인한 12월 20일자로 소멸되었으므로, 12월 20일 이후에 신청인의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알몸 누드사진을 공개하여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연극 출연 당시 노출의 수위가 이토록 심할 줄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기획사 측에서도 알몸 사진이 기록으로 남을 일은 없다며 안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약속과 달리 노출의 수위가 점점 심해졌고, 계속해서 노출과 외설에 초점을 맞춰 홍보했습니다. 신청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탓에 입원을 하기도 했으며, 결국 연극 출연을 포기하고 중도하차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알몸 사진을 공개함으로 인해 겪었던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후략)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89

백화점에서 쇼핑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361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5만 원대 상품을 파는 매장에 고객들이 붐비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백화점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경중인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은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신문에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신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십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동아일보 : 『소비패턴 바꾸는 5만원권』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B3면)

내　　용 :

발행된 지 15개월째를 맞는 5만원권이 백화점 1층 행사장에서 유독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추석 연휴를 3

일 앞둔 18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도 5만원대 상품을 파는 매장이 고객들로 붐볐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 사진에 언급된, 백화점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경중인 여성이며, 피신청인은 동아일보입니다. 피신청인은 『소비패턴 바꾸는 5만원권』 제하의 기사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신청인의 전신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고, 이 사진이 신문에 게재된다는 것에 동의한 적 또한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제 얼굴을 몰래 촬영하고, 또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것을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 생각됩니다.

이 기사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백화점에서 장보게 돈 많은가 보다"부터 시작해 "백화점에서 장보다 딱 걸렸다" 등 이런저런 이야기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으로 인해 심사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10월 31일까지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0. 8.

사례 90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32　손배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주)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11.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된 날 아침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추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도 없고, 위 사진기사로 직장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아시아투데이 : 『춥다 추워』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8면)

내　　용 : 서울 영하 3도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출근길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회사동료를 통해 아시아투데이신문에 신청인의 사진이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사진이 촬영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얼굴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실었습니다.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초상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사로 회사에서 놀림감이 되었으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12월 23일까지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한다.

「본지는 지난 11월 26일 '춥다 추워'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내보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도내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2. 9.

사례 91

휘발유값 폭등 관련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90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 ○ ○
피신청인 : (주)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0. 12.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유소의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이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으며, 이 사진이 이를 전송받은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을 지급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연합뉴스 : 『주유소 휘발유값 '고공행진' 계속』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2010년 12월 19일자)

내　　용 : 지난주 2년 4개월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 또 올랐다. 지난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무연 보통 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27.0원 오른 1,767.6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주유소의 모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 사진에 주유소 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도된 당사자이며 피신청인은 뉴스통신사입니다.

피신청인 '휘발유값 고공행진' 제하의 보도에서 휘발유값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유소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아무런 동의와 고지 없이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을 촬영하는 것도 몰랐으며 다음 날 지인의 연락을 통해 신청인이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청인의 사진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의 촬영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진은 데일리포커스 및 동아일보 등에도 보도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발견하지 못한 다른 언론 매체와 인터넷 등에도 신청인의 사진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연락이 올 것이 두렵기도 하고 신청인의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 몹시 걱정이 되고 불쾌합니다.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보도를 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금 1백만 원 지급

나. 방송매체 대상 사례

사례 92

대리주차 요원들이 고객 차량을 뒤진다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50 · 51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발레파킹을 하는 대리주차 요원들이 고객이 맡긴 차량을 자기 차처럼 드나들고 음식까지 먹는 듯하며 차량 내부를 뒤지기까지 한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화면에 나온 그랜저XG 차량은 자신의 차량으로 보도내용은 신청인과 무관하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에게 사과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함과 동시에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황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6일 18:50)

내　　용 :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대리주차 서비스. 대리주차 서비스요원들의 서비스 정신은 어떨까 유심히 살펴봤다. 소비자가 맡긴 차량을 자기 차처럼 이용한다. 끊임없이 드나들다 못해, 음식까지 먹는 듯 했다. 그리고 이 분은 대체 손님 차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거냐?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imbc 홈페이지(www.imbc.com)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1일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

다. 또한 원 조정대상보도 (“황당한 대리주차”)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황당한 대리주차’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6일 “황당한 대리주차”라는 제목으로 대리주차요원들이 손님의 차량에서 음식물을 먹고 내부를 뒤지는 등의 행태가 벌어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된 차량은 대리주차 요원 본인의 차량이었으며, 손님의 차량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내부를 뒤진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15일까지 문화방송 시사교양국장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서신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2. 내 용 : MBC 불만제로는 지난 1월 6일 발레파킹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대리주차 요원들이 손님의 차량 내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방송된 그랜저XG 차량은 손님의 차량이 아닌 김○○ 씨의 차량이며, 손님의 차량에서 음식을 취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내용으로 인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3.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 13.

사례 93

비공개를 전제로 대리주차 피해사례를 제보했으나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 등이 그대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54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발레파킹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제보한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을 방송했다
- 이에 신청인은 익명처리를 전제로 피신청인의 인터뷰에 응했으며, 촬영 후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이 그대로 공표되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에게 사과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함과 동시에 2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황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6일 18:50)

내　　용 : 이○○ 제보자 : 이것도 제가 몰랐는데 긁힌 거예요. 되게 크죠?

이○○ 제보자 : 선택이 아니예요. 발레(대리주차)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하다면 불편하고...

이○○ 제보자 : 버젓이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발레를 강제로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해놓고도, 나중에 차 열쇠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그거 빼주면서 또 발레비를 받고.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대리주차에 피해 사례가 있다고 인터뷰한 인터뷰 대상자이며, 피신청인은 뉴스를 보도하는 중앙방송사입니다.

피신청인은 인터뷰를 요청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약속했으나, 인터뷰 촬영 직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이며, 'TV에 보도되는 것이 정말 싫다', '가명을 쓰면 더 좋다',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한다',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온 인터뷰라 거절을 못한 것뿐, 인터뷰 하고 싶지도 않다'는 내용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촬영 장소에서 담당 피디는 가명으로 처리한다며 모자이크 처리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헤어졌습니다. 촬영 후 모자이크 처리가 안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신청인을 섭외한 방송작가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심지어 클로즈업 된 상태로 실명까지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10년 1월 29일까지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한다.

「MBC 불만제로는 지난 1월 6일 발레파킹의 문제점에 대한 신청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실명을 동의 없이 내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대리주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였으나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도내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 14.

사례 94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창고와 소속 직원의 초상을 내보냈으나 적발된 바 없다.

사　　건 : 2010제주조정1 · 2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윤 ○ ○
　　2. (주)아시아포럼
피신청인 : JIBS제주방송(주)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방송하면서 제주시 ○○동 소재의 신청인 업체와 그 직원의 모습을 배경화면으로 내보냈다.
- 이에 신청인들은 단속 당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JIBS : 「JIBS 아침뉴스」 프로그램 '중국산 옥돔 불법유통'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1일 07:15)

내 용 : ▷앵커 : 가짜 흑돼지에 이어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벌금만 내면 될 정도로 처벌의 수위가 낮아서 한 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짜 제주산 옥돔을 팔아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고○○ 기자입니다.

▷기자 : 단속반이 수산물 보관창고를 급습합니다. 상자를 열자 옥돔 등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모두 중국산입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선 대부분 수산물이 제주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것입니다. 수산물 품질 검사원이 적발한 양만 옥돔 등 1억 6천만 원어치나 됩니다. 하지만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 5천6백만 원만 내면 그만이라 수산물 불법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2년전 수산물 무허가 판매로 단속됐던 서귀포시 성산읍의 모 수산물 업체가 최근 또 같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 해경의 조사 결과 이 업체 대표 마흔 여덟살 강 모 씨는 적발 후에도 계속 무허가 영업을 벌여 1천7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6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5살 강 모 씨도 붙잡았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JIBS 〈아침뉴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20일 저녁종합뉴스와 10월 21일 아침뉴스에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주식회사 아시아포럼의 수산물 보관 창고 및 직원의 모습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기로 인해 적발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지난해 10월 20일 저녁종합뉴스에서 방송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 관련 보도에서 제주시 건입동 소재 업체와 그 직원의 모습은 단순한 자료 화면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당 업체는 당시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1월 28일에 JIBS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의 말미에서 화면 좌측 하단에 통상의 뉴스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배경화면으로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업체의 수산물 보관창고와 그 직원이 등장하는 화면을 인용한 후, 위 보도문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들에게 각각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 28.

사례 95

최근 대게 불법 포획이 심각하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대구조정2　손배청구
신 청 인 : 남 ○ ○
피신청인 :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대게자원의 고갈은 불법어획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게 불법조업 중인 어선에 대해 어업지도선이 단속중인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 이에 대해 당시 선원으로 조업에 참여했던 신청인은 2008년 3월 불법조업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시 방송되어 초상권침해를 받았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포항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선상 결사 항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일 21:00)

내　　용 : ▷앵커 : 포항MBC 뉴스데스크는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불법 어획 실태와 대게 자원 육성 방안을 심층 취재해, 오늘부터 연속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대게 어획량 감소의 주범인 불법 대게잡이 현장을 장○○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 해상 단속반이 암컷대게잡이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피신청인은 해상 단속반이 암컷 대게잡이 어선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방송하여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터에 나가지도 못해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50만원을 2010. 4. 2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신청인은 향후 이사건 관련 민 ·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이 1항의 손해배상금이 신청인에게 2010. 4. 26까지 지급되지 않을 시 연10%의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된다.

2010. 3. 12.

사례 96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466　손배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1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중고품을 매매하는 '벼룩시장'에 나와 연두색 모자를 쓴 채 물건을 고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방송에 자신의 모습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피신청인 측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송 당일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방영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무한지대 큐」 프로그램 '벼룩시장' 편 (2010년 3월 10일 19:20)

내　　용 : ▷진행자 :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런 시장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텐데 말에요.

▷내레이터 : 외면받고 소외받는 중고품이여 더 이상 서러워마라 지금은 바야흐로 중고품이 대세.

▷손님 :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열 개를 살 수 있어요.

▷내레이터 : 고물가시대 치솟는 몸값 벼룩시장이 뜨고있다. 2010 벼룩시장 속으로 이른 아침 서울의 한 구청앞 (중략)

▷내레이터 : 웰컴투 벼룩. 이제 벼룩시장도 세계화시대.

▷외국인 상인 : 필리핀에 가기위해서 물건을 팔아요. (녹색모자를 쓴 신청인의 모습 반복적으로 보여짐)

▷손님 : 8천원?

▷외국인 상인 : 만, 만(원)

▷내레이터 : 낙찰가는 9천원 되겠다.

▷손님 : 땡잡았어요.

▷내레이터 : 사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횡재. 파는 사람은 두툼한 지갑에 어머나 행복하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이유

3월 10일에 방송된 KBS-2TV <무한지대큐> 벼룩시장편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얼굴이 무단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일 서초동 벼룩시장에 무한지대 스티커가 붙은 카메라를 든 두 분이 촬영을 하고 다녔고 그것을 인지한 신청인은 피해다니기는 했지만 신청인을 인터뷰하는 게 아니어서 중단해 달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신청인 옆자리에 외국인이 있었고 그 외국인과 학생들을 인터뷰하며 촬영을 하고 있었기에 신청인은 나름 피한다고는 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집에 와서 KBS 고객센터로 전화해 사정을 말하며 신청인이 혹시라도 촬영된 부분이 있다면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방송분에서는 정말 TV를 보는 신청인의 얼굴이 낯 뜨거울 정도로 길게 나왔고 신청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신청인의 초상이 공개되어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0년 3월 26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3. 19.

사례 97

베트남 보신관광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유리컵 속에 든 곰의 쓸개즙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10　손배청구
신 청 인 : 소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베트남에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마취상태의 곰으로부터 채취한, 안전이 의심스러운 쓸개즙을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유리컵 속에 든 쓸개즙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곰농장 방문은 여행 패키지 상품의 일정에 따른 것으로 자신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발 프로그램에 자신의 초상이 아무런 승낙도 없이 공표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한편, 프로그램 총책임자(CP)가 신청인에게 사과서신을 발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15일 23:05)

내　　용 : (전략)

▷리포터 : 베트남에서 한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곰 쓸개즙. 좁은 우리안에 곰을 가뒀다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바로 곰을 마취하고 쓸개즙을 채취합니다. 여행객들이 구입한 곰 쓸개즙, 과연 먹어도 안전한 것일까?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직장동료 7명과 함께 3박 5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갔다왔으며, 패키지 여행인지라 다른 팀의 관광객들과 같이 움직이거나 동석할 시간이 많았으며, 기타 여행지 외에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곰사육 농장을 방문했으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곰쓸개즙을 채취하는 장면에 놀랐으며,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런 소비자 고발 프로에 신청인의 초상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본의 아닌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에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총책임자(박◯◯ CP)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서신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아 래–

• 내 용 : 소비자고발은 지난 10월 15일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 편에서 동남아 여행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최근 횡행하고 있는 저가 패키지 여행의 폐해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이와 같은 저가 여행 상품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제작진의 이와 같은 노력과 성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제작 기간과 밤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 씨의 모습이 적절한 처리 없이 방송되어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제작진을 대표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소◯◯ 씨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피해구

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청인의 해량을 바랍니다.

2. 피신청인은 2010. 11. 5. 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0. 27.

다. 인터넷매체 대상 사례

사례 98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천정배 의원을 막아섰다고 보도하면서 용역 경비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72　손배청구
신 청 인 : 허 ○ ○
피신청인 : (주)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4대강 사업공사 여주 이포보 지역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환경운동단체들이 이포보를 건설하는 업체 측에 항의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천정배 의원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하려 하자, 용역회사 직원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사진 속에서 용역회사 직원으로 언급된 신청인은 위 사진 속에 신청인의 초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조정대상기사에 난 사진 속 신청인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오마이뉴스 :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미안하고 면목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일자)

내　　용 : "당신들 뭐야! 저리 안 비켜!"

검은색 옷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민주당 천정배 의원 앞을 가로막았다. 4대강 사업 공사 여주 이포보를 건설하는 대림산업 측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들이다. 천 의원은 호통을 쳤다.

하지만 용역회사 직원들은 시선만 피할 뿐 길을 열지 않았다. 이들 뒤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고공 농

성을 벌이고 있는 이포보의 모습이 선명하다. 폭염에 땀이 줄줄 흐르는 천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거 몰라? 경찰도 아니면서 왜 이런 식으로 길을 막는 거야!"

전직 법무장관인 천 의원의 호통은 계속됐다. 용역직원들도 요지부동. 참다못해 천 의원은 용역회사 직원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맨몸으로 뛰어들었다. 뒤이어 김희선 전 의원,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뛰어들었다. 반대편에서는 용역회사 직원들과 대림산업 관계자들이 이들의 농성장 진입을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고함과 신음소리 그리고 욕설로 여주 이포보 공사장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매마른 땅에서는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바람 없는 땡볕 아래서 한 바탕 몸싸움을 벌인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터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 위로 끈적거리는 땀이 줄줄 흘렀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진입한 8월 1일 오후, 4대강 사업 남한강 여주 이포보 공사 현장의 땡볕 아래에서는 이렇게 '혈투'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천 의원이 육탄으로 뛰어든 행위는 일종의 '보급투쟁'이다. 1일로 이포보 점거 농성은 11일째를 맞이했다. 남한강 수면에서 약 20여 미터 위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미 식량과 휴대전화 배터리 등이 바닥났다.

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생필품을 전달할 수도 없다. 대림산업 관계자들과 경찰이 이들의 농성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고공 농성 지지방문을 온 천 의원 일행에게는 생필품 전달 '임무'가 주어졌다.

결국 천 의원과 김희선 전 의원 등은 한 바탕 몸싸움과 연좌 농성을 거쳐 농성자들에게 비상 식량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그렇다고 천 의원이 농성자들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다. 이들은 고공 농성장 아래까지만 진입했고, 생필품은 대림산업 측이 '대리'로 전달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오마이뉴스의 보도사진에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용역 경비원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입니다. 피신청인은 "민주당이 해야할 일을...미안하고 면목없다"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1일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하려 하자, 용역회사 직원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신청인의 얼굴이 완벽하게 드러난 사진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대로 오마이뉴스의 한 기사에 실어 올렸습니다. 신청인은 그에 대하여 초상권을 침해 받았고 현재도 계속해서 침해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액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0년 8월 31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조정기사에 대해서도 1.항의 조치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2010. 8. 12.

사례 99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20　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주)헤럴드미디어 (헤럴드경제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우리나라 기후가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더위와 추위만을 오가는 2계절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추위에 잔뜩 움츠린 채 지나가는 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촬영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 신청인의 사진이 전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도 없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1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헤럴드경제닷컴 :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내　　용 : 느긋한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더위와 추위만을 오가는 2계절 환경이 되다 보니 안그래도 다급한 한국인의 성미가 더욱 급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4계절은 한국인 특유의 적응력과 강인함을 키웠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은 계절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졌고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유전돼 왔다.

나른한 봄, 무더운 여름, 건조한 가을, 차가운 겨울 등 4계절은 절기의 특성에 따라 한국인의 오장육부에 건강한 자극을 주고 장기들이 적응하고 제기능을 하면서 강인함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나 봄과 가을이 실종된 채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추웠다가도 어느날 느닷없이 더워지면서

우리 몸에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좋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숙행 고대구로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세로토닌 같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이 계절의 이상 변화로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기후가 좋지 못한 지역에서 빈발하는 우울증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적응해온 패턴이 깨지면서 수면장애나 위장기능 저하 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호르몬 분비 이상의 영향으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 하단 사진 속 출근중인 여성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피신청인은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 여의도 인근 시민들이 잔뜩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였고 또한 각종 포털사이트에 전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기사를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기사에서 보게 되었고, 동의하지도 않은 신청인의 사진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 중 일부는 얼굴이 공개된 신청인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네티즌들은 기사에 나온 신청인의 사진을 보고 조롱하

는 댓글을 달고 있었기에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앞으로도 여의도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해당 기사에는 그 사진이 어디에서 찍혔는지까지 포함되어 있어 현재 일하는 회사동료들이 알아볼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신청인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0년 11월 20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0. 11. 4.

제2절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사례 100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경과 신청인 소유의 차량 번호를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69　손배청구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주)씨유미디어 (Comedy 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8.

사건개요

- 피신청인 C&M케이블 유선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매일 집을 나가서 돌아오는 강아지가 알고 보니 남자친구인 동네 개(신청인 소유의 진돗개)를 만나고 온다'는 내용의 SBS-TV「동물농장」프로그램을 재방영했다.
- 신청인은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경과 소유차량의 번호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영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는 SBS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방송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방송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심의필을 완료하여 방송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심리결과 당사자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Comedy TV :「TV 동물농장」프로그램 '다래의 가출' 편 (2010년 1월 3일 11:40)

내　　용 : ▷내레이션 :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도록 몸을 피하는 제작진, 그러자 잠시 주춤하던 다래가 주변을 뱅 돌아 향한 곳은, 바로 백구가 있는 곳. 놀랍게도 그 사납던 백구가 너무나도 상냥하게 꼬리를 흔들며 다래를 반긴다. 야 이녀석들 한두번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개주인 : 다래가 외로운가 봐요.

▷내레이션 : 방년 네 살, 한창 사랑이 싹틀 나이. 다래는 백구와 남모를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인 속을 까맣게 태워가며, 가출을 일삼았던 이유가 지딴엔 사랑때문이었다니, 참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개주인 : 남자친구 만나러 여기까지 왔네.

▷내레이션 : 아이구, 매일같이 보고도 그렇게 좋은지.. 철조망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다.

▷개주인 : 앞으로 그러면 다래 없어지면 여기로 와봐야지. 1순위로 와봐야지.

▷내레이션 : 아휴, 다래가 가는 곳을 알았으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 가족들.

▷제작진 : 왜 몰래 만났을까요? 집에서 연애를 금지하시는 거 아닌가요?

▷개주인 : 그런거 아닌데... 다래야 많이 외로웠구나.

▷내레이션 : 불타는 마음도 모르고 무작정 매어둔 것이 미안해지는 모양이다.

▷개주인 : 사돈댁 아니야? 개사돈?

▷내레이션 : 에유, 뭐 이렇게 된 거 상견례 날이라도 잡아볼까 했더니... 가만, 안 계신가? 안타깝게도 백구의 주인은 부재중. 양가 허락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듯 하다. 어쨌든 온 가족의 축복아래 공개 데이트를 시작한 다래 탈출에 도둑 연애는 오늘로 끝 다래한테도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겠죠?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Comedy TV 채널에서 재방송된 SBS TV 동물농장 401화 프로그램 '다래의 가출' 편에서 아래의 남친에 해당되는 강아지 '백구의 소유주'이자 '해당 주택의 거주자'이며 '주차된 자동차의 소유주'입니다. 피신청인은 TV 동물농장을 방영한 Comedy TV 입니다.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4일(월) 새벽 1시경에 C&M케이블 유선방송 Comedy TV 채널에서 매일 집을 가출했다 돌아오는 강아지가 알고보니 남자친구인 동네 개를 만나고 온다는 내용의 SBS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주인의 허락 없이 방영하였습니다.

당시 SBS TV의 본 방송은 보지 못하고 10개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께서 Comedy TV에서 재방송하는 것을 우연히 보시게 되어 알게된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은 다래(허스키종)의 남자친구인 동네 개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흰색 진돗개)로 집

마당 안에 풀어져 있는 개가 집주인의 허락없이 약 10분 남짓 방송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 안 마당 구석구석 공중파 및 케이블에 방영되어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방송 내용을 보면 집 안 주차장 안까지 주인 허가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촬영을 하였고 집에 주차되어 있는 차 번호가 아무런 모자이크나 스모그처리 없이 뚜렷하게 2~3차례 노출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방송상에는 초인종을 눌러보고 집주인이 없다는 식으로 방송이 되었는데, 정확히 촬영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차가 주차된 정황상 집에 사람이 없진 않았을 것이며 방송에서도 보이듯 초인종에 포스트잇으로 핸드폰 번호를 적어두었음에도 연락을 소홀히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중략)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하여 보호 받아야할 사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SBS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방송한 것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심의필을 완료하여 방송한 것이므로 방송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사례 101

탈북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916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피신청인 : (주)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5. 2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지난 2007년 탈북한 한 소년이 부모 없이도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 소년이 지난 2006년 한국에 온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인 신청인의 손자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에서 신청인의 실명을 비롯, 한국의 학교에 재학중인 신청인 손자의 이름, 다니는 학교명 및 학년 등과 함께 신청인 가족이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신청인의 신원이 북한 당국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두고 온 신청인의 나머지 가족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6일자 A13면)

내　　용 : 국군포로 양○○ 씨 손자 / 부모없는 어린이날 3년째 / 친구 가족과 신나는 하루

5일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초등학교 6학년 양○○(12)군이 같은 학교 친구 백○○(12)군과 함께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2007년에 탈북한 양군이 이렇게 어린이날 나들이를 하기는 처음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부모가 없어 쓸쓸하게 어린이날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친구 백군 가족의 초대로 함께 어울리며 어린이날다운 하루를 보냈다. 백군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점심을 먹고 공원에 나와 지칠 때까지 놀았다. 백군 어머니 박○○(39) 씨는 "○○이는 꾸밈이 없는 아이"라며 양군 머리를 쓰다듬었다.

양군은 지난 2006년 한국에 온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양○○(78) 씨의 손자다. 양군 가족은 2003년에도 탈북했지만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에 잡혀 6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 양군은 "부모님은 그때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던 동생은 행방불명됐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양군은 할아버지보다 1년 늦게 홀로 두만강을 건넜다. 양군은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벌벌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양군은 올해 학급회장을 맡을 정도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학급회장 선거 구호가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공부할 때는 반을 조용히 만들자'였다. 담임교사 김○○(42) 씨는 "사정을 들을 때까지 북한 출신인 줄 몰랐다.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고 했다. 양군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 4일 학교 운동회에서는 이어달리기 반대표로 뛰었다. 양군은 "수학은 시험 보면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린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런 양군을 보는 할아버지는 대견하기만 하다. 양○○ 씨는 "부모도 없는데 밝게 자라고 있어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한국전쟁당시 포로가 되어 북한에서 갖은 탄압을 받으며 탄광에서 살다가 2007년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당시 3남3녀의 자식들이 있었으나 맏아들 내외는 2003년 신청인과 함께 온가족이 한국으로 오려다 중국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북송되어 총살당하고 신청인과 가족들은 북한보위부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보위부의 감시 때문에 함께 오지 못한 아내와 4명의 자식들, 손자들이 있습니다. 두고 온 자식 때문에 신청인과 함께 온 1명의 아들 그리고 총살당한 맏아들 자식인 손자는 북한에 두고온 가족들에게 누가 미칠까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군포로가 없어졌지만 물증이 정확치않아 가족들을 감시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소리쳐놓으면 북한에 남은 신청인의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신청인이 북한에 있을 그때 당시 한국에 먼저온 가족이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북한의 가족들이 하루밤 사이에 모두 없어진 일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 신청인은 사전의 아무런 통지나 허락없이 취재를 하고 신청인의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피신청인 측에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7월 9일까지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이행지체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도록 하라.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사례 102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981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주)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6. 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원 춘천시 ○○동의 한 모텔에서 남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업주 고 모(○○세)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춘천시 ○○동 일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은 신청인 한 명이어서 이 보도를 보고 지인들과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운영하는 모텔의 이미지도 훼손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피신청인 연합뉴스로부터 전송받아 게재한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등을 대상으로도 조정을 신청(2010서울조정 982~985)했고,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이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자 신청인은 청구를 모두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연합뉴스 :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종합)』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내　　용 : (춘천=연합뉴스) 이○○ 기자 = 7일 오전 11시18분께 강원 춘천시 ○○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박 모(28.서울 광진구) 씨와 박 모(19.여.춘천시) 양 등 남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업주 고 모(○○세)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퇴실시간이 지나도록 인기척이 없어 청소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남녀가 숨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발견 당시 객실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 2장과 철망 형태의 화덕이 있었고, 출입문과 창문은 비닐테이프로 밀폐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숨진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객실 내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박양이 올해 입학한 대학생활에 적응을 못해 휴학했다는 주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십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춘천시 ○○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고○○이며, 피신청인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통신입니다.

피신청인은 2010년 6월 7일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종합)〉 이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한 모텔 3층에서 남녀 2명이 숨져있는 것을 업주 고모(○○세)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로 좁은 춘천사회에서 그것도 ○○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에겐 큰 타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동 일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고씨로 나이가 ○○세인 사람은 신청인 하나로 주변인들은 다 알며 멀리있는 지인들까지 기사를 보고 전화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모텔의 이미지 훼손 및 영업에 타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검색불가)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103

살해당한 신청인 어머니의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이 유족의 동의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경기중재1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OBS경인TV(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모친이 살해 암매장된 사건의 경위 및 범인 검거과정에 대해 다루면서, 뿌옇게 처리된 사체 발굴 장면과 신청인 모친과 피의자와의 관계, 모친의 생존 시 하던 일, 안면 및 상반신이 모자이크 처리된 모친의 전신사진, 생전에 모친이 신청인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등을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에 모친의 살해 암매장 사건 보도에 관해 동의를 구한 바가 없고, 사체 발굴 장면을 보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모친의 사진과 신청인의 문자 메시지 등이 노출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2010경기조정38)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동일 프로그램의 서두에 고인의 사생활 일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보도를 방영하라고 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OBS경인TV : 「경찰25시」 프로그램 '암매장 살인사건'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8일 23:00)

내　　용 : ▷내레이션 : 지난 2월 경찰과 현장 감식반이 경북 어느 야산에 도착했다.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이곳을 수색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리고 마침내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암매장한 사체, 대체 누가 왜 이런 잔인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강력반 형사들의 수사력이 총동원 돼 사건에 대한 단서를 밝혀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 주력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일까? 목졸려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는 강제로 웅크려져 흙속에서 발견됐다.

▷형사 : 두 아들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지인들에게 돈을 좀 빌려주고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뭐 그 정도 약간의 재력이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내레이션 :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서를 찾았다.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 것은 사흘전. 아들은 엄마로부터 석연찮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형사 : 평소 문자 메시지는 두세마디 밥 먹어라, 오늘 안가고 내일 들어가겠다. 간단한데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안된 후로 평소보다는 길게, 문자 메시지를 약 한 6~7줄로 길게 자세하게 문자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건 분명 엄마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문자를 보낸거다 라고 의심을 한거죠.

▷ 내레이션 : 다른 사람에게 채권 서류를 전해주라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재산을 노린 주변인의 범행일까? 피해자의 주변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형사 : 사건 발생 전, 약 4일 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심도있게 10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이상하다...

▷내레이션 : 범행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내연남으로부터 4천만 원을 투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 : 22일날 정도에 가면 영천을 가면, 자금 세탁한 돈이 43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데 만약 그 이후로 연락이 안되면 실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거죠.

▷내레이션 : 돈을 내주지 않는다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한 걸까. 그녀는 친구에게 내연남의 인적사항을 남겨두었다. 아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와 친구의 진술로 미루어, 범행은 내연남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형사 :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21일날 입금되었다가 22일날 출금이 되었더라구요. 약 4천6백만 원 정도. 아, 이게 뭔가 혐의점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착안을 하게 된거죠.

▷내레이션 : 피해자가 사라진 직후, 하루동안 여러번에 걸쳐 인출된 현금. 내연남이 투자를 종용한 금액과 비슷했다. 현금을 인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 형사들은 해당 은행의 CCTV화면을 확보했다. 오늘 인출한 사람은 피해자일까. 아니면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있는 인물일까?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형사 : 너석 같아 그렇지? 옷 색깔이랑... 잠바. 보라색. 패딩 잠바에 스포츠 머리.

▷내레이션 : 전혀 초조한 기색없이 여유를 보이는 남자. 그는 당당히 거액의 돈을 찾았다.

▷형사 : 수표, 현금 5만원권.. 당시 인출한 통장이 다른 사람의 통장에서 남자가 인출한 것으로 봐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내레이션 : 그자가 피해자의 내연남일까 피해자가 남겨놓은 내연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내연남이 CCTV에 포착된 바로 그자임이 확인됐다.

▷형사 : 특수강도하고 절도하고 사기, 있었습니다. 전과로 봐서는 실종사건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출동했죠.

▷ 내레이션 : 이미 여러차례 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용의자. 사건 발생 이후 남자는 자취를 감추었다. 강탈한 피해자의 돈을 도피자금으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시 용의자의 집은 그가 돌아온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추적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후략)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OBS경인TV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프로그램(경찰 25시) 중 신청인 모친과 관련된 방송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중재신청이유

신청인은 지난 2월 살해, 암매장당한 피해자의 유족(아들)이며 피신청인은 지역 민영방송사입니다.

피신청인은 지난 3월 8일 〈경찰 25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의 어머니와 연관된 살인 사건의 경위 및 범인 검거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이 유족의 동의없이 보도되었으며, 살아 생전 어머니가 찍은 사진이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록 사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은 아니고, 옷가지와 커튼 등으로 싸여있는 모습이기는 하였으나 급하게 암매장 하느라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무 여과없이 공개한 것은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장면에서 어머니의 살아생전 모습을, 비록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나 전신을 다 보여줌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돌아가신 신청인의 어머니에 관한 사건임을, 고인과 유족의 주변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늦은 밤 우연히 TV를 보던 유족들이, 신청인의 어머니에 관한 사건임을 단박에 알아보았음은 물론이고, 생전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시던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는 등, 매우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물론 극악무도한 범행의 경위와 범인 검거과정을 보도하는 것이 공익적인 보도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암매장 당시의 사체의 모습을 유족의 동의없이 그대로 보여준다거나, 유족이 제공하지도 않은 살아생전의 사진을 노출하는 것까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참혹하게 살해당하신 사건이 아직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유족으로서는 그 슬픔을 채 진정시키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사체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사건을 대체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황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보도과정에서 어머니의 평소 사생활, 예를 들어 피의자와의 관계라던가 살아 생전의 직업, 재산상황, 생전에 신청인에게 보내신 문자의 내용까지 유족의 동의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 생전의 사진이나, 신청인에게 보내신 문자의 내용 등은 어머니의 실종 당시, 어머니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경찰에 제출했던 것인데, 어머니가 살해당하신 다음에 유족의 동의도 없이 방송사에서 공개해 버린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방송하기 전 또는 방송하기 직전에라도 유족에게 동의를 구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은 밤 우연히 TV에서 어머니의 사체를 발견하고,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가슴을 쳐야 했던 유족의 심정은, 아마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생활을 침해당하신 어머니가 마땅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고인이 되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언론중재법 제 5조의2 제 2항 및 3항에 의거, 유족(직계비속)인 신청인이 중재를 청구합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오니, 중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4월 5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10년 3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BS경인TV "경찰 25시" 프로그램 서두에 청색 바탕에 흰색자막의 화면으로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시간동안 머물도록 보도한다.

이 유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OBS경인TV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인방송 2010년 3월 8일자에 11시부터 방송된 "경찰 25시" 프로그램에서 '암매장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모친 살해 암매장 사건의 경위 및 범인 검거과정을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모친이 살해 암매장 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측에 동의를 구한 바가 없고, 비록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을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하여 그대로 보여 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체발굴 모습을 보면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고인이 된 신청인 모친과 피의자와의 관계, 생존 시 하던 일, 안면 및 상반신이 모자이크 처리된 모친의 전신사진, 신청인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화면에 담아 보도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2010년 3월 11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2010경기조정38)을 하였다가, 2010. 3. 18. 조정심리 1차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공익적인 의도에서 해당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흉악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고 보도하지 못하는 것이 통상 보도 형편상의 관례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직접 구하지 못한 점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신청인 모친의 사건이 피신청인이 의도하는 공익성과 뉴스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때, 보도관행상 큰 오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체발굴과정과 고인의 사진 및 문자메세지 등을

공개한 부분은, 방송의 성격상 전개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가려주었으므로 보도준칙 상 큰 결점이 있는 보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 모친의 사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어 이를 대하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보도가 안 되었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을 준 데 대해 위로와 유감의 뜻을 방송을 통해 전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신청인은 모친의 불미스런 사인으로 인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의 유족만 모여서 장례를 치른 지 불과 십여 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가 됨으로써, 고인의 사인을 알지 못하던 인척과 지인들에게 보도를 통해 사인이 알려져 유족 및 지인들이 당혹스러움과 충격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상처를 가라 앉히고 있던 유족들에게 언론조정 신청을 낸 이후에도 재방송이 되어 상처를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비록 언론의 입장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인 모친에 관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유족들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은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하므로 방송으로 인해 유족이 받은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의 해당 방송을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흉악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어 방영되고 있는 해당방송의 공익성은 인정되는 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전개에 필요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모친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와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가려주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내보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 피신청인이 언론의 보도준칙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상규상 공익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처럼 보도의 대상자가 되어 그로 인해 크게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는 방송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더하여 얼마간의 금전적 배상을 통해 이를 위자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의 보도 경위, 매체의 영향력, 방송프로그램의 성격, 보도시간대,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후속조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8.

〈별 지〉

1. 제 목 : 고인 및 유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2.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2010년 3월 8일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안산의 여성 암매장 사건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을 일부 노출한데 대해 고인 및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재결정 사항 이행결과

OBS경인TV : 「경찰25시」 프로그램 (2010년 3월 29일 23:00)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제3부
시정권고사례

※ 제3부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권고사례 전체를 수록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으로 묶어서 게재하였으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명이나 나이, 근무처 등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시 정 권 고 사 례

의결번호 제2010-1호

대상보도 한국기자연대 2009. 12. 15.자 사회면 「멀쩡한 남편 정신병원 강제입원 악몽의 38일...」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김 모 씨의 인신구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과 관련하여 부인의 행실 및 부부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당사자의 성명, 나이 및 주소지를 지나치게 상세히 적시하였다. 이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및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2호

대상보도 경인종합일보 2009. 12. 8.자 19면 「임대인 강간 미수 음식업주 구속」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성폭력범죄 사건 보도 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지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시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피해자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3호

대상보도 수도권일보 2009. 12. 8.자 19면 「오세훈 시장 압도적 우위」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타 매체에서 실시한 오세훈 현 시장과 야당 후보 간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론조사 보도는 독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4~8호

대상보도
- 경기신문 2009. 12. 9.자 7면 「50대 청원경찰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경기매일 2009. 12. 9.자 15면 「○○도서관 청원경찰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아시아일보 2009. 12. 9.자 15면 「○○시 공무원 자살 신드롬?」 제하의 기사
- 일간뉴스리더 2009. 12. 8.자 사회 · 경제면 「○○○○도서관 청원경찰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e-용인뉴스 2009. 12. 8.자 사회면 「용인시 공무원 또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청원경찰로 근무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9~43호

대상보도

- 경기일보 2009. 12. 15.자 A04면 「가수 ○○ '매니저' 사망 차량 가스질식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경인일보 2009. 12. 15.자 19면 「○○ 매니저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중부일보 2009. 12. 15.자 A26면 「○○ 매니저 사망 번개탄 이용한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경제투데이 2009. 12. 14.자 연예면 「[단독]○○ 매니저 박 모 씨, 자살 추정 '자금 압박 주원인'」 제하의 기사
- 뉴데일리 2009. 12. 15.자 연예면 「○○ 매니저 '가스질식'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뉴스엔 2009. 12. 15.자 방송엔면 「○○ 매니저 사망 충격, 가스질식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뉴스웨이21 2009. 12. 15.자 연예면 「○○ 매니저 숨진 채 발견... '개인사'로 인한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뉴스천지 2009. 12. 14.자 연예 · 스포츠면 「○○ 매니저 박 모 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제하의 기사
- 뉴스한국닷컴 2009. 12. 14.자 연예 · 스포츠면 「○○ 매니저 박 모 씨, BMW 차량서 숨진 채 발견...자살로 추정」 제하의 기사
- 더타임스 2009. 12. 14.자 연예면 「○○ 매니저 자살, 자신의 차량에서 주검으로 발견」 제하의 기사
- 데일리안 2009. 12. 14.자 연예면 「○○ 매니저 사망,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데일리중앙 2009. 12. 14.자 뉴스면 (생활/문화) 「인기가수 ○○씨 매니저 숨진 채 발견... 경찰,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디시뉴스 2009. 12. 14.자 스타넷면 「○○ 매니저 사망...자살로 추정」 제하의 기사
- 디아이피통신 2009. 12. 14.자 연예 · 문화면 「○○ 매니저 '자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번개탄 피워」 제하의 기사
- 리뷰스타 2009. 12. 14.자 연예계뉴스면 「○○ 매니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경찰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마이데일리 2009. 12. 14.자 엔터테인먼트면 「○○ 매니저, 자살...경찰 '차량서 번개탄 질식사' 추정」 제하의 기사
- 메디컬투데이 2009. 12. 14.자 뉴스투데이면 「가수 ○○ 매니저,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 제하의 기사
- 브레이크뉴스 2009. 12. 14.자 엔터테인먼트면 「○○ 매니저 자살 '충격', 가스 질식사 추정」 제하의 기사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9. 12. 14.자 종합뉴스면 「○○ 매니저, 자살 추정 사망」 제하의 기사
– 스포츠서울티브이 2009. 12. 14.자 연예면 「가수 ○○ 매니저, 자살 추정...경찰 '가스질식사'」 제하의 기사
– 씨앤비뉴스 2009. 12. 15.자 연예면 「가수 ○○ 매니저,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아시아경제닷컴 2009. 12. 14.자 연예스포츠면 「[연예가화제] ○○ 매니저 박 모 씨, 차량서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2009. 12. 15.자 문화 · 연예면 「○○ 매니저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추정」 제하의 기사
– 아츠뉴스닷컴 2009. 12. 14.자 연예면 「○○ 매니저 사망, 차량에서 가스질식으로 인한 자살추정...」 제하의 기사
– 이투데이 2009. 12. 15.자 뉴스면 「○○ 매니저 사망 '자신의 차에서 가스 질식'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인터넷일간경기 2009. 12. 15.자 뉴스면 「○○ 매니저 자살 '가스질식' 추정」 제하의 기사
– 인터넷조은뉴스 2009. 12. 15.자 뉴스면 「○○ 매니저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디지털한국재경신문 2009. 12. 14.자 뉴스면 「○○ 매니저, 숨진 채 발견...사망 전 '미안하다' 메시지,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쿠키뉴스 2009. 12. 14.자 뉴스면 「가수 ○○ 매니저 자살」 제하의 기사
– 투데이코리아 2009. 12. 14.자 뉴스면 「○○ 매니저 자살, 죽기 전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보내」 제하의 기사
– 파이미디어 2009. 12. 14.자 연예면 「○○ 매니저 자살...경찰 "가스 질식사" 추정」 제하의 기사
– 폴리뉴스 2009. 12. 14.자 연예면 「가수 ○○ 매니저 '사망'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프런티어타임스 2009. 12. 14.자 사회면 「○○ 매니저, 자살 추정...번개탄 피운 흔적 발견돼」 제하의 기사
– 헤이맨뉴스 2009. 12. 14.자 기획취재면 「가수 ○○ 매니저 박 모 씨,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헬스코리아뉴스 2009. 12. 14.자 깜뉴스면 「○○ 매니저 박 모 씨, 자신의 차량서 숨진채 발견 "자살 추정" 충격」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가수의 매니저로 활동한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

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록 유명 가수 매니저의 자살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가수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및 명예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44호

대상보도 경인종합일보 2010. 1. 21.자 19면 「병원 방사선기사 미성년자 성추행」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명칭과 소속부서 및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45호

대상보도 전남조은뉴스 2009. 12. 18.자 연예면 「하늘마음 정신수련원 탤런트 (K)김씨 누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모 정신수련원 회원들이 원장으로부터 수련원 운영권을 뺏으려한 사건에 모 탤런트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그의 성명을 적시하고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46호

대상보도 투데이코리아 2010. 1. 13.자 사회면 「성매매 연루 ○○병원장, 연락 두절」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47~52호

대상보도
- 세계일보 2010. 1. 22.자 8면 「영화 '○○' 판권 미끼로 투자자금 5억원 가로채」 제하의 기사
- 세계닷컴 2010. 1. 21.자 사회면 「"영화 '○○' 판권 주겠다" 속여 5억 가로챈 영화사 대표 기소」 제하의 기사
- 시대일보 2010. 1. 22.자 15면 「영화 '○○' 제작사 대표 사기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 스타뉴스 2010. 1. 21.자 뉴스 · 이슈면 「'○○' 제작사 대표,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 조이뉴스24 2010. 1. 21.자 문화 · 연예 · 스포츠면 「영화 '○○' 제작사 대표,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1. 21.자 문화 · 연예 · 스포츠면 「영화 '○○' 제작사 대표 사기 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로 있는 영화제작사의 명칭 및 해당 회사에서 제작한 영화의 제목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53호

대상보도 경남일보 2010. 1. 14.자 4면「양산 여성 살인사건 용의자 지난달 부산서 할머니도 살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살인사건 등 특정강력범죄 보도 시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 피해자의 영문 이니셜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지나치게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54호

대상보도 경북매일신문 2010. 1. 12.자 4면「30대 경찰관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업과 근무처 및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55호

대상보도 내외일보 2010. 2. 3.자 5면「'행복전도사' ○○○ 교수의 불륜 섹스 비디오 충격」 제하

의 기사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유명 강사인 ○○○ 교수의 불륜 관계와 관련한 사생활을 지나치게 상세히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향후 유사 보도 시 그 대상이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56호

대상보도 경남신문 2010. 2. 10.자 6면 「등기소장 물속 승용차서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57~59호

대상보도
- 서울신문 2010. 2. 16.자 14면 「동료에 왕따 경찰관 자살」 제하의 기사
- 투데이코리아 2010. 2. 16.자 사회면 「경찰관 설 연휴 자택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한국닷컴 2010. 2. 16.자 이슈&포커스면 「설 연휴에 은행원 · '왕따' 경찰관 잇따라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 근무경력과 현 근무처 및 직위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

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60~65호

대상보도 – 서울신문 2010. 3. 3.자 14면 「○○대병원 진료처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3. 2.자 전국면 「○○ 대학병원 고위 인사 스스로 목숨 끊어」 제하의 기사
– 메디컬투데이 2010. 3. 3.자 사건 · 사고면 「○○대병원 교수 음독자살 "자살원인은 글쎄"」 제하의 기사
– 코리아헬스로그 2010. 3. 3.자 의료계뉴스면 「○○대병원 고위 인사 자택서 '음독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 헬스코리아뉴스 2010. 3. 3.자 루머/잠망경면 「대학병원 교수 음독자살」 제하의 기사
– 데일리메디 2010. 3. 3.자 병원 · 의원면 「○○대병원 고위인사 교수 음독 자살」, 「개인원장 · 의대교수 등 잇단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영문이니셜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한 병원명과 직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66,67호

대상보도 – 전북일보 2010. 3. 8.자 6면 「"추한 모습 싫다" 위암말기 ○○면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전북일보인터넷신문 2010. 3. 7.자 사회면 「"추한 모습 싫다" … ○○○ 씨 위암말기에 투신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실명, 나이 및 직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

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68호

대상보도 신동아 2010년 3월호 246~257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히로뽕 100g 작업하면 검찰이 풀어준대요"」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마약관련 보도 시 마약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필로폰)의 사용량, 사용방법 및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69호

대상보도 중부일보 2010. 3. 19.자 23면 「2인조 대학생 강도 · 강간범 검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축구부원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70,71호

대상보도 – 충북일보 2010. 3. 31.자 5면 「시신 싣고 택시영업 엽기 살인마 '경악'」 및 2010. 4. 1.자 5면 「○○○ 추가범행 '네버엔딩 스토리'」 제하의 기사
– 충북인뉴스 2010. 3. 31.자 사회교육면 「택시기사 채용, 2006년 전 신원조회 안해 화 키워」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등을 공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72~81호

대상보도 – 전북일보 2010. 3. 15.자 6면 「지역축협 상무이사 목 매」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3. 12.자 사회면 「○○서 축협상무이사 목 매 사망…경찰 사망경위 조사중」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3. 12.자 사회면 「○○○○ 축협 임원,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뉴스한국닷컴 2010. 3. 12.자 사건사고면 「○○○○ 축협 임원,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소통뉴스 2010. 3. 12.자 사회면 「○○ · ○○축협 임원 목 매 사망…경찰 조사 중」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3. 12.자 사회면 「○○○○ 축협 임원,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익산투데이 2010. 3. 18.자 사회 · 문화면 「○○ · ○○ 축협 상임이사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3. 12.자 사회면 「○○서 축협상무이사 목 매 사망…경찰 사망경위 조사중」 제하의 기사
– 조인스닷컴 2010. 3. 12.자 사회면 「○○○○ 축협 임원,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투데이안 2010. 3. 12.자 사회면 「○○서 축협상무이사 목 매 사망…경찰 사망경위 조사중」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근무처 및 직위, 나이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82~89호

대상보도
- 대전일보 2010. 3. 16.자 6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축협 조합장 목매」 제하의 기사
- 충남일보 2010. 3. 16.자 6면 「○○축협 조합장 자살…'충격'」 제하의 기사
- 충청일보 2010. 3. 16.자 4면 「경찰 내사받던 ○○축협조합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충청투데이 2010. 3. 16.자 4면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축협 조합장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3. 15.자 사회면 「○○○ ○○축협조합장, 자택 축사서 자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3. 15.자 사회면 「경찰 내사받던 ○○축협조합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3. 15.자 사회면 「경찰 내사받던 ○○축협조합장 자살」 제하의 기사
- 폴리뉴스 2010. 3. 15.자 사회/문화면 「○○축협조합장, 금품살포혐의로 경찰내사 도중 목매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근무처 및 직위, 나이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90호

대상보도 경도신문 2010. 3. 16.자 11면 「고교 복싱부 코치 부부싸움 후 자살」 및 12면 「○○복싱 길잡이 ○○○ 코치 사망」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 나이 및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명칭과 경력을 상세히 적시하고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91,92호

대상보도 – 국제신문 2010. 3. 20.자 6면 「뇌물비리 불똥?…최근 운동장 공사한 학교들 어수선」 제하의 기사

– 부산일보 2010. 3. 20.자 6면 「경찰 내사 진행 중학교 교장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학교의 영문이니셜 및 학교 소재지를 동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93호

대상보도 중부매일 2010. 3. 25.자 2면 「○○우체국 직원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담당업무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94호

대상보도 경남신문 2010. 4. 9.자 6면 「개 소음 문제로 말다툼 50대 흉기 휘둘러 이웃 할머니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살인 사건 등 특정강력범죄 보도 시 피의자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소지를 면 소재 마을 단위까지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95호

대상보도 일요서울 2010. 4. 11.자 25면 「중견재벌 ○○에탄올 ○대표 여자연예인 성폭행 혐의 '구속'」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피의자 및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영문이니셜,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대표로 있는 기업체의 명칭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직업 및 소속 연예기획사의 명칭을 적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및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96,97호

대상보도 - 충청투데이 2010. 4. 26.자 5면 「채무자 아들 협박 교도관 입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4. 23.자 사회면 「청주경찰 채무자 아들 협박 교도소 직원 입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주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98호

대상보도 울산매일 2010. 5. 4.자 5면 「마약투약 빌미 금품 뜯은 신문사 대표 · 간부 검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책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99~101호

대상보도 – 경남신문 2010. 4. 17.자 4면 「전 ○○시의원 투신 숨져」 제하의 기사
– 경남일보 2010. 4. 19.자 4면 「前 ○○시의원 투신」 제하의 기사
– 통영인터넷뉴스 2010. 4. 16.자 뉴스면 「40대 남성 충무교(橋)에서 투신」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의원 경력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02~111호

대상보도 – 헤럴드경제 2010. 4. 30.자 25면 「비리 혐의 공무원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동양일보 2010. 5. 3.자 3면 「○○ 보건소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충청일보 2010. 5. 3.자 3면 「'비리 의혹' ○○ 보건소장 자살」 제하의 기사
– 데일리메디 2010. 4. 30.자 사회면 「보건소장 스스로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동아닷컴 2010. 4. 30.자 사회면 「검찰수사받던 ○○군 보건소장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세계닷컴 2010. 4. 30.자 사회면 「'비리 의혹' 검찰조사 받던 ○○ 보건소장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4. 30.자 사회면 「○○군 보건소장 검찰수사 받던 중 자살」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4. 30.자 사회면 「검찰에 인사비리 수사받던 ○○군 공무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폴리뉴스 2010. 4. 30.자 사회/문화면 「○○군 보건소장 검찰수사 받던 중 자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4. 30.자 사회면 「검찰수사받던 ○○군 보건소장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12호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0. 4. 6.자 사회면 「자살한 여대생, 수련회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학 중인 대학과 학과명, 학년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13호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0. 4. 10.자 사회면 「[사건 인사이드] 어느 베테랑 형사의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근무경력과 수상이력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14호

대상보도 프라임뉴스 2010. 3. 15.자 사회면 「○○군 축협조합장 이○○ 씨 스스로 목 매」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15,116호

대상보도 - 강원일보 2010. 5. 11.자 6면 「카지노 폐장시간 타짜들이 당신을 노린다」 제하의 기사
- 뉴스타운 2010. 5. 24.자 사회면 「충남경찰청, 꽃뱀 낀 사기도박단 6명 검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범죄에 이용된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구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사기도박 사건 범행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구입방법, 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 수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처럼 약물의 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범행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 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17,118호

대상보도 - 조선일보 5. 7.자 A12면 「'본드 위조지문'에 日 입국심사대 뚫렸다」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5. 7.자 사회면 「'본드 위조지문'에 日 입국심사대 뚫렸다」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본드를 이용한 위조 지문의 제작 과정과 밀입국 방법 등 범죄 수법과 범행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처럼 범행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 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19~130호

대상보도 – 광주매일 5. 17.자 6면 「 '동업자 죽이려다…' 」 제하의 기사
– 광주일보 5. 15.자 3면 「20대 女 '산소마스크 의문사'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 한국일보 5. 17.자 2면 「의문사 20대 女 가방에서 살인계획서」 제하의 기사
– 호남매일 5. 17.자 5면 「20대 女, 산소마스크 쓴 채 숨져」 제하의 기사
– 일요서울 5. 30.자 34면 「망자에 씌워진 '산소마스크' 가 수상하다」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5. 16.자 사회면 「산소마스크 사망 여성 소지품서 살인계획서 발견」 제하의 기사
– 동아닷컴 5. 17.자 사회면 「 '산소마스크 女'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 매경닷컴 5. 17.자 사회면 「산소마스크 쓰고 숨진 女 가방서 '살인계획서' 」 제하의 기사
– 프리덤꼬뮨 5. 16.자 지역면 「 '20대 女 미스테리 죽음'…살인계획서 확보 수사중」 제하의 기사
– 한국아이닷컴 5. 16.자 사회면 「의문사 20대 女 가방에서 살인계획서」 제하의 기사
– 뉴시스 5. 16.자 사회면 「 '20대 女 미스테리 죽음'…살인계획서 확보 수사중」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5. 16.자 사회면 「산소마스크 사망 女 가방서 '살인계획서' 」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밀폐된 공간에 드라이아이스를 두어 질식사시키는 등의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처럼 범행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 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1호

대상보도 사건의내막 4. 25.자 38~39면 「신종마약으로 둔갑한 '수면 마취제' 연예인들도 중독 심각」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마약 등 약물관련 보도 시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으로 악용되고 있는 수면마취제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2호

대상보도 민주신문 2010. 5. 23.자 16~17면 「단속 비웃듯 체리 급속 확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마약관련 보도 시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의 명칭, 제조방법 및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가격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3호

대상보도 뉴스포스트 2010. 4. 18.자 14면 「대학 MT 성폭력 온상인가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선…」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학 중인 대학과 학과명, 학년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4호

대상보도 시사저널 2010. 6. 8.자 42면 「서울대생 잇따른 자살 왜?」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학 중인 학교의 명칭, 출신지역, 경력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5호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0. 7. 17.자 5면 「우울증 경찰간부 아내 살해 뒤 도주」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며,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 등을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언론은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36~138호

대상보도
- 경남매일 2010. 6. 9.자 7면 「흉기로 동료폭행 선원 영장」 제하의 기사
- 거제신문 2010. 6. 8.자 사회면 「통영해경, 폭력사범 검거」 제하의 기사
- 뉴스통영 2010. 6. 8.자 뉴스종합면 「통영해경, 흉기들고 폭력 행사한 선원 검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원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

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39호

대상보도 신동아 2010. 8월호 158~165면 「잔혹하고 끔찍한 10대들의 살인놀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범죄 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 유 위 기사는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방법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범죄 사건의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40호

대상보도 일요시사 2010. 7. 4.자 28면 「환각성 '마약' 인가 치료용 '명약' 인가」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마약 등 약물관련 보도 시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으로 악용되고 있는 수면마취제의 명칭 및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41~150호

대상보도 – 매일경제 2010. 6. 11.자 A31면 「방산비리 조사받던 업체 前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조선일보 2010. 6. 11.자 A13면 「검찰조사 받은 前 방위산업체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중앙일보 2010. 6. 11.자 23면 「검찰 조사 방산업체 전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한겨레 2010. 6. 11.자 12면 「○○○ ○○○ 전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시사서울 2010. 6. 20.자 12면 「조사 길어지면서 심리적 압박? ○○○ ○○○ 전 대표 검찰 조사 받은 후 자살」 제하의 기사
- 일요서울 2010. 6. 20.자 21면 「○○○ ○○○ 전 대표이사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핌 2010. 6. 10.자 경제면 「비리의혹 조사받던 방산업체 전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서울투데이 2010. 6. 12.자 사회면 「○○○○○○ 前 대표, 검찰조사 받은 후 '자살'」 제하의 기사
- 컨슈머타임스 2010. 6. 10.자 종합면 「○○○ '○○○' ○○○ 전 부회장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 쿠키뉴스 2010. 6. 10.자 사회면 「'비리 의혹' 조사받던 방산업체 전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및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명, 재직기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51~169호

대상보도
- 경향닷컴 2010. 7. 3.자 사회면 「'○○' 제작자 자살…드라마 제작 자금난 때문인듯」 제하의 기사
- 뉴데일리 2010. 7. 3.자 연예면 「또 베르테르 효과? '○○' 제작사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웨이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 데일리안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자 자살, 유서발견 "어머니께 죄송…"」 제하의 기사
- 매경닷컴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금난 비관해 자살」 제하의 기사
- 모닝뉴스 2010. 7. 3.자 뉴스면 「SBS '○○' 제작사 대표, 자금난에 목 매 자살… '베르테르 효과?'」 제하의 기사
- 민주일보 2010. 7. 3.자 연예스포츠면 「○○ 제작사 대표 자금난 비관 자살」 제하의 기사

- 서울신문NTN 2010. 7. 3.자 종합면 「○○하 이어 ○○제작자 자살…연예계 자금난 후폭풍」 제하의 기사
- 스포츠서울TV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목 맨 채 발견…자살 추정 '충격'」 제하의 기사
- 씨앤비뉴스 2010. 7. 3.자 연예스포츠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 자금난 때문으로 추정」 제하의 기사
- 아이에스플러스닷컴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해 충격」 제하의 기사
- 이머니투데이 2010. 7. 3.자 사회/문화면 「'○○' 제작사 대표 자살…"어머니에 죄송" 유서 남겨」 제하의 기사
- 이투데이 2010. 7. 3.자 경제면 「○○ 제작자 겸 ○○필름 대표 이 모 씨 자살 왜?」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7. 3.자 스포츠연예면 「'○○' 제작사 대표 자살, 자금사정 비관 추정」 제하의 기사
- 조인스닷컴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해 충격」 제하의 기사
- 투데이코리아 2010. 7. 3.자 방송,연예면 「'○○' 제작자 대표 자살…유서에 "어머니께 죄송하다"」 제하의 기사
- 프라임경제 2010. 7. 3.자 정치/시사면 「'베르테르 효과?' '○○' 제작사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한경닷컴 2010. 7. 3.자 스포츠/문화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헬스코리아뉴스 2010. 7. 3.자 깜뉴스면 「드라마 '○○' 제작자 '자살'…자금난 원인인 듯」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대표로 재직 중인 드라마 제작사의 명칭 및 경력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70호

대상보도 영남일보 2010. 7. 16.자 7면 「모자가 숨진 채 발견 생활고 비관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및 주소지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71호

대상보도 일요서울 2010. 8. 1.자 24면 「○○금융 증권사 임원 연쇄 자살 "말 못할 사연 있나?"」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근무처 및 직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72호

대상보도 뉴스포스트 2010. 8. 22.자 20면 「'버튼' 한 번에 성범죄자 낙인…호기심에 음란물 보낸 10대들」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10대 청소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보도 내용과 무관한 개인의 초상을 필요이상으로 공개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 제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2항 및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73호

대상보도 경남매일 2010. 8. 7.자 사회면 「농민회 간부 수천만 원 속옷 훔친 엽기행각」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농민회의 간부라는 사실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74~181호

대상보도
- City(시티) 2010. 9. 1.자 3면 「○○ 이발사, 직원 사칭 돈뜯어」 제하의 기사
- evening(이브닝) 2010. 9. 1.자 3면 「"나 ○○ 관리실장이야" 돈 뜯은 ○○○ 이발사」 제하의 기사
- 경인일보 2010. 9. 2.자 30면 「○○ 이발사가 고위직 사칭 '소송 로비' 빌미로 돈 뜯어」 제하의 기사
- 기호일보 2010. 9. 2.자 19면 「"나, ○○○ 관리실장인데" 소송로비 명목 돈 뜯어낸 구내 이발사 불구속 입건」 제하의 기사
- 인천일보 2010. 9. 2.자 19면 「○○○ 직원 사칭 사기 2명 불구속」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9. 1.자 사회면 「인천경찰 '소송 로비' 돈 뜯은 '○○○ 이발사' 입건」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2010. 9. 1.자 사회면 「"난 ○○ 관리실장이야" 돈 뜯은 ○○○ 구내 이발사」 제하의 기사
- 매경닷컴 2010. 9. 1.자 사회면 「○○○ 이발사 "나 ○○○ 관리실장인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82~189호

대상보도
- 경인종합일보 2010. 8. 6.자 15면 「'비리혐의' ○○소방서장, 관사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대구신문 2010. 8. 6.자 5면 「경찰 내사중 ○○소방서장 관사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시민일보 2010. 8. 6.자 18면 「경찰 내사중 ○○소방서장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8. 5.자 사회면 「○○○ ○○소방서장,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8. 5.자 사회면 「경찰 내사중 ○○소방서장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2010. 8. 5.자 사회면 「○○소방서장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뉴스엔 2010. 8. 5.자 생활 · 문화면 「○○소방서장 자살 추정, 파주소방서 재직시 비리 의혹 참고인 소환조사 후」 제하의 기사
- 한경닷컴 2010. 8. 5.자 사회면 「○○소방서장, 5일 사망…사인은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90~192호

대상보도 - 남도일보 2010. 8. 10.자 6면 「현직 경찰 자택서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전광일보 2010. 8. 10.자 4면 「현직 경찰관 자택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호남매일 2010. 8. 10.자 15면 「화순서 현직 경찰관 자택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93~197호

대상보도 – 강원도민일보 2010. 9. 1.자 5면 「해양전투경찰 함상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강원일보 2010. 9. 1.자 5면 「해양 경비함정서 전경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전국매일 2010. 9. 1.자 7면 「해상훈련 마친 전경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8. 31.자 사회면 「경비함정 내에서 전투경찰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쿠키뉴스 2010. 9. 1.자 사회면 「경비함정 내에서 전투경찰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무 중인 함정의 명칭 및 계급, 직무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98~203호

대상보도 – 뉴스한국 2010. 9. 9.자 방송연예면 「인간극장 '아빠와 ○○○' 출연했던 황 모 씨 자살 소식에 네티즌들 '충격'…아이들은?」 제하의 기사
– 대전일보닷컴 2010. 9. 9.자 사회면 「 '아빠와 ○○○' 출연 황씨 투신자살…"혼혈 3남매 어떡해~"」 제하의 기사

– 서울신문NTN 2010. 9. 9.자 종합면 「 '○○○ 아빠' 태종대서 투신자살… '인간극장' 출연자」 제하의 기사
– 시사서울 2010. 9. 9.자 문화면 「인간극장 '아빠와 ○○○' 출연자, 절벽서 투신자살…"도대체 왜?"」 제하의 기사
– 이데일리 2010. 9. 9.자 연예면 「 '아빠와 ○○○' 아빠, 바다에 투신 자살 "3남매는 어떡해"」 제하의 기사
– 티브이데일리 2010. 9. 9.자 방송/연예면 「인간극장 '아빠와 ○○○' 출연 주인공 투신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출연했던 TV 프로그램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자 및 자녀들의 사진을 공개하여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204~207호

대상보도 – 한국일보 2010. 10. 4.자 2면 「軍, 해외 파병부대 性문란 사고 '쉬쉬'」 제하의 기사
– 스포츠한국 2010. 10. 4.자 37면 「軍, 해외 파병부대 성군기 사고 '쉬쉬'」 제하의 기사
– 인터넷한국일보 2010. 10. 4.자 사회면 「軍, 해외 파병부대 性문란 사고 '쉬쉬'」 제하의 기사
– 오마이뉴스 2010. 10. 4.자 사회면 「○○○ 파병 ○○부대, 남녀 장교간 성관계 3명 징계」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 파병 국군 부대 안에서 성문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들의 소속부대명 및 직책 등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향후 유사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08호

대상보도 뉴스웨이 2010. 10. 4.자 연예면 「 '지하철난투극', 소녀는 반말에 할머니는 손찌검에…"쯧쯧"」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지하철 안에서 10대 소녀와 할머니가 다투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향후 유사보도 시 개인의 초상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09호

대상보도 동양일보 2010. 9. 24.자 2면 「남편 살해 혐의 50대 입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0호

대상보도 경인일보 2010. 10. 1.자 23면 「10년 간 회사돈 14억 물쓰듯 사치생활 명품녀 덜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한 건설회사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 및 직책, 근무기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

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1~213호

대상보도 – 경기북부일보 2010. 9. 17.자 사회면 「'○○○ 코리아' 박 사장… '가정폭력 혐의' 오명」 제하의 기사

– 스포츠서울닷컴 2010. 9. 17.자 사회면 「'술먹고 아내 잔혹폭행' 유명 외국 커피업체 사장 외국행」 제하의 기사

– 비즈플레이스인터넷 2010. 9. 17.자 비즈매거진면 「○○○ 박○○ 사장 '가정폭력 혐의'」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실명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4호

대상보도 뉴스웨이 2010. 9. 29.자 사회면 「군산해경, 선상 살인 '사체유기' 범 긴급체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원으로 근무하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5호

대상보도 경향닷컴 2010. 9. 24.자 사회면 「여중생 앞에서 음란행위 '바바리 공무원' 입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급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6, 217호

대상보도 - 경향닷컴 2010. 10. 3.자 사회면 「새벽 홍대앞 성추행 전경, 간단히 제압한 사람」 제하의 기사
- 코리아뉴스타임즈 2010. 10. 4.자 사건사고면 「새벽 홍대앞 성추행 전경, 간단히 제압한 사람」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투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및 소속 경찰서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8~225호

대상보도 - 경기신문 2010. 9. 27.자 6면 「○○시 보건소 직원 40대 자살」 제하의 기사

– 인천일보 2010. 9. 27.자 19면 「보건소 직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전국매일 2010. 9. 27.자 6면 「○○보건소 직원 자택서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9. 24.자 사회면 「 '음주운전' 보건소 직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9. 24.자 사회면 「○○보건소 직원 자택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더데일리 2010. 9. 24.자 사회면 「 '음주운전에 빚까지' 보건소 직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9. 24.자 사회면 「 '음주운전' 보건소 직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9. 24.자 사회면 「○○보건소 직원 자택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책, 직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26호

대상보도 우먼센스 2010년 10월호 396~398면 「흑진주 삼남매 남기고 떠난 ○○○ 씨 가슴아픈 사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출연했던 TV 프로그램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사진을 공개하여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27,228호

대상보도 – 레이디경향 2010년 11월호 238~241면 「남한에 남겨진 고 황장엽의 숨겨진 부인과 아들…

수년 간 추적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 가족 비화 공개」제하의 기사 및 사진
- 우먼센스 2010년 11월호 398~400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숨겨진' 40대 여인, 초등생 아들 소문 확인 취재」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특정인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숨겨진 아내로 추정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위치와 사진, 가족관계 및 아들의 나이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향후 유사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29~232호

대상보도
- 문화일보 2010. 10. 20.자 27면 「8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다 살해」 제하의 기사
- 중부매일 2010. 10. 20.자 3면 「성폭행 반항 이웃집 노파 살해 60대 붙잡혀」 제하의 기사
- 사건의내막 2010. 10. 31.자 24면 「성관계 거부하자 '욱'…팔순 노파 살해」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10. 20.자 사회면 「8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다 살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33, 234호

대상보도
- 동아일보 2010. 10. 8.자 A12면 「"스타 되려면 스폰서 있어야" 10대 지망생에 성매매 강요」 제하의 기사

– 동아닷컴 2010. 10. 8.자 사회면 「가수 지망생 시켜 스폰서 性상납 거부하자 "일이라 생각하라" 강요」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영문이니셜 및 공동운영자가 월드컵 당시 유명해진 '○○○○○ ○○녀'라는 사실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35~238호

대상보도
– 경남신문 2010. 10. 22.자 6면 「○○예총 간부 가족의 비극」 제하의 기사
– 경남일보 2010. 10. 22.자 4면 「○○ 예총회장 부인 살해」 제하의 기사
– 내외일보 2010. 10. 20.자 3면 「창원시 ○○ 예총회장, 부인 불륜의심 피살」 제하의 기사
– 대한투데이 2010. 10. 20.자 4면 「 '남자관계 복잡하다' 남편이 부인 살해」 및 2010. 10. 21.자 4면 「"바람피웠다" 아내 각목으로 때려 살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회 회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39호

대상보도 구로오늘신문 2010. 10. 11.자 7면 「"장애아들 복지 혜택 받게 해주세요" 50代 가장 목 매 자

살 '슬픈 父情' 」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족인 아들의 사진을 게재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전과기록 및 아들이 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40호

대상보도 거제타임즈 2010. 10. 11.자 정치/행정면 「해경, 농약마신 80대 할아버지 긴급 후송」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41~246호

대상보도
- 시민일보 2010. 10. 11.자 18면 「우울증 경찰간부 숙직실서 자살」 제하의 기사
- 전광일보 2010. 10. 11.자 4면 「우울증 앓던 ○○경찰 숙직실서 자살」 제하의 기사
- 전남일보 2010. 10. 11.자 6면 「○○경찰청 간부 숙직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호남매일 2010. 10. 11.자 15면 「○○경찰 잇단 자살 '초상집' 」 제하의 기사
- 호남신문 2010. 10. 11.자 6면 「'끊이지 않는 자살 경찰' 내부서 별다른 조치 없어」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10. 10.자 사회면 「○○경찰청 간부 사무실서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47,248호

대상보도
- 경남신문 2010. 10. 22.자 6면 「차로 친구 숨지게 한 70대 죄책감에 음독 자살 기도」 제하의 기사
- 국제신문 2010. 10. 22.자 11면 「차로 이웃 치어 숨지게 한 70대 음독해 병원후송됐으나 중태」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49~264호

대상보도
- 더데일리포커스 2010. 10. 21.자 6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메트로 2010. 10. 21.자 12면 「○○대 교수 연구실서 자살」 제하의 기사
- 조선일보 2010. 10. 21.자 A10면 「○○대 교수 자살…"왕따 비관"」 제하의 기사
- 헤럴드경제 2010. 10. 29.자 10면 「○○대 교수 자살 그 진실은…가정불화 · 따돌림 등 의혹 무성 지인들 "부당권력 희생양" 주장」 제하의 기사
- 국제신문 2010. 10. 21.자 8면 「○○대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윈 2010. 10. 20.자 사회면 「○○대학교 교수 연구실서 자살, 이유는?」 제하의 기사
- 뉴스천지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데일리안 2010. 10. 21.자 사회면 「○○대 교수 자살…경찰 "교수사회 왕따 당한 듯"」 제하의 기사
- 데일리중앙 2010. 10. 20.자 사회면 「○○대 40대 교수, 연구실서 자살…직장과 가족 문제 고민?」 제하의 기사
- 뷰스앤뉴스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목 매 자살. ○○대, 유서 공개 안해」 제하의 기사
- 세계닷컴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아시아경제닷컴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10. 21.자 사회면 「○○대 교수 자살…"왕따 비관"」 제하의 기사
- 쿠키뉴스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교수로 재직한 대학 및 학과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65~270호

대상보도
- 한국일보 2010. 10. 26.자 12면 「○○대생 또 자살」 제하의 기사
- 시사신문 2010. 11. 7.자 34면 「'어떻게 들어갔는데…' ○○대생 또 자살」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2010. 10. 28.자 사회면 「○○대생의 연이은 자살에 왜 언론이 주목할까?」 제하의기사
- 서울신문NTN 2010. 10. 26.자 사회면 「제적당한 ○○대생 자살…'어떻게 들어온 대학인데...'」 제하의 기사
- 코리아뉴스타임즈 2010. 10. 28.자 종합뉴스(사건/사고)면 「○○대생의 연이은 자살에 왜 언론이 주목할까?」 제하의 기사
- 한경닷컴 2010. 10. 26.자 사회면 「○○대생, 학사경고 제적당하자 '자살' 올들어 4번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학 중인 대학 및 학과명, 과거 이력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71~273호

대상보도 - 뉴시스 2010. 10. 31.자 사회면 「○○서 자살 방화 발생…60대男 사망」 제하의 기사
- 더데일리 2010. 10. 31.자 사회면 「부부싸움 후 자살 방화...60대男 숨져」 제하의 기사
- 재경일보 Online 2010. 10. 31.자 사회면 「○○서 자살 방화 발생…60대 男 사망」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74호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0. 11. 4. 자 6면 「전직 프로축구선수 빵소니 영장」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전직 프로축구 선수였다는 사실 및 소속 팀, 선수 경력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75호

대상보도 대한투데이 2010. 11. 30.자 5면 「부부싸움끝 방화 이웃주민 숨져…」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지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76~279호

대상보도
- 문화일보 2010. 11. 5.자 8면 「교육청감사 받은 사학 행정실장 가족 숨진채 발견」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중부일보 2010. 11. 5.자 1면 「'힘들다' 연가내고 일가족 투신자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노컷뉴스 2010. 11. 5.자 사회면 「"저수지 사망 일가족, ○○교육청 감사 때문?"」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뉴데일리 2010. 11. 5.자 사회면 「교육청 표적 감사에 일가족 함께 자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살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에서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자살자의 성과 나이, 근무처 및 직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 동기는 통상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목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살자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

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80호

대상보도 아시아투데이닷컴 2010. 11. 16.자 사회면 「[속보]○○아리안 분양대행사 대표...음독자살 기도」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81~283호

대상보도 - 거제나우 2010. 11. 25.자 사건/사고면 「농협 합병 앞두고 관계자 음독자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거제인터넷신문 2010. 11. 27.자 농 · 수 · 축면 「○○농협과 ○○통협의 통합은 처음부터 무리수?」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모닝뉴스 2010. 11. 25.자 사회사건면 「합병절차 농협간부 음독 사망」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살자의 근무처 및 직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84호

대상보도 전북일보 2010. 11. 30.자 6면 「30대 경찰관 신병 비관 자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살자의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제4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4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언론중재 · 조정 사건의 전체목록을 게재합니다. 연구목적으로 인용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 익명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결과 내 '이행방법'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혹은 중재결정의 경우)에 적시된 이행방법을 의미합니다. …… 편집자 주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2010서울조정1~2	한국철도공사 對 경향닷컴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2) 『'단협해지 → 파업, 복귀 → 중징계' 시나리오대로 '착착'』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조 파업발생 50여 일 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는 계획을 세워 파업을 유도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기사삭제,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정정보도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3~4	한국철도공사 對 경향닷컴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중인 노조에 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의 제동으로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확정 후 3일 이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 본문 연결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2010서울조정5~7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문화일보, 문화닷컴,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법치 도전 법정 소란, 더 엄격히 처벌해야』 제하의 사설기사 [문화일보 (2009년 9월 2일자 39면), 문화닷컴 · 네이트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문화일보 · 문화닷컴** : 각 기각결정 (사유 :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네이트** :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기각결정 (2010서울중재8 참조)]

2010서울조정8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조선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재판에 출석한 증인 폭행한 혐의 광고중단 협박 단체 2명 법정 구속』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5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며,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2010서울조정9~11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오늘의 법정 모욕은 법원의 業報다』 제하의 사설기사 [조선일보 (2009년 9월 2일자 A35면),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2010서울조정8 기각사유 참조)

2010서울조정12~15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광고주 협박범 재판 나온 증인 폭행 언소주 회원 2명에 항소심도 '유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09년 10월 23일자 A10면),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2010서울조정8 기각사유 참조)

2010서울조정16~18, 20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 "키 작은 남자는 루저"』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09년 12월 26일자 A10면),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야후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2010서울조정8 기각사유 참조)

2010서울조정19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네이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정치 – YS "DJ와 난 세계 유례없는 특수 관계"』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2010서울조정8 기각사유 참조)

2010서울조정21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뉴데일리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광고중단' 협박 언소주, 항소심도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22~26	구니카(주)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포장 뜯었더니 죽은 쥐 … 쇼핑몰은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제조, 판매한 유아용품에서 죽은 쥐가 발견된 후 신청인이 책임을 떠넘기며 성의 없이 대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PR보도 약속)

2010서울조정27~42	진○○ 對 한겨레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왜나면]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민원은 적절하게 처리되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기고문 게재 (2010서울중재2~7 참조)] • **구글 · 파란**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고문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기고문 이어서 게재 • **구글** : 기사제공언론사(한겨레닷컴)에 게재된 기고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신문고 민원 수사 최선을 다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2010서울조정43~45	1.단월드 2. 이승헌 對 신동아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해부 단월드 성공한 문화기업, 세계적인 정신지도자 … 의혹으로 얼룩진 홍익인간 이화세계』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호 84~12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회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종용하는 종교단체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사기, 탈세, 창립자의 부정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호 신동아독자 발언대 코너 '말길글길' 면)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 제목 : 『신동아 1월호 "대해부 단월드" 보도 관련 반론보도』

2010서울조정46	배○○ 對 KBS-2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2009년 11월 9일 23:00)
신청인주장	프로그램 출연자가 "키 작은 사람은 루저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결정 (사유 :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

2010서울조정47~49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對 iMBC,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제하의 보도 [MBC-TV (2009년 11월 23일 21:00, 2009서울조정894 참조), iMBC · 네이버 · 다음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구청장 부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근로를 동원해 경작시키면서, 관련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고의 누락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MBC · 네이버 · 다음**: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iMBC · 네이버 · 다음** :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iMBC · 네이버 · 다음**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6일자)

2010서울조정50~53	김○○ 對 MBC-TV, iMBC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황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1월 6일 18:50), iMBC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대리주차 요원들이 고객 차량을 뒤진다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00만원, 사과서신, 부제소) • **iMBC**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상업적 이용금지, 부제소)

2010서울조정54~55	이○○ 對 MBC-TV, iMBC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황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1월 6일 18:50), iMBC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비공개를 전제로 대리주차 피해사례를 제보했으나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 등이 그대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C-TV · iMBC** : 각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MBC-TV와 iMBC 연대하여 250만원, 유감표시, 부제소)

2010광주조정1~2	(주)동방이엔지 對 남도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홍보탑 업체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3, 5	(주)동방이엔지 對 인터넷 호남도민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4, 6	(주)동방이엔지 對 인터넷 호남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이행방법 : 14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게재, 제목 클릭 시 합의한 정정보도문의 본문 표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나주시 고가 홍보탑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호남신문 (2010년 1월 22일자 6면), 인터넷 호남신문 (1월 25일자)]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 제목 :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정정보도문』

2010서울조정56~59	오○○ 對 MBC-TV, iMBC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황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1월 6일 18:50), iMBC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대리주차 요원들이 고객 차량을 뒤진다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00만원, 사과서신, 부제소) • **iMBC**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상업적 이용금지, 부제소)

2010경기조정1~6	안○○ 對 중부일보, 구글,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경찰이 합의 종용 … 진단서 제출도 거부했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09년 12월 23일자 22면), 구글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형사고소사건의 담당형사인 신청인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안 될 땐 쌍방과실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중부일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구글** : 취하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 **중부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23면)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 각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0~66	오은선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오은선 씨 히말라야 등정 성공 의혹제기,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09년 11월 24일자 10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1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칸첸중가 등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칸첸중가 등정에 성공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2월 11일자 29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2월 11일자)]

2010서울조정67~68	오은선 對 SBS-TV, S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8뉴스」 프로그램 '오은선, 칸첸중가 등반 의혹... "산은 알고 있다"' 제하의 보도 [SBS-TV (2009년 11월 24일 20:00), SBSi (1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칸첸중가 등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69	봉○○ 對 코미디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TV 동물농장」 프로그램 '다래의 가출'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3일 11:4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경과 신청인 소유의 차량 번호를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 결정 (피신청인 주장 : 1. SBS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방송한 것으로 방송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2. 내용에 대한 관련기관의 심의필을 완료하여 방송한 것이므로 방송에는 문제가 없다. 3.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2010서울조정70~75	환경부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기자메모> '미군부대 오염' 변죽만 울린 환경부』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1월 4일자 B2면), 경향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환경부가 부평미군부대 안팎 환경오염 원인규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경향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9~16 참조)] ※ 이행방법 • **경향닷컴** : 홈페이지에 24시간 동안 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합의한 반론 보도문 본문 연결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고 자체 옴부즈만 코너인 '정정 · 반론 등 게재 코너'에 게시 • **야후** : 뉴스 홈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 표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인천경향 1월 4일자 2면』 제하의 기사 [인천경향 2010년 1월 22일자 2면, 경향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1월 22일자)]

2010서울조정76~79	(주)경기방송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기방송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미디어오늘 (2009년 12월 16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기방송에서 알력다툼이 불거져 상호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7일 자 2면)

2010서울조정80	(주)동방이엔지 對 뉴시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1~86	삼화산업(주)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라이코스,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포스코 하청업체 삼화산업, 새해 첫 해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던 노조원을 해고한 뒤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권고사직"이었고 고소 ·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87~94	국립의료원 對 메디컬투데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의료원, 직원 신분문제 등 대책 마련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법인화되면서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문제와 관련 설명회 등의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 모두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국립의료원, 직원 신분문제 등 대책 마련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8일자)

2010서울조정95~98	국립의료원 對 메디파나뉴스, 구글,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의료원 떠나는 500여 명 어디로 가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법인화되면서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문제와 관련 설명회 등의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국립의료원 떠나는 500여 명 어디로 가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2010서울조정99~101	국립의료원 對 민중의소리,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의료원 법인화 코 앞으로 … '갑갑한' 노동자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법인화되면서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문제와 관련 설명회 등의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02	(주)동방이엔지 對 뉴시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전조정1	이○○ 對 대전투데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연기 전의면 사무소 직원 욕설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7면)
신청인주장	연기군 면사무소 직원인 신청인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대전투데이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03~104	이○○ 對 TVN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엑소시스트」 프로그램 '다시 보고 싶은 2009 엑소시스트'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30일 24:00)
신청인주장	무속인인 신청인이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병명을 맞출 수 있다고 했고, 제작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사실 그대로 방송한 것이므로 정정이나 손해배상은 불가하다.)

2010서울조정105~120	(주)동방이엔지 對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조인스MSN, 천리안,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21~124	(주)대전프로축구 對 한국축구신문, 인터넷한국축구신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전 시티즌, U-15 코칭스태프 심야 선수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한국축구신문(2009년 12월 30일자 6면), 인터넷 한국축구신문 (12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구단이 재정 지원과 운영을 맡고 있는 축구부에서 폭행사건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과장 보도하여 구단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각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축구신문** : 홈페이지에 24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합의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연결
이 행 결 과	『유성중 축구부 감독 학생폭행,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3일자 6면)

2010서울조정125~128	이○○ 對 한국축구신문, 인터넷한국축구신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전 시티즌, U-15 코칭스태프 심야 선수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한국축구신문(2009년 12월 30일자 6면), 인터넷한국축구신문 (12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전시티즌 U18팀 충남기계공고 축구부 학생들을 만취상태에서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는 없다.)

2010서울조정129~136	(주)투머로우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단 종교행사에 고3 동원 '말썽'』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신청인주장	'투머로우' 라는 서적은 (사)국제청소년연합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회사가 발행하는 서적이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불성립결정 (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2010서울조정137~140	(사)국제청소년연합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단 종교행사에 고3 동원 '말썽'』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이단종교단체 및 대학선교단체가 아니며, 보도된 행사가 고3 학생들을 동원한 종교 행사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 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할 사안이 없으며, 현재 법원에 민 · 형사 소송이 제기중이므로 조정에 응할 수 없다.)

2010전북조정1	1. 최○○, 2. 최□□, 3. 백○○ 對 전주KBS-1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9 – 전주」 프로그램 '현장추적7400 – 엉터리 행정'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1일 21:00) (2) 「뉴스9 – 전주」 프로그램 '〈속보〉 관광농원 행정 거짓 들통'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4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무주군청으로 허가받은 관광농원 진입로를 불법적으로 막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1회 방송, 화면하단에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반론보도문의 본문 낭독

이 행 결 과	「뉴스9 – 전주」 프로그램 '무주 관광농원공사 중단 관련 속보'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8일 21:00)

2010부산조정1~2	1. 박○○,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對 부산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자활센터 횡령 알고도 '쉬쉬'』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8일자 6면)
신청인주장	사회복지재단의 간부인 신청인이 구청으로부터 수탁관리 · 운영해오던 자활센터를 통해 거액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14면)

2010경기조정7	과천시 對 과천저널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과천시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 추진 가능』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1~2면)
신청인주장	과천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건축이 정비계획에 의한 재건축보다 2년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과천시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 추진 가능" 보도에 대한 과천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1일자 1면)

2010서울조정141~148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오늘(141~142 정정 · 손배청구), 인터넷 미디어오늘(143~144 정정 · 손배청구), 네이버(145 정정청구), 다음(146 정정청구), 드림위즈(147 정정청구), 파란(148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미디어오늘 (2010년 1월 13일자 1면), 인터넷 미디어 오늘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1월 12일자)] (2) 『KBS 수신료 관리, 방만한 사각지대』 [미디어오늘 (2010년 1월 13일자 3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KBS내에 수신료 납부대상자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계약직 직원보다 이를 감독 ·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내근인력이 2배 가까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미디어오늘** : 홈페이지에 24시간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 표시, 각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KBS 수신료 내근 직원 184명 아닌 164명』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0년 2월 10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2월 4일자)]

2010서울조정149~150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對 인터넷보건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공중보건한의제도 유명무실로 '폐지론' 대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한의대 졸업생들을 공중보건의에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및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공중보건한의제도 유명무실로 '폐지론' 대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2010충북조정1~4	조○○ 對 충청리뷰, CJB-TV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충청리뷰** : 『청주시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8일자 사회면) • **CJB-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9년 12월 18일 06:2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지급받아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1~156	(주)케너텍 對 이투뉴스,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첫 구역전기사업(CES) 애물단지 전락』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구역형 전기사업자인 신청인 회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이투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게재(2010서울중재 17~20 참조)] ※ 이행방법 • **이투뉴스** :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 **이투뉴스 · 네이버 · 네이트** : 『사당동 CES사업 보도에 대한 케네텍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1월 26일자)

2010서울조정157~159	(재)시민방송 對 독립신문,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시민방송 RTV는 진정한 시민채널인가, 공산주의 선전매체인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사회주의 성향이며, 참여정부 시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RTV, "공산주의 선전매체"에 발끈』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2010서울조정160~167	(재)시민방송 對 뉴데일리(160~161), 구글(162), 네이버(163), 다음(164), 드림위즈 (165), 야후(166), 파란(167)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뉴데일리 · 구글 · 다음** : 『방개혁 "시민채널 RTV, 공산주의 선전 방송인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 **뉴데일리 · 네이버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DJ때 출생, 노무현이 키운 RTV는 어떤 곳?』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 **네이버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방개혁, "RTV, 이념적 편향성 도 넘어"』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사회주의 성향이며, 참여정부 시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구글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각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데일리** : 초기화면 중앙목록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구글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뉴데일리가 정정보도문을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 **뉴데일리 · 구글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일자)

2010제주조정1~2	1. 윤○○, 2. (주)아시아포럼 對 JIBS-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아침뉴스」 프로그램 '중국산 옥돔 불법유통'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1일 07:15)
신청인주장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창고와 소속 직원의 초상을 내보냈으나 적발된 바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프로그램 말미에 화면 좌측 하단에 제목(바로잡습니다) 표시, 배경화면으로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 등장 화면 인용, 진행자가 통상속도로 정정보도문 낭독, 1회 방송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68~169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對 한국농정, 인터넷 한국농정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농민단체 더욱 굳건히 단결할 것』 제하의 기사 [한국농정신문 (2009년 12월 14일자 1면), 인터넷 한국농정 (1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농민연합을 탈퇴한 이유가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의 마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는 없다.)

2010서울조정170~171	이○○ 對 한겨레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왜곡보도 고통, 평생 멍에로 남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9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정청래 전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던 신청인이 당시 정 의원의 경쟁후보 선거 사무장이었고, 제보가 허위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35면)

2010서울조정172~173	김○○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집은 많은데 갈 곳이 없네』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0년 1월 16일자 8면), 쿠키뉴스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 제하의 기사에서 하숙집 전단지를 쳐다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국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00만 원, 부제소) • **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부제소)

2010서울조정174~179	(사)케이비엘(한국축구연맹)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취재파일> KBL의 과도한 서울사랑과 오락가락 행정』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09년 12월 10일자 A25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10일자)] (2) 『역주행 농구 KBL 대해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09년 12월 15일자 A26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15일자)] (3) 『한국농구, 이대로는 안 된다 <1> 허울뿐인 이사회』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09년 12월 23일자 A27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23일자)] (4) 『한국농구, 이대로 안 된다 <3> KBL의 일방통행식 밀실 행정』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09년 12월 25일자 A15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맹이 일방통행식 밀실 행정을 통해 안건을 결정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스포츠면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 연결
이 행 결 과	『KBL, "구단들과 유기적인 소통 노력"』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2월 12일자 A21면), 인터넷한국일보 (2월 12일자)]

2010서울조정180~198	김○○ 對 뉴시스, 연합뉴스, 경향닷컴, 노컷뉴스, 뉴스천지, 매경닷컴, 뷰스앤뉴스, 브레이크뉴스, 세계닷컴, 시민일보인터넷, 시사서울닷컴, 인터넷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닷컴, 오마이뉴스, 폴리뉴스, 프레시안, 한강타임즈, 한겨레닷컴, iMBC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뉴시스** : 『민주 "경찰, 지관스님 폭행 공개 사과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7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 **연합뉴스** : 『김포경찰, 스님, 경찰 폭행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 • **경향닷컴** : 『술취한 경관들 스님 폭행 불교계 화났다』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 『"만취 경찰관 스님 폭행, 경기청장 사과하라"』 제하의 기사 • **뉴스천지** : 『술 취한 경찰이 스님 '폭행' … 불교계 강력 반발』 제하의 기사 • **매경닷컴** : 『주지 스님이 경찰과 서로 폭행 '입건'』 제하의 기사 • **뷰스앤뉴스** : 『민주 "경찰, 4대강 반대 스님 사찰하다 폭행?"』 제하의 기사 • **브레이크뉴스** : 『만취 경찰, '4대강 반대' 스님 폭행 … 불교계 거세게 반발』 제하의 기사 • **세계닷컴** : 『"만취경찰 스님 폭행" … 뿔난 불교계』 제하의 기사 • **시민일보 인터넷** : 『심야 만취 경찰관 스님 집단폭행』 제하의 기사 • **시사서울닷컴** : 『경찰, '4대강 반대' 지관스님 폭행 … 민주당, 불교계 '반발'』 제하의 기사 • **인터넷 아시아경제** : 『만취한 경찰, '4대강 반대' 스님 폭행』 제하의 기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 『조계종, '스님 폭행' 경기경찰청 항의방문 … 진상규명 요구』 제하의 기사 • **오마이뉴스** : 『조승수 "지관스님 폭행, 국회 차원 진상조사할 것"』 제하의 기사 • **폴리뉴스** : 『경찰, '4대강 반대' 지관스님 폭행 파문 … 정치권 비상한 관심』 제하의 기사 • **프레시안** : 『만취 경찰의 스님 폭행 … 불교계 뿔났다』 제하의 기사 • **한강타임즈** : 『민주당 논평, 경찰청장은 지관스님 폭행에 공개 사과하고, 정치사찰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 **한겨레닷컴** : 『경찰이 '4대강 반대' 지관스님 폭행 '성난 불교계'』 제하의 기사 • **iMBC** : 『만취 경찰관 지관스님 폭행 … 불교계 '강력 항의'』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기사에서 '승려'라는 예삿말 대신 '스님'이라는 높임말을 써서 "경찰관들이 지관스님을 폭행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199~2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조선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파업으로 증명된 방만경영』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3면)
신청인주장	철도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송에 차질이 없었다는 것은 과잉인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필수업무 분야의 파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7	정순열 對 광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민주당 공천 관문 누가 뚫을까"』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고흥군수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9일자 5면)

2010서울조정201~207	최○○ 對 뉴시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홀라당 꼴깍 … '교수와 여제자' 가 뭐기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08~214	최○○ 對 마이데일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전라 연극 '교수와 여제자' 최○○ 하차, 이탐미로 교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2) 『전라 연극 '교수와 여제자' 노출 수위 높여 부산공연 돌입』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15~219	최○○ 對 매경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알몸 연극 '교수와 여제자', 이탐미 투입 … "좀 더 노골적 공연될 것"』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20~225	최○○ 對 인터넷 맥스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전라 연극 '교수와 여제자' 하차한 최○○에게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2) 『교수님은 왜 최○○에서 이탐미로 "여제자"를 바꿨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26~228	최○○ 對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다음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알몸, 성행위 연기 몰카소동" … '교수와 여제자' 최○○, '이탐미' 로 교체된 사연은?』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4일자) (2) 『"얼마나 야할까?" … '파격 성 묘사' 선보일 교수와 여제자, 최○○ 대신 이탐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3) 『"부산에선 더 야하다" … 교수와 여제자, 최○○ 대신 이탐미 "얼마나 야하길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4) 『노골적인 성행위? … 최○○ 하차한 '교수와 여제자', 이탐미로 '주로' 대체 왜?』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5) 『"부산에 떴다?" … 최○○ 떠나고 이탐미 뜬 교수와 여제자, 얼마나 야하길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조 정 대 상	(6) 『"더 야하다?" … 최○○ 대신 이탐미 '교수와 여제자' 열연 기대,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7) 『"얼마나 야하길래?" … 교수와 여제자, 최○○ 대신 이탐미 "대체 왜?"』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8) 『"더 야해진다?" … 교수와 여제자 '최○○ 떠나고 이탐미 오고' "얼마나 야해?"』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29~230	최○○ 對 문화저널21, 네이버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교수와 여제자' 이번엔 몰카 소동 최○○ 입원』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2) 『'교수와 여제자' 이번엔 몰카 충격 최○○ 하차 이탐미 교체 투입』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31~232	최○○ 對 다음, 야후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교수와 여제자' 이번엔 몰카 충격 최○○ 하차 이탐미 교체 투입』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33~235	최○○ 對 스포츠서울TV, 네이버,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탐미 '교수와 여제자' 파격적인 성행위 궁금증』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36~240	최○○ 對 시사서울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교수와 여제자' 최○○ 성행위 연기 장면 디카 촬영 '앗 뜨거!!'』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2) 『'교수와 여제자' 여배우 최○○, 불안증세 호소 뒤 입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3) 『연극 '교수와 여제자', 부산으로 간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41~242	최○○ 對 인터넷 아시아 투데이닷컴, 네이버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알몸연극 '교수와 여제자', "동영상 촬영, 너무 몰지각"』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43~245	최○○ 對 네이트,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교수와 여제자' , 몰카충격 최○○ 하차 이탑미 교체투입』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46~257	육○○ 對 서울신문NTN,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브리트니 머피로 돌아보는 약물 사망 스타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95년 사망한 가수 故 김성재가 약물복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듀스 전 멤버 故 김성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2010서울조정258~26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조선일보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야합 비난" 민노총의 이중성』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9일자 A4면)
신청인주장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가 노사정 합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디지틀 조선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A12면)

2010부산조정3~5	최○○ 對 굿데이스포츠, 네이버, 다음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교수와 여제자' , 최○○ 하차 – 이탑미 투입 부산공연 노출 수위 UP』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부산조정6~7	일산아파트1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對 울산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조합이 200억원 추가 부담키로』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일자 2면) (2) 『일산APT 1지구 재건축 '난항' 』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6일자 6면) (3) 『일산APT 1지구 재건축 기공식 강행』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건축사업을 공식을 강행하는 등 내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261~262	전국철도노동조합 對 조선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파업으로 증명된 방만경영』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3면)
신청인주장	철도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송에 차질이 없었다는 것은 과잉인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필수업무 분야의 파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A12면)

2010서울조정263	국무총리실 對 신동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문건에 나타난 MB 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호 82~91면)
신청인주장	세종시 원안 추진 시에도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

2010강원조정1	현대제철석회석저장시설반대대책위원회 對 강원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 협의체 결성』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석회석화물 동해항유치를 위한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단체는 주민협의체 결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내용: 2010년 2월 19일자 A20면)

2010강원조정2	전○○ 외 11인 對 강원도민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이금선 여경협 강원지회장 재추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6면)
신청인주장	이금순 현 회장이 여성경제인엽합회 강원지회 회장에 재추대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임시총회시 정족수 미달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협회 규정상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재추대에 관한 논란이 있더라도 그것은 여경협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언론사가 정정할 사안은 아니다.)
경 과 사 항	『"현 여경협 회장직은 임시" 강원지회 일부 회원 주장』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7일자 경제면)

2010강원조정3~5	최○○ 對 인터넷강원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교수와 여제자 최○○ 대신 이탐미 투입 … 노출 수위 높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전북조정2~3	오○○ 對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일보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 **전북일보** : 『"선생님이 학생싸움 부추기며 욕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4일자 6면) • **인터넷 전북일보** : 『"선생님이 학생끼리 싸우라며 욕" 진위여부 논란 예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경찰에 고발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전북일보** : 『"교사가 학생싸움 부추긴다" 돈 노린 거짓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6면) • **인터넷 전북일보** : 『교사가 학생싸움 부추긴다 고발 … 경찰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2010서울조정264~266	임○○ 對 기독교성결신문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유지재단 밀실인사와 비리』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7면) (2) 『총회보고서에 드러난 재정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불법으로 채용되어 교단 총무보다 더 높은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기독교성결신문 홈페이지의 뉴스홈 동일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유지재단 관리실장, "총회보고서 재정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7면)

2010경기조정8~15	(주)경기방송 對 경기도민일보, 경도신문, 다음, 수도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경기도민일보** : (1) 『작년 28억, 올 10억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2) 『청취율 자료제공 요청 거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1면) • **경도신문** : 『지역방송 예산 '몰아주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11면) • **다음** : (1) 『지역방송 예산 '몰아주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2) 『방송사 특혜논란 '주먹구구' 해명』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 **수도일보** : (1) 『경기도, K지방방송사와 협약 혈세 낭비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2) 『경기 "특혜의혹 지방방송 재계약 신중검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기도민일보 · 경도신문 · 수도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 **경기도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14면) • **경도신문** : 『정정보도문, '지역방송 예산 몰아주기 논란'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11면) • **수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15면)

2010경기조정16~27	(주)경기방송 對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오늘신문, 인터넷 오늘신문, 우리일보, 전국매일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수도권일보** : (1) 『낮은 청취율 불구 '듬뿍', 경기도, 지방방송사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5면), (2) 『경기도, 지방방송 특혜 논란 계속』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1면) • **시대일보** : 『경기도, 캠페인 제작 '혈세 펑펑'』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2면) • **오늘신문** : 『작년 28억원 올해 1개 프로에 10억 협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4면) • **인터넷 오늘신문** : 『작년 28억원 올해 1개 프로에 10억 협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 **우리일보** : (1) 『작년 28억원 올해 1개 프로에 10억 협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2) 『경기도, 방송사 재계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1면) • **전국매일** : (1) 『청취율 낮은 지방방송사 예산 대폭지원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6면), (2) 『"내년 재계약 신중 검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수도권일보 · 우리일보 · 전국매일** : ▷ 정정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게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오늘신문**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인터넷 오늘신문**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시대일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방법 • **인터넷 오늘신문** : 메인화면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 **수도권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15면) • **시대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2면) • **오늘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14면) • **인터넷 오늘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 **우리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1면) • **전국매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6면)

2010서울조정267	이○○ 對 프라임경제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1) 『광주대교구, 임동성당 사태 해명 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7일자) (2) 『임동성당 신도들 성체의식 거부 왜?』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3) 『[포토]임동성당 신도들 대주교에게 거센 항의』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4) 『[포토]광주대교구 신부들 신도들과 몸싸움 벌여』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조 정 대 상	(5) 『[포토]임동성당 미사도중 신도들 집단항의 '거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6) 『[포토]임동성당 신도들 미사 중 성체의식 거부』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7) 『[포토]임동성당 비리의혹 농성 5일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8) 『임동성당 횡령 진실게임 2라운드 돌입』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2일자) (9) 『[기자수첩]무서운 신부님과 순수한 신자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6일자) (10) 『공금횡령 '의혹' 임동성당, 사목회 등 진실규명 '촉구' 』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5일자) (11) 『광주대교구 임동성당 베일 속 회계 관리』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7일자) (12) 『 '천주교 광주대교구 진실공방' 법정으로 이어지나』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3일자) (13) 『천주교 광주대교구 드러나는 의혹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8일자) (14) 『천주교 광주대교구 진실공방 '의혹' 』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임동성당 사무장으로 재직하던 신청인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사유 : 추후보도 게재, 피신청인과 기사전재계약을 맺은 포털에 게시된 각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부제소) ※ 이행방법 : 7일간 프라임경제 초기화면 중앙목록에 추후보도문의 제목 표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 연결, 추후보도문을 각 조정대상기사와 동일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천주교 광주대교구 임동성당 회계부정 의혹,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2010제주조정3	(주)한라에너지 對 제민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한라LPG충전소 또 부실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4면) (2) 『<사설> 규명되어야 할 LPG 부실공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1일자 2면) (3) 『가스공사 부실여부 확인 모르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1일자 4면) (4) 『<사설> 가스안전공사의 안일한 안전의식』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2일자 2면) (5) 『한국가스공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2일자 4면) (6) 『가스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3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중인 LP가스 충전소의 시공과정에서 파일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와 유감표명은 게재할 수 있으나 합의 시 부제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0서울조정268~269	(주)○○식품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상한 음료 먹고 구토" vs "안 마셨잖아"』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두유를 마신 아이들이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2010광주조정8	(유)파인뉴스 對 화순미래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군민 혈세로 화순군, 홍보비 '펑펑' 』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화순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등 군정에 대한 비판보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270~276	1. 경기도, 2. 김문수 對 뷰스앤뉴스, 네이버, 네이트, 드림위즈, 야후, 파란,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도한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 때문에 경기도의 수입이 줄어 재정자립도가 폭락했다고 보도했으나, 부동산 감세정책은 참여정부시절부터 시행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경기도의 입장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관련 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2010서울조정277~278	조○○ 對 일요서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박영준 국무차관 '옥외광고탑' 회의 주재』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옥외광고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해당 보도문 송고, 부제소)
이 행 결 과	『'옥외광고사업 로비의혹'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8일자 6면)

2010서울조정279~286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영진위 심사 의혹 '눈덩이'』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2월 4일자 24면), 한겨레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공모 서류에 모 영화인의 이름을 동의없이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사유 :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0서울조정287~302	(주)한스킨 對 머니투데이, 인터넷 머니투데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비비크림' 한스킨, 유통사업 부진』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0년 1월 28일자 11면), 인터넷 머니투데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2010년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잦은 구조조정으로 팀장급 인력이 대거 교체되거나 퇴사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03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對 문화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 임금동결했다더니 … 복지 포인트로 '눈가림' 대폭인상』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지자체들이 복지포인트를 올려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기사에서 울산이 가장 많이 인상됐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이나 반론보도할 의향이 없다.)

2010서울조정304~305	(사)한국영화감독협회 對 한겨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영화계 우파 '떡고물 과욕'』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자 2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대표적인 영화계 우파단체이며, 기획전을 신청인 협회 시사실에서 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한겨레닷컴의 뉴스홈 동일기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5일자 25면)

2010서울조정306~309	(사)한국영화감독협회 對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영화계 우파 '떡고물 과욕'』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대표적인 영화계 우파단체이며, 기획전을 신청인 협회 시사실에서 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의 자체 옴브즈만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2월 25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2010대전조정2	세종시원주민생계및재보상비상대책위원회 對 세종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일당 3만원에 500여 명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집회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비대위가 궐기대회를 열면서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메인면에 24시간 게재,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에 링크시켜 배치
이 행 결 과	『세종시 수정안 집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5일자)

2010서울조정310~311	세종시원주민생계및재보상비상대책위원회 對 경향닷컴, 한겨레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경향닷컴** : 『세종시 집회 참가자 "돈 받았지만 출처 몰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조 정 대 상	• **한겨레닷컴** : 『세종시 수정안 찬성집회 돈으로 군중 동원』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비대위가 궐기대회를 열면서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닷컴** : 취하 • **한겨레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2010부산조정8	대연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對 부산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밀어붙이기 개발 제동 재건축 · 재개발 시장 대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9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소송 원인을 '백지 재개발 동의서' 때문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312	(주)에스비에스 對 KBS-1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한국이 봉?'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9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로 인해 2006년 월드컵 중계권료가 2002년 대비 233% 인상됐다고 보도했으나, 133%가 맞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뉴스9」 프로그램 중에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9일 21:00)

2010서울조정313~320	국립중앙극장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정부 10억 지원 '이상한 스토리'』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1월 22일자 1면), 경향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하나포스 (2010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요덕스토리'라는 뮤지컬과 관련, 정부가 10억을 지원하고 국립극장 측이 대관을 해준 것은 모두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2면) • **경향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하나포스**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2010서울조정321~328	문화체육관광부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정부 10억 지원 '이상한 스토리'』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1월 22일자 1면), 경향닷컴 · 구글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야후 · 하나포스 (2010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관련해, 정부가 10억을 지원하고 국립극장 측이 대관을 해준 것은 모두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네이버**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구글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하나포스**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경향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하나포스** :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반론보도문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2면) • **경향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하나포스**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2010제주조정4~7	김○○ 對 한라일보, 제주의소리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한라일보** : 『탐라대 '불법매각' 계획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3일자 4면) • **제주의소리** : 『동원학원 전 이사장, 탐라대 150억 '불법매각' 계획 파문』 (2010년 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탐라대를 불법매각하여 과거 횡령했던 교비를 보전하려고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부제소) • **제주의소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제주의소리**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라일보** : 『"탐라대 불법매각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0일자 3면) • **제주의소리** : 『김○○ 전 이사장 "탐라대 '불법매각' 계획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2010서울조정329	국가정보원 對 한겨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MB'맨 국정원장의 MB 향한 헌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0일자 5면)
신청인주장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내가 다 책임질테니 일하라'고 지시하였고, '퇴직직원 접촉 금지령'을 내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6일자 2면)

2010제주조정8~9	동원교육학원 공동비상대책위원회 對 제주의소리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동원학원 전 이사장, 탐라대 150억 '불법매각' 계획 파문』 (2010년 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김○○ 전 이사장의 측근들이며,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전 이사장의 복귀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김○○ 전 이사장 "탐라대 '불법매각' 계획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2010서울조정330	김○○ 對 KBS-1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선진국, 독점방지 대세는 합동방송'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10일 21:00)
신청인주장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계약한 회사는 SBS인터내셔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주체가 서울방송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331~334	전국철도노동조합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09년 12월4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으로 어느 입시생이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했다고 보도했으나, 사건 당일 열차 운행은 조기 정상화되었으므로 학생의 지각과는 무관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피신청인 각 이의신청 (사유 : 보도내용은 사실이므로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중앙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한 뒤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0충북조정5~6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對 인터넷 충청매일, 충청매일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내분』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청매일 (2010년 2월 10일자), 충청매일 (2월 11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합회 회장이 연임을 위해 정관을 무시하고 총회 일정을 늦추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매일**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을 1일 동안 게재, 제목을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게재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충청매일 (2010년 3월 1일자), 충청매일 (3월 2일자 사회면)]

2010강원조정6~8	윤○○ 對 화천인터넷뉴스 (6~7 정정·손배청구), 다음 (8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화천 사내면 광덕 계곡 끊이지 않는 의혹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군으로부터 대여 받은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 여러 건의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 **화천인터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정정보도, 이 사건 보도에서 다룬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의 확정판결 내용이 원보도 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정보도 게재)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대전조정3~5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對 인터넷 충청시대, 온아신문, 충청시대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인터넷 충청시대** : 『시각장애인연합회 내분 심각』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 **온아신문** : 『충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련 내홍』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 **충청시대** : 『시각장애인연합회 내분 심각』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총회날짜를 3월로 결정한 것이 회장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시대** : 핫이슈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게재,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에 링크시켜 배치 • **온아신문** :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게재,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에 링크시켜 배치
이 행 결 과	• **인터넷 충청시대 · 온아신문** :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6일자) • **충청시대** :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6일자 2면)

2010서울조정335~343	국립의료원 對 메디컬투데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중앙의료원 노조 독단적 지방발령은 인사전횡』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법인화를 추진중인 신청인 단체가 소속 간호사를 지방발령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344~346	국립의료원 對 코리아헬스로그, 구글,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의료원, 공무원 신분 유지자들에 인사 횡포』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법인화를 추진중인 신청인 단체가 소속 간호사를 지방발령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코리아헬스로그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구글** : 취하
이 행 결 과	• **코리아헬스로그 · 네이버** : 『국립의료원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2010서울조정347~352	국립의료원 對 헬스코리아뉴스, 구글, 네이버,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명] 여성의 약점을 악용한 거듭되는 인사횡포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법인화를 추진중인 신청인 단체가 소속 간호사를 지방발령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박 성명 게재)
이 행 결 과	『[반박성명] 국립의료원 공무원 노동조합 성명서 관련 해명자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2010경기조정28~29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 이익진 對 인천경향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익진 계양구청장 수사 검토』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구청의 CCTV사업자 선정과 관련, 경찰이 단체장을 수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유감표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에는 각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익진 계양구청장 보도 정정보도문 』 제하의 기사 [인천경향신문 (2010년 2월 26일자 2면), 인터넷 인천 경향신문 (2월 26일자)

2010서울조정353~358	황화성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네이버, 네이트, 야후, 코리아닷컴, 하나포스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선출 불협화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회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정관을 무시하고 총회 일정을 늦추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2010경남조정1~2	함안군 對 The 함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납골묘지 강행 주민 원성』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1면) (2) 『초심으로 돌아갈 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2면) (3) 『상대후보 출마자에 음해성 비방』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4면) (4) 『무사안일 함안군 재무행정 빈축』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함안군청이 과오납 세금을 5년간 방치하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1면)

2010경기조정30~31	정종근 對 경기도민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관급공상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1면) (2) 『자치계약법 위반 특혜 '파장'』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시의회 부회장인 신청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건설회사가 포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경기도민일보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게시, 그 이후에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2면)

2010서울조정359~374	(주)펀스테이션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성남 '펀스테이션 특혜' 사실로』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2월 4일자 14면), 경향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하나포스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내지 않았고, 분양을 통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겨 흑자부도를 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구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문 게재) • **네이버**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문 게재, 부제소)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하나포스**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21~28 참조)] ※ 이행방법 • **경향닷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구글** : 경향닷컴이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구글의 뉴스페이지를 통해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경향닷컴이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 **네이트 · 다음** : 경향닷컴의 정정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 **야후 · 하나포스** : 경향닷컴의 정정보도문이 각각의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2면) • **경향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하나포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2010경기조정32~33	이천에너지(주) 對 이천타임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사설> 폐기물 소각 더 이상은 안 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2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폐기물소각장 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해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요구를 일부 받아들일 용의가 없지 않지만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다른 법적 요구를 포기하여야 한다.)

2010광주조정9	구례군 對 호남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구례군 부패사슬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구례군이 예산을 낭비하고 불법, 편법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 담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1면)

2010서울조정375~377	김○○ 對 더데일리,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한 20대 입건』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78~379	김○○ 對 동아닷컴, 구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 은행경비원 덜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80~383	김○○ 對 BBS불교방송,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BBS불교방송** : 「뉴스」 프로그램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3일 09:16)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84~385	김○○ 對 네이트, 다음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 은행경비원 덜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86~388	김○○ 對 네이트,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애인카드 훔친 뒤 유흥비 탕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2)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 은행경비원 덜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89	김○○ 對 네이트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애인카드 훔쳐 현금 인출』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대전조정6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對 서천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김양식 어민들, 조합장 물러나라』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30일자 2면) (2) 『똥물 뒤집어 쓴 서천군 수협』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8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김 양식 피해 어민들의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했으나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전조정7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對 서천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수협 서천점 전세금 거품』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1면) (2) 『말로만 "다했다"는 서천군수협』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2면) (3) 『<사설> 서천군수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텐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2면) (4) 『수협조합장, 친인척 관련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장 부인 소유의 건물로 이전한 것과 관련 배임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건물의 위치가 좋아 이전했을 뿐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전조정8~9	김○○ 對 TJB－TV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뉴스」 프로그램 '이상한 버스정류장?'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4일 20:26)
신청인주장	신청인 소유 건물 앞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버스 정류장이 엉뚱한 곳에 설치된 이유에 대해

신청인주장	왜곡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 **반론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 이행방법 : TJB 대전방송 「8시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표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8뉴스」 프로그램 '버스 단말기 이전착수 /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2일 20:00)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버스 정류장 이전 관련 반론보도문』

2010경기조정34	손○○ 對 김포미래신문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김포노인복지회관 위탁 참여기관 자격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1면)
신청인주장	김포시노인회 전 회장인 신청인이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입찰에 은밀히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의 충분한 해명을 담아 인터뷰 형식으로 후속보도 게재)

2010경기조정35~36	정○○ 외 5인 對 김포미래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김포노인복지회관 위탁 참여기관 자격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1면)
신청인주장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입찰참여기관의 서류를 복지관 간부들이 대리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내용에 잘못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정정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경기조정37	1. 삼천리권선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부녀회 對 중부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비대위 '수익금 정산내역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23면) (2) 『〈취재파일 365〉 입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영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7 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진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방만한 운영에 참다못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 간에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권선 삼천리 2차 아파트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6일자 2면)

2010서울조정390~391	이○○ 對 매일경제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行試 합격자』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3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행시에 합격하고도 고시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억대가 넘는 연봉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건강과 학업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던 것이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392~407	이○○ 對 매경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行試 합격자』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행시에 합격하고도 고시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억대가 넘는 연봉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건강과 학업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던 것이다.
처 리 결 과	• **매경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드림위즈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 이행방법 • **매경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간 게재, 제목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 표시,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정정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 **구글 · 야후** : 매경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반영하여 조정대상기사 및 정정보도문 검색 시 홈페이지 뉴스면에 노출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매경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 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맨 코너에도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行試 합격자』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2010서울조정408	문형배 對 조선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우리법연구회장 "비밀단체 아니야 … 해체 안할 것"』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소속된 '우리법연구회'가 결성된 이후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정정청구 포기)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2면)

2010서울조정409~410	박윤석 對 종합법률신문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4. 19 단체회장 수억 원 횡령죄로 고발 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3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4.19 단체 회장으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고 보도했으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게시, 부제소)
이 행 결 과	『4. 19 단체 회장 공금횡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7면)

2010광주조정10~15	이○○ 對 인터넷 한국뉴스,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행정고시 합격하고도 유명학원행』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행시에 합격하고도 고시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억대가 넘는 연봉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건강과 학업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던 것이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한국뉴스**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다.) • **드림위즈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경 과 사 항	• **인터넷 한국뉴스** : 『'행정고시 합격하고도 유명학원행'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8일자)

2010제주조정10~12	김○○ 對 시사제주,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은행경비원 덜미』 제하의 기사 [시사제주 (2010년 2월 23일자 4면), 드림위즈 · 파란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전북조정4~5	(주)써미트 對 진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부귀 골프장 허가권 취소요구』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 부귀면 골프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유류대금 및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내용은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및 손배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411~413	대한미용외과학회 對 KBS-2TV(411~412 정정 · 손배청구), KBSi (413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비전문의 성형수술... 부작용 속출' 제하의 보도 [KBS-2TV (2010년 2월 5일 08:00), KBSi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도했으나, 불법이 아니며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대구조정1	이동관 對 경북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靑 "세종시 관련 대구 · 경북 언론논조 불만 많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 · 경북지역 언론사들의 논조에 불만을 표하면서 'TK X들' 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를 게재할 수는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
경 과 사 항	『정정보도문… '이동관 수석, 저속한 표현했다' 와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7일자 3면)

2010서울조정414~415	강○○ 對 KBS – 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아침마당」 프로그램 (2010년 3월 3일 08:25)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이름이 보도에서 언급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416~420	북짱(주)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네이버, 네이트,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X새끼' 'XX년' … 너한테 안 팔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상품의 박스에 욕설이 적혀있어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29~38 참조)] ※ 이행방법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게시,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이어서 게시 • **네이버 ·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인 '정정 · 반론 등 게재' 란에 게시 • **야후 · 하나포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 표시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9일자)

2010대전조정10	신○○ 對 시사보령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2억원 가로챈 목사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인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2일간 추후보도문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 게재
이 행 결 과	『2억원 가로챈 목사구속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2010서울조정421~430	(사)무예24기보존회 對 데일리안 (421~422 정정 · 손배청구), 고 (423 정정청구), 네이버 (424 정정청구), 네이트 (425 정정청구), 다음 (426 정정청구), 드림위즈 (427 정정청구), 야후 (428 정정청구), 파란 (429 정정청구), 하나포스 (430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경기도의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 문제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2) 『십팔기냐? 24기냐? <4>』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조 정 대 상	(3) 『국가와 국민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및 무예 '24기'가 좌파정권의 개혁코드에 맞춰 급조된 것이며, '18기'의 모조품이라고 폄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데일리안 · 고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하나포스**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박기고문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데일리안** : 신청인의 기고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게재, 초기화면 중앙목록에 3일간 게재, 제목 검색 시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해당 기고문을 링크시킴 • **고 · 다음** : 데일리안이 신청인의 기고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하나포스** : 데일리안이 신청인의 기고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431~435	안성경찰서 對 내일신문, 인터넷 내일신문, 구글,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경찰강압 못이겨 허위자백' 무혐의 석방』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0년 2월 11일자 20면), 인터넷 내일신문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2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에서 구속 수사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석방된 것은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때문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 **내일신문 · 인터넷 내일신문**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0년 3월 18일자 20면), 인터넷 내일신문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3월 17일자)]

2010광주조정16	이○○ 對 호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양어장 물고기 다 죽이고 되레 명예훼손』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동종업자가 운영하는 인근 양어장의 물고기를 몰살시킨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양어장 물고기 다 죽이고 되레 명예훼손'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9면)

2010대구조정2	남○○ 對 포항MBC-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선상 결사 항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일 21:00)
신청인주장	최근 대게 불법 포획이 심각하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250만원)

2010전북조정6~8	이○○ 對 소통신문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타지역의 비웃음 산 '익산문화재단'』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J시문화재단에서 무능력한 인물로 평가되었는데도 익산문화재단의 정책연구실장으로 선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436~437	최○○ 對 도시재생신문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냉천동 종교 부지, 비리 종합선물세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개발 지역의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신청 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정대상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결과 혐의없음(일부 혐의없이 인정된 경우도 포함)이 인정된 경우 추후 보도

2010서울조정438~439	최○○ 對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충정로 냉천구역 재개발, 종교 부지에 얽힌 비리 때문에 표류』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개발 지역의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신청 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2010서울조정436~437 조정성립 내용 참조)

2010서울조정440~441	최○○ 對 데일리 노컷뉴스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조합장 비리는 통과의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개발 지역의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신청 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2010서울조정436~437 조정성립 내용 참조)

2010서울조정442~449	최○○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비리로 얼룩진 재개발…줄줄이 올스톱』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개발 지역의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신청 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수사결과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신청인이 이를 문서로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노컷뉴스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박스기사를 게재하고,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노컷뉴스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포함하여 송고하였을 경우 뉴스검색 화면에 노출

2010서울조정450~451	박○○ 對 KBS-2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두 살부터 키 크는 약 복용?'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25일 08:20)
신청인주장	신청인 한의원을 몰래카메라로 취재하여 한의원의 치료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도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시된 VOD(다시보기) 및 스크립트의 일부 내용 삭제

2010제주조정13~14	차○○ 對 제주KBS-1TV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왕절개 출산 도중 산모 · 태아 숨져'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7일 19:00) (2) 「뉴스9」 프로그램 '제왕절개 출산 도중 산모 · 태아 숨져'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7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와 태아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부검결과 사인은 불치병인 양수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 프로그램에서 추후보도문 방송,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추후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 자료화면임이 명시된 수술실 내부 전경을 사용하되, 이는 신청인 병원의 전경이 아니어야 함
이 행 결 과	「뉴스라인」 프로그램 '제왕절개 출산 도중 산모 · 태아 숨져'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5일 11:40)

2010제주조정15~16	차○○ 對 제주의소리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제주 산부인과서 제왕절개 수술 받던 산모 · 신생아 사망』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와 태아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부검결과 사인은 불치병인 양수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목록에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조정대사기사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제주 모 산부인과 분만 중 산모 · 태아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4일자)

2010경남조정3	박○○ 외 22인 對 뉴스앤거제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대우노조 "연수원 부지매입 의혹 많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2) 『대우노조 연수원 부지 건물신축 안되는 줄 알면서도 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우조선노조 전임 집행부가 건축이 불가능한 땅임을 알고도 연수원 부지로 매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대우노조 연수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2010서울조정452~454	이○○ 對 신동아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광화문 광장 · 세종문화회관은 복마전" 오세훈 행보도 석연치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호 92~10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세종문화회관 사장 재직시 관련 공사를 지인에게 맡기고 친구 아들의 채용을 지시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해 보도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의 반론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충북조정7	(주)파이온텍 對 충북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오송 '1호 입주' 파이온텍 사옥 건축대금 지급 마찰』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2면) (2) 『파이온텍 공사비 마찰 '진실게임'』 (2010년 2월 1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하청업체들에게 신축사옥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계약서 및 사채 주선 등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455~458	한○○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그들만의 왕국' 지자체 대해부] [3 · 끝] 감사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2월 8일자 A3면), 디지틀조선일보 (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천시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에 관급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거액을 챙겼고, 타인 명의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수뢰혐의 부천시 전국장 … 1심에서 무죄 판결』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3일자 A12면, 디지틀조선일보 (3월 23일자)]

2010서울조정459~462	전국철도노동조합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백기투항했던 철도노조 또 열차 세우나』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0년 3월 5일자 15면), 한경닷컴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대의원회의를 열어 3차 파업을 결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463, 493	고○○ 對 미디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한국화보' 표지 2종으로 제작하다 딱걸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월간지를 발간하면서 이중 표지를 제작하고 취재원에게 잡지를 강매하거나 금품을 요구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간 게재, 제목을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0서울조정464	대한불교조계종 對 불교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아이티 참사' 불교계 역할을 주목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전력공사의 아이티 지진 현장 의료지원단 공동 봉사 제안에 신청인 단체가 무응답이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런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조계종 보도와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2일자)

2010경기조정38	이○○ 對 OBS경인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찰 25시」 프로그램 (2010년 3월 8일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어머니의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이 유족의 동의없이 보도되었고, 살아생전 신청인의 어머니의 사진이 유족의 동의없이 공개되어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중재액 100만원, 유감표명 (내용 : 2010경기중재1 참조)]
이 행 결 과	「경찰 25시」 프로그램 '고인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3:00)

2010서울조정465	서울특별시 對 경향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박홍규 칼럼] 무상급식은 인권이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30면)

신청인주장	서울시의 연간 예산 20조원 중에 무상급식 예산은 1원도 없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고문 게재)
이 행 결 과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없다'는 글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9면)

2010서울조정466~467	신○○ 對 KBS-2TV, KBSi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무한지대큐」 프로그램 '2010 벼룩시장속으로'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0일 19:20)
신청인주장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KBS-2TV :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200만원, 부제소) • KBSi :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시, 부제소)

2010서울조정468~469	(주)홀랄라 對 MBC-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수상한 치킨'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17일 18:5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튀김전용유에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지 않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프로그램 중에 반론보도문 보도, 진행자 중 1인이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처리
이 행 결 과	「불만제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31일 18:50)

2010서울조정470~471	김○○ 對 SBS-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추적」 프로그램 '아파트 관리비 눈 먼 돈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0일 23:20)
신청인주장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신청인이 추천한 업체에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후 해당 업체가 도주하는 등 각종 잡음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로그램 말미에 자막 처리하여 반론보도문 보도,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뉴스추적」 프로그램 '아파트 관리비 눈 먼 돈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31일 23:15)

2010대전조정11~12	1. (사)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2. 리헌석 對 중도일보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대전예총' 약칭 사용 제동』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한국예총 대전연합회가 사용하던 '대전예총'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연합회는 '대예총'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대전예총' 약칭 사용 제동"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6면)

2010대전조정13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對 대전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6천원 짜리를 50만원에 납품』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밭수목원이 식물원을 조성하면서 수목의 가격을 부풀리고, 수목식재공사를 발주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선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472	(주)경기방송 對 선경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경기도, 특정방송사에 10억 지원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청취율이 낮은 지역라디오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예산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9일자 4면)

2010서울조정473~475	(주)경기방송 對 아시아일보,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道 "도민홍보, 지방방송사 한 곳 만"』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1월 12일자 6면), 네이트 · 다음 (1월 12일자)] (2) 『경기도 '청취율 낮은 지방방송사 특혜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1월 19일자 15면), 네이트 · 다음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청취율이 낮은 지역라디오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예산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일보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네이트**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3월 19일자 6면), 다음 (3월 18일자)]

2010서울조정476~479	(주)경기방송 對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경기도, 지난해 1개 프로에 28억원 올해도 10억 협약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2) 『경기도, 특혜의혹 지방방송 내년 교통홍보협약 신중 검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청취율이 낮은 지역라디오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예산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투데이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 **아시아투데이 · 네이버**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8일자)

2010서울조정480	(주)경기방송 對 현대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특정 라디오방송사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청취율이 낮은 지역라디오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예산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1면)

2010서울조정481~482	박○○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교사가 교무실서 교장 · 교감 폭행』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3월 11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483~484	박○○ 對 뉴시스, 다음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영광서 고교 현직 교사가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485~487	박○○ 對 연합뉴스, 네이버, 야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이런 하극상이.." 영광서 교사가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2010서울조정488~489	박○○ 對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교장 등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충북조정8	장○○ 對 청주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부 비판글 올린 현직경찰관 파면' 제하의 보도 (2009년 10

조 정 대 상	월 26일 20:12) (2) 「6시 뉴스매거진」 프로그램 ‘‘정부비판’ 경찰간부 파면 ‘논란’’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7일 18:35)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면조치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위한 의견개진이었을 뿐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파면 ‘경찰간부’ 해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1:00)

2010광주조정17~23	박○○ 對 무등일보, 광남일보, 남도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신문, 일간 호남일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무등일보** : 『영광서 교사가 교장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6면) • **광남일보** : 『평교사가 교감 ·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19면) • **남도일보** : 『영광서 고교 교사가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8면) • **전남매일** : 『교사가 교감 ·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7면) • **전남일보** : 『 ‘학교업무 갈등’ 교사가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6면) • **호남신문** : 『영광서 고교 현직교사 업무불만 ‘교장폭행’ 』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7면) • **일간 호남일보** : 『영광서 고등학교 교사가 교장 폭행 하극상』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 **무등일보 · 광남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남도일보 · 전남일보 · 호남신문 · 일간 호남일보** : 각 취하 • **전남매일**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무등일보** : 『반론보도문 “평소에도 성실히 근무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6면) • **광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19면) • **전남매일** : 『폭력행사 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7면)

2010경기조정39	(주)경기방송 對 경인종합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道, 청취율 낮은 지방방송사 특혜 ‘잡음’ 』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경인종합일보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09:00부터 1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인종합일보 (2010년 4월 2일자 1면),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2010년 4월 1일자)]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 제목 : 『”道, 지방 방송사에 특혜 ‘잡음’ ” 보도 바로잡습니다』

2010서울조정490	박근혜 對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정수장학회 등 엄청난 금전적 유산을 물려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1일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바로잡습니다> 제하로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각 포털사로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2010서울조정491	광명시 對 신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광명, LED 간판 교체사업 실패?』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문제가 있는 기업에 간판시공을 맡기고,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1)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8면) (2) 『"광명, LED 간판 교체사업 실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8면)

2010서울조정492	윤○○ 對 MBC-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제매거진M」 프로그램 '걱정 없는 노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3일 08:20)
신청인주장	신청인 남편의 급여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시된 VOD(다시보기) 중 [수입 ○○○만원] 부분에 관한 화면 및 음성 설명에 대하여 모자이크 및 음성 삭제 처리

2010서울조정494	(주)이즈피엠피 對 신동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친이계 핵심' 정태근 의원 부인 회사 MB정권 들어 컨벤션 업계 1위 '대박' 』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호 92~9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는 친이계 국회의원 부인의 회사로서 MB정권 들어 매출이 급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가능하나 정정보도는 불가하다.)
이 행 결 과	『정태근 의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호 106면)

2010제주조정17~20	양○○ 對 제주일보, 인터넷제주일보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제주대 직원 법인카드로 공금 횡령』 제하의 기사 [제주일보 (2009년 10월 26일자 4면), 인터넷 제주일보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인터넷 제주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부에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제주일보 (2010년 3월 29일자 2면), 인터넷 제주일보 (3월 29일자)]

2010제주조정21~24	양○○ 對 한라일보, 인터넷 한라일보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제주대 공금은 눈먼돈?』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09년 10월 27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라일보** :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0년 3월 29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3월 29일자)]

2010제주조정25~26	양○○ 對 제주MBC-TV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제주대 교직원이 공금횡령'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7일 07:20)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제주대 교직원이 공금횡령'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7일 21:40)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데스크(제주)〉 및 〈뉴스투데이(제주)〉 TV 프로그램과 〈정오뉴스〉 라디오 프로그램 말미에 추후보도문을 각 방송, 제목은 TV 방송화면 하단부에 자막 표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각 방송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전달
이 행 결 과	• **제주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1:5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30일 07:50) • **제주MBC-R** : 「정오뉴스」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0일 12:10)

2010제주조정27~28	양○○ 對 제주KBS-1TV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교직원이 '카드깡'으로 공금 횡령'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6일 19:30)

조 정 대 상	(2) 「뉴스9」 프로그램 '대학 직원 거약 공금횡령.. 대학은 '쉬쉬''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6일 21:30) (3)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9년 10월 27일 07:15)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저녁 네트워크(제주)〉 및 〈뉴스9(제주)〉 TV 프로그램과 〈12시뉴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추후보도문을 각 방송, 제목은 TV 방송화면 하단부에 자막표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은 각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신청인에게 각 방송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전달
이 행 결 과	• **제주KBS-1TV** : (1)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양모 씨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19:40) (2) 「뉴스9」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양모 씨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1:50) • **제주KBS-R** : 「정오 종합뉴스」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양모 씨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0일 12:10)

2010제주조정29~30	양○○ 對 KC-TV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KCTV종합뉴스」 프로그램 '교직원이 '카드깡''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6일 19:00, 21:30, 23:00)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KCTV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추후보도문을 3회 방송, 제목은 방송화면 하단부에 자막표시, 추후보도문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이 행 결 과	「KCTV종합뉴스」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19:00, 21:30, 23:00)

2010제주조정31	양○○ 對 제주의소리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1) 『제주대 직원, 법인카드 카드깡 2500만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2) 『간 큰 제주대 여직원, 카드깡 · 공금횡령 1억원 꿀꺽』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검찰,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2010제주조정32~33	양○○ 對 제주투데이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제주대 직원 법인카드로 공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2010제주조정34~35	양○○ 對 미디어제주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제주대, 교직원 수천만원대 공금 횡령 적발』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社告]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처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2일자)

2010제주조정36~37	양○○ 對 시사제주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공금횡령 제주대 여직원 2명 확인 …』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1일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제주대 여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2010제주조정38~39	양○○ 對 이슈제주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공금횡령 제주대 여직원 2명 확인 …』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1일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제주대 직원 양모씨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2010경기조정40~41	박○○ 對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교장 등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기조정42~43	이○○ 對 성남뉴스넷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사기막골 또...골프연습장 추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남시 산하단체 임원이며, 성남시가 신청인에게 선심성 행정을 보인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사기막골 골프연습장 추진' 보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2일자)

2010서울조정495	김○○ 對 신동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前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박근혜 죽이기 TF팀 실제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호 82~91면)
신청인주장	국정원 고위간부였던 신청인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측과 결탁, 박근혜 조사전담 TF팀의 배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감찰조사등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가능하나 정정보도는 해줄 수 없다.)

2010서울조정496~499	양○○ 對 노컷뉴스, 연합뉴스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제주대 교직원 카드깡으로 공금 빼돌려』 제하의 기사(2009년 10월 26일자) • **연합뉴스** : 『제주대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드깡..거액 횡령』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39~40 참조)] ※이행방법 • **노컷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를 완료한 후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 기사의 하단부에 이어서 게시 • **연합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인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 **연합뉴스** :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2010서울조정500~508	1. 이○○, 2. 이□□ 對 뉴시스(500), 네이버(501, 504, 506), 네이트(502), 디지틀조선일보(503), 연합뉴스(505), 다음(507), 이타임즈(508)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뉴시스 · 네이버 · 네이트** : 『경찰조사받고 귀가한 50대 음독 뒤 숨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청소년 성추행 혐의 50개, 죄책감에 음독자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 네이버 · 다음 · 이타임즈** : 『청양서 경찰 조사받은 50대 음독』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 **이타임즈** : 『청양서 경찰 조사받은 50대 음독 사망』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고등학생인 신청인들이 이웃 5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509	(주)안이추 對 신이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광명, LED 간판 교체사업 실패?』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설치한 LED간판이 시공한지 6개월도 안돼 전구가 나가는 등 싸구려 물건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광명, LED 간판 교체사업 실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8면)

2010충북조정9~11	1. 이○○, 2. 이□□ 對 충청일보, 다음, 네이버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찰 조사받은 50대 음독』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0년 3월 9일자 사회면), 다음 · 네이버 (3월 9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생인 신청인들이 이웃 5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

2010대전조정14~18	1. 이○○, 2. 이□□ 對 중도일보, 구글, 청양신문, 대전MBC-TV, TJB 대전방송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중도일보 · 구글** : 『청소년 성추행 혐의 50대 경찰조사 받고 음독 자살』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0년 3월 10일자 5면), 구글 (3월 10일자)] • **청양신문** : 『성추행혐의 50대 음독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5일자 경제사회면) • **대전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추행혐의 조사받은 50대 음독 사망'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9일 21:40) • **TJB 대전방송** : 「TJB 8뉴스」 프로그램 '성추행 조사 50대 음독자살 기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9일 20:51)
신청인주장	고등학생인 신청인들이 이웃 5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

2010경기조정44~45	과천시 對 과천저널, 과천문화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재건축 · 행정 낭비 · 기간지연 · 예산누수 막아야』 제하의 기사 [과천저널 (2010년 2월 22일자 1면), 과천문화신문 (2월 2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서울시와 달리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모두 수립함으로써 재건축 관련 예산 누수, 기간소요 및 행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서울시의 일정지구 역시 정비계획 수립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510	1. 정태근, 2. 한○○ 對 신동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친이계 핵심' 정태근의원 부인 회사, MB정권 들어 컨벤션업계 1위 '대박'』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호 92~99면)
신청인주장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이즈피엠피'라는 컨벤션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정태근 의원 덕분에 업체가 급성장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신동아> '밀착취재' 면에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정태근의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호 106면)

2010서울조정511	기륭전자㈜ 對 인터넷 위클리경향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2010 연중기획] 비정규직 근로자는 '21세기 전태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기륭전자 노조' 라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조조합원으로 보도된 박모 씨는 신청인회사 소속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기륭전자, "우리는 노조가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2010서울조정512	정정길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여권 수뇌부, 4대강에 맞선 천주교 성토』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인사들에 대해 '반대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한겨레닷컴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해당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4월 6일자 2면), 한겨레닷컴 (4월 6일자)]

2010경남조정4~5	최○○ 對 창원MBC-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이 많은 경남의 한 동네의원'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3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이 항생제 처방을 남용한다고 보도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2009년 상반기 동일규모의원 평균보다 항생제 처방률이 낮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사과서신, 인터뷰) ※ 이행방법 : <뉴스데스크> 로컬 뉴스 프로그램 말미(스탭 스크롤이 나오기 전)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방송화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자막으로 명기하고 조정대상 방송화면이 상단 우측 박스 안에 계속 표시되도록 함, 정해진 기일까지 뉴스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에 의약전문가의 인터뷰 형식으로 피신청인의 인터뷰를 10여초 이상 내보낼 것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항생제 오남용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9일 21:30)

2010경남조정6~7	황철곤 對 창원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광장」 프로그램 '거액 뇌물수수 황철곤 시장 측근 영장 청구'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2일 07:30) (2) 「뉴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거액 수수 단체장 선거운동원 등 구속'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2일 19:20) (3) 「뉴스9」 프로그램 '거액 수수 단체장 선거운동원 등 구속'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2일 21:30)
신청인주장	토석채취허가를 빌미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모씨가 마산시장으로 재직중인 신청인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광장〉과 〈뉴스9〉 프로그램 중간(스탭 스크롤이 나오긴 전이어야 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화면은 진행자를 비추는 동시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명기, 배경화면은 원 조정대상방송의 화면을 내보내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뉴스 화면 하단에 스크롤로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1) 「뉴스광장」 프로그램 '검찰, 황 시장 토석채취 사건과 관련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9일 07:39)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검찰, 황 시장 토석채취 사건과 관련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9일 21:30)

2010경남조정8~9	황철곤 對 창원MBC-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황철곤 시장 측근 구속영장 청구'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1일 21:30)
신청인주장	토석채취허가를 빌미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모씨가 마산시장으로 재직중인 신청인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유감표명, 인터뷰,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로컬 뉴스 시작 후 3번째 꼭지 이내 아이템으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화면은 진행자를 비추는 동시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명기, 배경화면으로 원 조정대상방송 화면 중 부산지검 화면을 내보낼 것, 신청인이 원하는 시점에 뉴스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에 피신청인의 인터뷰를 10초 이상, 2회 이상 내보낼 것, 구체적인 내용과 방송시기 등은 별도 합의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검찰, 황 시장 토석채취 사건과 관계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12일 21:00)

2010서울조정513~522	김○○ 對 CNBNEWS, 네이버, 네이트,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고등학생의 '장애인괴롭히기' 동영상 유포 '충격' ..』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23~528	김○○ 對 KBS-1TV,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2일 22:10) • **다음 · 파란** :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KBS-1TV를 제외하고 모두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29~538	김○○ 對 YTN,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YTN** :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논란'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3일 11:00)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39~544	김○○ 對 연합뉴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천안 모 고교 홈피 장애인 괴롭히는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45~550	김○○ 對 공무원뉴스, 네이트,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속 고교생, 사과가 과연 진심일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51~560	김○○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충남 교육청, 장애인 괴롭힌 학생 징계키로』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61~568	김○○ 對 뉴스엔,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담배피고 욕하고...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69~578	김○○ 對 뉴스천지,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79~586	김○○ 對 디시뉴스,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번엔 장애인 괴롭히기?…잇단 10대 '막장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87~596	김○○ 對 마이데일리,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40대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유포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97~606	김○○ 對 맥스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충격' 10대 청소년 '40대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07~612	김○○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학생이 40대에 욕설".. '장애인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13~620	김○○ 對 시사서울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막장 고등학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개념 나간 10대 학생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21~628	김○○ 對 야시아투데이닷컴,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29~636	김○○ 對 아주경제,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무개념 10대,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37~644	김○○ 對 에이블뉴스, 네이버,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충격』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에이블뉴스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파란**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 **에이블뉴스 · 네이버 · 다음** :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645~654	김○○ 對 투데이코리아,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이든 지적장애인 괴롭히기, '담배 강요' 거부시 협박』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부산조정9~14	김○○ 對 인터넷 부산일보, 네이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고등학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장』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부산조정15~18	김○○ 對 굿데이스포츠, 네이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0대의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충격'』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대구조정3~4	박○○ 對 경도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구에도 교육비리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고교 검도부 감독인 신청인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선수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1면)

2010대전조정19~22	손○○ 對 대전일보, 네이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대전일보** : 『대학병원 교수 자살 왜?』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1면) • **네이트** : 『지역 대학병원 고위 보직교수 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대전일보** : 조정성립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 **네이트** : 조정성립 (사유 : 대전일보가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은 전송시점부터 뉴스면에 1주일 동안 검색 가능하도록 함, 이후 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대전일보 (2010년 4월 23일자 2면), 네이트 (4월 28일자)]

2010경기조정46~55	김○○ 對 인터넷 경인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유포 '입시교육보다 인성교육 먼저...' 』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55~656, 660~675, 684~687	손○○ 對 동아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연합뉴스,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디지틀조선일보, 한겨레닷컴, 인터넷 한국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학병원 교수 자살 놓고 의료계 '술렁'』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동아닷컴** : 기각결정 (사유 : 피신청인은 사건 보도에 있어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의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아시아투데이닷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연합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구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연합뉴스가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송부되는 즉시 뉴스면에 검색되도록 함,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연합뉴스가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송부되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부제소) • **야후**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연합뉴스가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송부되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부제소) • **디지틀 조선일보 · 한겨레닷컴 · 인터넷 한국일보**: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사회면 상단 주요기사 목록에 동일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에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최소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정정보도문 및 조정대상기사 삭제 • **한겨레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상단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사회면 기사목록에 동일 제목을 박스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인터넷 한국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사회면 상단 주요기사 목록에 동일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는 삭제
처 리 결 과	• **아시아투데이닷컴** :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2일자) • **연합뉴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알림〉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6일자) • **디지틀조선일보** : 『대학병원 자살교수 의약품 리베이트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한겨레닷컴** :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9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알립니다]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9일자)

2010서울조정657	손○○ 對 메디파나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지방 C대학병원 과장 리베이트 조사후 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 결정 (사유 :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원 조정대상기사가 부재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메일을 통한 피신청인의 기사배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 없다.)

2010서울조정658~659	손○○ 對 City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학병원교수 자살에 "술렁"』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2일자)

2010서울조정676~683	손○○ 對 코메디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학병원 교수 자살, 의료계 '침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코메디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 **구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코메디닷컴이 정정보도문을 웹상에 전송한 시점부터 구글의 뉴스페이지에서 해당 정정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송부되는 즉시 뉴스면에 검색되도록 함)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네이버 · 네이트**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코메디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최소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코메디닷컴이 정정보도문을 송출한 시점부터 뉴스섹션에서 해당 정정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2010서울조정688~691	손○○ 對 이뉴스투데이,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전지역 대학병원 교수, 자살 시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이뉴스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 이행방법 • **이뉴스투데이** : 홈페이지 종합면 목록에 5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정보도문 삭제, 4월 16일까지 조정대상기사 및 관련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6일자)

2010서울조정692	오○○ 對 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아기띠 '베이비 슬링', 질식사 조심!'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6일 21:00)
신청인주장	미국에서 베이비슬링(서양식 아기 포대기) 제품에 문제가 있어 대규모 리콜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방송해 피해를 당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신청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프로그램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지정기일 혹은 피신청인의 파업 종료시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중 빠른 시일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부 중 1분 30초 상당으로 방송
이 행 결 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 '베이비 슬링'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14일 07:00)

2010서울조정693~695	송○○ 對 뉴시스,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696~697	송○○ 對 공무원뉴스,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698~699	송○○ 對 뉴데일리,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100억원 대 횡령 '덜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및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 『의정부 보람병원 "보람상조 계열사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 『보람상조, 100억원 대 횡령 '덜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00~702	송○○ 對 뉴스웨이,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檢 '100억대 횡령혐의'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신청인주장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스웨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뉴스웨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네이버 · 다음** : 뉴스웨이가 정정보도문을 인터넷에 송출한 시점부터 뉴스섹션에서 해당 정정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9일자)

2010서울조정703~707	송○○ 對 뉴스한국닷컴, 네이트, 독서신문아이,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100억 횡령 혐의 보람상조 압수수색』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뉴스한국닷컴 · 네이트** : 조정대상보도 하단 『[바로잡습니다] '검찰, ' 보람상조 ' 압수수색, 고객 돈 빼돌린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 **독서신문아이 · 네이버 · 다음** :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바로잡습니다]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 고객 돈 빼돌린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7일자)

2010서울조정708~711	송○○ 對 마이데일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 고객 돈 빼돌린 혐의…』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검찰, ' 보람상조 ' 압수수색, 고객 돈 빼돌린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12~715	송○○ 對 민중의소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횡령 혐의』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횡령 혐의' 정정보도』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16~717	송○○ 對 뷰스앤뉴스,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검찰, 국내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7일자)

2010서울조정718~719	송○○ 對 브레이크뉴스,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횡령 압수수색.."올 것이 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보람상조, 횡령 압수수색.."올 것이 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20~723	송○○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압수수색, 100억원대 횡령 혐의 '충격'』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24~727	송○○ 對 CNBNEWS,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그룹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검찰,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그룹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28~729	송○○ 對 와우넷,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대표, 100억원대 횡령혐의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대표, 100억원대 횡령혐의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30	송○○ 對 컨슈머타임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고객돈 100억대 횡령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31	송○○ 對 쿠키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대표, 100억원대 횡령혐의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32~735	송○○ 對 투데이코리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100억 원 빼돌린 혐의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계열사'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36~738	송○○ 對 폴리뉴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100억원대' 횡령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일자)

2010서울조정739~741	송○○ 對 프런티어타임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檢,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 100억대 고객 돈 횡령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의정부 보람병원'은 보람상조 계열사가 아닙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42~744	송○○ 對 프레시안,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100억 원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프레시안**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 · 다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프레시안**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네이버** : 프레시안이 송출하는 정정보도문을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 **다음** : 프레시안이 송출하는 정정보도문을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보람상조, 100억 원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제하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45	송○○ 對 FNN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지검, 보람상조 그룹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746~749	송○○ 對 매경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100억대 횡령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검찰,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100억대 횡령 혐의'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50~753	송○○ 對 서울경제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100억대 횡령 혐의 검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울경제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서울경제닷컴** : 홈페이지 알림면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보람상조 100억대 횡령혐의 압수수색' 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 제목 : 『'보람상조 100억대 횡령혐의 검찰 압수수색' 정정보도』

2010서울조정754~757	송○○ 對 서울파이낸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檢 , 보람상조 압수수색...자칭 '1위' 의 이면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檢 , 보람상조 압수수색...자칭 '1위' 의 이면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58, 774~776	송○○ 對 세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세계닷컴 · 디지틀조선일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각 취하
이 행 결 과	• **세계닷컴** : 『[바로잡습니다] 3월 30일 연합뉴스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 **디지틀조선일보** :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59~761	송○○ 對 스포츠칸,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뻔뻔한 두 얼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보람상조, '뻔뻔한 두 얼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62~765	송○○ 對 인터넷 시민일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압수수색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66~769	송○○ 對 시사서울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100억 대 횡령 의혹 충격』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시사서울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시사서울닷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네이버** : 시사서울닷컴이 송출하는 정정보도문을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 **다음 · 네이트** : 시사서울닷컴이 송출하는 정정보도문을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의정부 보람병원, 보람상조와 무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70~772	송○○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00억원 꿀꺽'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100억원 꿀꺽' 보람상조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73, 781	송○○ 對 ISPLUS, 한겨레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ISPLUS** : 조정대상보도 하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 **한겨레닷컴** : 조정대상보도 하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2010서울조정777~780	송○○ 對 파이낸셜뉴스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지검,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그룹 부회장 체포』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음] "보람병원, 보람상조와 무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82~785	송○○ 對 한경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횡령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횡령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86~789	송○○ 對 헤럴드경제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내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대 빼돌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의정부 보람병원 "보람상조 계열사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경남조정10~11	오○○ 對 남해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자활센터노조, 화방사 주지 불법 주장』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2일자 10면)
신청인주장	화방사 주지인 신청인이 미필적 고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자활센터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유감표명, 후속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 화방사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들의 설립취지, 설립시기, 시설 및 사업계획 등을 담은 기사를 1,000자 분량 이상으로 게재, 신청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검찰 처리 결과 및 자활센터노조에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 처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뒤 보도
이 행 결 과	『화방사 주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3일자 10면)

2010경남조정12~13	1. 창녕군, 2. 김충식 對 창녕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한나라당 지방재정 파탄 현 단체장 공천 배제』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창녕군이 지방재정 파탄 사례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로 인해 창녕군수가 공천에서 배제될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14	하성식 對 함안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결국 이런 일이...선거가 사람 잡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1면) (2) 『안갑준 · 하성식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3면) (3) 『함안지역 불법 · 타락선거 '우려' 표명』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4면) (4) 『<데스크 칼럼> 개도 돈도 물고 다니는 '이 더러운 선거'』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11면)
신청인주장	40대 여인의 음독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군수후보자가 불법선거자금을 살포한 결과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일부 삭제,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중 1면 기사 및 11면 칼럼을 해당 서버에서 삭제, 동기사가 게재된 각종 포털 블로그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 게시글 삭제
이 행 결 과	『'선거가 사람잡네'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1면)

2010충북조정12	이○○ 對 CJB청주방송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CJB 종합뉴스」 프로그램 '이웃끼리 고소고발'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3일 20:25)
신청인주장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자신의 땅이라며 트렉터로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790~795	육○○ 對 매경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최진영 자살로 본 연예인 '자살 일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고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매경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야후**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796~799	육○○ 對 투데이코리아,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우리 곁을 떠난 스타들, "그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고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투데이코리아**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및 기사수정)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및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듀스 故』 김성재 관련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2010서울조정800~804	육○○ 對 TV Daily, 네이버, 네이트,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연예인 잇단 자살, 고 최진영이 막 내리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고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기사수정)

2010부산조정19~22	송○○ 對 굿데이스포츠,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최대의 상조회사,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굿데이스포츠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네이트** : 취하
이 행 결 과	• **굿데이스포츠 · 네이버 · 다음** : 『보람상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일자)

2010부산조정23~24	송○○ 對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지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3월 30일자 '부산지검,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일자)

2010제주조정40~42	송○○ 對 인터넷 제주일보,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제주조정43~44	송○○ 對 제주투데이,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경남조정15~16	1. (주)풍앙에스앤티, 2. 김○○ 對 한남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풍양카페리 선사 · 장목면 주민 마찰』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4면) (2) 『풍양 카페리호 허가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4면) (3) 『허가관청이 업체 두둔 '특혜 시비' 』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6일자 1면) (4) 『마산해양항만청, (주)풍향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7일자 1면) (5) 『풍양카페리 허가놓고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1면) (6) 『풍양카페리 전방위 로비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4면) (7) 『풍양카페리호 복마전 관리감독 부서 뒷걸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4면) (8) 『통영 해경, 풍양 전격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1면) (9) 『해경 풍양카페리 불법운항 진술확보』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5일자 4면)
신청인주장	진해-거제간 카훼리호를 운항중인 신청인이 관청에 불법로비를 하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사과공문, PR 보도, 추가 게재 중단 합의 , 부제소)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홈페이지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및 유사 보도 등을 해당 서버에서 삭제

이 행 결 과	『풍양 카페리 관련 정정보도문 특혜 및 로비 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1면, 4월 30일자 1면)

2010경기조정56~58	송○○ 對 인터넷 경인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고객 돈 횡령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의정부 보람병원 "보람상조 계열사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일자)

2010경기조정59~62	송○○ 對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 실시』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와이티엔**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와이티엔** : 『[정정보도]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 실시'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경기조정63~64	송○○ 對 인터넷 일간경기,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고객돈 100억대 횡령 보람상조 검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보람병원, 보람상조 계열사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대구조정5	송○○ 對 인터넷 매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보람상조 ' 100억대 고객 돈 횡령 혐의 ' 압수수색 '』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남조정17~18	(주) The 함안신문 對 함안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4면)
신청인주장	함안뉴스에서 자사에 게재된 모 출마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그대로 도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2010경남조정19~22	박완수 對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단독] 박완수 시장 뇌물수수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장인 신청인이 4년전에 뇌물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추가 게재 중단 합의, 부제소) • **다음**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검색 차단,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7일이상 게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홈페이지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및 유사 보도 등을 해당 서버에서 삭제 • **다음** : 인터넷 경남여성신문의 정정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 및 아웃링크 되도록 조치, 뉴스 및 기타 게시판에서 검색되는 조정대상기사 및 유사 보도 삭제, 관련어 검색 차단, 부제소)
이 행 결 과	『[社告] 박완수 시장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2010서울조정805	(사)대한의사협회 對 한국경제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올해만 2조원 적자…"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14면)
신청인주장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부당청구 조사대상을 전체 병원과 약국으로 확대한다면 환수금액이 지금보다 10배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한경닷컴에 정정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정정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 **한국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15면) • **한경닷컴** : 『[알림] '올해만 2조원 적자…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기사 오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2010대전조정23	군인공제회 對 금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금산군 미온적 대처로 막대한 재정손실 초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폐수처리사업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금산군과의 협약서가 무효가 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계약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산군 미온적 대처로 막대한 재정 손실 초래?'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2일자 1면)

2010서울조정806	(주)JTV전주방송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울림마당> 지역언론, '정부 나팔수' 되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김택곤 사장 연임을 위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 기고문은 언론중재법상의 조정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하기 어렵다.)

2010대전조정24	이○○ 對 TJB-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가정불화 60대 홧김에 택시 불질러'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1일 07:55)
신청인주장	택시 운전사인 신청인이 자기 택시에 불을 지른 것이 가정불화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화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표시,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7일 07:30)

2010전북조정9	신○○ 對 전북일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멍'』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북도 문화재인 '귀래정'에 들어가 족보 등을 절도한 것으로 보도해 피해을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정보도문을 이미 게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2010서울조정807~808	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 김○○ 對 일요저널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김○○ 중앙회장 측 A씨 '돈 선거' 양심선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4일자 2~3면)
신청인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신청인이 선거시 협회 요직을 빌미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09~812	강남구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횡령혐의 수배 중 자살기도한 강남구청 前 인사팀장, 구청장에 인사비리 보고했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2일자 A12면), 디지틀조선일보 (3월 22일자)] (2) 『강남구청, '4년간 인사' 자체감사 착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3일자 A12면), 디지틀조선일보 (3월 23일자)] (3) 『人事비리 의혹 강남구청, 사건 축소에만 골몰』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4일자 A12면), 디지틀조선일보 (3월 24일자)] (4) 『강남구청 뭔가 켕기기에… '인사비리 폭로 자술서' 주요내용은 삭제 후 공개』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5일자 A14면), 디지틀조선일보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강남구청 인사팀장이 인사비리를 폭로한 자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나, 자술서는 무단결근 사유에 관한 것일뿐 인사비리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사회면 상단 주요기사 목록에 동일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 피신청인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5월 5일자 A2면), 디지틀조선일보 (5월 5일자)]

2010전북조정10	완주군 對 완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임군수 기자회견 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완주군이 '완주군 소식지'를 신문형태로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배달되도록 하면서 지역신문에는 광고를 주지 않고 있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2면)

2010경남조정23~24	거창3.1정신계승발전위원회 對 경서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서평론] 가조 3.1문화제 유감』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3면)
신청인주장	거창 3.1 문화제가 3.1정신을 망각한 채 술먹고 노래부르는 행사로 전락해 국비를 탕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사과 공문, 부제소)
이 행 결 과	『가조 3.1문화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3면)

2010서울조정813~8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매일경제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민노총 "쇠파이프 투쟁 설 땅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A31면) (2) 『[사설] 민노총 쇠파이프 버리겠다는 약속 꼭 지키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6일자 A3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고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A30면)

2010서울조정815~8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조선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민노총 위원장 "쇠파이프 버리겠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A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A14면)

2010서울조정817~8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중앙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민노총 쇠파이프 버리겠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1면) (2) 『[사설] '쇠파이프를 버리겠다'는 민주노총의 다짐』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6일자 3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24면)

2010경남조정25~26	배○○ 對 더함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마산원협, 조합장 취임후 사업 크게 성장』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4면)
신청인주장	전직 원예농협조합장인 신청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3500cc 체어맨을 타고 다녔고 유류대를 월 150만원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유감 표명, 부제소)
이 행 결 과	『마산원협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3일자 4면)

2010서울조정819~8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한국경제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민노총 "우리 사회의 천덕꾸러기…온건해져야"』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A1면) (2) 『[오피니언] '붉은띠 풀겠다'는 노동운동 새바람, 기대해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6일자 A3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821~824	(주)산청 對 119매거진, 119매거진닷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의혹투성이, 소방안전장갑』 제하의 기사 [119매거진 (2010년 3월호 12~17면), 119매거진닷컴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여 공급한 소방안전장갑이 물이 줄줄이 새어 들어가고 KFI인정을 받은 구조와 달라 치명결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119매거진닷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 **119매거진** : 『'의혹투성이 소방안전장갑'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호 9면) • **119매거진닷컴** : 조정대상보도 하단 『'의혹투성이 소방안전장갑'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2010서울조정825~829	육○○ 對 뉴스엔,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연예인 잇단 자살에 의혹만 증폭』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0서울조정830	임○○ 對 세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언어폭력' 말썽』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9면)
신청인주장	국립극장 극장장인 신청인이 뒤풀이에서 여자단원들을 옆자리에 앉히고 폭탄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9면)

2010서울조정831	배○○ 對 세계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언어폭력' 말썽』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9면)
신청인주장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인 신청인이 단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오디션에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9면)

2010서울조정832~836	기륭전자(주) 對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기륭전자 여성노조원 "경찰이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신청인주장	기륭전자 노조원이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노조가 없으며, 보도에 언급된 박모 씨는 신청인회사 소속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닷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24시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그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에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

2010대전조정25	민주당홍성군정당선거사무소 對 홍성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홍성 5+4 논의 결론 없이 끝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5일자 5면)
신청인주장	홍성군내 5개 야당이 가진 회동에서 민주당이 후보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나머지 4당과 입장을

신청인주장	달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당 떼고 여론조사하자" vs "후보자질 검증 토론회 후 여론조사하자"』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일자 5면)

2010서울조정837~838	나승렬 對 한국경제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마지막 노조독점권 깬 동방 나승렬 사장의 '뚝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A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울산항운노조와 체결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이 사측의 일방적인 의지로 체결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0년 5월 13일자 A16면), 한경닷컴 (2010년 5월 12일자)]

2010서울조정839~840	(유)와이에스산업 對 인터넷 환경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전주환경청 폐변압기 PCBs 처리업 인허가 변칙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2) 『폐변압기 처리업 인허가 과정 검은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변칙, 편법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2,000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한 사실보도이므로 정정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게 함, 이 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 뒤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0경기조정65	안산시민시장비상대책위원회 對 우면앤피플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주상복합 재건축 사실상 물 건너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안산시민시장의 주상복합 재건축이 사실상 포기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재, 이후에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안신시민시장 주상복합재건축 용역중단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1면)

2010서울조정841	UDT동지회 對 KBS-1TV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다른 곳에서 숨졌다'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7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대원이 고 한주호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을 벌인 곳이 침몰된 천안함의 함수 부근이 아닌 제3의 지점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KBS 뉴스>(09:0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자막 게시
이 행 결 과	「KBS 뉴스」 프로그램 'UDT동지회 "고 한주호 준위 함수에서 사망"'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8일 09:40)

2010전북조정11	정○○ 對 새전북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공동구매업체 선정 접대 의혹』 프로그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6면)
신청인주장	군산 S아파트 입주자 온라인카페 운영자인 신청인이 공동구매 업체선정에 관여해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뉴스/사회 섹션에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 본문과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6일자 6면)

2010서울조정842~843	1.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3. 대한비과학회 對 KBS-2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치과 · 이비인후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5일 08:00) (2) 「뉴스타임」 프로그램 '이비인후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5일 20:00)
신청인주장	이비인후과 의사를 비롯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을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처리
이 행 결 과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7일 08:55)

2010부산조정25~26	조○○ 對 주간KOREAN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사하신문 발행인 코피터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1면) (2) 『무등록 사이비언론과 기자를 몰아내자!』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무등록 사이비 언론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더 이상 기사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나, 정정 및 손배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2010대구조정6	김형렬 對 연합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대구지검, 수뢰혐의 수성구청장 소환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투자에 따른 수익배당금을 받았고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인터넷 기사 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고침> 지방(대구지검, 수뢰혐의 수성구청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일자)

2010대구조정7	김형렬 對 인터넷 영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투자에 따른 수익배당금을 받았고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부산조정27~28	김○○ 對 주간KOREAN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사하신문 발행인 코피터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지 발행인에게 3주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2010부산조정29~30	김○○ 對 주간한국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다대경제발전협의회, 어떤 단체인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다대경제발전협의회가 상가번영회의 성격을 벗어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2010경기조정66~67	이경재 對 경인열린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이경재 국회의원, 인천시당 공천심사위원에서 제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1면) (2) 『이경재 의원은 6 · 2 지방선거 강화군수 후보 결정 늦춰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2면) (3) 『[데스크칼럼] 안영수 후보 탈당!!』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3면) (4) 『[사설] '공천헌금' 메뚜기도 한 철 이라고 ?!』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나라당 인천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심사와 신청인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경인열린신문 인터넷판 신문 메인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7일간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이 행 결 과	『<정정합니다> '이경재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 공천심사 보도' 관련, '이경재 국회의원 공천헌금 사실 아니다', '검찰, 보좌관에 무혐의 처분', '당보,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에 사과의 뜻』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1면)

2010충북조정13~15	이○○ 對 충청타임즈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현장검증" vs "영업방해"』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3면)
신청인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괴산군수와 보건소 직원들의 회식자리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업주 및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현장검증' vs '영업방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4면)

2010경남조정27~28	1. 함안군, 2. 조영규 對 더함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기숙사 운영지원비 위화감 조성』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1면)
신청인주장	함안군이 군수의 모교에만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학교가 지난 2008년 교과부 1단계 기숙형 고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안군, '특정학교 특혜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3일자 1면)

2010서울조정844~847	전○○ 對 서울e조은뉴스,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속보] 창원시 관계자, 뇌물수수 의혹 보도기자 협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 고위 관계자들이 기자에게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848	김○○ 對 폴리스타임즈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전중부경찰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절취한 공익근무요원 등 검거』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증지인지닷컴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장물취득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200만원 지급)

2010경남조정29~30	조영규 對 경남매일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함안군수 금품제공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6면)
신청인주장	함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H씨의 금품살포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에 '함안군수 금품제공 혐의수사'라고 제목을 달아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2010전북조정12~13	박○○ 對 뉴시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6 · 2지방선거] 민주당 전주완산 여성공천 '분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인 신청인에게 횡령혐의 등이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후속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전국/전북 섹션에 일정기간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과 연결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선거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인의 인터뷰 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1) 『[정정보도문] 민주당 전주완산 여성공천 분란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2) 『[6 · 2지방선거] 民 박원희 기초의원 후보 "여성정치인 관심 가져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일자)

2010서울조정849~850	(사)하늘마음회 對 SBS-TV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대해부 H정신수련원 사건의 진실-2부 정신수련원인가 종교집단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23일 23:10)
신청인주장	신청인 수련원 원장이 살인교사 의심을 받고 있으며, 자신을 믿어야 죽지 않는다며 수련원생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 등은 원 보도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2010부산조정31	1. (주)국제종합토건, 2. 김성철 對 국제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성철 국제종합토건 회장 회삿돈 30억원 빼돌린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0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7일자 8면)

2010부산조정32	1. (주)국제종합토건, 2. 김성철 對 KNN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국제종합토건 채권단 김성철 회장 고발'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0일 07:49)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국제종합토건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7일 07:40)

2010서울조정851~862	(주)엠오씨 對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개원가 컨설팅 공갈협박 난무(?), 초보개원의 '긴장'』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병원 개원 컨설팅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과다한 컨설팅 비용을 청구한 후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개원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메디컬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야후**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이행방법 • **메디컬투데이** : 조정대상기사 제목 수정,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 게재, 향후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수사결과 혐의없음이 인정된 경우 추후 보도 게재, 고소사건 종결 후 7일 이내 결정문 또는 판결문 사본을 기사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메디컬투데이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수정한 후 반론보도문을 포함한 기사를 송고하였을 경우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메디컬투데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반론보도]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2일자) • **메디컬투데이 · 야후** : 『개원가 컨설팅 관련, 초보개원의 긴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8일자)

2010경기조정68	이○○ 외 9인 對 안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취소된 거리극축제 준비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1면) (2) 『행사 코 앞에 두고도 우왕좌왕, 첫 단추 얽히고 설켜 '예견된 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주관하는 안산거리극축제의 취소 원인이 축제 준비과정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경기조정69	이○○ 외 9인 對 우리안산넷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안산거리극축제 취소 '천안함' 때문만은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주관하는 안산거리극축제의 취소 원인이 축제 준비과정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행방법 :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7일간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보이도록 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대구조정8~11	학교법인 성덕학원 (성덕대학) 對 KBS-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모 전문대 학위장사'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0일 21:00) (2) 「뉴스라인」 프로그램 '모 전문대 학위장사'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0일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인가되지 않은 교회 강의실을 분교처럼 사용하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졸업장을 주는 등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조정대상보도는 일부 과장된 면이 있을지 모르나 진실한 보도이다.)

2010서울조정863~864	세종과학고등학교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무섭고 괴로운 어느 과학고』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4월 29일자 11면), 경향닷컴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실시하고, 자율학습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을 교실로 쫓아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경향닷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5월 12일자 13면), 경향닷컴 (5월 11일자)]

2010경남조정31~32	박○○ 對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뇌물수수 핵심인물, 구체적 진술』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2) 『황철곤 후보측 "뇌물수수" 녹취록 공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3) 『황철곤 여론조사 경선 중단 요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7일자) (4) 『창원시장선거 '뇌물의혹' 폭로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5) 『[발행인 칼럼] 푸른 5월이 붉은 5월로 변하지 않도록』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5일자) (6) 『[외부기고문] 도둑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7일자) (7) 『[외부기고문] 천안함 침몰과 창원함 선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7일자) (8) 『[社告] <독자님의 곁으로 다시 서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9일자)
신청인주장	황철곤 예비후보측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청탁뇌물수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중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 삭제, 조정액 1,0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핵심당사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기사이고, 외부기고문의 경우 "본사의 논지와 다를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음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2), (6), (7)을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점부터 36시간 이내에 홈페이지 및 해당서버에서 모두 삭제

2010경남조정33~34	박○○ 對 다음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뇌물수수 핵심인물, 구체적 진술』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2) 『황철곤 후보측 "뇌물수수" 녹취록 공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3) 『창원시장선거 '뇌물의혹' 폭로전 얼룩』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황철곤 예비후보측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청탁뇌물수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중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및 매개 중단, 부제소) ※ 이행방법 : 다음의 뉴스섹션 기사 및 포털 내 기타 게시글에서 경남여성신문의 딥링크 기사 매개 중단, 기존 기사 삭제, 경남여성신문의 딥링크 기사가 기타 게시글에서 매개 또는 제공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이 24기간 이내에 삭제)

2010경남조정35~36	하○○ 對 함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칠원면 무기리 한국아연(주) 용도무단변경 불법공장건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1~3면) (2) 『[사설] 공인은 투명인간이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다른 회사의 공장부지에 비밀계약을 체결해 불법으로 아연공장을 건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65~866	박○○ 對 구로오늘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양 청장 동생 M골프클럽 징수유예는 "특혜 넘어 불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중 구로구청이 모 골프클럽에 대해 세금 징수유예를 결정한 것이 불법임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2일자 1면)

2010전북조정14	1. (주)JTV전주방송, 2. (주)전라일보, 3. (주)한국리서치 對 새전북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온누리칼럼] 부끄러운 조사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전주방송과 전라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지방선거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주)JTV전주방송**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유감표명보도 게재) • **(주)전라일보 · (주)한국리서치** :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7일자 2면)

2010부산조정33	제일문창교회 對 한국기독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마산노회, 제일문창교회 담임목사 시벌에 관한 전권위원 구성』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4일자 2면) (2) 『당회장 위에 사모를 왕 당회장으로 모신 어느 교회』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4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와 담임목사 시벌에 관한 34인의 진정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867	파주시청 對 한겨레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파주시장 부인땅 용지변경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12면)
신청인주장	파주시가 시장 부인의 토지를 '밭'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해주는 등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2면)

2010서울조정868~873	(재)광주비엔날레 對 중앙일보 (868~869 정정 · 손배청구), 인터넷 중앙일보 (870 정정청구), 네이버 (871 정정청구), 네이트 (872 정정청구), 야후 (873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의미 깊은 광주비엔날레 세금으로 아트 페어라니…』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4월 30일자 30면), 조인스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이 준비 중인 '아트페어(미술견본시장)'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세금낭비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인터넷 중앙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앙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중앙일보가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 **야후** : 중앙일보가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5월 17일자 2면), 인터넷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5월 17일자)]

2010전북조정15	정○○ 對 전라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수업시간 외출해 기자회견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4면)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교장에게 외출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업시간에 외출허락을 받아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 교사 "지역사회 화합 앞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8일자 14면)

2010서울조정874	김○○ 對 헤럴드경제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노숙자, 위장취업 후 승용차 절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노숙자인 신청인이 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검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취지가 대부분 수용된 정정보도문을 이미 홈페이지 뉴스면에 게재한 바 있다.)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노숙자, 위장취업 후 승용차 절취' 사건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3일자)

2010서울조정875~877	(주)아산엠단성사 對 노컷뉴스,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03년 전통' 단성사에 불이 꺼진 이유는?』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일자)
신청인주장	단성사 극장이 사실상 휴점 상태라고 보도했으나, 일부 매장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41~44 참조)]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페이지에서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e-뉴스룸> '정정기사' 코너에 이를 반영 •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103년 전통 단성사...' 에 대한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2010서울조정878~88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닷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민노총 홈페이지에 총파업 비난글 쇄도』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27일자 10면), 헤럴드경제닷컴 (4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비난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쇄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과장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헤럴드경제닷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0년 5월 20일자 12면), 헤럴드경제닷컴 (5월 19일자)]

2010서울조정882~883	(정정 · 손배청구) 서○○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서수원병원 운영권 불법양도 의혹』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 이사장의 빚을 대신 갚아 주고 이사장직을 양도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하게 경영권을 인수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1일자)

2010서울조정884	해군본부 對 경향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매뉴얼도 없는 해군 '시간과의 싸움' 뒤북 · 즉흥』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1일자 4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해군이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늦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85	해군본부 對 국민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해군은 손 못쓰고 해경이 구조』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2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았고 최원일 함장 및 부함장은 구조된 직후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일자 2면)

2010서울조정886	해군본부 對 동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1일자 6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해경의 현장 접근에 제동을 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3일자 22면)

2010서울조정887	해군본부 對 문화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취재수첩] 낡은 어선탐지기만도 못한 첨단 해군』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6면)
신청인주장	침몰 천안함 함미를 민간 어선이 발견한 것과 관련해 첨단 장비를 갖춘 해군 함정이 낡은 어선보다 못하다고 보도했으나, 해군 함정은 잠수함 등 수중 이동물의 탐색에 적합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해당 기사는 '취재수첩'이라는 기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보도이며, 사실적 주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이 없다.)

2010서울조정888	해군본부 對 서울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실망하다 절망한 가족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5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생존 장병의 기자회견에 대해 '생존 장병들이 입을 맞추고 나왔다', '해군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 는 등의 천안함 유족들의 발언을 게재해 해군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89	해군본부 對 세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함미 이동 숨기려다…軍 또 '불신' 자초』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5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함미 인양 과정에서 해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함미를 몰래 수중 이동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적절한 보고과정 후 이동하였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90	해군본부 對 조선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中 · 日에 대응" 大洋해군 외치는 사이 앞바다가 뚫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5면)
신청인주장	해군이 중국, 일본 등 주변 강국에 대응하는 대양해군에 집착해 대북 전력보강에는 소홀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91	해군본부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항로 · 함미발견 등 은폐 · 왜곡…' 못믿겠 군' 』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6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중요 사실들에 대해 해군의 의도적 왜곡, 은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92~893	1. 임○○, 2. 한○○, 3. 신○○ 對 YTN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프로그램 '112신고 뒤 지구대 왔다 경찰에 폭행 당해'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3일 05:50)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시민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도주하는 것을 주차장에서 제압한 것으로 폭행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YTN** :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 제지 과정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1일자)

2010경기조정70~71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對 뉴스리더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임야 개발허가 놓고 '정부vs용인시' 해석 판이?』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5월 4일자 11면)
신청인주장	개발 취소된 신청인 법인 소유의 임야를 원상 복구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각종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용인시 개발 인 · 허가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자~6월 15일자 11면)

2010경기조정72~73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對 인터넷 뉴스리더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용인시 개발 인허가 의혹...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0일자) (2) 『용인시 개발인허가 풀리지 않는 의혹』 (2010년 4월 28자)
신청인주장	개발 취소된 신청인 법인 소유의 임야를 원상 복구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각종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동영상 메인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7일간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함,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체로 보도,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2)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용인시 개발인허가 풀리지 않는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2010경기조정74~77	이○○ 對 광주투데이, 우리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토지거래 이중 계약 성행... 모 시의원 개입설』 제하의 기사 [광주투데이 (2010년 5월 6일자), 우리일보 (5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토지거래 과정에 신청인이 개입하여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대전조정26~27	김세호 對 중앙매일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한나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최종 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으나 공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나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최종확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9면)

2010대전조정28~29	김세호 對 충청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가세로 한나라당 태안군수 후보 최종 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으나 공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최종 확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11면)

2010서울조정894	권태신 對 신동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과다 부동산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호 82~9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2003년 재산공개 당시 소유임야를 누락시키는 등 부동산의 보유 및 매각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호 593면)

2010서울조정895~898	신○○ 對 KBS-1TV, KBSi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천태만상 작명소'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7일 18:50)
신청인주장	작명가인 신청인이 일주일 전에 지어준 이름을 고객이 다시 의뢰하자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가치 평가적 인식의 표현인 의견 등의 영역에 포함된다.)

2010서울조정899~906	양○○ 對 MBC-TV, iMBC,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MBC-TV · iMBC**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대한민국 사진대전, 3천만원 줘야 대상'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5월 13일 21:00), iMBC (5월 13일자)] • **네이트 · 다음** : 『대한민국 사진대전, 3천만원 줘야 대상』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민국 사진대전' 금품수수 사건 보도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개인전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iMBC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네이버와 다음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요청, 부제소) • **iMBC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이행방법 • **MBC-TV** : 정정보도문은 17:00~17:20에 방송되는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의 개인전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 진행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 **MBC-TV · iMBC** : 「5시 뉴스」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양○○ 사진작가 관련)'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6월 4일 17:00), iMBC (6월 4일자)] • **네이트** : 『알려드립니다 (양○○ 사진작가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 **다음** :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907~908	(주)문차퍼스 對 KBS-1TV, K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엉터리 환경인증' 오토바이 활개' 제하의 보도 [KBS-1TV (2010년 5월 11일 21:00), KBSi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오토바이의 인증을 취득을 위해 브로커를 고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909~910	곽○○ 對 한기여총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목회자칼럼] 요셉의 지도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0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명의로 칼럼을 게재하였으나, 신청인은 해당 칼럼을 쓴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8일자 1면)

2010서울조정911	(주)나인스에비뉴 對 KBS-1TV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허위 · 과장 광고 기승'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0일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들어설 거라는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외국인관광객 면세 판매장을 지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912	(주)나인스에비뉴 對 조선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허위 · 과장 분양에 또 속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B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들어설 거라는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외국인관광객 면세 판매장을 지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조선닷컴 옴부즈맨 코너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시, 제목 클릭 시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반론보도문 송고,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B4면)

2010서울조정913	1. 박선숙, 2. 김용태 對 헤럴드경제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피해자들 두 번 운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각각 발의한 보이스피싱 관련법안이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법률적 오류로 국회 계류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다른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일정진행에 따라 지연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21면)

2010서울조정914	1. 박선숙, 2. 김용태 對 헤럴드경제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어설픈 의원입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돈 언제 돌려받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각각 발의한 보이스피싱 관련법안이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법률적 오류로 국회 계류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다른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일정진행에 따라 지연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2010서울조정915	박선영 對 KBS-1TV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 '學者와 論文 ② 공직의 무게'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4일 22:00)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학교수 재직시절 논문을 이중게재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낭독하고 동시에 자막으로 표시, KBS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서두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을 자막으로 게재
이 행 결 과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 ''논문이중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15일 22:00)

2010서울조정916~920	양○○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5월 6일자 A13면),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탈북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1,500만원) •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21~924	양○○ 對 KBS-1 · 2TV, KBSi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KBSi** :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상을 줄게 돈을 다오' 제하의 보도 [KBS-1TV (2010년 5월 23일 23:20), KBSi (5월 23일자)] • **KBS-2TV · KBSi**: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상을 줄게 돈을 다오' 제하의 보도 [KBS-2TV (2010년 5월 24일 08:05), KBSi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민국 사진대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개인전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KBS-1 · 2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KBSi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KBS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사진 등 관련부분 삭제, 조정대상보도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신청인이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을 경우 1주일 이내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KBS-2TV (2010년 6월 11일 08:54), KBSi (6월 11일자)]

2010서울조정92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對 전국아파트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아파트 분쟁 대부분 관리소장 탓』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9면)
신청인주장	광주지역 아파트 분쟁 대부분이 관리소장의 직무소양 부족과 횡포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7일자 9면)

2010서울조정926~927	(주)인비전커뮤니티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촛불' 인터넷 커뮤니티 '광우병' 내리고 취미 사이트로』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5월 10일자 4면), 디지틀조선일보 (5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SLR클럽'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으나,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928~929	1. HORVEJKUL NICHKHUN-BUCK(닉쿤), 2. 황찬성 對 TV Daily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2PM 찬성, '닉쿤 학대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조작되고 편집된 신청인들의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930~931	윤○○ 對 SBS-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촛불성금 횡령 구속'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26일 20:00)
신청인주장	김모씨가 신청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걷은 성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자 신청인이 김모씨를 비난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인터뷰에서 김모씨를 비난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932~933	박종수 對 오마이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기도 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은 제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주제로 올리면 보수 후보들에게 불리하다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0서울조정934~935	국무총리실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나도 충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5월 15일자 1면), 경향닷컴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충청도에 살았으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거라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경향닷컴 정치면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6월 12일자 2면), 경향닷컴 (6월 12일자)]

2010서울조정936~937	김창영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나도 충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5월 15일자 1면), 경향닷컴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충청도에 살았으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거라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전북조정16	진안군 對 전북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용담댐 수질문제 또 수면위로』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일자 1면)
신청인주장	진안군이 쓰레기매립지를 잘못 관리해 용담댐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자 2면)

2010서울조정938~944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생태계 '자궁' 드러내려 하는가』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5월 12일자 1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 방침 발표이후 안동 구담습지가 1년전에 비해 크게 훼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한겨레닷컴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파란**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 송고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한겨레신문이 반론보도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한겨레신문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이를 반영하여 노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6월 22일자 2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6월 21일자)]

2010경기조정78	남○○ 對 안성신문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마을 이장이 공동관정 개인용도로 사용해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마을 공공의 명목으로 설치된 관정을 수년 동안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행방법 :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일간 게시, 이후 정정보도문이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마을 이장이 공동관정 … 물의"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7일자)

2010서울조정945~946	이○○ 對 여성중앙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혼 소송 박상민 vs 한모씨 엇갈린 공방』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호 490~492면)
신청인주장	이혼소송 중인 배우 박상민 측 변호사인 신청인이 부인 측의 과도한 언론플레이로 명예가 훼손당해 부인 측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취하 •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사는 있으나,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947~948	(주)아산엠단성사 對 스포츠칸,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중앙시네마 76년 만에 폐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단성사가 폐관하고 망한 회사처럼 왜곡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중앙시네마 76년만에 폐관'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2010서울조정949~952	(주)아산엠단성사 對 스타뉴스, 네이트,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중앙시네마 폐관, 76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단성사가 폐관하고 망한 회사처럼 왜곡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스타뉴스** : 조정대상보도 하단 『"중앙시네마 폐관, 76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다"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 **네이트 · 야후 · 파란** : 『"중앙시네마 폐관, 76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다."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2010서울조정953~954, 964	(주)오드아이앤씨 對 경향닷컴,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윤상 · 에스원, 온라인 게임 음악 맡아』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55~957, 965	(주)오드아이앤씨 對 데일리정경뉴스, 마이데일리,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데일리정경뉴스** : 『윤상–에즈원, 진온라인 음악 맡아』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 **마이데일리 · 네이버 · 다음** : 『윤상 · 에즈원, 온라인 '진' 게임음악 맡아』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58~959	(주)오드아이앤씨 對 인벤,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진 온라인, 윤상/에스원이 게임음악 맡아』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60~961, 966	(주)오드아이앤씨 對 인터넷 전자신문,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진 온라인' 음악, 윤상 · 에즈원이 맡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62~963	(주)오드아이앤씨 對 아크로팬,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진 온라인, 게임음악에 윤상, 에즈원 참여』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아크로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 **아크로팬** : 『[정정보도] 진 온라인, 게임음악에 윤상, 에즈원 참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2010경남조정37~38	이영국 對 고성인터넷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론조사 결과] 하학열 후보, 이영국 후보 압도』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지난 3월 실시된 도의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최근 조사된 결과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후속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 위치에 최소 만 2일 이상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어야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후속보도는 1주일 이상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간 이상에 위치하도록 게재
이 행 결 과	(1) 『도의원 선거 여론조사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1일자) (2) 『고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영국』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2010서울조정967	김○○ 對 SBS-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한밤중에 걸려온 공포의 음란전화'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20일 06:00)

신청인주장	음란전화 피해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150만원 지급)

2010서울조정968	국가인권위원회 對 한국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유엔보고관 南門…北答 인권위원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위원회 위원장과 유엔 특별보고관의 접견 자리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7일자 A2면)

2010충북조정16~17	김경회 對 진천군민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1면) (2) 『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2면) (3) 『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해 유리하게 보도해 경쟁후보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과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1면)

2010서울조정969, 1035	김우룡 對 신동아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가 조이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호 114~12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MBC 좌파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 "MBC 내의 '좌빨' 80%는 척결했다"' 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970, 1023	서강대학교 對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서강대, 교비 254억 전용 의혹』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2010년 5월 27일자), 한국대학신문 (5월 2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비 254억 원을 전용하였고, 이를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 반토막이 됐다는 등의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6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반론보도문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사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2일자) • **한국대학신문**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2일자 2면)

2010서울조정971	경기지방경찰청 對 뉴시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경찰, 포천 한나라당 시장 후보 측근 관련 업체 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2) 『경찰, 서장원 후보 보도자료 "허위 사실이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포천 한나라당 시장 후보 측근의 비리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해당 후보측의 보도자료만을 토대로 허위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4시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7일자)

2010서울조정972~973	국립환경과학원 對 KBS-1TV, K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엉터리 환경 인증' 오토바이 활개' 제하의 보도 [KBS-1TV (2010년 5월 11일 21:20), KBSi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환경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소된 오토바이도 재인증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내용인 만큼 반론 및 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KBS-1TV**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계속 표시, 진행자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 • **KBSi** :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제목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함께 표시되도록 함

2010서울조정974	김○○ 對 한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어설픈 조사 '복지회관 잡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14C면)

신청인주장	복지옴부즈만실 실장인 신청인이 옴부즈만실의 사회복지시설 점검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3일자 16C면)

2010서울조정975~980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파출부 · 간병인 등골 빼먹는 유료 직업소개소』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0년 5월 19일자 11면), 인터넷서울신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5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소속 직업소개소들이 구직자에게 법정 소개료의 두배에 가까운 소개요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울신문** : 취하 • **인터넷 서울신문**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 삭제, 부제소)

2010충북조정18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對 충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행정누수 현상 '야기'』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인 예산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임금협상과는 무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13면)

2010서울조정981~985	고○○ 對 연합뉴스,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86~988, 1008~1009	고○○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네이트, 다음,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0서울조정989~995	고○○ 對 매경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춘천서 또 남녀 연탄 피워 동반 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96~1001	고○○ 對 뉴시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002~1004	고○○ 對 서울파이낸스, 네이버, 야후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남녀 또 동반 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005~1007	고○○ 對 인터넷 한국재경신문, 구글, 다음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춘천서 또 연탄불 동반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010, 1024~1025	고○○ 對 인터넷 서울신문,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기조정79	고○○ 對 인터넷 경인일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011~1022	박○○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현직 경찰간부 '여경 스토킹'…청문감사실도 '쉬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간부인 신청인이 부하 여직원에게 구애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각 취하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보도문> 경찰간부 여경 스토킹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5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알려드립니다> 경찰간부 여경 스토킹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8일자)

2010경남조정39	문○○ 對 인터넷 양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미니인터뷰> 당근과 채찍으로 '제자사랑' 실천』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3일자)
신청인주장	모 초등학교 교사가 왕따 학생 없이 학급을 이끈다는 사연이 소개되었으나, 신청인은 해당 교사의 학급에서 동급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간 사실이 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구조정12	최병국 對 영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칼럼] '쑥대밭' TK 정치권』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2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공직비리혐의로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 출마해 박근혜 마케팅으로 경산시장에 당선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2010서울조정1026	(주)우리넷 對 매경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종목 포커스] 우리넷, 이유없는 상한가 특정세력 매집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관계자가 주가 급등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특정세력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027~1028	신○○ 對 주간현대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국고보조금 빼돌려 땅 사고 집 사고… 두 얼굴의 협회 회장님 고발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6일자 28~2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029~1030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對 주간현대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국고보조금 빼돌려 땅 사고 집 사고…두 얼굴의 협회 회장님 고발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6일자 28~2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소속 회원들이 협회 이름으로 비리를 일삼고 개인 재산을 축적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1일 24면)

2010서울조정1031~1034	김○○ 對 이투데이신문, 이투데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原電 인프라 투자비 4대강에 썼다』 제하의 기사 [이투데이신문 (2010년 6월 14일자 1면), 이투데이 (6월14일자)] (2) 『터키, 원전공사 대가로 군수물자 요구』 제하의 기사 [이투데이신문 (2010년 6월 14일자 3면, 이투데이 (6월14일자)] (3) 『클레임 걱정에 하청업체 계약 기피』 제하의 기사 [이투데이신문 (2010년 6월 14일자 3면), 이투데이 (6월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한 대학 강연에서 한수원 예산이 4대강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는 할 의향이 있으나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036	이상의 對 동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술 취해 통제실 비웠던 합참의장 정상 지휘했던 것처럼 문서조작』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A1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 당시 신청인이 술취해 통제실을 비웠으나 정상지휘했던 것처럼 문서조작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037~1040	주식회사 송이산업 對 KBS-1TV, KBSi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송이 독점사용 안돼!' 제하의 보도 [KBS-1TV (2010년 6월 8일 19:00), KBSi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제주도 화산석의 일종인 '송이'라는 명칭을 신청인 업체가 상표 등록을 통해 독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당한 절차로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 **KBS-1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KBSi**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기사 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주참여시간에 신청인 업체를 배경으로 반론보도문 방송,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표시 • **KBSi**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보도 삭제, 향후 상업적 이용 금지
이 행 결 과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송이' 상표 등록 적법 절차' 제하의 보도 [KBS-1TV ((2010년 7월 2일 19:00), KBSi (7월 2일자)]

2010서울조정1041~1042, 1045~1056	(주)이비카드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롯데 M&A전략, 소송 악재에 '발목'』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레오콘코리아와의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 롯데가 신청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차질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머니투데이 · 구글 · 네이버 · 다음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네이트 · 야후** : 취하

2010서울조정1043~1044	원일렌트카(주) 對 SBS-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 뉴스」 프로그램 ''렌터카 요금이 수리비에 두배? '배보다 배꼽이 커''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0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렌터카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적정수준의 2배 이상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300만원, 부제소) ※이행방법 : 화면하단에 '정정보도'라는 자막 표시,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업체에 해당하는 화면을 배경으로 방송,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 **정정청구** : 이행 사항 없음 • **손배청구** : 조정액 지급

2010대전조정30~31	김○○ 對 TJB-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부실급식 문제'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12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급식 위탁계약을 맺은 고등학교에서 식단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거부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8시 뉴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일 20:00)

2010서울조정1057~1062	이○○ 외 58인 對 주간조선, 인터넷 주간조선, 네이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네번이나 쫄딱 망했지만 재기했다 성공 위해 남 짓밟은 적 없어』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0년 2월 8일자 36~39면), 인터넷주간조선 (2월 8일자), 네이버 (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퇴사한 신청인들이 재직 당시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사조직을 운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조선** : 디지틀조선일보의 조정대상기사 삭제 • **네이버** : 인터넷 주간조선이 전송해오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뉴스면에 게재하고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 <e-옴부즈맨>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0년 8월 2일자 37면), 인터넷 주간조선 (7월 28일자), 네이버 (7월 29일자)]

2010전북조정17~20	진○○ 對 전북연합신문, 새만금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전북연합신문** : 『냉동 소 돼지고기 냉장육 납품 폭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3일자 7면) • **새만금일보** :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3일자 4면)
신청인주장	학교에 정육을 납품하는 신청인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경기조정80~81, 84	소○○ 對 시티뉴스 (80~81 정정 · 손배청구), 다음 (8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S목사 감금사건 '형식상 무죄 실질적 유죄' 』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선고 받은 감금사건에 대해 '형식상 무죄, 실질적 유죄' 라고 보도하였으나 단순히 무죄이며, 신청인이 고소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재판장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인용 보도이다.
처 리 결 과	• **시티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 **다음** :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 이행방법 • **시티뉴스** : 7일간 메인화면 팝업창에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 S목사 관련기사 목록을 최신기사 위치에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S목사 감금사건 사실상 무죄…보도,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시티뉴스 (2010년 7월 8일자), 다음 (7월 12일자)]

2010경기조정82~83	반○○ 對 경기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0년 눈물로 선산 되찾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팔순할머니에게 부동산 브로커로 접근하여 부동산 인허가를 빌미로 강제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손배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경남조정40~41	권○○ 對 거제인터넷신문GJN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시민 1인당 2만원씩 도둑 맞고도 관련 공무원은 오히려…하수관거 편취사건 당시 담당과장 · 계장 '노른자위' 부서에』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거제시 하수관거 횡령사건과 신청인은 무관함에도 마치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社告] 거제시청 도시과장 보도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7일자)

2010서울조정1063	민○○ 對 교수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선명하게 드러난 지성사의 쟁점』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술하지 않은 책을 신청인의 저서라고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시아 주자학의 변주' 국제학술대회참관기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8면)

2010서울조정1064~1077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근현대미술 대가 작품 일색 '복고 장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6월 18일자 25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광주 비엔날레 홍보 간담회에 한국관계자 약 20여 명만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으나 각국 인사가 다수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45~58 참조)]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인 '정정 · 반론 등 게재' 란에 게시 • **야후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7월 13일자 2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파란 (7월 12일자)]

2010대구조정13	전○○ 對 일간대구경북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0일자 3면)
신청인주장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된 신청인에 대해 '잣대 없는 공천', '자격이 없는 사람' 등 이라고 게재해 피해를 당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5일자 3면)

2010광주조정24~25	김○○ 對 광남일보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비축제' 먹거리장터서 수백만원 갈취』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풍물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재판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조정액 200만원)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10면)

2010광주조정26~27	김○○ 對 함평신문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비대축제 풍물시장서 수백만원 갈취』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0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풍물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재판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조정액 4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078~1084	(주)잉글리쉬 무무 對 파이낸셜뉴스닷컴 (1078~1079 정정 · 손배청구), 네이버 (1080 정정청구), 네이트 (1081 정정청구), 다음 (1082 정정청구), 야후 (1083 정정청구), 파란 (108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잉글리시 무무' 본사 – 가맹점 법리해석 공방』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계약만료전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통보를 하고 위약금을 물어 가맹점과 법리해석 공방중이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파이낸셜뉴스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다음 · 파란** : 각 조정성립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파이낸셜뉴스닷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파이낸셜뉴스가 정정보도문을 포함하여 조정대상기사를 재송고하였을 경우, 정정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옴부즈만 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시

처 리 결 과	• **다음 · 파란** : 파이낸셜뉴스가 정정보도문을 포함하여 조정대상기사를 재송고 하였을 경우, 정정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조정대상보도 하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5일자)

2010서울조정1085	(주)아베스 對 에너지타임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하동군 그린빌리지사업 '검은 돈' 검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그린빌리지 사업과 관련해 마을 주민에게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몇몇 사람에게 500만원씩 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주간 에너지타임즈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사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에너지타임즈 (2010년 7월 12일자), 주간 에너지타임즈 (7월 12일자 2면)]

2010경남조정42	김홍식 對 고성인터넷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 김홍식 당선자는 행사장에 불참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군의원으로 당선된 신청인이 낙선용 SMS를 보내서 군민들을 혼란시켰다고 보도했으나 SMS발송업체의 실수로 잘못 발송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김홍식 군의원 문자메시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8일자)

2010서울조정1086~1087	1. 정○○, 2. (주)아이에이치큐 對 스포츠조선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전지현, 드라마 컴백 끝내 불발 왜?』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배우 전지현의 휴대폰 불법도청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 업무에서 물러났으며, 현 소속사가 배우 전지현과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스포츠조선닷컴에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스포츠조선 (2010년 7월 27일자 22면), 스포츠조선닷컴 (7월 27일자)]

2010서울조정1088~1089	(주)아이에이치큐 對 마이데일리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열애설' 그 후 전지현은 어디에 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배우 전지현의 소속사가 전지현의 열애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유감표명)

2010강원조정9	1. 대화초등학교 2. 김○○ 對 강원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운동부 코치 해임 놓고 법정공방』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30일자 21면) (2) 『"성적 부진시 코치직 사퇴" 서약서 강요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운동부 코치를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해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21면)

2010강원조정10~11	1. 대화초등학교 2. 김○○ 對 인터넷 강원일보,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교장과 코치 싸움에 피해는 아이들 몫?』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30일자) (2) 『체전성적 부진하면 코치직 사퇴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운동부 코치를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해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강원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 조정대사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인터넷 강원일보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포함하여 재송고하였을 경우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2010경남조정43~48	빈○○ 對 경남신문,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경남신문** : (1)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6명 징계』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0일자 6면), (2) 『경찰관들,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도덕적 해이" 비난 목소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6면) • **경남매일** : 『경찰관 6명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일보** :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6명 징계』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
신청인주장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이 6명의 경찰관들과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유감표명, 추후보도, 기사 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일보** : 경남일보 사회면 우측 상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경남조정49	김홍식 對 고성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당선증도 받지 않는 군의원 당선자?』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5면) (2) 『고성군의회 의장 선출?』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일자 13면)
신청인주장	군의원으로 당선된 신청인이 낙선용 SMS를 보내어 군민들을 혼란시켰고 또한 건축설계 전문가 산업분과 위원장 시절 수의 계약 부적절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090~1092	한국전력공사 對 KBS-1TV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초호화 신사옥'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9일 21:00) (2) 「뉴스광장」 프로그램 '초호화 신사옥'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30일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나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며 신축하는 사옥이 에너지효율은 낮고, 규모는 큰 초호화 청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 보도, 제목은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KBS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의 방송영상은 다시보기서비스 제공
이 행 결 과	「뉴스라인」 프로그램 '한전, 신사옥 정부 기준 내에서 결정'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16일 23:33)

2010서울조정1093	전국언론노동조합 對 KBS-2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해피선데이」 프로그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불법파업'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4일 17:20)
신청인주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자막방송 하였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합법적 파업이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 조합 소속인 KBS 본부가 벌이는 파업은 근로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부산조정3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對 울산매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지적가족 체육대회 '찬조금'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3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체육대회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거둬 공무원들에게 찬조금으로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094~1097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KBS 뉴스해설, 조 · 중 · 동 사설과 '판박이』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6월 30일자 21면), 경향닷컴 (6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의 뉴스해설이 조,중,동 사설과 주제와 논조가 일치하여 상호간 담합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7월 21일자 28면), 경향닷컴 (7월 21일자)]

2010서울조정1098~1099	사○○ 對 뉴스앤조이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교인 모르게 교회 팔다 걸린 목사』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인모르게 교회를 팔려고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조정대상보도 하단 『 '교인 모르게 교회 팔다 걸린 목사' 보도에 대한 사○○ 목사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9일자)

2010서울조정1100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對 조선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태평로] 노조 공화국? 노조전임자 공화국』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8일자 A3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 전임자 30명이 타임오프제 법률이 시행돼 회사로부터 월급지원이 끊기자 전임자를 그만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조선닷컴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7월 29일자 2면), 조선닷컴 (2010년 7월 29일자)]

2010서울조정1101~11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對 내일신문, 인터넷 내일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4대강 구미보, 부실시공 의혹제기』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0년 7월 2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낙동강 구미보의 부실시공으로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내일신문**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구미보 균열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0년 7월 30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7월 30일자)]

2010서울조정1103	이○○ 對 YTN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이슈」 프로그램 '인권위, 경찰 수사 행태 전반 조사 확대'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4:08) (2) 「뉴스&이슈」 프로그램 '인권위, 경찰 수사 행태 전반 조사 확대'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5:33) (3) 「뉴스Q」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7:01) (4) 「뉴스Q」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관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8:37) (5) 「YTN24」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20:05)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법적 분쟁상태에 있는 조 모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이슈〉, 〈뉴스Q〉, 〈YTN24〉 프로그램에서 각 1회씩 반론보도문 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반론보도문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처리
이 행 결 과	(1) 「뉴스&이슈」 프로그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1일 12:59) (2) 「뉴스Q」 프로그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1일 16:00) (3) 「YTN24」 프로그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1일 20:00)

2010서울조정1104~1109	박○○ 對 YTN,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YTN** : (1) 「뉴스&이슈」 프로그램 '인권위, 경찰 수사 행태 전반 조사 확대'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4:08), (2) 「뉴스Q」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7:01), (3) 「뉴스Q」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관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8:37), (4) 「YTN24」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20:05) • **인터넷 와이티엔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1) 『인권위, 경찰 수사 행태 전반 조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2)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3)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관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4)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방송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YTN · 인터넷 와이티엔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파란** : 취하

2010서울조정1110~1115	박○○ 對 YTN,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YTN** : 「YTN24」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20:05) • **인터넷 와이티엔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방송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YTN · 인터넷 와이티엔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파란** : 취하

2010부산조정35~38	주식회사 평화 對 KNN, iKNN (매체별 정정 · 청구)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규격미달 자재로 수천 세대 공사' 제하의 보도 [KNN (2010년 7월 5일 20:25), iKNN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오배수관 공사용 PVC 이음관의 두께가 규격미달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NN**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이미 신청인의 입장을 후속보도를 통해 보도했다.) • **iKNN** : 취하

2010대전조정32	이○○ 對 계룡일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지역언론 환경변화를 보는 소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발행하는 계룡신문이 폐간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지역언론 환경변화를 보는 소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16~1117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500여 단체 "KBS 수신료 인상 저지"』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6월 29일자 2면), 경향닷컴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광고 폐지 후 수신료 6500원 인상안' 이 BCG 최종보고서에 돌발 삽입됐다고 보도하였으나, BCG 중간보고 시에 이미 담겨 있었던 내용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7월 16일자 2면), 경향닷컴 (7월 15일자)]

2010서울조정1118~1119	(주)더블유아이 對 뉴시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부천시가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 문제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7일자) (2) 『부천 MBT사업 업자 선정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7일자) (3) 『부천 MTB사업 관련, 업무보고에서 '도마위' 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6일자)
신청인주장	부천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과 관련, 신청인 업체가 공급한 폐기물 건조기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원일(W.I), "최고의 시스템과 기술로 앞장서"』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2010경남조정50~51	1. 윤○○ 2. 김○○ 對 경남연합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수석부회장 · 사무국장 '회장님 몰래' 함안 배드민턴연합회 집행부 갈등』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윤○○이 신청인 김○○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함안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예산을 전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사과공문, 후속보도, 피신청인 운영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외부 홈페이지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경우 삭제 요청,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안 배드민턴연합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5면)

2010경남조정52~53	윤○○ 對 함안정통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배드민턴 군연합회 '갈등' 전직회장 사퇴』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마찰을 일으켜 함안군 배드민턴연합회의 전임회장이 자진 사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사과공문, 후속보도, 피신청인 운영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외부 홈페이지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경우 삭제 요청,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안배드민턴엽합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30일자 2면)

2010대구조정14	조○ 對 대가○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건축현장에서 문화재 유물(토기조각) 발굴』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축주로 있는 건축현장에 대해 관할 관청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120~1121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양지부 S&T대우지회 對 머니투데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파업 불참하면 50만원 벌금』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노조원들에게 벌금을 받는 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인터넷 머니투데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0년 7월 24일자 2면), 인터넷머니투데이 (7월 23일자)]

2010대구조정15~16	김○○ 對 노컷뉴스, 경북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초등생의 동급생 성추행 및 폭행』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0년 7월 5일자), 경북일보 (7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같은 반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경북일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초등생의 동급생 성추행 및 폭행'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2010서울조정1122~1125	조○○ 對 오마이건설뉴스,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건기연 원장…논문 표절시비로 시끌,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6월 24일자 1, 3면), 인터넷오마이건설뉴스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논문을 표절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126~1127	맹주석 對 프레시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김용철 책 홍보라서?"…외신기자클럽.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인 신청인이 정식 기자가 아니어서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편집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일자)

2010서울조정1128	보건복지부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3일자 1면) (2) 『국회 위 복지부?』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4일자 10면)
신청인주장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6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29	국토해양부 對 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멸종위기종 서식처 잇따라 발견, 뒤늦게 '보호''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일 21:00)
신청인주장	4대강 공사로 인해 대체서식지로 이식된 단양쑥부쟁이가 대부분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멸종 위기종 단양 쑥부쟁이 이식 성공'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8일 21:00)

2010서울조정1130~1131	권○○ 對 월간폴라리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놀이터법 어린이집 큰일 났어요』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호 122~1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옥외놀이터 설치에 관한 국회의원 주최 간담회에 불참한 이유가 지지당이 다르고,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호 135면)

2010서울조정1132	1. 최○○, 2. 백○○ 對 목양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해(害) 교단 행위자 징계 판결』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불법교단을 세웠다는 교단 산하 특별재판위원회의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인용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4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33~1134	강용석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7월 20일자 20면), 인터넷 중앙일보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중앙일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8월 2일자 2면), 인터넷 중앙일보 (8월 2일자)]

2010서울조정1135~1136	강용석 對 매일경제, 매경닷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한나라 '성희롱발언' 강용석 제명』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0년 7월 21일자 6면), 매경닷컴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매경닷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0년 8월 2일자 2면), 매경닷컴 (8월 1일자)]

2010경남조정54	서○○ 對 경남기독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사랑샘 공동체 17년 사역 중 최대 위기에 처해』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공동으로 폭행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목사의 변명을 여과없이 실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 '사랑샘공동체 목사 폭행'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8일자 3면)

2010서울조정1137~1138	유○○ 對 한겨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박영준 '선진연대 인맥', KB회장 선임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6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와인납품을 부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2면)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반론보도문』

2010서울조정1139~1140	유○○ 對 위클리경향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선진국민연대 와인게이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7일자 13, 14, 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와인납품을 부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13면)

2010서울조정114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對 MBN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 2.0」 프로그램 '단지 내 스포츠센터 전격 매각…주민 반발'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2일 16:10)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를 주민 몰래 졸속으로 매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1)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스포츠센터, 주민 기부금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9일 12:00) (2) 「뉴스 2.0」 프로그램 '스포츠센터, 주민 기부금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9일 18:00, 19:00)

2010경남조정55	경남영양사회 對 경남도민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아이들 남긴 밥 씻어서 재급식…』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영양사 비리를 고발하는 한 조리사의 폭로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해 영양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홈페이지 외부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 된 경우 삭제 요청, 부제소)
이 행 결 과	『 '학교 급식 비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10면)

2010서울조정1142	서울관악경찰서 對 경향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겁도 없이, 왜 그딴 글을 올리는 거야" 귀갓길 괴한 3명이 다짜고짜 주먹질』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에 시위 관련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내용 : 2010서울중재59 참조) ※ 이행방법 : 경향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3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43	남경필 對 한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인 피소사건 압수수색 영장 7차례나 기각… '사찰 표적' 된 듯』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4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인의 피소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2면)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알려드립니다』

2010광주조정28~29	김○○ 對 광주매일, 광주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광주매일** : 『30대 간호사 마취제 투여 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6면, 이하 게재일자 같음)

조 정 대 상	• **광주일보** : 『우울증 30대 간호사 마취제 주사해 자살』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30대 간호사가 평소 우울증으로 마취제를 투여하여 자살했다고 보도했으나 30대 간호사는 우울증을 앓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광주매일** :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30일자 6면) • **광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7일자 3면)

2010전북조정21~22	최○○ 對 전북매일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군산시와 시의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7일자 7면)
신청인주장	군산시 기술직 국장인 신청인이 건설업체가 제공한 제주도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0일자 3면)

2010서울조정1144~1145	조○○ 對 연합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 '곡성군수 후보 차량 위치추적기' 공방』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6일자) (2) 『<격전지 곡성군수> – 불법위치추적기 쟁점』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곡성군수 선거 후보였던 신청인의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신청인의 자작극이라는 상대후보의 발언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146~1149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조용주 對 오마이건설뉴스,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건기연 원장…논문 표절시비로 시끌,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6월 24일자 1, 3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6월 24일자)] (2) 『조용주 원장의 절대권력에 당했다』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7월 12일자 1, 3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6월 24일자)] (3) 『권기연 조용주 원장 인사 전횡 "양파껍질"』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7월 19일자 1~2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구원이 직원을 부당하게 해임, 징계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 원장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논문표절, 숙청작업…등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8월 16일자 1~2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8월 16일자)]

2010서울조정1150~116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1. 최○○, 2. 조○○ 對 뉴시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조인스MSN, 파란, 인터넷 재경일보

조 정 대 상	(1) 『낮잠 자는 경찰 민생치안 뒷전 단속만 관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5일자, 이하 게재 일자 같음) (2) 『낮잠 자는 경찰 민생치안 뒷전 단속만 관심…강릉경찰 기강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관들이 대낮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낮잠을 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성립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조인스MSN · 파란 · 인터넷 재경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 이행방법 • **뉴시스** : 전국/강원 섹션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뉴시스** : 『[반론]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밝혀왔습니다』

2010서울조정1168~1169	최○○ 對 MBC-TV, iMBC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수상한 청국장'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7월 21일 18:50), iMBC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제조하는 청국장 제품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샘플채취 등 검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삭제)

2010서울조정1170~1171	한국장류협동조합 對 MBC, iMBC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수상한 청국장'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7월 21일 18:50), iMBC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청국장이 병균이 검출되는 위험한 음식이며, 끓여도 균이 사멸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iMBC** : iMBC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iMBC** : 조정대상보도 하단 : 『※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3일자)

2010경남조정56~57	윤○○ 對 고성미래신문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 "군보조금 부적절" 경남도 감사 지적』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1일자 5면)
신청인주장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남사모)에서 보조금을 부적합하게 집행하고, 남사모 회장이 주민센터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인양 사용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박보도문]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0일자 4면)

2010서울조정1172	허○○ 對 오마이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미안하고 면목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천정배 의원을 막아섰다고 보도하면서 용역 경비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5만원,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의 얼굴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각종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조정대상기사에도 반영)

2010서울조정1173~1174	(주)대상 對 데일리 노컷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우리쌀 고추장 '묵은쌀'로 생색』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묵은 쌀로 고추장을 제조한다고 보도했으나, 고추장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75~1176	(주)대상 對 노컷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일본에선 사료용 쌀이 한국에선 1등 고추장 원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묵은 쌀로 고추장을 제조한다고 보도했으나, 고추장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각 포털사에 기사 삭제 요청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대상 청정원 우리 쌀 고추장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2010광주조정30~31	최○○ 對 함평중앙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함평군, '교육환경발전사업' 졸속운영』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1면)
신청인주장	모 중학교 골프강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수업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58~59	1. 이○○, 2. 손○○, 3. 김○○ 對 경남신문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창원 '50억대 공장 탈취' 발각』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9일자 1면) (2) 『前대표시절 '부당대출' 화근 現대표 기업회생신청 고지에 발각될까 두려워 '탈취' 공모』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9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창원시에 소재하는 50억원대 공장을 탈취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각하려다가 발각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기사 삭제, 사과공문, PR보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 위치에서 3번째 이내에 만 3일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보이도록 함,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및 유사 기사 삭제, 각 포털사의 블로그 내지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창원 50억대 공장탈취' 무혐의로 밝혀져 지점장 등 공모 사실무근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0일자 1면)

2010서울조정1177~1186	유○○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경희대 음대교수가 여학생들 상습 성희롱』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4일자 B2면) •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Why] 경희대 음대교수가 여학생들 상습 성희롱』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야후** :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디지틀조선일보가 반론보도문을 포함하여 조정대상기사를 재송고하였을 경우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e-옴부즈만>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 **네이트** : 디지틀조선일보가 반론보도문을 포함하여 조정대상기사를 재송고하였을 경우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8월 14일자 B2면) · 디지털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8월 19일자)]

2010서울조정1187	○○유치원 對 헤럴드경제닷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유치원 마저…' 성추행 은폐시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유치원이 소속 운전기사가 보조교사들과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는데도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고양시 소재 모 유치원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0일자)

2010서울조정1188	○○유치원 對 인터넷 고양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조교사들 "기사로부터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유치원은 소속 보조교사가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자 보조교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경기도 소재 Y유치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9일자)

2010서울조정1189	신용석 對 연합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인천시 OCA출연금으로 국회의원 해외방문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아시아 지역 스포츠 약소국 지원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여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보도내용에 의해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2010서울조정1190	신용석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스포츠 약소국 지원금으로 '국회의원 외유'』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6일자 2면)
신청인주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아시아 지역 스포츠 약소국 지원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여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91	신용석 對 한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스포츠 약소국 지원금이 관광 자금?』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2일자 18면)
신청인주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아시아 지역 스포츠 약소국 지원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여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14면)

2010서울조정1192	경찰청 對 문화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경찰 개악' 부를 '경찰 개혁안'』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30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추진하는 경찰 개혁 작업 대부분이 제 식구 챙기기 위주의 자화자찬성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私費' 털어가며 범인잡는 경찰』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8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알려드립니다』

2010서울조정1193~1194	강용석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7월 20일자 20면), 인터넷 중앙일보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195~1196	강용석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강용석 끝없는 거짓말 … 언론중재위 문건까지 왜곡』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조정사건의 심리에서 중앙일보 측 대리인이 취재과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이며 법원에서 이를 다툴 예정으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197	김○○ 對 인터넷 중앙일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슈추적] 무면허 침 · 뜸 금지, 가까스로 합헌 … 대체의학 논란』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3일자)
신청인주장	우리나라의 침 시술자가 침구사 39명과 민간자격 소지자뿐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198	오○○ 對 오마이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림산업, "물, 선식, 소금 이외 절대 안 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을 막아섰다고 보도하면서 용역 경비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30만원, 부제소)

2010서울조정1199	배○○ 對 오마이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림산업, "물, 선식, 소금 이외 절대 안 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을 막아섰다고 보도하면서 용역 경비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30만원, 부제소)

2010서울조정1200	1. 윤○○, 2. 윤□□ 對 MBC-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심층취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 최저생계비의 그늘'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7일 23:00)
신청인주장	최저생계비를 받는 신청인 1과 그의 딸인 신청인 2의 초상 및 음성을 허락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300만원, 부제소)

2010광주조정32~33	고흥발전포럼 對 고흥타임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당풍 · 돈풍 · 소지역풍" 변화의 바람은 꺼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5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상한 단체이며 선거에 개입한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기사를 전재한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34~35	정○○ 對 고흥타임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당풍 · 돈풍 · 소지역풍" 변화의 바람은 꺼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5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선거과정에서 모 후보만을 두둔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4면)

2010서울조정1201	식품의약품안전청 對 서울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두 얼굴의 식약청』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식품업체의 규모에 따라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을 다르게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20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對 SBS-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8 뉴스」 프로그램 '검사 때만 종일 환기'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9일 20:00) (2) 「나이트라인」 프로그램 '검사 때만 종일 환기'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30일 00:02)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전기료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승강장 환기 시간을 제한하면서도 공기질 검사기간에는 환기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구조정17~18	1. 고○○, 2. 이○○ 對 매일신문, 인터넷 매일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관선체제 대구대 정상화 나선다』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0년 6월 16일자 2면), 인터넷 매일신문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구 재단측인 신청인들이 대구대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에조차 참여하지 않았고 대구대 운영을 파행으로 몰던 장본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대구대 파행운영 구 재단 탓 아니다"』 제하의 보도 [매일신문 (2010년 9월 10일자 2면), 인터넷 매일신문 (9월 10일자)]

2010부산조정39	신○○ 對 부산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용호만매립지 감정가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용호만매립지 감정평가에 관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보도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03~1204	이○○ 對 EBN산업뉴스,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6만원짜리 동남아 항공권 직접 예약해 보니…』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신청인주장	모 외국계 항공사에서 왕복 10만원대 동남아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05~1208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對 조선일보, 조선비즈닷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공공관리자제도' 시작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8월 12일자 B7면), 조선비즈닷컴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서울시가 제시한 업체 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정비업체 선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총회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조선비즈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 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비즈닷컴** : 초기화면 중앙 상단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일방통행식 '공공관리자제도'에 주민들 반발』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9월 1일자 B7면), 조선비즈닷컴 (9월 1일자)] ※ 조정조서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민총회 관련 바로 잡습니다』

2010서울조정1209~1210	김○○ 對 법보신문, 법보닷컴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덕해 스님 이사 취소 부당』 제하의 기사 [법보신문 (2010년 9월 2일자 4면), 법보닷컴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공금유용 등의 혐으로 이사 취소 처분을 받은 서불대 설립자가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귀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1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對 주간동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의사협회 무슨 일 생겼나』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22면) (2) 『경만호 회장 1억원 횡령 의혹 갈수록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26면) (3)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 부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2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감사가 협회장 측근인 일부 회원의 횡령을 지적하자 신청인 협회에서 거꾸로 감사를 징계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내용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

2010서울조정1212~1213	맹주석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국정원, 외신기자들 감금하고 '천안함 안보교육'』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8일자) (2) 『국정원, 외신기자들 주입식 '천안함 교육'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천안함 관련 취재차 백령도를 방문한 외신기자들이 백령도의 한 부대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국정원 안보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면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이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기사를 제공하는 포털사에 기사 삭제 요청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2010서울조정1214	(사)한국컴퓨터판매인협회 對 아이뉴스2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펜티엄' 아직 죽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펜티엄 컴퓨터의 점유율이 여전히 강세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보도이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경기조정85~86	남○○ 對 안성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개인이 사용한 공동관정, 추가예산 집행으로 '숨통'』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혼자 사용해 왔다고 보도한 마을 공동관정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안성신문닷컴 메인화면에 10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도화마을 농업용 공동관정'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0년 9월 10일자, 2010년 8월 25일자 5면), 안성신문닷컴 (8월 24일자)]

2010경기조정87	학교법인 영석학원 對 경인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의정부 영석학원, 전횡비리 해결은 뒷전 "학교매각 추진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9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원의 전횡비리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매각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인터넷 경인일보 메인화면에 7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의정부 영석학원…학교매각 추진 의혹'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0년 8월 31일자 2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31일자)]

2010경남조정60~61	학교법인 한마학원 (경남대학교) 對 창원일보.com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남대=돈에 눈먼 학교』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0일자 5면)
신청인주장	경남대학교에서 철학, 사회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학생들과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돈에 눈먼 학교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660만원, 사과공문, 부제소)
이 행 결 과	『경남대 관련 오보 사과드립니다 – 사회학 · 철학과 전공 폐지 기사는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6일자 1면)

2010대전조정33~34	박○○ 對 당진시대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석유리 국유지 교환과정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국유지 교환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포털사에 기사 삭제 요청

2010서울조정1215	동양산업(주) 對 SBS-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추적」 프로그램 '불법석유가 판친다'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1일 23:0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해상 주유소가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 화면 좌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표시, 화면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뉴스추적」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일 23:05)

2010서울조정1216	최○○ 對 목양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각서에 갈음하는 사과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7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실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은 광고이므로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경기조정88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 박형우 對 인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구민섬기겠다더니 폭언 · 협박』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6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살피던 중 항의하는 노인 및 주민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수해현장을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박형우 계양구청장, 수행비서 막말 구설" 본보 8월 16일자 11면 보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17~1218	김○○ 對 M.net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슈퍼스타K 시즌2」 프로그램 '제4회'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3일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오디션 응시 장면을 왜곡 편집하여 보도하는 등 신청인을 희화화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자막수정, 부제소)

2010대전조정35~36	금산군태권도협회 對 금산신문, 금산진악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금산신문** : 『하나 더 나눔가게 11~13호점 탄생』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2면) • **금산진악신문** : 『하나 더 나눔가게 11~13호점 탄생』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1면)
신청인주장	기사에 언급된 체육관들이 신청인 협회 소속이라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협회 소속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 **금산진악신문** :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5일자 1면)

2010광주조정36	화순군 對 디지탈화순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유통회사 동면 설립 재고 바래』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유통회사를 화순군 동면 대포리 일원에 설립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 사회면에 14일간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화순군, 유통회사 관련 반론보도 – 본사 8월 12일자 "유통회사 동면 설립 재고 바래"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2010광주조정37	산이농협 對 전남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해남 산이농협 공사 불법하도급 '말썽'』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8면)
신청인주장	해남 산이농협이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여 말썽이 일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산이농협 불법 하도급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8면)

2010서울조정1219	증산존치정비제3구역주민자율단합준비위원회 對 코리아리포스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한실장과의 인터뷰] 3곳의 가칭추진위 통합 '신뢰'라는 쾌속정 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증산뉴타운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신청인 준비위원회가 다른 준비위원회에 통합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0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	우제창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공천 쥔 지역구 의원이 지자체 인사 좌우해서야』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0년 8월 17일자 1면), 세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발령 요구 등을 포함해 용인시장에게 인사외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세계닷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처 리 결 과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세계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0년 9월 10일자 2면), 세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9월 9일자)]

2010서울조정1221, 1227~1230	홍○○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공천 쥔 지역구 의원이 지자체 인사 좌우해서야』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0년 8월 17일자 1면), 세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우제창 국회의원이 신청인에 대한 인사발령 요구 등을 포함해 용인시장에게 인사 외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 처리결과 참조
이 행 결 과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 이행결과 참조

2010서울조정1222, 1231~1234	조○○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공천 쥔 지역구 의원이 지자체 인사 좌우해서야』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0년 8월 17일자 1면), 세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우제창 국회의원이 신청인에 대한 인사발령 요구 등을 포함해 용인시장에게 인사 외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 처리결과 참조
이 행 결 과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 이행결과 참조

2010서울조정1235, 1248~1251	박○○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미화, "왜 나만 좌파 의혹을 받아야 하나"』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김미화, 1992년부터 盧와 손잡고 정치참여>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로 인해 위 기사를 작성한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36, 1252~1253	박○○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네이버, 다음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미화 "연예인 편가르기 바람직하지 않다』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김미화, 1992년부터 盧와 손잡고 정치참여>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로 인해 위 기사를 작성한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37, 1254~1255	박○○ 對 스포츠서울TV(SSTV), 네이버, 다음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미화 "내가 왜 '좌파' 가 되어야 하는가? 심경토로』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를 인용,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의 보도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신청인이 쓴 기사와 배치되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0서울조정1238, 1256~1258	박○○ 對 오마이뉴스, 네이버, 다음, 야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좌파? 승리 확신』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를 인용,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의 보도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신청인이 쓴 기사와 배치되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0서울조정1239, 1247, 1259~1261	박○○ 對 한겨레닷컴, 한겨레, 네이버, 다음, 야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코미디언 슬프게 하는 사회가 서럽고 슬프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다음 · 야후 (2010년 7월 19일자), 한겨레 (7월 20일자 4면)]
신청인주장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를 인용,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광주조정38	영광군 對 호남중앙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불법매립 앞장선 영광군』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영광군이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2010년 9월 7일자 2면)

2010전북조정23~26	유○○ 對 전북중앙신문,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전북중앙신문** : 『익산 ESCO사업 짜고친 고스톱』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9일자 7면)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 『익산 ESCO부당처리 담당자 징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익산시 공무원인 신청인이 '익산시 보안등 교체사업' 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 홈페이지 뉴스/사회 섹션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전북중앙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3일자 6면)

2010서울조정1240~1241	삼은개발주식회사 對 한겨레닷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성미산 하청직원 '전기톱 난동' 』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직원이 성미산 지역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만취상태에서 전기톱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242~1243	심○○ 對 연합경찰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단연구가 최삼경 목사 비난인사 무더기 처벌』 (2010년 7월 24일자 7면)
신청인주장	최삼경 목사가 신청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으나, 고양지청은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7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70여차례 고소건 모두 승소』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30일~10월 14일자 1면)

2010서울조정1244~1245	뮤즈심포니오케스트라 對 문화저널21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음악적 소통 아쉬웠던 가족 콘서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오케스트라가 공연한 가족 콘서트에서 지휘자와 연주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음악전문기자가 신청인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작성한 기사로 정정 · 손배청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2010경기조정89	상록요양원 對 경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요양병원 관리 소홀 감염 노출』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19면) (2) 『치매환자 보호자 동의없이 손묶어』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9일자 19면) (3) 『"근무대처비 일부 횡령" 제기』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0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요양원이 요양보호사 정원 수를 허위로 조작하고, 요양원 시설 및 환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간 게시, 부제소)
이 행 결 과	『화성 S노인 요양원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7일자 16면)

2010강원조정12	이○○ 對 강릉MBC-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콘도 반환금 청구 배짱 고객만 피해'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8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음성 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중 신청인의 음성 부분 삭제

2010서울조정1246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삼성 보도 누락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삼성쪽 전화를 받은 뒤 삼성의 노조 설립과 관련한 보도를 <뉴스데스크>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명백한 허위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행방법 : 홈페이지 미디어면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표시되도록 함

2010서울조정1262	박영준 對 한겨레2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박영준 사조직'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34~3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여 사조직처럼 활용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10면)

2010경기조정90	광명시 對 인천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공무원 품위손상' 구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시의 한 공무원이 현 시장을 위해 지난 선거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신청인 시에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7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63~1264	(주)장생모 對 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광장」 프로그램 '탈모 방지 삼푸, 알고보니 '가짜'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0일 07:30) (2) 「뉴스9」 프로그램 '탈모 방지 샴푸, 알고보니 '가짜'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9일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무허가 샴푸를 기존의 자사 제품인 것 처럼 판매하여 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65	최○○ 對 KBS-1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말로만 명문 놀이방…부실급식에 폐업'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4일 21:00)
신청인주장	유치원 교사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300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공익적인 보도이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발언이 아니어서 음성변조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66	주식회사 일앤엘바이오 對 KBS-1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줄기세포 화장품'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4일 22: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의 줄기세포 화장품이 주름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로그램 말미에 스튜디오 멘트 형식으로 방송,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8일 22:00)

2010서울조정1267	국가정보원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정원의 '정치사찰 망령'을 부활시킨 건 누군가?』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31면)

신청인주장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원장 취임 뒤 정부부처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68~1269	동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對 SBS-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사랑으로 지킨 한옥 …파란 눈의 한옥지킴이'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6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추진 중인 동소문동 재개발계획을 서울시가 최종 취소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재개발계획취소가 아닌 정비구역지정취소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 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SBSi에 반론보도 영상을 게시하여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이 행 결 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동소문동 재개발 취소, 사실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24일 06:00)

2010대구조정19~20	고○○ 對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영남일보** : 『대구대 '옛재단 복귀' 돌발변수』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1면) • **인터넷 영남일보** : 『정부 사립대 '옛재단 복귀' 허용…대구대 정상화 돌발 변수로』 제하의 기사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대 관계자인 신청인들이 학교 운영을 파행으로 몰던 장본인들이었으며, 대구대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에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 **영남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5일자 2면)

2010부산조정40~41	남○○ 對 경상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학생 훈계하는 경찰에 "욕하지 말고 타이르세요" 참견했다가』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부산조정42~4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지부 對 부산MBC-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상이군경회 외압의 실체는 청와대'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지하철청소용역사업 횡령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에 외압을 행사토록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확인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도하였으므로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70~1271	김○○ 對 일요서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올림픽대로 옥외광고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9일자 10~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옥외광고사업권을 낙찰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수주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옥외광고사업 로비 의혹'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3일자 5면)

2010강원조정13	춘천경찰서 對 춘천KBS-1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청장을 위한 의경배치?'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3일 21:39)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출근시간에 의무경찰을 배치한 이유를 경찰청장의 출근 편의를 위함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처리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6일 21:40)

2010서울조정127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對 수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빚진 사람이 세간 늘리고 잔치나 하고 있어서야...』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1면)
신청인주장	공적자금을 쓰고있는 신청인 단체가 직원들 직급을 필요 이상으로 올려 배치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1면)

2010서울조정1273~1275	김○○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오마이뉴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디지틀조선일보** : 『상습구타 해직 코치, 다시 직원으로 채용한 高校』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8월 27일자 A12면), 디지틀조선일보 8월 27일자)] • **오마이뉴스** : 『코치가 때려 기절...쇠몽둥이로도 맞았다』 제하의 기사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중고교 복싱부 코치인 신청인이 체벌성 훈련과 상습적 구타로 해임됐으나 교직원으로 복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디지틀조선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오마이뉴스** : 취하 ※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2면), • **디지틀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지난 8월 27일자 '상습구타 해직 코치, 다시 직원으로 채용한 高校' 제하의 기사』 제하의 기사 (9월 16일자)

2010광주조정39	(유)남해환경 對 광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무안군 건설폐기물 관리감독 '구멍'』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9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야적해 놓은 순환골재에서 토사가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40~41	마○○ 對 전광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순천 모여고 부교재 불법판매 '말썽'』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4일자 5면) (2) 『전남도교육청 "나몰라라" 늦장행정 '말썽'』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수업교재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문 게재, 조정액 15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

2010제주조정45~46	(주)송이산업 對 제주KBS-2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타임」 프로그램 ''송이' 특정업체 상표 등록 안돼'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송이' 명칭에 대한 상표 독점사용이 문제가 있다는 제주도 의회 의원의 말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타임〉 제주참여 시간에 신청인 업체를 배경으로 하여 반론보도문 보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
이 행 결 과	「뉴스타임」 프로그램 '송이 상표 독점 사용 문제 제기 부적절'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7일 20:00)

2010서울조정1276~1278	장○○ 對 뉴시스, 의정부인터넷뉴스, 인터넷 재경일보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포천경찰서 경찰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혐의가 없는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인터넷 재경일보**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61~62 참조)] • **의정부인터넷뉴스** : 취하 ※ 이행방법 • **뉴시스** : '전국–경기북부'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 **인터넷 재경일보** : '정치–사회'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포천경찰서 경찰, 직무유기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2010서울조정1279	1.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2. 유○○ 對 연합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제복싱연맹 "한국 회원 자격 박탈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국제복싱연맹 소집행위원회가 신청인 연맹이 새집행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62~63	1. 안○○, 2. 박○○ 對 경남도민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죽은 남편 안 보이고 보험금만 보이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과로사한 전 남편의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고 보험금만 수령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중재액 300만원, 부제소 (2010경남중재1 참조)]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최소 3일간 중앙 최상단에서 5번째 이내 위치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외부 인터넷 게시판, 포털 블로그 등에 전재된 조정대상기사는 삭제 조치
이 행 결 과	『'이혼한 아내' 오보 사과드립니다 – 장례식 불참 · 보험금 수령 등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1면)

2010서울조정1280~1281	권○○ 對 SBS–TV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출발! 모닝와이트」 프로그램 '대낮 주택가 사망사건, 도대체 왜?'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30일 07:4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형이 살해당한 이유가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큰 확성기 소음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0전북조정27	강○○ 對 군산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 강간』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 조정액 50만원, 부제소)

2010전북조정28	강○○ 對 군산미래신문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50대, 친누나 성폭행 긴급체포』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 조정액 50만원, 부제소)

2010광주조정42~43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對 광주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과도한 공무집행 '물의''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7일 21:00)
신청인주장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가 취객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취객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내용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 손배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44	화순군 對 디지털화순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인권유린』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 군수가 검찰 수사중인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사회면에 14일간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통화내역 제출요구는 인권유린"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정정보도문』

2010대구조정21	최○○ 對 대구KBS-1TV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미신고집회 단체대표 벌금형'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2일 07:30)

신청인주장	장애인단체 대표인 신청인이 미신고집회 개최 및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항소한 상태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충북조정19~20	대원리 마을회 산촌추진위원회 對 CJB-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부실논란 비닐하우스'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3일 20:25)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종합뉴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6일 20:09)

2010전북조정29	임실군 對 임실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청소년사업 특혜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면) (2) 『[사설] 강군수 황당한 협약체결 당장 취소해야 마땅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임실군이 사업능력이 부족한 전주YMCA와 청소년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합의)
이 행 결 과	『임실군과 전주 YMCA간 협약은 무효』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7일자)

2010대구조정22	(주)동양건설 對 경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돈 줄때면 입다무는 공기업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며 불법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8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82	강○○ 對 건설교통환경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개별화물 공제조합 설립, "왜 안되고 있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모 광역시 개별화물협회 단체장인 신청인이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화물의 공제조합 설립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개별화물 공재조합 설립, 아노디는 이류" 취재 결과 사실과 달라 오보』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사회면)

2010서울조정1283	장○○ 對 인터넷 의정부신문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포천경찰,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혐의가 없는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부제소 (2010서울중재62 참조)] ※이행방법 : 의정부신문 사회면에 추후보도문 게재, 인터넷 의정부신문에 3일 이내로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포천경찰서 장 경장 직무유기 등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4일자)

2010서울조정1284	한국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 對 데일리안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금투협 노조의 법적대응 "사측 길들이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타임오프제 도입 이전의 노조 전임자수 유지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측을 길들이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문제로 삼는 조정대상기사의 쟁점들 중 일부는 충분한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보도한 것이므로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이 형사고소하였으므로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

2010서울조정1285	한국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 對 인터넷 프리임경제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금투협 사태' 황건호 회장 뚝심 통할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타임오프제 도입 이전의 노조 전임자수 유지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측을 길들이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금투협 노조 "노조기금 아닌 합법적 임대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6일자)

2010강원조정14	후평3동주민센터 외 14인 對 춘천MBC-R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딱따구리」 프로그램 '춘천월드레저총회와 경기대회가 열흘앞으로...'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8일 08:30)
신청인주장	춘천시 모 주민센터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월드레저총회 현수막을 부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강제적인 참여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2010서울조정1286~128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對 내외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전국에서 배짱 제일 좋은 남원시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태풍 '덴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 대다수의 직원들이 잠을 자느라 재난상황실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88	신상진 對 한겨레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기고] 담뱃값 인상이 최선의 금연정책이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4일자 2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흡연자의 표를 의식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담배회사의 로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고문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289~1290	강○○ 對 EBS-TV, 인터넷EBS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EBS 뉴스」 프로그램 '선거법 개정이 대안' 제하의 보도 [EBS-TV (2010년 6월 7일 20:30), 인터넷EBS (6월 7일자)] (2) 「EBS 10시뉴스」 프로그램 '선거법 개정이 대안' 제하의 보도 [EBS-TV (2010년 6월 7일 22:00), 인터넷EBS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학생인 신청인이 교육감 선거에 무지한 것처럼 인터뷰를 왜곡 편집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20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

2010경기조정91~94	광명시 對 광명지역신문,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보금자리에 대규모 군사타운이 웬말?』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2일자 1면) (2) 『힘 있는 척한다고 힘이 생기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2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군사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함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메인화면에 14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이후 보도된 날짜와 지면에 계속 게시

이 행 결 과	『군사타운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 (2010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0월 1일자)]

2010광주조정45	1. (유)남해환경, 2. (유)서부환경, 3. (주)동양환경 對 광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무안군 건설폐기물 관리감독 '구멍'』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9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야적해 놓은 순환골재에서 토사가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12면)

2010전북조정30	송천제일지역주택조합 對 전북도민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송천제일주택조합 아파트 파행우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일자 7면) (2) 『송천 제일지역조합 아파트 서희건설 시공』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6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아파트 신축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송천제일주택조합 암투 말도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7일자 7면)

2010서울조정1291~1292	문○○ 對 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아파트형 공장에 웬 예식장'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3일 21:00) (2) 「뉴스라인」 프로그램 '말뿐인 아파트형 공장'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3일 23:00) (3) 「뉴스광장」 프로그램 '또 최대 아파트형 공장'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4일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용도 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영업 중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 손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93	대통령실 對 내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신한사태 출발점 청와대 와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사장을 고소한 소위 '신한사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신한금융사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11면)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신한금융사태 관련 정정보도문』

2010부산조정44~47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對 국제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사하복지관, 후원금 미지급 다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8면) (2) 『[사설] 잇단 복지관 비리, 철저한 감독으로 원천차단을』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4일자 3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결연 후원금과 물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9일자 10면)

2010전북조정31~32	양○○ 對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학교폭력 관련 분쟁 갈수록 늘고 복잡 전담 조정기구 설치 급하다』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0년 6월 17일자 6면), 인터넷 전북일보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학교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측이 가해자측에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정보도 해 줄 것을 원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46	화순군 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꼼수 쓰다 들킨 행정』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의 고교 수업료 전액 지원사업이 변칙행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대구조정23	(주)청학씨앤디 對 경북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경북도, '이스트힐' 불법적발땐 조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허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골프장 사업인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294~1297	한국교육방송공사 對 SBS-TV, SBSi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EBS의 횡포... 수능 교재로 돈벌이 '급급'' 제하의 보도 [SBS-TV (2010년 9월 6일 20:00), SBSi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EBS가 일반 도매상에는 수능교재 공급조건을 까다롭게 한 반면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점에는 물량을 몰아주는 등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SBS-TV** :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문 보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 **SBSi** :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4일 이내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2일 20:00) • **SBSi**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2010서울조정1298~130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對 한국일보 (1298~1299 정정 · 손배청구), 인터넷 한국일보 (1300 정정청구), 네이버 (130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사하복지관 장기간 파행』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9월 9일자 30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결연 후원금과 물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국일보** : 취하 • **인터넷 한국일보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302~1304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對 한국모바일방송 (1302~1303 정정 · 손배청구), 다음 (130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보다 개인착복에 급급?』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결연 후원금과 물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반론]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30일자)

2010서울조정1305~1314, 1319~1324	이○○ 對 스포츠조선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디지틀조선일보,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제작진이 밝히는 '화성인 바이러스' 비하인드 스토리』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했던 신청인이 일본 AV를 찍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315~1318	이○○ 對 인터넷 일요신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한국 연예인 일본 AV업계 진출 소문과 진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했던 신청인이 일본 AV를 찍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325~1330	이○○ 對 쿠키뉴스,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어? 케이블에서 봤는데?" 공주병女 일 AV에 출연』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했던 신청인이 일본 AV를 찍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331~1337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한국 천주교, 부정 · 불의 외면…공범자적 삶 살고 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8월 18일자 5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고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인 신청인 단체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한겨레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재 • **드림위즈** : 한겨레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8일자 2면) •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 『10월 8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8일자)

2010서울조정1338	1. 강○○, 2. 한○○ 對 도시개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8일자 3면)
신청인주장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의 임원인 신청인들이 한국감정원과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함께 일본에 관광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제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2일자 5면)

2010서울조정1339~1345	박○○ 對 뉴시스, 네이트, 네이버, 조인스MSN,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의정부, 한나라당 위원장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2010년 4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 시청 출입기자들이 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63~69 참조)]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뉴시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국-경기북부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 **네이트 · 네이버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뉴스섹션에서 추후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재 • **조인스MSN · 드림위즈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뉴스섹션에서 추후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의정부을 위원장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2010서울조정1346~1347	박○○ 對 인터넷 신아일보, 다음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한나라당 의정부을 당원協 위원장 피소』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 시청 출입기자들이 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의정부을 한나라당 위원장 명예훼손 피소건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2010서울조정1348~1349	박○○ 對 경원일보, 다음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의정부시청 지방신문 출입기자단 24명 현역 당협위원장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 시청 출입기자들이 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박인균 당협위원장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2010서울조정1350~1351	박○○ 對 경원일보, 다음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의정부 한나라당 을구 공천잡음, 김효열 의원 탈당, 무소속 출마선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6일자) (2) 『의정부 시의회 김효열 의원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비판 성명 내고 탈당』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을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박인균 당협위원장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2010서울조정1352~1353	박○○ 對 의정부신문, 인터넷 의정부신문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효열 의정부시의원 한나라당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의정부신문 (2010년 4월 15일자 1면), 인터넷 의정부신문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을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70~73 참조)] ※ 이행방법 • **인터넷 의정부신문**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박인균 당협위원장에 대한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의정부신문 (2010년 10월 1~13일자 5면), 인터넷 의정부신문 (10월 2일자)]

2010서울조정1354	박○○ 對 인터넷 북경기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효열 시의원, 한나라당 탈당』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을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치면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박인균 위원장 반론보도(김효열 전 시의원 탈당성명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2010서울조정1355	박○○ 對 인터넷 경기북부시민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효열 의원 한나라당 탈당』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을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조정대상보도 하단 『위 기사에 대해 박인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2010서울조정1356~1358	박○○ 對 지뉴스코리아 (정정 · 반론 ·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1) 『의정부 한나라을 지역구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8일자) (2) 『한나라 의정부(을)구 B위원장 고소』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을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359~1360	김○○ 對 인터넷 아시아경제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지자체, 또 '보궐선거' 하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평택시 시장인 신청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승진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3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정보도문 송고, 정정보도문은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사회] '지차체, 또 보궐선거하나?'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7일자)

2010서울조정1361	고○○ 對 동아일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백화점 '5만원권 쇼핑 효과'에 웃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1일자 B3면)
신청인주장	백화점에서 쇼핑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50만원, 부제소)

2010서울조정1362	권오진 對 연합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내 땅으로 다니지마' ...경기도의원, 마을 도로 폐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경기도의원인 신청인이 마을주민과 소방차가 이용하는 도로를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폐쇄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내 땅으로 다니지마' 경기도의원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6일자)

2010경기조정95	정상윤 對 중부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결대 총장선거 '돈 봉투 오갔다' 』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0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총장 선출과정에서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인터넷 중부일보 사회면에 7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이후 반론보도문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 **중부일보** : 『"성결대 총장선거 돈봉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2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성결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2010경기조정96	1. 중앙동발전협의회, 2. 정○○ 對 반월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돼지석상 업체에게 받은 '돈' !』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9일자 4면) (2) 『4백만원 받아... 각종 의혹 일어 '파문' 』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9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돼지석상 설치 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한 동기와 목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47	화순군 對 디지털화순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의원들이 모를거라고? 호도하지 마라』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의 정부표창은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에 의한 공로가 아니라 단순한 환경 개선 때문이라는 문행주 군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보도이다.)

2010광주조정48	화순군 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꼼수 쓰다 들킨 행정』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의 정부표창은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에 의한 공로가 아니라 단순한 환경 개선 때문이라는 문행주 군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초기화면 상단으로부터 5번째에 7일간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2010광주조정49~50	파인뉴스 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추석특집> 귀성객들에게 추석 선물하는 화순지역신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허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전조정37~40	김○○ 對 충청세종신문, 충청세종신문닷컴 (매체별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 비하발언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충청세종신문 (2010년 9월 20일자 1면), 충청세종신문닷컴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군의원인 신청인이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단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반론보도문 배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세종신문 (2010년 10월 18일자 1면), 충청세종신문닷컴 (10월 18일자)]

2010경기조정97	권오진 對 용인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진정 시민위한 공직자인가? '놀부심보 도의원'』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일부 중 자신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폐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64~65	1. 함안군 배드민턴연합회, 2. 윤○○ 對 함안정통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생활체육대축전 제9회 함안군수기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 개회식 없는 대회행사 예년비해 분위기 '썰렁'』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2면)
신청인주장	중재위 조정으로 배드민턴대회에 대해 PR보도를 해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썰렁했다면서 왜곡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5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결정문에 부제소 조항에 관한 문구도 삽입해야 한다.)
이 행 결 과	『함안군수기배 배드민턴대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2면)

2010서울조정1363	정○○ 對 디지틀조선일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자친구와 잠자리 장면' 담은 하드디스크 분실…전문직 A씨의 '절망'』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인터넷 음란동영상 유포 경로 및 접근방법 등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로 신청인의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남조정66~67	김○○ 對 경남도민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무리한 작업하다 숨졌으니 과로사』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4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직원에 대해 언론에 과로사라고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과로사 논란'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8일자 4면)

2010전북조정33~34	1. (주)새만금관광개발, 2. 정○○ 對 새전북신문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신시도 휴게단지 개발사업에 삐걱』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2) 『농어촌공사 공모절차 의문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1. 신청인1.이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 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신청인주장	2. 신청인2.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새만금관광개발에 취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2면)

2010경기조정98	인천항만공사 對 경기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IPA '성과금 돈잔치' 눈총』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상후하박'을 적용, 차등 지급하여 눈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IPA 경영평가 성과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6일자 6면)

2010경기조정99~100	정○○ 외 20인 對 하나로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양평 벽산 블루밍 APT 준공 검사 '난항'』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8~24일자 1면) (2) 『[사설] 양평 블루밍아파트 준공승인 서둘러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8~2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투기와 전매로 아파트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양평 벽산 블루밍APT준공' 보도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4일자 1면)

2010서울조정1364	(주)메드온 對 메디게이트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의료기기 공동구매, 너무 싸면 사기 의심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공동구매를 추진한 후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PR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365~1367	윤○○ 對 KBS-1TV, KBS-2TV, K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생생정보통」 프로그램 '보험 지급액 적어 자살소동' 제하의 보도 [KBS-2TV (2010년 8월 26일 19:10), KBSi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통사고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로 자살소동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BS-1TV** : 각하 (사유 : 조정대상보도가 보도된 바 없다.) • **KBS-2TV · KBSi** :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이다.)

2010서울조정1368~1372	**윤○○ 對 YTN, 인터넷 와이티엔, 연합뉴스, 노컷뉴스, 한경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YTN** : 「뉴스현장」 프로그램 ‘‘보험금 적다’ …50대 남자 자살 소동’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6일 11:00) • **인터넷와이티엔** : 『‘보험금 적다’ …50대 남자 자살 소동』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 **연합뉴스 · 노컷뉴스 · 한경닷컴** : 『"보험 지급액 적다".. 안양서 50대 자살소동』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통사고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로 자살소동을 벌였다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YTN · 인터넷와이티엔 · 노컷뉴스 · 한경닷컴** : 각 취하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광주조정51	**영암군금정면자율방재단 對 영암군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자율방재단, 태풍 오는데 중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5면)
신청인주장	영암군 금정면 자율방재단이 태풍에도 불구하고 외유를 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52	**영암군 對 영암군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군수 사죄 · 사업 재검토 등 요구』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영암군이 허위로 예산편성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5일자 2면)

2010광주조정53, 61	**화순군 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화순 하니움은 권력의 상징』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이 하니움 체육관 사용 관련, 행사 하루 전에 사용금지 통보를 하는 등 행사 주최 측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 이행방법 : 초기화면 상단으로부터 5번째에 7일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표시되게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2010광주조정54	신안군 對 남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신안군, 예산 집행 '제멋대로'』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도로포장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6면)

2010부산조정48~49	도시안(주) 對 KNN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씨클라우드호텔 사기 분양'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12일 20: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호텔이 사기분양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해운대 레지던스 호텔 경영호조'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30일 07:40)

2010서울조정1373~1374	이○○ 對 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수혜 중 골프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1일 21:25) (2) 「뉴스라인」 프로그램 '수해 중 골프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1일 23:07) (3) 「뉴스광장」 프로그램 '수해 중 골프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일 06:30)
신청인주장	소방방재청 차장인 신청인이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공식일정에 불참하고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부산조정50~53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재단 對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복지법인 총체적비리 부산시, 6곳 형사고발』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0년 10월 6일자 1면), 인터넷국제신문 (10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단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없이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375~1376	5 · 18실체규명위원회 對 광주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북한이 배후라고?'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20:00) (2) 「뉴스9」 프로그램 '북한이 배후라고?'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 방송,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5 · 18 실체규명위원회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9일 20:00)

2010서울조정1377~1392	5 · 18실체규명위원회 對 연합뉴스, 다음, 야후, 매경닷컴, 이타임즈, 로지아이닷컴, 디지틀조선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5 · 18 북한배후설' 극우단체-5 · 18 단체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5 · 18실체규명위원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2010광주조정55~56	5 · 18실체규명위원회 對 무등일보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북 개입' 극우단체-5월단체 충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2일자 5면)
신청인주장	5.18실체규명위원회가 극우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6면)

2010광주조정57~58	5 · 18실체규명위원회 對 KBC-TV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5 · 18단체와 극우단체 충돌'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20:00)
신청인주장	5.18실체규명위원회가 극우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저녁뉴스」 프로그램 '5 · 18 실체규명위원회 본격 활동 나서'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9일 17:00)

2010광주조정59~60	5 · 18실체규명위원회 對 광주불교방송(광주BBS-R)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7시 뉴스」 프로그램 '극우인사와 5 · 18단 회원 충돌'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17:00)
신청인주장	5.18실체규명위원회가 극우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라디오 <17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 보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17시 뉴스」 프로그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6일 17:00)

2010서울조정1393~1394	고○○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대구대 학원갈등 "이제 그만"』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7월 28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대구대 전 이사였던 신청인에게 학내분규와 갈등의 책임이 있고 학원정상화추진위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24시간 이상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10월 25일자 16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24일자)]

2010충북조정21~22	영동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對 청주MBC-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다슬기 싹쓸이'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9일 21:35)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어민이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충북조정23~24	배○○對 청주MBC-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다슬기 싹쓸이'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9일 21:3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 소속 어민이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광주조정62~63	파인뉴스 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민.관 연쇄공격 막아낸 양심언론』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조정과정에서 패소결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이행방법 : 초기화면 상단으로부터 5번째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9일자)

2010광주조정64	신안군 對 전광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신안군 정실행정 의혹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정실행정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65~66	1. 임○○, 2. 영농조합법인 맑은꽃이쁜꽃아생화 對 전광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곡성군 농가 보조금은 눈먼 돈』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에게 지급된 농가보조금이 잘못 사용되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395~1396	중소기업중앙회 對 월요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불공정 행태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0일자 14~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이익보다는 현 집행부의 기득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중소기업중앙회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31일자 13면)

2010서울조정1397~1398	중소기업중앙회 對 일요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삐딱하게 보니까 진짜 수상하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0일자 10~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이익보다는 현 집행부의 기득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로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중소기업중앙회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7일자 3면)

2010서울조정1399~1404	중소기업중앙회 對 인터넷뉴스 신문고, e파이낸셜신문, e중앙뉴스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 행태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인터넷 뉴스신문고 (2010년 10월 8일자), e파이낸셜신문 · e중앙뉴스 (10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이익보다는 현 집행부의 기득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 **인터넷뉴스 신문고** : 경제코너에 7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e파이낸셜신문 · e중앙뉴스** : 사회면에 7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뉴스 신문고**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6일자) • **e파이낸셜신문 · e중앙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보도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2010서울조정1405	박○○ 對 인터넷 재외동포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삼성이 승마로 영국 진출했지요』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중인 승마클럽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8일자)

2010서울조정1406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사설] KBS는 때 아닌 '이승만 특집' 계획 철회해야』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9월 16일자 31면), 경향닷컴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기획중인 이승만 대통령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사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408~1409	사단법인 KYC(한국청년연합) 對 뉴데일리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개 단체 뭉쳤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단체는 신청인 단체와 이름이 비슷한 타 단체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포털사이트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9일자)

2010서울조정1410	소○○ 對 KBS-1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여행객 노리는, '노빵여행' 의 실체'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15일 23:05)

신청인주장	베트남 보신관광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서신,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2010서울조정1411~1412	배○○ 對 MBC－TV. iMBC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이산가족 상속재산' 제하의 보도 [MBC (2010년 9월 24일 21:00), iMBC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수임한 북한 주민 관련 상속 소송에 북한 고위부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010경기조정101	영종청보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對 인천공항영종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주민의 힘 화합하는 영종주민의 날 성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후원한 영종주민의날 행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인천공항영종뉴스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일자 1면)

2010경기조정102~103	정○○ 對 반월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조합원 갈등 몸싸움…경찰 출동』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7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의원 회의에 의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조합 사무실을 강제 점거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 운영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7일간 게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보도문] "안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 갈등…"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4일자 2면)

2010경기조정104~105	정○○ 對 중부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안산 개인택시 전 · 현직 조합장측 '충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8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현 조합장과의 자격문제를 놓고 물리적 대립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전북조정35	1. 이○○, 2. 강○○ 對 전북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교내 집단폭행 '쉬쉬'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집단폭행 피해학생의 부모인 신청인들이 가해자측에게 합의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1억 3000만 원 합의금 요구는 사실무근" 임실 학교폭력 피해 부모 반박』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6일자 6면)

2010대구조정24~25	이○○ 對 TBC-TV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프라임 뉴스」 프로그램 '경북유도회 임직원들 전국체전 심판 매수설 폭로'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29일 20:20)
신청인주장	경북유도회 전직 임원인 신청인이 상급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대구조정26~27	이○○ 對 연합뉴스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훈련비 횡령 경북유도회 임직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경북유도회 전직 임원인 신청인이 상급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기사 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경북유도회 전 전무이사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일자)

2010경남조정68~69	송○○ 對 통영타임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도경, 통영공설운동장 전광판 관련 내사』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신청인주장	통영공설운동장 전광판 공사와 관련해 신청인이 NH개발과 불법계약을 체결해 대금 미지급에 따라 브로커로 개입하고 불법자금조성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통영공설운동장 전광판 내사'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3일자)

2010서울조정1413~1414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對 한국모바일방송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사하구복지관 산하기관, 허위통장 만들어 사업비 유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산하기관인 부산사하시니어클럽이 사업비를 유용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부산사하시니어클럽은 신청인 단체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2010광주조정67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對 전국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건설업체-공사 "그들만의 검은 공생"』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0일자 15면) (2) 『'밀착 의혹' 갈수록 깊어진다』 (2010년 8월 24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성댐 잔토석 반출사업 과정에서 모업체와 밀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전북조정36	주식회사 ○○생명과학 對 인터넷 소통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기상관측, 악취 주범 제2공단 L사 '유력'』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6일자) (2) 『그 날 악취도 L사에서 발생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2008년과 최근에 익산시 일대에서 발생한 악취의 진원지는 신청인 회사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메인섹션에 1일간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과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기사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악취 기사 관련 L사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일자)

2010서울조정1415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4대강 사업뒤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1면) (2) 『4대강의 또다른 재앙, 크루즈 사업계획』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31면)
신청인주장	4대강 사업과 관련, 신청인 연구소가 보에 갑문을 설치하여 선박 통행이 가능할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6일자 2면)

2010서울조정1416~1417	1. 재단법인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2. 김○○ 對 한국기독공보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4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의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유니온교회를 강제로 내쫓은 것처럼 보도했으나 구청이 예배처소로서의 사용을 금지하여 퇴소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 뿐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 반론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418~1419	(주)다산북스 對 오마이뉴스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소설<덕혜옹주>, 내 책 40여 곳 무단도용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2) 『[전문] <덕혜희>작가 혼마 야스코의 '표절 검토 자료' 』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발행한 <소설 덕혜옹주>가 일본의 <덕혜희>를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표절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후속 기사로 상세히 보도하였으므로 기사삭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420~1421	백○○ 對 헤럴드경제닷컴, 네이트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헤럴드경제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5만원) • **네이트**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15만원)

2010서울조정1422	킨더슐레(주) 對 KBS-1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말로만 '명문 놀이방'…부실급식에 폐업'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4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회사의 특정 가맹점에서 있었던 부실급식을 마치 본사와 전체 가맹점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실성이 인정된다.)

2010서울조정1423~1426	김○○ 對 시사IN, 시사IN Live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시사IN** : 『포항 출신은 개도 벼슬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7일자 16면) • **시사IN Live** : 『MB 정부에서 벼락 출세한 성골과 진골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한국거래소 감사로 임명된 절차상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시사IN**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 **시사IN Live**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시사IN :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7일자 8면) • 시사IN Live : 『한국거래소 김○○ 상임감사위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2010부산조정54	김○○ 對 UBC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구청장 친형 집 앞 잡풀까지'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1일 21:00)
신청인주장	울산 남구청장의 친형인 신청인 집앞의 풀을 베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 프로그램 말미에 청색바탕에 흰색으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
이 행 결 과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2일 21:00)

2010서울조정1427	김○○ 對 인터넷 내외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술판 · 싸움판 학교 급식실…학교는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2) 『연천전곡고 급식실에서 시작되는 학교 비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2일자) (3) 『연천전곡고 급식실, 솜방망이 처분에 '시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3일자) (4) 『놀고먹는 연천 전곡고등학교 영양사』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교 영양사로 재직중인 신청인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배식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 74~75 참조)] ※ 이행방법 : 내외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인터넷 내외일보 뉴스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 반론보도〉 '전곡고 영양사 놀고먹는다'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4일자)

2010서울조정1428~1431	이○○ 對 MBC–TV, iMBC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국군소령, 검찰 수사'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9월 24일 21:00), iMBC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군인 신분인 신청인이 사업을 하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iMBC :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기사 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 MBC-TV : 조정대상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국군검찰단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이 인정된 경우 신청인과 사전협의하여 추후 보도, 신청인이 보내온 수사종결 혹은 판결선고에 관련한 문건을 〈아침 7시 뉴스〉 내지 〈마감뉴스〉 프로그램의 말미에 진행자가 스튜디오 멘트 형식으로 원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 iMBC : MBC-TV의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신청인이 수사종결 혹은 판결선고에 관련한 문건을 송부할 경우 조정대상보도 삭제

2010경남조정70~71	하동군 對 하동평의회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또 무슨 계약 타령?』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1면)
신청인주장	하동군에서 추진중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허위 거짓 계약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고문 게재)
이 행 결 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9일자 1면)

2010경기조정106	약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對 부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천 약대2구역 업체선정 '요지경' 』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대설비 업체 선정과정에서 타 견적보다 높은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7일간 정정 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8~24일자 1면)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 약대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보도 관련 바로 잡습니다』

2010서울조정1432~1439	(주)아이이에이 對 나눔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 소송 승리하고 2011년 론칭』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가처분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일 뿐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지난 10월 18일에 보도된 "유아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소송 승리하고 2011년 론칭"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2일자)

2010서울조정1440~1445	(주)아이이에이 對 뉴스와이어,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뉴키즈브라운'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와이어** : 초기화면 중앙목록 상단에 1일간 알림기사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알림기사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포털사에 알림기사 송고 • **네이트 · 다음** : 뉴스와이어에서 알림기사를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6일자)

2010서울조정1446~1453	(주)아이이에이 對 브레이크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1위 유아 영어교재 키즈브라운, '뉴키즈브라운' 재탄생』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유아 영어 교재 키즈브라운'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2010서울조정1454~1459	(주)아이이에이 對 아이비타임즈,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 가상교육시스템 도입한 '뉴키즈브라운'으로 재기』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460~1467	(주)아이이에이 對 OSEN,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 유치원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과 새 계약』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 osen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 osen : 『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5일자)

2010서울조정1468~1473	(주)아이이에이 對 인터넷 중앙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1위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뉴키즈브라운' 으로 재탄생』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유아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관련 기사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6일자)

2010서울조정1474~1479	(주)아이이에이 對 폴리뉴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뉴키즈브라운으로 업그레이드』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폴리뉴스** : 초기화면 중앙목록 상단에 1일간 알림기사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알림기사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포털사에 알림기사 송고 • **네이버 · 다음** : 폴리뉴스에서 알림기사를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3일자)

2010서울조정1480~1487	(주)아이이에이 對 헤럴드경제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 소송 승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유아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관련 기사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2일자)

2010서울조정1488~1491	(주)아이이에이 對 희망뉴스, 네이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 법정투쟁 딛고 "뉴키즈브라운"으로 재기』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키즈브라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2010서울조정1492	이○○ 對 BBN산업뉴스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6만원짜리 동남아 항공권 직접 예약해보니...』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신청인주장	외국계 항공사에서 왕복 10만원대 동남아 항공권을 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미끼' 상품에 불과하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의 보도 내용과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

2010전북조정37~42	(주)아이이에이 對 모모뉴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 유치원 영어교재 새롭게 선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키즈브라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2일자)

2010광주조정68	1. 김영록, 2. 김○○ 對 광역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김영록 의원, 해남 노화 보길 '버리나' 』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1면) (2) 『김영록 의원 개입 의혹, 유감스러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국회의원이 해상여객 면허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9일자 1면)

2010광주조정69	여수경찰서 對 주간 남도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70억대 부부사기단, 경찰에 수천만 원 돈 뿌렸다 '파문' 』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3면)

신청인주장	70억대 부부사기단 사건과 관련해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향응이 제공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2010광주조정70	최○○ 외 3인 對 주간 남도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60억대 경매사기 검 · 경로비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3면)
신청인주장	60억대 경매사기사건과 관련해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게재할 의사가 있으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2010부산조정55~56	사회복지법인 엘림사회복지재단 對 울산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요양병원 위생불량'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의 노인복지센터가 위생불량 요양병원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493~1494	이○○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노인 취업 성공률이 122.6%』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11월 5일자 21면), 인터넷 중앙일보 (5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률 산정에 대한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이름 및 소속기관을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495	진안군 對 신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진안 군수업무용 자동차 관리, 운영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진안군수의 업무용 차량이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일자 15면)

2010서울조정1496	진안군 對 인터넷 신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진안군, 감사원 감사서 입찰비리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2일자) (2) 『국민의 혈세 억지 명분 만들어 '펑펑'』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일자) (3) 『진안군, 허술한 보조금 행정 또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9일자) (4) 『진안 군수업무용 자동차 관리, 운영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진안군수의 업무용 차량이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되고 있으며, 군의 각종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2010부산조정57	학교법인 정선학원 對 교회복음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브니엘학원 재단운영권 대법원 최종판결』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의 학교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동창회와 교사 및 학부모 등이 갈등을 빚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전북조정43	김○○ 對 J-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뉴스」 프로그램 '청원경찰 밀실채용'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일 20:20)
신청인주장	군산시의 청원경찰 미공개 채용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취업준비생인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기조정107	약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對 부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천 약대2구역 환기시스템업체선정 '말썽'』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4일 ~ 1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한 업체로부터 환기시스템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제품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등 업체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성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7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8일~ 24일자 1면)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약대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보도 관련 바로 잡습니다』

2010서울조정1497	식품의약품안전청 對 내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영유아식에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인터넷 내일신문의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2면)

2010서울조정1498~1500	나○○ 對 교회와이단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전주 성은세계선교교회 나○○, 영매(靈媒) 주장』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호 56~73면)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집회도중 영매(靈媒) 간증을 했으며 신청인의 외국 신학교 박사학위에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01~1502, 1512	(사)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對 빅뉴스 (1501~1502 정정 손배청구), 네이버(1512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불법 웹하드 DCNA 김부겸 등 민주당 개입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9일자) (2) 『인미협, 김부겸에 저작권보호센터 관련 공개질의』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사무국장 취임행사를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빅뉴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반론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네이버**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빅뉴스** : 사회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1일간 보도,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빅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 <e-옴부즈맨>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 **네이버** :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503	식품의약품안전청 對 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기적의 화장품, 알고보니 '스테로이드' 범벅'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1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화장품에 기능인증서를 내 준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

처 리 결 과	는사실보도이므로 중재부의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부에 자막 게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2010서울조정1504~1505	(사)서울약령시협회 對 서울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한약재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6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불량한약재신고센터가 없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한약은 밥보다 안전해요』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5일자 27면)

2010서울조정1506~1509	하○○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Sports 라운지] 평창유치위 · 대한체육회 '삐걱' 』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11월 9일자 A27면), 디지틀 조선일보 (11월 8일자), 네이버 · 네이트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기념품 납품업체들을 모두 바꾸는 등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일자 A27면) •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바로잡습니다] 11월 9일자 '평창유치위 · 대한체육회 '삐걱' 제하의 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일자)

2010경기조정108	김○○ 對 경인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뻔뻔한 비리교감』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5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그 학교의 신입생 입학 점수 조작과 교비 횡령 등의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인터넷 경인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 '뻔뻔한 비리 교감' 보도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0년 11월 26일자 2면), 인터넷경인일보 (11월 26일자)]

2010강원조정15~20	미래산업(주) 對 원주KBS-1TV, 울산MBC-TV, GTB-TV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원주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음식물 폐수 오염 심각' 제하의 보도 (2010년 10

조 정 대 상	월 27일 21:00), (2) 「뉴스광장」 프로그램 '음식물 폐수 오염 심각'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8일 07:00) • **울산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음식물처리업체, 부실처리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7일 21:0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음식물처리업체, 부실처리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8일 07:10) • **GTB-TV** : (1) 「뉴스820」 프로그램 '음식물 자원화업체가 '환경오염''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7일 20:20), (2) 「뉴스라인」 프로그램 '음식물 자원화업체가 '환경오염''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8일 07:2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오폐수를 방류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원주KBS-1TV**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보도는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보도이므로 반론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울산MBC-TV**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보도는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보도이므로 반론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GTB-TV**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10~1511	김○○ 외 5인 對 대한건설기계신문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욕설과 폭력 난무한 임시총회 불법난입』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대한건설기계협회장 선거장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6일자 2면)

2010광주조정71~72	박○○ 對 호남뉴스 일번지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함평군, 공무원 군의원 압박…군수 배경 '지적'』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군수와의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 군의원을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광주조정73	신안군 對 광주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2010광주조정74	신안군 對 전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신안군, 특정단체 예산 지원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13~1514	이재오 對 오마이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재오 · 임태희, 북 '리호남 참사' 비밀접촉" MB정권 인사, 수사대상서 제외…표적수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리호남' 내각참사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부제소)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
이 행 결 과	조정대상보도 하단 『이재오 장관, 오마이뉴스 보도에 유감(遺憾) 표명』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5일자)

2010경남조정72~73	(주)원 對 창원MBC-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황 확인...소환 늦춰질 듯'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8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미세분무 소화장치인 불도리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PR보도 게재, 유감공문) ※이행방법 : 〈뉴스데스크〉 로컬 뉴스 프로그램 시작 후 5분 이내에 정정보도문 방송,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명기, 방송화면은 불도리의 제품 사진 및 관련 인증서류, 화재 진압 실험 비교 등의 장면을 사용, 조정대상방송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 뉴스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에 신청인 회사, 제품 또는 회사 관계자 등이 출연 내지 인터뷰하는 내용의 방송을 3회 이상 내보낼 것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이동식 소화설비 불도리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4일 21:00)

2010서울조정1515	광주인탑스(주) 對 전자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LED 조명공사 비리 많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0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낙찰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해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3일자 2면)

2010서울조정1516	광주인탑스(주) 對 인터넷 전자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규격 미달 LED 조명 납품업체들 '철퇴'』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낙찰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해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3일자)

2010대구조정28	포항장성두산위브더제니스 비상대책위원회 對 경북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포항장성두산위브 '분양가 할인' 일단락』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15면)
신청인주장	두산건설과 포항 두산위브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향후 미분양 가구 분양 시 할인 폭만큼 기존 계약자도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신청인 소속 계약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17~1518	(주)알앤엘바이오 對 MBC-TV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시술중 사망'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2일 21:00)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기세포' 국내에서 불법시술', '줄기세포 주사가 뭐길래?', '줄기세포시술 '폐동맥 · 암 발생''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5일 21:00)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기세포' 불법시술'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6일 06:00) (4)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기세포' 불법시술, 유력인사 로비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6일 21:00) (5)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기세포 불법에 주먹구구식 시술까지'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9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부산조정58	배○○ 對 UBC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군수출마 인사가 그린벨트 훼손'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1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오다 철거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충분한 사전조사 후 보도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제주조정47~48	양○○ 對 제주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공무원 납품비리 수사 교육청 번져'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6일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공무원 납품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뉴스광장〉, 〈뉴스 930〉, 〈뉴스9〉 프로그램에서 각각 정정 및 사과보도문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은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 진행자는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영상과 스크립트를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여 검색가능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1) 「뉴스광장」 프로그램 ''공무원 납품비리' 여직원 돈 가로챈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0일 06:00) (2) 「뉴스9」 프로그램 ''공무원 납품비리' 여직원 돈 가로챈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0일 09:30) (3) 「뉴스 930」 프로그램 ''공무원 납품비리' 여직원 돈 가로챈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0일 21:00)

2010경기조정109~110	박상은 對 경인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여객선 운항중단' 해명도 거짓』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일자 23면) (2) 『지역행사 순찰헬기 동원 물의 '박상은 의원'』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1면) (3) 『박상은 의원 '헬기동원 파문' – 해경, 항공기 지원규정 보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0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지역구 행사 참석 당시 해경 헬기를 이용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부득이한 이용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피신청인이 연속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감 표명, 사과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청구취지가 결정문에 반영되어야 한다.)

2010충북조정25~26	진천군축구협회 對 충청타임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진천축구협 '충북 챔피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단체명 옆에 부회장의 직책과 이름을 표기하는 등 마치 회장이 공석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2일자 4면)

2010대구조정29	합자회사 고려산업 對 한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영주 여륵리 채석단지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영주시가 진입로도 확보하지 않은 신청인 업체에 골재채석 사업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한 절차로 승인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16면)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정정보도문』

2010대구조정30~31	카라코람산악회 對 매일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문희갑 전 대구시장 '2010 팔공산악대장 수상자' 로 선정』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28면)
신청인주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봉 등정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사건보도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1519~1520	1. 김○○, 2. 서울굴삭기연합회 對 대한건설기계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기종별 대표, 임시총회 불법난입 강경 대응』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5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대한건설기계협회장 선거장에 불법 난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2면)

2010서울조정1521~1527	사회심리치료사협회 對 문화일보 (1521~1522 정정 · 손배청구), 문화닷컴 (1523~1524 정정 · 손배청구), 네이버 (1525 정정청구), 네이트 (1526 정정청구), 파란 (1527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구직자 울리는 '허위 민간자격증' 』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0년 9월 24일자 2면), 문화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파란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사회심리치료사자격증이 실체가 불분명한 미등록 민간자격증이라고 보도했으나, 특허청에 등록된 전문자격증이다.
처 리 결 과	• **문화일보 · 문화닷컴 · 네이버**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처 리 결 과	• **네이트 · 파란**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문화닷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 송고 • **네이버** : 문화일보가 반론보도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네이트 · 파란** : 문화일보가 반론보도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문화일보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조정대상기사에 이를 반영하여 노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림』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0년 12월 7일자 10면), 문화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파란 (12월 7일자)]

2010서울조정1528~1529	(주)문화방송 對 인터넷 일요서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특종 MBC 대외비 특별감사 보고서 내용 단독공개 제1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신청인주장	삼성의 MBC 내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MBC가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7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2010서울조정1530~1531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KBS 안전관리팀 비리 재조사는 감사부정』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0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KBS 안전관리팀에 대해 재감사를 통해 징계 수준을 대폭 완화해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공정한 감사였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업무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 이행방법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초기화면에서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이 확인되게 하고,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0전북조정44~45	김○○ 對 해피데이고창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후원 · 협찬금은 결산보고 대상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지역축제(고창 모양성제)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2009년도 후원금 및 협찬금에 대해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모양성제 결산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3일자)

2010전북조정46~47	남원시 對 전주매일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남원시 건설과 과다지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6일자 11면) (2) 『남원시 건설과 계약도 허술』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7일자 11면) (3) 『개탄스러운 남원시 건설과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8일자 15면) (4) 『수사의지 '흐릿'…경찰 불신 심화』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9일자 10면) (5) 『남원시 건설과 뒷돈거래 철저한 규명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2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자체 공무원들과 사무용품 납품업체간에 뒷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본보 남원시 건설과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6일자 2면)

2010광주조정75	소림학교 對 목포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장애학교서도 폭행'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2일 21:0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장애학교서도 폭행'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3일 07: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폭행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전북조정48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對 새전북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전주소리축제 이상한 예산 집행』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1면) (2) 『 소리축제 갈란테 공연 의혹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10면) (3) 『타지역 축제 총감독 동시 수행 2년 임기보장-수행비 특별예우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5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주최한 '이네사 갈린데' 공연 예산의 집행이 투명하지 않고, 단체장에게 3년 임기를 보장한 것은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7일자 2면)

2010서울조정1532	신○○ 對 아시아투데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춥다 추워』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50만원, 부제소)

2010경남조정74~75	박○○ 對 함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칠원자원봉사단체 정치 집단화 우려, 자원봉사대장 선거에 함안군수 · 군의원 영향력 개입 시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7일자 3면) (2) 『칠원면 자원봉사 대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3면) (3) 『[발행인칼럼] 칠원면여성자원봉사대 '존재의 의미' 되새겨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칠원면 자원봉사대장 선거를 앞두고 함안군수가 신청인에게 한쪽 후보자 지지 전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5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중재부의 손해배상액 지급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칠원면 자원봉사대 선거 – 적법하게 봉사대장 선출된 사람은 박○○씨』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1면)

2010서울조정1533	문○○ 對 엠파이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블라토프 삼보회장, 대한체육회 방문 '삼보연맹 맹비난'』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한체육회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한삼보연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6일자)

2010서울조정1534~1535	해군본부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해군 장성 등 120면 계좌추적』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0년 11월 19일자 1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링스헬기' 허위정비 사건과 관련, 수뢰혐의가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인 해군 관계자의 규모가 2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120여명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536~1537	방○○ 對 법률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변질되는 공청회… 명분은 '의견수렴' 실상은 '여론몰이'』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4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양형기준 관련 공청회에서 법무부 입장을 대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은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전북조정4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 지부 對 전주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남원시 공무원노조 시민 위한 노동운동 기대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5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가 조정과정에서 기각된 것은 기자의 지적이 정당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당사자 문제'로 기각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15면)

2010충북조정27~28	1. 윤○○, 2. 김○○, 3. 김□□ 對 충청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절차 무시한 강압수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7일자 3면)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절차 무시한 강압수사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3면)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절차 무시한 강압수사 '논란'", "경찰, 청주시 이첩사건 무리한 진행 임산부 하혈…상당署 '사실 파악중'"』

2010경남조정76~77	임○○ 對 함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칠원자원봉사단체 정치 집단화 우려, 자원봉사대장 선거에 함안군수 · 군의원 영향력 개입 시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7일자 3면) (2) 『칠원면 자원봉사 대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3면) (3) 『[발행인칼럼] 칠원면여성자원봉사대 '존재의 의미' 되새겨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칠원면 자원봉사대장 선거를 앞두고 함안군수가 신청인에게 한쪽 후보자 지지 전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2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처 리 결 과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중재부의 손해배상액 지급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함안군수, 칠원봉사대 선거개입 사실과 달라 – 면장에게 사태 파악 지시만 내린 것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1면)

2010경남조정78~79	양산시 對 매일경남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양산시 '주먹구구식' 행정비난 서창동 주민센터 설계변경 말썽』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5일자 7면)
신청인주장	양산시 서창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당초 헬스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도서관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당초 헬스장 계획은 없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홈페이지 외부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 삭제 요청, 초기화면 중앙 부분에 3일 이상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으로 연결)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양산시 서창동 주민센터 관련 정정보도 – 헬스장 계획 후 설계변경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7면)

2010경남조정80~81	하○○ 對 함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칠원자원봉사단체 정치 집단화 우려, 자원봉사대장 선거에 함안군수 · 군의원 영향력 개입 시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7일자 3면) (2) 『칠원면 자원봉사 대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3면) (3) 『[발행인칼럼] 칠원면여성자원봉사대 '존재의 의미' 되새겨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칠원면 자원봉사대장 선거를 앞두고 신청인이 칠원면장에게 한쪽 후보자 지지 전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3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중재부의 손해배상액 지급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함안군수, 칠원봉사대 선거개입 사실과 달라 – 면장에게 사태 파악 지시만 내린 것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1면)

2010경기조정111~112	송영길 對 연수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평민당 백석두 시장후보 '송영길 후보' 검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기업으로부터 향응 및 성접대를 받고, 투자 로비를 해 준 대가로 수십만 달러의 뇌물까지 챙겼다는 인천시장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측의 고발장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림기사 형식으로 보도해 줄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

2010강원조정21~22	이○○ 對 인제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사설] 몸통과 깃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6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방선거 당시 고전을 하자 수재의연금 문제를 고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보도이다.)

2010강원조정23~26	인제군 對 인제신문, 인터넷 인제신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인제군 본지 상대 언론탄압』 제하의 기사 [인제신문 (2010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인제신문 (11월 30일자)] (2)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 즉각 중단 촉구』 제하의 기사 [인제신문 (2010년 11월 30일자 2면), 인터넷 인제신문 (1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피신청인에게 협박을 가하는 등 언론탄압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그 내용에 있어 잘못된 것이 아니다.)

2010서울조정1538~1541	김○○ 對 내외일보, 인터넷 내외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0년 11월 29일자 4면), 인터넷 내외일보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고교 영양교사인 신청인이 학생수를 잘못 계산해 급식발주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내외일보** : 사회면에 1월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전곡고 영양교사 식단표도 작성 못해'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0년 12월 16일자 4면), 인터넷 내외일보 (12월 15일자)]

2010서울조정1542~1553	권○○ 對 문화일보, 문화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청계천 두 馬夫의 혈투』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0년 11월 16일자 8면), 문화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1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청계천 꽃마차 운영을 둘러싼 마부들간의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보도내용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0경기조정113	(재)부천문화재단 對 부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천문화재단 '법인카드 깡'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속칭 법인카드 깡을 하여 회식비용 등을 부풀려 결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2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부천문화재단 법인카드깡 의혹'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6일자 3면)

2010서울조정1554	김○○ 對 SBS-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MC몽 사건의 이면'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30일 23:1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문 게재, SBSi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보도 검색 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부제소)
이 행 결 과	• SBSi :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7일자)

2010서울조정1555	문화체육관광부 對 전자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방송콘텐츠 진흥' 방통위가 맡기로』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1면)
신청인주장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기로 신청인 부처와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556~1557	고○○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학원정상화 오랜 숙제 풀리나" 긴장감 도는 대구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9월 3일자 25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대 관계자인 신청인이 대구대 정상화추진위원회 참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3일자 26면) • **인터넷 중앙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12월 23일자)

2010서울조정1558	아○○○ 對 인터넷 코리아타임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EBS foreign host accused of broadcasting drunk』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EBS 영어강사인 신청인이 취중강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559~1560	송영길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기부자 따로 있는데… 생색낸 송영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12월 2일자 A10면), 디지틀조선일보 (1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연평도 사태 아동들에 대한 인천시의 무상지원이 민간 기부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면서도 인천시장인 신청인이 마치 자신이 사준 것처럼 생색을 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61~1562	(주)하나금융지주 對 서울경제, 서울경제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하나금융, 론스타 주주사 대상 외환은행 인수자금 유치 협상』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0년 12월 7일자 A8면), 서울경제닷컴 (12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론스타의 주주사를 대상으로 외환은행 인수자금 유치를 위한 협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563~1564	이소영 對 프레시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제2의 신정아?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 경력 대부분 허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2) 『허위 경력 이소영 단장은 문제거리 종합세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경력이 대부분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충북조정29~30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건강마을 對 인터넷 충청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아름다운 건강마을 공사비 지급하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신축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에 24시간 반론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반론보도문 배치
이 행 결 과	『"아름다운 건강 마을 공사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2010충북조정31~34	(주)두진건설 對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매일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두진건설, '건설업자 잠적' 불똥』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9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령집회'를 신고하고 신청인 회사의 건설업자가 잠적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매일** : 초기화면에 24시간동안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두진건설 '건설업자 잠적' 불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0년 12월 17일자 2면), 인터넷 충청매일 (12월 16일자)]

2010서울조정1565~1566	(주)에코에너지홀딩스 對 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국책과제 업체 직원 200억대 비리 적발'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6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명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화면이 나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67	(주)하나금융지주 對 네이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테마섹 후폭풍..골드만도 하나금융 매각 움직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2) 『하나금융-골드만, 풋백옵션 있나 없나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하나금융이 골드만삭스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풋백옵션을 부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68~1571	한국방송공사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취재여록] 공영방송 본분 잊은 KBS』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0년 11월 25일자 A38면), 한경닷컴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드라마와 쇼프로그램들을 외국에 공짜로 뿌리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76~77	전○○ 對 화순미래뉴스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논평> 더 이상의 말장난은 삼가 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수가 군정과 관련해 말장난을 하고 현실을 부풀려 호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72~1573	노○○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민중의소리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인터넷 머니투데이** : (1) 『박지원-강기정 '국회 펀치'』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8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2) 『[사진] 격투기장으로 변한 국회』 제하의 기사, (3) 『[사진] 분노의 박지원, 날치기 어퍼컷!』 제하의 기사 • **민중의소리** : (1) 『[단독영상]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강기정 민주당 의원 안면 가격』 제하의 기사, (2) 『주먹질에 여성 머리채까지.. 김성회 비난 몸살 "깡패야? 국회의원이야?"』 제하의 기사, (3) 『[사진] 분노의 박지원, 날치기 어퍼컷!』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국회 경위인 신청인이 강기정 의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0서울조정1574	(주)농수산홈쇼핑 對 뉴스토마토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신세계-하림, 농수산홈쇼핑 매각협상 재개될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신세계 그룹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 및 PR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도상철 사장 "농수산물홈쇼핑, 유통전문기업으로 탈바꿈"』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2010서울조정1575~1578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對 뉴코리아리포스트,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국토부 '인재풀' 제도…H협회와 묘한 이해관계』 제하의 기사 [뉴코리아리포스트 (2010년 10월 4일자 A7면),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10월 4일자)] (2) 『한정협 교육모집공문 '의무교육 · 불이익 받을 수 있다' 파장』 제하의 기사 [뉴코리아리포스트 (2010년 12월 1일자 A1면),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12월 1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서울대에서 진행할 도시정비 교육의 강사진을 친분이 있는 신청인 단체 소속 강사로 주로 구성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3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 삭제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뉴코리아리포스트 (2011년 1월 18일자 A2면),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1월 19일자)]

2010서울조정1579~1580	김○○ 對 KBS-1TV, K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교사 '성과급' 소송'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13일 06:00) • **KBSi** : 『교사가 성과급 적다며 교장 상대로 소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과급이 적어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신청인이 제시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만으로는 보도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81	장병완 對 문화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지역구 '4대강 예산' 野의원이 증액 요구』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3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대강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82	성남시 對 서울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남시, 판교소각장 악취소동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성남시가 판교 소각장 인수를 지연하기 위해 악취소동을 조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부산조정59	김형오 對 부산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2일 21:00) (2) 「뉴스투데이 부산」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3일 07:1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선거공약으로 남북항대표 연결도로를 고가도로 대신 지하차도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는 잘못된 부분이 없어 정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83~1584	(주)정.식품 對 컨슈머타임즈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식품 '유아용 ○○○'에 각종 '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유아용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물질의 유입경로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전재한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0일자)

2010서울조정1585	남○○ 외 7인 對 SBS-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기적의 신의학인가, 사이비 시술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일 23:1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환자들을 유인하여 소위 '의식의학'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로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해당 방송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서울조정1586~1587	황○○ 對 매경닷컴, 연합뉴스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너 조심해라' 공무원에 협박문자 보내』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2) 『'공무원에 협박문자' 문화운동가 벌금형』 제하의 기사 (3) 『공무원에 협박문자 보낸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공무원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를 보도하면서 실명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기조정114	(정정청구) 성남시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이재명 시장 "여러분은 정치적 敵"』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3일자 5면)
신청인주장	성남시의 시장이 성남직장운동부 해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아원에 대한 폄하발언 등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이재명 성남시장 발언'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5면)

2010서울조정1588~1590	주○○ 對 동아일보, 데일리포커스, 연합뉴스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사진] 휘발유값 고공행진』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2면) • **데일리포커스** : 『[사진] 치솟는 휘발유값』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1면) • **연합뉴스** : 『[사진] 주유소 휘발유값 '고공행진' 계속』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휘발류값 폭등 관련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데일리포커스** : 각 취하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100만원 지급)

2010경남조정82~83	(유)진해교통 對 경남도민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복수노조 택시사업장 사납금 · 최저임금 갈등』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8일자 5면) (2) 『진해교통, 민노총 가입 직원에 불이익』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에서 민노총 민주택시 가입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84~85	(정정 · 손배청구) 하○○ 對 진주MBC-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소나무 불법 반출'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5일 21:00)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행정도 한 몫'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6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아름드리 소나무를 야음을 틈타 불법반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에서 결정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몇몇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이행방법 : 로컬 뉴스 시작 후 4분 30초 이내에 정정보도문 방송,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통상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정정보도문 첫 문장은 진행자를 비추는 동시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명기하고, 이후 보도 마지막까지는 조정대상보도 장면이 나오도록 할 것

2010서울조정1591~1592	(주)와이티엔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연평도 간 안상수, 보온병 보고 "포탄" 동영상 알고 보니 방송사의 '연출 영상'』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0년 12월 1일자 A8면), 동아닷컴 (12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보도한 한나라당 대표의 포탄 동영상이 연출 영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

처 리 결 과	상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동아닷컴은 동아일보의 보도를 전제하였으므로 정정보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방법 • **동아닷컴** : 초기화면 중앙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2010충북조정35	행동하는 복지연합 對 충청투데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사회복지정책보좌관 후보 적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관여한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정책보좌관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회복지정책보좌관 후보 적정성 논란'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5일자 5면)

2010서울조정1593~1595	1.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2. 김○○ 對 MBC-TV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사라진 고구려 벽화'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27일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도굴된 고구려벽화를 매수하여 팔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96~1597	(주)유니드파트너스 對 인터넷 재경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단독] 유니드파트너스 제주암센터 사업, 사실상 좌초상태… FI부재 드러나』 (2010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암센터 설립 사업이 좌초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에 후속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후속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아래에 후속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유니드파트너스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9일자)

2010서울조정1598	(주)주간해남신문사 對 MBC-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자치단체장 "호화관사는 기본, 기자는 부하직원"'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4일 21:00)
신청인주장	언론사 기자를 부하직원인 듯처럼 언급한 지역자치단체장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신청인 언론사의 제호를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99~1600	강○○ 對 한국대표문학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문협 선관위 공정성 논란 휘말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문인협회 선관위 간사인 신청인이 협회 이사장으로 출마한 특정후보자를 등록일 하루 전날에 미리 접수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2010서울조정1601~160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인터넷 내외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이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2) 『성남시설관리공단 제왕적 본부장 체제구축, 비난고조』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이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제왕적 본부장 체제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2010서울조정1603~160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인터넷 현대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이사장 공석 中 정관변경』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2) 『제왕적 본부장체제? 감사권까지 장악 조항 추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이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1) 『이사장 공석 中 정관변경 '관련 정정보도문' 』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2) 『제왕적 본부장체제? 감사권까지 장악 조항?』 제하의 기사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 문제없다" 주장』

2010서울조정1605	이○○ 對 SBS-TV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8 뉴스」 프로그램 '경찰, 단속은커녕 노래방에 술안주 납품'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20일 20:10)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관내 노래방을 비호해주는 대가로 4천만원 정도의 부당 이익금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SBSi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기사 스크립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을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 SBSi : 조정대상보도 하단『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7일자)

2010경기조정11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뉴스페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잦은 인사로 혼란을 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원칙없는 잦은 인사로 인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정보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

2010경기조정116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뉴스페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관리공단, 전보제한, 성남시 기획감사 지적, 나몰라라』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막가파식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정보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

2010경기조정117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수도권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남 시설관리공단 '쿠데타', 이사장 '허수아비'로 '음모'』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현재 공석인 이사장을 명목상 존재로 전락시키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함께 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합의문구임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가능하다.)

2010경기조정118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수도권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본부장이 감사권까지 장악』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기획본부장이 감사권한까지 장악하여 이사장의 권력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함께 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합의문구임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가능하다.)

2010경기조정119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전국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남 시설공단 무리한 정관개정 원성』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4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현재 공석인 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함께 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합의 문구임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가능하다.)

2010경기조정120	성남시시설관리공단對 전국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남 시설공단 정관개정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사장 권한의 감사실을 기획본부장 직제로 편제시켜 기획본부장이 공단 내 실질적 권력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함께 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합의 문구임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가능하다.)

2010서울조정1606	박○○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미디어오늘** : 『방통위, 규제 풀어도 광고훈풍 어렵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방통위, 규제 풀어도 광고 시장 훈풍 어렵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향후 광고시장을 전망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방통위가 규제를 풀어도 광고시장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초기회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기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미디어오늘**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6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4일자) ※ 조정성립 당시 매체별 반론보도문의 본문 상이

2010서울조정1608~1625	황○○ 對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인터넷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동아닷컴, 매경닷컴, 세계닷컴, 인터넷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닷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동아닷컴 · 인터넷 중앙일보** : 『 '엉터리 美사이버대로 19억 학위장사'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 **머니투데이** : 『美사이버대학 학위장사 '무죄' 』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6일자 20면) • **인터넷 머니투데이** : 『 '美원격대학' 학위 장사 총장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 **노컷뉴스 · 파이낸셜뉴스닷컴** : 『대법, 껍데기 미국 사이버대 학위장사 일당에 무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엉터리 미국 사이버대학을 설립해 학위장사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인터넷 머니투데이** :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 **노컷뉴스 · 동아닷컴 · 매경닷컴 · 세계닷컴 · 인터넷 중앙일보** : 각 취하 • **파이낸셜뉴스닷컴** :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 **파이낸셜뉴스닷컴** : 『[알림]퍼시픽예일대학(PYU) 총장 등 무죄확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2010서울조정1626~1627	이○○ 對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일요신문** : 『해외 전훈지 수용소와 다름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6일자 59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육상 허들 커플 이○○ · 이○○ 충격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현 육상경기연맹에 대한 불만을 폭로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일요신문** : <인터넷기사 A/S>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1년 1월 19일자 3면), 인터넷 일요신문 (1월 12일자)]

2010경남조정86~89	(주)이넥코리아 對 경남도민일보,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유학업체 무책임한 태도 상처만 남겨』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0년 12월 6일자 4면), 다음 (12월 6일자)] (2) 『인도 유학업체, 학생피해 '나 몰라라' 일관』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0년 12월 15일자 5면), 다음 (12월 15일자)] (3) 『인도 유학업체 계약 내용도 무시』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0년 12월 21일자 5면), 다음 (12월 21일자)] (4) 『인도 유학업체 약관 '표준'에도 못 미쳐』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0년 12월 22일자 5면), 다음 (1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인도 유학 전문업체인 신청인 회사에서 유학갔다 퇴학당한 학생의 등록금도 환불해 주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남도민일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 최상단에서 아래로 5번째 이내 위치에 최소 7일간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한 후 자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피신청인 홈페이지 및 외부 포털사이트 뉴스 및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조정대상기사가 전재 내지 매개되어 있는 경우 삭제 조치, 부제소)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인도유학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8일자 4면)

2010대전조정41~42	박○○ 對 대전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국가보조금 '줄줄''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29일 21:00)
신청인주장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학원 사진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 학원은 보도내용과 무관함을 확인하는 대전KBS 총국장 명의의 확인서 발송, 부제소)

2010강원조정27~28	상지대학교 對 데일리안 강원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상지대 법학부 교수 또 횡령혐의, 두 번째 검찰 고발 당해』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2) 『상지대, 또 통학버스 관련 100억대 공금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학원 사진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정정보도, 기사 삭제, 유감표명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수용 가능하다.)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0서울중재1~7	진○○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드림위즈 (매체별 정정청구)
중 재 대 상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12월 21일자 29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민원은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기고문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중재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기고문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드림위즈** : 한겨레닷컴이 기고문을 중재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재대상기고문에 이를 반영
이 행 결 과	『신문고 민원수사 최선을 다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1월 14일자 29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드림위즈 (1월 13일자)] ※ 중재결정서상 기고문의 제목 :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

2010서울중재8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네이트 (정정청구)
중 재 대 상	『법치 도전 법정 소란, 더 엄격히 처벌해야』 제하의 사설기사 (2009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사실보도이다.)

2010서울중재9~16	환경부 對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중 재 대 상	『〈기자메모〉 '미군부대 오염' 변죽만 울린 환경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환경부가 부평미군부대 안팎 환경오염 원인규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고 자체 옴부즈만 코너인 '정정 · 반론 등 게재 코너'에 게시 • **야후** : 뉴스 홈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합의한 반론보도의 본문 표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인천경향 1월 4일자 2면』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2일자)

2010서울중재17~20	(주)케너텍 對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중 재 대 상	『국내 첫 구역전기사업(CES) 애물단지 전락』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구역형 전기사업자인 신청인 회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네이버 · 네이트** :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고 자체 옴부즈만 코너인 '정정 · 반론 등 게재 코너'에 게시
이 행 결 과	『사당동 CES사업 보도에 대한 케네텍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6일자)

2010서울중재21~28	(주)펀스테이션 對 네이트, 다음,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중 재 대 상	『성남 '펀스테이션 특혜' 사실로』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내지 않았고, 분양을 통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겨 흑자부도를 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네이트 · 다음** : 경향닷컴의 정정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맨 코너에 게시 • **야후 · 하나포스** : 경향닷컴의 정정보도문이 각각의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2010서울중재29~38	(주)북짱 對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네이버, 네이트,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중 재 대 상	『" 'X새끼' 'XX년' .. 너한테 안 팔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상품의 박스에 욕설이 적혀있어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이어 게시 • **네이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동일 기간까지 〈e-옴부즈만〉 코너의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보도문 게시 •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페이지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e-뉴스룸〉 '정정기사' 코너에 이를 반영 • **야후 · 하나포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시, 제목을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9일자)

2010경기중재1	이○○ 對 OBS경인TV (손배청구)
중 재 대 상	「경찰 25시」 프로그램 (2010년 3월 8일 23:00)
신청인주장	살해당한, 신청인의 어머니의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을 유족의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조정액 200만원, 유감표명) ※ 이행방법 : 지정기일까지 금액 지급, 보도문을 프로그램 서두에 청색바탕에 흰색자막의 화면에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시간동안 머물도록 보도
이 행 결 과	「경찰 25시」 프로그램 '고인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3:00)

2010서울중재39~40	양○○ 對 노컷뉴스, 연합뉴스 (매체별 추후청구)
중 재 대 상	• **노컷뉴스** : 『제주대 교직원 카드깡으로 공금 빼돌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 **연합뉴스** : 『제주대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드깡..거액 횡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를 완료한 후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이어서 게시 • **연합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 **연합뉴스** :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2010서울중재41~44	(주)아산엠단성사 對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중 재 대 상	『'103년 전통' 단성사에 불이 꺼진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일자)
신청인주장	단성사 극장이 사실상 휴점 상태라고 보도했으나, 일부 매장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페이지에서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e-뉴스룸> '정정기사' 코너에 이를 반영 •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103년 전통 단성사...' 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2010서울중재45~58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중 재 대 상	『근현대미술 대가 작품 일색 '복고 장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6월 18일자 25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광주 비엔날레 홍보 간담회에 한국관계자 약 20여 명만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으나 각국 인사가 다수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인 '정정 · 반론 등 게재' 란에 게시 • **야후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7월 13일자 2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7월 12일자)]

2010서울중재 59	서울관악경찰서 對 경향신문 (반론청구)
중 재 대 상	『"겁도 없이, 왜 그딴 글을 올리는 거야" 귀갓길 괴한 3명이 다짜고짜 주먹질』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에 시위 관련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경향닷컴 홈페이지 중재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3일자 2면)

2010서울중재60~61	장○○ 對 뉴시스, 인터넷 재경일보 (매체별 추후청구)
중 재 대 상	『검찰, 포천경찰서 경찰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혐의가 없는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뉴시스** : '전국-경기북부'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 **인터넷 재경일보** : '정치-사회'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포천경찰서 경찰, 직무유기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2010서울중재62	장○○ 對 인터넷 의정부신문 (추후청구)
중 재 대 상	『포천경찰,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혐의가 없는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포천경찰서 장 경장 직무유기 등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2010경남중재1	1. 안○○, 2. 박○○ 對 경남도민일보 (손배청구)
중 재 대 상	『죽은 남편 안 보이고 보험금만 보이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과로사로 사망한 전 남편에 대해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고 보험금만 수령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중재액 300만원, 부제소)

2010서울중재63~69	박○○ 對 뉴시스, 네이트, 네이버, 조인스MSN,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추후청구)
중 재 대 상	『의정부, 한나라당 위원장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2010년 4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 시청 출입기자들이 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뉴시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국-경기북부'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 **네이트 · 네이버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뉴스섹션에서 추후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재 • **조인스MSN · 드림위즈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뉴스섹션에서 추후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의정부을 위원장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2010서울중재70~73	박○○ 對 의정부신문, 인터넷 의정부신문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중 재 대 상	『김효열 의정부시의원 한나라당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의정부신문 (2010년 4월 15일자 1면), 인터넷 의정부신문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을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 **인터넷 의정부신문**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박인균 당협위원장에 대한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의정부신문 (2010년 10월 1~13일자 5면), 인터넷 의정부신문 (10월 2일자)]

2010서울중재74~75	김○○ 對 인터넷 내외일보 (정정 · 반론청구)
중 재 대 상	(1) 『술판 · 싸움판 학교 급식실…학교는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2) 『연천전곡고 급식실에서 시작되는 학교 비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2일자) (3) 『연천전곡고 급식실, 솜방망이 처분에 '시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3일자) (4) 『놀고먹는 연천 전곡고등학교 영양사』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교 영양사로 재직중인 신청인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배식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내외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인터넷내외일보 뉴스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 반론보도〉 '전곡고 영양사 놀고먹는다'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4일자)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색인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색인

신 청 인	대상매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사례번호	면
(ㄱ)							
강 ㅇ ㅇ	한국대표문학신문	2010서울조정1599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84	386
강 ㅇ ㅇ	한국대표문학신문	2010서울조정1600	손 배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84	386
강 ㅇ ㅇ	E B S - T V	2010서울조정1289	손 배	조정에갈음하는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57	280
ㅇ ㅇ ㅇ	군 산 뉴 스	2010전북조정27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30	179
강 용 석	중 앙 일 보	2010서울조정1133	반 론	조 정 성 립		사례14	122
강 용 석	중 앙 일 보	2010서울조정1195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사례38	209
강 용 석	인터넷 중앙일보	2010서울조정1196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사례38	209
1. 경기도, 2. 김문수	뷰 스 앤 뉴 스	2010서울조정270	정 정	취 하		사례66	315
㈜ 경 기 방 송	경기도민일보	2010경기조정8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37	203
㈜ 경 기 방 송	경기도민일보	2010경기조정9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37	203
㈜ 경 기 방 송	미 디 어 오 늘	2010서울조정76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35	195
㈜ 경 기 방 송	미 디 어 오 늘	2010서울조정77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35	195
고 ㅇ ㅇ	동 아 일 보	2010서울조정1361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89	402
고 ㅇ ㅇ	연 합 뉴 스	2010서울조정981	손 배	취 하		사례102	435
과 천 시	과 천 저 널	2010경기조정7	정 정	취 하		사례1	66
구 례 군	호 남 매 일	2010광주조정9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7	95
국 립 의 료 원	메 디 컬 투 데 이	2010서울조정87	정 정	취 하		사례73	345
국 무 총 리 실	경 향 신 문	2010서울조정934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11	109
국 토 해 양 부	M B C - T V	2010서울조정1129	정 정	취 하		사례55	274
권 태 신	신 동 아	2010서울조정894	반 론	조 정 성 립		사례44	234
김 ㅇ ㅇ	연 합 뉴 스	2010서울조정181	정 정	기 각 결 정		사례31	181
김 ㅇ ㅇ	M B C - T V	2010서울조정50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92	408
김 ㅇ ㅇ	K B S - 1 T V	2010서울조정330	정 정	기 각 결 정		사례48	251
김 ㅇ ㅇ	국 민 일 보	2010서울조정172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87	396
(ㄴ)							
남 ㅇ ㅇ	포항MBC-TV	2010대구조정2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95	415
(ㄷ)							
㈜ 다 산 북 스	오 마 이 뉴 스	2010서울조정1418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사례83	380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사례번호	면
㈜다산북스	오마이뉴스	2010서울조정1419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사례83	380
㈜대상	데일리노컷뉴스	2010서울조정1173	정정	조정성립		사례69	329
㈜대상	데일리노컷뉴스	2010서울조정1174	손배	조정성립		사례69	329
1. (사)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2. 리헌석	중도일보	2010대전조정11	정정	조정성립		사례33	187
1. (사)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2. 리헌석	중도일보	2010대전조정12	반론	조정성립		사례33	187
대통령실	내일신문	2010서울조정1293	정정	조정성립		사례15	126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인터넷 보건신문	2010서울조정149	정정	취하		사례64	30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인터넷 보건신문	2010서울조정150	손배	취하		사례64	308
1.대한이비인후과학회,2.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3.대한비과학회	KBS-2TV	2010서울조정842	정정	조정성립		사례51	260
1.대한이비인후과학회,2.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3.대한비과학회	KBS-2TV	2010서울조정843	손배	조정성립		사례51	260
(사)대한의사협회	한국경제	2010서울조정805	정정	조정성립		사례26	163
동양산업㈜	SBS-TV	2010서울조정1215	정정	조정성립		사례56	277
(ㅁ)							
맹주석	프레시안	2010서울조정1126	정정	조정성립		사례77	358
맹주석	프레시안	2010서울조정1127	손배	조정성립		사례77	358
문형배	조선일보	2010서울조정408	정정	조정성립		사례23	155
문화체육관광부	경향신문	2010서울조정321	반론	조정성립		사례32	184
(ㅂ)							
박근혜	오마이뉴스	2010서울조정490	정정	조정성립		사례41	220
1. 박OO,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부산일보	2010부산조정1	정정	조정성립		사례20	144
1. 박OO,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부산일보	2010부산조정2	손배	조정성립		사례20	144
박선영	KBS-1TV	2010서울조정915	반론	조정성립		사례53	268
배금자	MBC-TV	2010서울조정1411	정정	기각결정		사례59	288
백OO	헤럴드경제닷컴	2010서울조정1420	손배	조정성립		사례99	426
백OO	네이트	2010서울조정1421	손배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의	사례86	394
보건복지부	한겨레	2010서울조정1128	정정	조정성립		사례13	116
봉OO	Comedy TV	2010서울조정69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사례100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일신문	2010서울조정1101	정정	조정성립		사례12	113
(ㅅ)							
1.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2. 김OO	MBC-TV	2010서울조정1593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사례61	299
1.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2. 김OO	MBC-TV	2010서울조정1594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사례61	299
1.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2. 김OO	MBC-TV	2010서울조정1595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사례61	299
사단법인 KYC(한국청년연합)	뉴데일리	2010서울조정1408	정정	조정성립		사례78	362
사단법인 KYC(한국청년연합)	뉴데일리	2010서울조정1409	손배	조정성립		사례78	36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iMBC	2010서울조정47	정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의	사례72	341

신 청 인	대상매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사례번호	면
세종시원주민생계및계보상비상대책위원회	세 종 뉴 스	2010대전조정2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75	351
소 ㅇ ㅇ	KBS-1TV	2010서울조정1410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97	420
손 ㅇ ㅇ	대 전 일 보	2010대전조정19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24	158
손 ㅇ ㅇ	대 전 일 보	2010대전조정20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24	158
송 ㅇ ㅇ	뉴 시 스	2010서울조정693	정 정	취 하		사례25	161
(재)시민방송	독 립 신 문	2010서울조정157	정 정	취 하		사례80	369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일 신 문	2010서울조정1497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16	130
신 ㅇ ㅇ	아시아투데이	2010서울조정1532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90	404
신 ㅇ ㅇ	KBS-2TV	2010서울조정466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96	417
(ㅇ)							
㈜아이이에이	나 눔 뉴 스	2010서울조정1432	정 정	취 하		사례79	366
㈜아이이에이	나 눔 뉴 스	2010서울조정1433	손 배	취 하		사례79	366
1. 안ㅇㅇ, 2. 박ㅇㅇ	경남도민일보	2010경남조정62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28	171
1. 안ㅇㅇ, 2. 박ㅇㅇ	경남도민일보	2010경남조정63	손 배	취 하	중재신청 합의	사례28	171
1. 안ㅇㅇ, 2. 박ㅇㅇ	경남도민일보	2010경남중재1	손 배	중 재 결 정		사례29	176
안 ㅇ ㅇ	중 부 일 보	2010경기조정1	반 론	취 하		사례18	137
양 ㅇ ㅇ	MBC-TV	2010서울조정899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52	265
양 ㅇ ㅇ	MBC-TV	2010서울조정900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52	265
양 ㅇ ㅇ	조 선 일 보	2010서울조정916	손 배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101	432
㈜에스비에스	KBS-1TV	2010서울조정312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47	248
오 ㅇ ㅇ	전 북 일 보	2010전북조정2	추 후	취 하		사례21	148
오 은 선	한 겨 레	2010서울조정60	정 정	취 하		사례19	140
㈜와이티엔	동 아 일 보	2010서울조정1591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39	212
ㅇ ㅇ ㅇ	조 선 일 보	2010서울조정1177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27	167
ㅇ ㅇ ㅇ	조 선 일 보	2010서울조정1178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27	167
육 ㅇ ㅇ	서울신문NTN	2010서울조정246	정 정	취 하		사례81	373
육 ㅇ ㅇ	서울신문NTN	2010서울조정247	손 배	취 하		사례81	373
1. 윤ㅇㅇ, 2. (주)아시아포럼	JIBS-TV	2010제주조정1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94	412
1. 윤ㅇㅇ, 2. (주)아시아포럼	JIBS-TV	2010제주조정2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94	412
이 동 관	경 북 일 보	2010대구조정1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사례8	99
이 ㅇ ㅇ	MBC-TV	2010서울조정54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93	410
이 ㅇ ㅇ	한 겨 레	2010서울조정170	정 정	취 하		사례2	71
이 ㅇ ㅇ	한 겨 레	2010서울조정171	반 론	취 하		사례2	71
이 ㅇ ㅇ	OBS경인TV	2010경기중재1	손 배	중 재 결 정		사례103	437
이 재 오	오 마 이 뉴 스	2010서울조정1513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68	324

신 청 인	대상매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사례번호	면
이 재 오	오 마 이 뉴 스	2010서울조정1514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68	324
이 ㅇ ㅇ	매 경 닷 컴	2010서울조정392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76	354
이 ㅇ ㅇ	매 경 닷 컴	2010서울조정393	손 배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76	354
(ㅈ)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한 겨 레	2010서울조정1331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34	19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 원 시 지 부	내 외 일 보	2010서울조정1286	정 정	기 각 결 정		사례42	2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 원 시 지 부	내 외 일 보	2010서울조정1287	손 배	기 각 결 정		사례42	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 선 일 보	2010서울조정258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40	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 선 일 보	2010서울조정259	반 론	조 정 성 립		사례40	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 선 일 보	2010서울조정260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40	216
전국언론노동조합	K B S - 2 T V	2010서울조정1093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사례63	306
전국철도노동조합	중 앙 일 보	2010서울조정331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22	151
전국철도노동조합	중 앙 일 보	2010서울조정332	손 배	조정에갈음하는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22	151
㈜ ㅇ ㅇ 식 품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0서울조정268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74	348
㈜ ㅇ ㅇ 식 품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0서울조정269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74	348
㈜ ㅇ ㅇ 식 품	컨 슈 머 타 임 스	2010서울조정1583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70	332
㈜ ㅇ ㅇ 식 품	컨 슈 머 타 임 스	2010서울조정1584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70	332
정 정 길	한 겨 레	2010서울조정512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9	102
정 종 근	경 기 도 민 일 보	2010경기조정30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5	84
정 종 근	경 기 도 민 일 보	2010경기조정31	손 배	취 하		사례5	84
1. 정태근, 2. 한ㅇㅇ	신 동 아	2010서울조정510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43	228
조 ㅇ ㅇ	일 요 서 울	2010서울조정277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65	311
조 ㅇ ㅇ	일 요 서 울	2010서울조정278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65	311
주식회사 송이산업	K B S - 1 T V	2010서울조정1037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54	271
주식회사 송이산업	K B S - 1 T V	2010서울조정1038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54	271
주식회사 알앤엘바이오	K B S - 1 T V	2010서울조정1266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60	292
주 ㅇ ㅇ	연 합 뉴 스	2010서울조정1590	손 배	취 하		사례91	406
진 ㅇ ㅇ	한 겨 레 닷 컴	2010서울중재2	정 정	중 재 결 정		사례85	389
(ㅊ)							
차 ㅇ ㅇ	제주KBS-1TV	2010제주조정13	추 후	조 정 성 립		사례49	254
차 ㅇ ㅇ	제주KBS-1TV	2010제주조정14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49	254
최 ㅇ ㅇ	목 양 신 문	2010서울조정1216	정 정	기 각 결 정		사례45	240
1. 최ㅇㅇ, 2. 최ㅁㅁ, 3. 백ㅇㅇ	전주KBS-1TV	2010전북조정1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46	243
최 ㅇ ㅇ	뉴 시 스	2010서울조정201	손 배	취 하		사례88	399

신 청 인	대상매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사례번호	면
(ㅍ)							
㈜ 펀 스 테 이 션	경 향 신 문	2010서울조정359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6	91
㈜ 펀 스 테 이 션	경 향 신 문	2010서울조정360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6	91
(ㅎ)							
한 국 방 송 공 사	미 디 어 오 늘	2010서울조정141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36	199
한 국 방 송 공 사	미 디 어 오 늘	2010서울조정142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36	199
한 국 방 송 공 사	한 국 경 제	2010서울조정1559	반 론	취 하		사례17	134
(사)한국영화감독협회	한 겨 레	2010서울조정304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82	376
(사)한국영화감독협회	한 겨 레	2010서울조정305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82	376
한 국 철 도 공 사	경 향 닷 컴	2010서울조정3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71	336
한 국 철 도 공 사	경 향 닷 컴	2010서울조정4	반 론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71	336
함 안 군	더 함 안 신 문	2010경남조정1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4	77
해 군 본 부	동 아 일 보	2010서울조정886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10	105
허 ㅇ ㅇ	오 마 이 뉴 스	2010서울조정1172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98	423
현대제철석회석저장시설반대책위원회	강 원 일 보	2010강원조정1	반 론	조 정 성 립		사례3	74
화 순 군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2010광주조정53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67	319
㈜ 훌 랄 라	M B C - T V	2010서울조정468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62	302
㈜ 훌 랄 라	M B C - T V	2010서울조정469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62	302
기 타							
U D T 동 지 회	K B S - 1 T V	2010서울조정841	반 론	조 정 성 립		사례50	257
5·18실체규명위원회	광주KBS-1TV	2010서울조정1375	정 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58	284
5·18실체규명위원회	광주KBS-1TV	2010서울조정1376	손 배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동 의	사례58	284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대표 02)397-3114
• 언론분쟁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6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

2010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2011년 4월 25일 인쇄
2011년 4월 30일 발행

편저_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발행_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 화 : 대 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상 담 센 터 02)397-3089